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30호
2021.11.4.(목)



서울특별시

목 차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 - 2740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제2021 - 2743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행정예고]

제2021 - 2703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9

고 시

제2021 - 596호 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3

제2021 - 59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 (서울교육대학교) ····· 88

제2021 - 598호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 ····· 96

제2021 - 599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98

제2021 - 600호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0

제2021 - 6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109

제2021 - 60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 110

제2021 - 610호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 - 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사업 - ····· 141

제2021 - 611호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58

제2021 - 612호 광진구 구의동 246 - 1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227

공 고

제2021 - 2668호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51

제2021 - 267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53

제2021 - 268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 259

제2021 - 268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260
제2021 - 2694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62
제2021 - 2699호 공시송달공고 ····· 265
제2021 - 2718호 재산압류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267
제2021 - 272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269
제2021 - 272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270
제2021 - 272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282
제2021 - 2732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 283
제2021 - 2737호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공고 ····· 284
제2021 - 2738호 서울특별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등록) 계획 공고 ····· 286
제2021 - 27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 329
제2021 - 274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30
제2021 - 27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32
제2021 - 2749호 서울식물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 339

구 고 시

제2021 - 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 362
제2021 - 1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 364
제2021 - 122호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 367
제2021 - 125호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 -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 370
제2021 - 21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용산구) ·· 374
제2021 - 2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작성 고시(성북구) ····· 376
제2021 - 166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 380
제2021 - 1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양천구) ····· 384
제2021 - 2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 386
제2021 - 2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 388

구 공 고

제2021 - 18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동작구) ····· 391

사업소고시

제2021 - 2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392
제2021 - 2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392
제2021 - 2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393
제2021 - 2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394
제2021 - 2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394
제2021 - 2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395
제2021 - 2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395

사업소공고

제2021 - 275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 396

기 타

제2021 - 43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01
제2021 - 44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402

정 정

제2021 - 60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403
제2021 - 614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미신고·미등록 포함), 준대규모 점포 방역지침 의무화 고시(수정) ····· 407
제2021 - 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관악구) ····· 415

자치법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40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함(제4조의3제1항).
나. 임산부 교통비의 지급방법을 규정함(제4조의3제2항).
다. 임산부 교통비의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함(제4조의3제3항).
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접수 후 처리 기한을 규정함(제4조의3제4항).
마. 임산부 교통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3제5항).
바.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3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가족담당관(전화 : 2133-5176, E-mail : hamnig2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43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간 내용의 통일성 및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고지 시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나. 수도요금의 감면 규정 내 조례 인용 조항을 수정함(안 제27조).
다.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별지65호 및 별지65의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전화 : 02 - 3146 - 1183, Fax : 02 - 3146 - 1209, E - mail : choyh33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안)
- 수도요금의 정산</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담당 조윤형</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4">1건
규칙 제26조제1항</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 수도 사용자 및 소유자의 변동으로 수도요금 중간 정산을 원하는 서울시민</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 기한없음</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수도 사용자 및 소유자 등이 이사 등으로 변경되어 수도요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신청)하는 종전규제 조항 유지</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수도사용자 등[1]의 이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납부는 수익자(시민) 부담원칙에 따른 납부의무 사항으로 신청하여 정산(이사정산 또는 분리고지) 하여야 함

※ 이사정산 : 이사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될 시, 신 · 구 사용자 간 현금인수인계를 목적으로 구사용자에게 이사 시점까지 사용한 요금을 안내해 주는 전화민원 서비스

※ 분리고지 : 이사정산 시 전 사용자가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수도요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수도사용자(시민)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이사 및 소유자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중간 정산을 원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시민의 편의제공 목적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분리고시 신청 시 즉시 처리되는 현행 시스템 반영으로 실현 가능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기존규제 유지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수도사용자 등의 이사로 발생되는 신청조항으로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방법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중복되는 규제조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별도 비용발생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시민 편익 도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시민 편익 증진

---

1)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서울시 수도 조례 제2조 4항)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수도요금 정산을 위해 분리고지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한 사항으로 조례 폐지시까지 존속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행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03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운영에 있어, 건설공사 장비 · 자재 대금 체불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장비 · 자재 대금에 대한 구분지급 및 매매 · 임대 등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20조의6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제16조제1항 등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 · 자재대금 체불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방지코자 장비 · 자재대금 구분지급 의무화 조항 신설(제20조의6제1항~제3항 신설)

나.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대금 적정 지급 등을 위한 보호규정 마련 및 구분관리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장비 · 자재 등의 용어를 구체화(제20조의6제4항 신설)

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 자재에 대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20조의6제5항 신설)

라.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계약서 내 하수급인의 구분지급의무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제20조의6제6항 신설)

마.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항 수정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8항)

3. 참고사항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67, FAX: 02-2133-0745, E-mail: nadath@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건설공사 대금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팀장 박현우, 담당 박태혁</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건설산업기본법 34조 등</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3">6건</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 서울특별시와 계약하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건설공사 업체 등)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 존속기한 없음</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구분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 · 지급하여야 함
– 건설공사 대가 지급 전 대금 지급 시에도 용도를 구분(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항목별 등록)하여 시스템으로 지급
–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자재의 임대·매매계약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의 시스템 사용 의무, 대금 용도의 구분, 장비·자재의 임대·매매 시 서면계약체결 등(개정안 제1항부터 제5항)을 이행하도록 하도급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 의무</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건설공사에서 노무비의 경우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정비 · 강화되어 구분지급 및 관리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 · 시행되고 있으나, 장비 · 자재대금은 법령상의 구분지급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건설현장에서 구분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장비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또한,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는 지위를 악용하여 법률상 건설기계로 인정되는 장비대금은 지급하고,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장비 · 자재대금 관련 체불에 대한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에 대한 계약관리 및 대급지급 방법 개선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수급인의 자재 · 장비(법률상의 용어로 구체화하고, ‘장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포함)대금에 대한 구분지급의무 및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계약서에 하수급인의 구분지급의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과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자재 · 장비의 매매 · 임대 등의 계약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대금지급을 위한 기반 마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자재 · 장비 대금 등의 구분지급 의무화 조항 신설을 통해 적정 자재 · 장비 대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도입 초기에는 전자시스템 사용 방법, 인력 충원 등의 사유로 일부 반대 및 어려움이 예상되나,

○ 정착 후에는 계약상대자 등이 투명한 대금지급 등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전자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 수령 의무화로(2019.6, 건설산업기본법) 기 사용하고 있어, 전자시스템을 사용한 자재 · 장비 대금 청구 및 수령은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규제로 인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 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를 통해 자재 · 장비 대금에 대한 구분지급 의무화 규정 등의 사항을 인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해당 규정 신설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할 정도의 불이익보다 공익성이 크므로 이와 같이 공사계약 특수조건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규제기준 :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하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 절 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를 통해 공사계약 특수조건내 자재 · 장비 등에 대한 의무화 조항을 인지하고 입찰 참가 여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 등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이행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1부. 끝.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96호

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38호(1977.07.09.)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29호(1992.05.01.)로 최초 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56호(2012.03.15.)호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시설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어 공원 경계, 면적 등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2-5일대
3. 면 적 : 262,192.8㎡
4.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67)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02-330-1396)

안산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2021. 10.

요구부서 : 서대문구청

가. 안산 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기 정(안산도시자연공원)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구분	변 경(안산근린공원)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계		2,086,491.9	126,694,0	10	2,589.69	7,939.17	190		262,192.80	39,284.15	5	2,355.61	7,455.60	63	감 1,824,299.10㎡
시설지구	소계	326,109.0	60,456.0	9	2,570.69	7,920.17	190	소 계	262,192.80	39,284.15	5	2,355.61	7,455.60	63	감 63,916.20㎡
	-	-	-	-	-	-	-	고은1지구	5,920.00	367.67	-	-	-	-	증 5,920.00㎡
	-	-	-	-	-	-	-	고은2지구	11,872.00	4,943.26	1	32.30	32.30	14	증 11,872.00㎡
	고은지구	7,942.0	2,368.0	1	128.52	321.19	2	고은3지구	11,029.40	2,624.82	1	23.40	23.40	24	증 3,087.40㎡
	-	-	-	-	-	-	-	홍제1지구	12,010.70	1,090.86	-	-	-	4	증 12,010.70㎡
	홍제2지구	7,850.8	713.8	-	-	-	-	홍제2지구	9,529.70	756.86	-	-	-	2	증 1,678.90㎡
	연희1지구	107,827.0	18,545	3	2.253.41	7,410.22	111	연희1지구	95,115.30	10,917.14	2	301.07	450.67	19	증 7,472.70㎡ 시설미포함 도시계획도로 (6지구 973.29㎡, 7지구 4,010.75㎡)
								연희2지구	20,184.40	9,951.00	1	1,998.84	6,949.23	-	
	연희2지구	13,074.2	3,076.2	-	-	-	-	연희3지구	94,167.30	8,632.54	-	-	-	-	증 13,074.20㎡
	-	-	-	-	-	-	-	홍제3지구	873.00	-	-	-	-	-	증 873.00㎡

구 분		기 정(안산도시자연공원)						구분	변 경(안산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	-	-	-	-	-	-	고은 10지구	1,025.00	-	-	-	-	-	증 1,025.00㎡
	-	-	-	-	-	-		홍제 4지구	466.00	-	-	-	-	-	증 466.00㎡
	봉원사지구	88,419.0	18,600.0	3	150,76	150.76	43	-	-	-	-	-	-	-	감 88,419.00㎡ 폐지(구역편입)
	신촌 지구	31,362.0	3,705.0	-	-	-	11	-	-	-	-	-	-	-	감 31,362.00㎡ 폐지(구역편입)
	홍제1 지구	56,039,0	9,218.0	1	19.0	19.0	13	-	-	-	-	-	-	-	감 56,039.00㎡ 폐지(구역편입)
	천연 지구	13,595.0	4,230.0	1	19.0	19.0	10	-	-	-	-	-	-	-	감 13,595.00㎡ 폐지(구역편입)
시설지구 외		1,760,382.9	66,238.0	1	19.0	19.0	-	시설지구 외	-	-	-	-	-	-	감 1,760,382.90㎡
시설율 (법정40%)		60,456.0 / 326,109.0 x 100 = 18.53%							39,284.15 / 262,192.80 x 100 = 14.98%						
건폐율 (법정15%)		2,570.69 / 326,109.0 x 100 = 0.78%							2,355.61 / 262,192.80 x 100 = 0.90%						

나. 시설별 총괄표

구 분		기 정(안산도시자연공원)					변 경(안산근린공원)					비고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0,456.00	9	2,570.69	7,920.17	190	39,284.15	5	2,355.61	7,455.60	63	감 21,171.85㎡
기반시설	소계	20,867.30	-	-	-	-	17,010.60	-	-	-	-	감 3,856.70㎡
	도로	19,801.00	-	-	-	-	15,720.36	-	-	-	-	감 4,080.64㎡
	광장	1,066.30	-	-	-	-	1,290.24	-	-	-	-	증 223.94㎡
조경시설		2,528.00	3	57.00	57.00	14	1,938.00	-	-	-	13	감 590.00㎡
휴양시설		5,245.00	-	128.52	321.19	13	1,321.12	-	-	-	25	감 3,923.88㎡
유희시설		2,052.00	-	-	-	1	4,963.50	-	-	-	20	증 2,911.50㎡
운동시설		14,937.70	-	-	-	70	1,313.56	-	-	-	5	감 13,660.14㎡
교양시설		13,593.00	1	1,952.34	6,959.55	-	11,860.00	1	1,998.84	6,949.23	-	감 1,733.00㎡
편익시설		932.00	2	131.76	131.76	86	440.30	2	55.70	55.70	-	감 491.70㎡
관리시설		301.00	2	301.07	450.67	6	437.07	2	301.07	450.67	-	증 136.07㎡
녹지및기타		-	-	-	-	-	-	-	-	-	-	-

다. 지구별 세부조서<기정>

1-1.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고은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942	2,368	-	128.52	321.19	2	
기반시설	소계	348	348	-	-	-	-	
	도로	348	348	-	-	-	-	폐 지
조경시설		-	-	-	-	-	1	폐 지
휴양시설		260	260	-	128.52	321.19	-	
유희시설		1,760	1,760	-	-	-	1	
녹지 및 기타		5,574	-	-	-	-	-	

1-2.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고은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7,942	2,368	-	-	128.52	321.19	2	
기반시설	소 계			348	348	-	-	-	-	-	
	도 로			348	348	-	-	-	-	-	
조경시설	소 계			-	-	-	-	-	-	1	
	파고라		어린이 놀이터내	-	-	-	-	-	-	1	폐 지
휴양시설	소 계			260	260	-	-	128.52	321.19	-	
	경로당	1	홍제동 499-1	260	260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	128.52	321.19	-	폐 지
유희시설	소 계			1,760	1,760	-	-	-	-	1	
	어린이 놀이터	가	홍제동 499-1	1,760	1,760	-	-	-	-	(1)	변경 (3지구 편입)
		②	시설 지내	-	-	-	-	-	-	1	폐 지
녹지및기타	소 계			5,574	-	-	-	-	-	-	
	녹 지			5,574	-	-	-	-	-	-	

1-3.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고은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74.00	348.00				
당 초	소 로	계			42.00	252.00				
폐 지		3	7	6	42.00	252.00	관리도로	소로 3-5	소로 3-8	
당 초	산책로	계			32.00	96.00				
폐 지			61	3	32.00	96.00	등산로	어린이 놀이터	소로 3-5	

2-1.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홍제2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850.8	713.8	-	-	-	-	
기반시설	소계	713.8	713.8	-	-	-	-	
	도로	464.1	464.1	-	-	-	-	폐 지
	광장	249.7	249.7	-	-	-	-	폐 지
녹지 및 기타		7,137	-	-	-	-	-	

2-2.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홍제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7,850.8	713.8	-	-	-	-	-	
기반시설	소 계			713.8	713.8	-	-	-	-	-	
	소 계1			464.1	464.1	-	-	-	-	-	
	도 로			464.1	464.1	-	-	-	-	-	
	소 계2			249.7	249.7	-	-	-	-	-	
	광장	가-1		60.8	60.8	-	-	-	-	-	폐 지 (현황반영)
		가-2		19.0	19.0	-	-	-	-	-	폐 지 (현황반영)
		가-3		14.4	14.4	-	-	-	-	-	폐 지 (현황반영)
		가-4		58.2	58.2	-	-	-	-	-	폐 지 (현황반영)
		가-5		97.3	97.3	-	-	-	-	-	폐 지 (현황반영)
녹지및기타	소 계			7,137	-	-	-	-	-	-	
	녹 지			7137	-	-	-	-	-	-	

2-3.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홍제2지구)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227.50	464.10				
당 초	산책로	계			227.50	464.10				
폐 지			62	2.5	30.0	75.0	산책로	지구계	광장 가-1	
폐 지			63	2.5	10.0	25.0	산책로	광장 가-1	지구계	
폐 지			64	3.0	59.5	178.5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4	
폐 지			65	2.0	12.9	25.8	산책로	지구계	광장 가-2	
폐 지			66	1.2	42.6	51.1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3	
폐 지			67	1.5	24.1	36.1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4	
폐 지			68	1.5	48.4	72.6	산책로	광장 가-5	광장 가-4	

3-1.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연희1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7,827	18,545	3	2,253.41	7,410.22	111	
기반시설	소계	9,130	4,486	-	-	-	-	
	도로	8,483	3,839 (4,644)	-	-	-	-	
	광장	647	647	-	-	-	-	
조경시설		1,938	1,938	-	-	-	2	
휴양시설		1,037	1,037	-	-	-	13	
운동시설		298	298	-	-	-	4	
교양시설		11,860	10,123	1	1,952.34	6,959.55	-	
편익시설		362	362	-	-	-	86	
관리시설		437	301	2	301.07	450.67	6	
녹지 및 기타		89,282	-	-	-	-	-	

3-2.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연희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07,827	18,545	-	3동	2,253,41	7,400.62	111	
기반시설	소 계			9,130	4,486	-	-	-	-	-	
	도 로			8,483	3,839 (4,644)	-	-	-	-	-	
	광 장	가		647	647	-	-	-	-	-	변 경 (6지구 편입)
조경시설	소 계			1,938	1,938	-	-	-	-	2	변 경 (6지구 편입)
	허브원	나	연희동 산2-137	1,169	1,169	-	-	-	-	-	
	홍제천 수변마당	다	연희동 산2-76	343	343	-	-	-	-	-	
	인공 폭포	라	연희동 산2-144	373	373	-	-	-	-	-	
	소연못	마	연희동 산2-70	53	53	-	-	-	-	-	
	가제보			-	-	-	-	-	-	1	
	현판			-	-	-	-	-	-	1	
휴양시설	소 계			1,037	1,037	-	-	-	-	13	변 경 (6지구 편입)
	숲속 쉼터	바	연희동 산2-128	885	885	-	-	-	-	-	
	쉼터	사	연희동 산2-5	79	79	-	-	-	-	-	
	정자 휴게소	아	연희동 산2-144	73	73	-	-	-	-	-	
	야외 테이블			-	-	-	-	-	-	5	
	등의자			-	-	-	-	-	-	8	
운동시설	소 계			298	298	-	-	-	-	4	변 경 (6지구 편입)
	체력 단련장	자	연희동 산2-31	25	25	-	-	-	-	4	
	배드민턴장	차	연희동 산2-136	273	273	-	-	-	-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소 계			11,860	10,123	-	-	1,952.34	6,959.55	-	
	안산 방죽	카	연희동 산2-107	1,058	1,058	-	-	-	-	-	변 경 (6지구 편입)
	자연사 전시관	1	연희동 산5-85	7,750	6,013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1,952.34	6,959.55	-	변 경 (7지구 편입)
	잔디 마당	타	연희동 산2-128	851	851	-	-	-	-	-	변 경 (6지구 편입)
	자연 학습장	파	연희동 산4-19	2,201	2,201	-	-	-	-	-	변 경 (7지구 편입)
편익시설	소 계			362	362	-	-	-	-	-	변 경 (6지구 편입)
	주차장	하	연희동 산2-122	228	228	-	-	-	-	-	
	전망 데크	거	연희동 산2-122	134	134	-	-	-	-	-	
관리시설	소 계			437	301	-	-	301.07	450.67	-	변 경 (6지구 편입)
	관리 사무소	2	연희동 산2-122	312	176	-	지상 1층 지하 1층	176	325.6	-	
	수변 공원 관리소	3	연희동 산2-77	125.07	125.07	-	지상 1층	125.07	125.07	-	
녹지및기타	소 계			89,282	-	-	-	-	-	-	
	녹 지			89,282	-	-	-	-	-	-	

3-3.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연희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327	3,839 (1,540)				
당 초	소 로	계			405	1,985 (1,540)				
폐 지		1	2	8~13	(40)	(403)	국지도로	도시계획 도로	소로 3-2	(도시계획도로)
폐 지		3	2	6~8	(178)	(1,137)	관리도로	소로 1-2	공원경계	(도시계획도로)
폐 지		3	10	4~6	405	1,985	국지도로	소로 1-2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계			922	1,854				
폐 지			15	3~4	106	388	등산로	소로 3-10	공원경계	
폐 지			16	3.5~2	50	143	등산로	산책로 23	소로 3-10	
폐 지			17	2	81	162	등산로	공원경계	산책로 18	
폐 지			18	2	164	329	등산로	소로 3-10	공원경계	
폐 지			19	2	42	84	등산로	산책로 23	산책로 20	
폐 지			20	2	35	70	등산로	잔디마당	소로 3-10	
폐 지			21	2	11	23	등산로	소로 3-10	잔디마당	

4-1.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연희2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3,074.2	3,076.2	-	-	-	-	
기반시설	소계	2,124.5	2,124.5	-	-	-	-	
	도로	1,954.9	1,954.9	-	-	-	-	
	광장	169.6	169.6	-	-	-	-	
유희시설		292.0	292.0	-	-	-	-	
운동시설		659.7	659.7	-	-	-	-	
녹지 및 기타		9,998.0	-	-	-	-	-	

4-2.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연희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3,074.0	3,076.2	-	-	-	-	-	
기반시설	소 계			2,124.5	2,124.5	-	-	-	-	-	
	소계1			1,954.9	1,954.9	-	-	-	-	-	
	도 로			1,954.9	1,954.9	-	-	-	-	-	
	소계2			169.6	169.6						변 경 (8지구 편입)
	광 장	가-1		51.1	51.1	-	-	-	-	-	
		가-2		68.0	68.0	-	-	-	-	-	
		가-3		50.5	50.5	-	-	-	-	-	
유희시설	소계			292.0	292.0	-	-	-	-	-	변 경 (8지구 편입)
	놀이터	나		292.0	292.0	-	-	-	-	-	
운동시설	소 계			659.7	659.7	-	-	-	-	-	변 경 (8지구 편입)
	맨발 지압로	다		48.0	48.0						
	배드민턴장	라		611.7	611.7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9,998.0	-	-	-	-	-	-	
	녹 지			9,998.0	-	-	-	-	-	-	

4-3.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연희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616	1,954.9				
당 초	소 로	계			230	1,380.0				
폐 지		3	9	6	230	1,380.0	순환도로	공원계	지구계	
당 초	산책로	계			386	574.9				
폐 지			71	1.5	74.9	112.3	산책로	광장 가-1	지구계	
폐 지			72	0.6	27.3	16.3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71	
폐 지			73	2.5	20.2	50.5	산책로	산책로 71	소로 3-9	
폐 지			74	1.5	37.2	55.8	산책로	소로 3-9	산책로 80	
폐 지			75	1.5	21.6	32.4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3	
폐 지			76	1.5	53.7	80.5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3	
폐 지			77	1.5	6.5	9.7	산책로	산책로76	다 (운동시설)	맨발지압로
폐 지			78	1.5	11.0	16.5	산책로	소로 3-9	광장 가-3	
폐 지			79	1.5	56.9	85.3	산책로	산책로 80	지구계	
폐 지			80	1.5	77.1	115.6	산책로	소로 3-9	지구계	

5-1.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봉원사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88,419	18,600	-	150.76	150.76	43	폐 지 (구역편입)
기반시설	소계	8,182	8,182	-	-	-	-	
	도로	8,182	8,182	-	-	-	-	
조경시설		150	150	-	19	19	6	
휴양시설		798	798	-	-	-	-	
운동시설		7,830	7,830	-	-	-	37	
교양시설		1,070	1,070	-	-	-	-	
편익시설		570	570	-	131.76	131.76		
녹지 및 기타		69,819	-	-	-	-	-	

5-2.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봉원사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88,419	18,600	-	-	150.76	150.76	43	폐 지 (구역편입)
기반시설	소 계			8,182	8,182	-	-	-	-	-	
	도 로			8,182	8,182	-	-	-	-	-	
조경시설	소 계			150	150	-	-	19	19	6	
	정자	1	봉원동 산 2-1	150	150	목조	1동	19	19	-	
	파고라	①	시설지 내	-	-	-	-	-	-	6	
휴양시설	소 계			798	798	-	-	-	-	-	
	휴게소	가	봉원동 산 2-1	798	798	-	-	-	-	(1)	
운동시설	소 계			7,830	7,830	-	-	-	-	37	
	테니스장	나	봉원동 산 2-1	612	612	-	-	-	-	-	
	베드민턴장	다		2,712	2,712	-	-	-	-	-	
		다-1	봉원동 산 2-1	(670)	(670)	-	-	-	-	(1)	
		다-2	봉원동 산 2-1	(300)	(300)	-	-	-	-	-	
		다-3	봉원동 산 2-1	(600)	(600)	-	-	-	-	-	
		다-4	연희동 산 2-15	(770)	(770)	-	-	-	-	-	
		다-5	봉원동 산 2-1	(372)	(372)	-	-	-	-	-	
	체력단련장	라		4,506	4,506	-	-	-	-	-	
		라-1	연희동 산 2-15	(126)	(126)	-	-	-	-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라-2	봉원동 산 1-2	(890)	(890)	-	-	-	-	-	
		라-3	봉천동 산 2-1	(1,560)	(1,560)	-	-	-	-	(1)	
		라-4	봉원동 산 2-1	(1,030)	(1,030)	-	-	-	-	(1)	
		라-5	봉원동 산 2-1	(900)	(900)	-	-	-	-	(1)	
	체력 단련 시설	②	-	-	-	-	-	-	-	37	
		②-1	봉원동 4	-	-	-	-	-	-	(6)	
		②-2	봉원동 산 2-1	-	-	-	-	-	-	(19)	
		②-3	봉원동 산 1-2	-	-	-	-	-	-	(10)	
		②-4	연희동 산 2-15	-	-	-	-	-	-	(2)	
교양시설	소 계			1,070	1,070	-	-	-	-	-	
	자연 학습장	마	봉원동 산 2-1	450	450	-	-	-	-	-	
	생태원	바	봉원동 산 2-1	620	620	-	-	-	-	-	
편익시설	소 계			570	570	-	-	131.76	131.76	-	
	변소	2	봉원동 산 2-1	70	70	철근 콘크리트	1동	61.38	61.38	-	
	전망대	사	연희동 산 2-15	500	500	목조	1동	70.38	70.38	-	
녹지및기타	소 계			69,819	-	-	-	-	-	-	
	녹 지			69,819	-	-	-	-	-	-	

5-3.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봉원사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2,737	8,182				폐 지 (구역편입)
당 초	소 로	계			462	2,772				
폐 지		3	1	6	462	2.772	관리도로	소로 1-2	산책로 1	
당 초	산책로	계			2,275	5,410				
			1	4	430	1,720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4	MBT코스
폐 지			6	2	396	792	등산로	남측주택지	산책로 1	
폐 지			7	2	255	510	등산로	산책로 1	산책로 6	
폐 지			8	2	253	506	등산로	남측주택지	산책로 11	
폐 지			9	2	325	650	등산로	소로 3-1	소로 3-1	
폐 지			10	2	104	208	등산로	산책로 6	산책로 7	
폐 지			11	2	121	242	등산로	산책로 7	산책로 9	
폐 지			12	2	111	222	등산로	산책로 11	산책로 9	
폐 지			13	2	121	242	등산로	산책로 9	소로 3-1	
폐 지			14	2	159	318	등산로	소로 3-1	소로 3-1	

6-1.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신촌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1,362	3,705	-	-	-	11	폐 지 (구역편입)
기반시설	소계	1,295	1,295	-	-	-	-	
	도로	1,295	1,295	-	-	-	-	
조경시설		-	-	-	-	-	3	
휴양시설		150	150	-	-	-	-	
운동시설		2,260	2,260	-	-	-	8	
녹지 및 기타		27,657	-	-	-	-	-	

6-2.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신촌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1,362		-	-	-	-	11	폐 지 (구역편입)
기반시설	소 계			1,295	1,295	-	-	-	-	-	
	도 로			1,295	1,295	-	-	-	-	-	
조경시설	소 계			-	-	-	-	-	-	3	
	파고라	①	시설지 내	-	-	-	-	-	-	3	
휴양시설	소 계			150	150	-	-	-	-	-	
	휴게소	가	연희동 산 2-16	150	150	-	-	-	-	(1)	
운동시설	소 계			2,260	2,260	-	-	-	-	8	
	배드민턴장	나		1,970	1,970	-	-	-	-	-	
		나-1	연희동 산 2-16	(950)	(950)	-	-	-	-	(1)	
		나-2	연희동 산 2-17	(600)	(600)	-	-	-	-	(1)	
		나-3	연희동 산 2-17	(420)	(420)	-	-	-	-	-	
	체력 단련장	다		290	290	-	-	-	-	-	
		다-1	연희동 산 2-17	(145)	(145)	-	-	-	-	-	
		다-2	연희동 산 2-17	(145)	(145)	-	-	-	-	-	
	체력 단련 시설	②		-	-	-	-	-	-	8	
		②-1	연희동 산 2-17	-	-	-	-	-	-	(3)	
		②-2	연희동 산 2-17	-	-	-	-	-	-	(5)	
녹지 및 기타	소 계			27,657	-	-	-	-	-	-	
				27,657	-	-	-	-	-	-	

6-3.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신촌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507	1,295				폐 지 (구역편입)
당 초	산책로	계			509	1,295				
폐 지			34	2	135	270	등산로	소로 3-2	소로 3-1	
폐 지			35	2	97	194	등산로	산책로 34	산책로 36	
폐 지			36	3	277	831	등산로	소로 1-2	산책로 14	

7-1.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홍제1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6,039	9,218	-	19	19	13	폐 지 (구역편입)
기반시설	소계	2,788	2,788	-	-	-	-	
	도로	2,788	2,788	-	-	-	-	
조경시설		240	240	-	19	19	2	
휴양시설		400	400	-	-	-	-	
운동시설		3,390	3,390	-	-	-	11	
교양시설		2,400	2,400	-	-	-	-	
녹지 및 기타		46,821	-	-	-	-	-	

7-2.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홍제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56,039	9,218	-	-	19	19	13	폐 지 (구역편입)
기반시설	소 계			2,788	2,788	-	-	-	-	-	
	도 로			2,788	2,788	-	-	-	-	-	
조경시설	소 계			240	240	-	-	19	19	2	
	정자	1	홍제동 산 33-44	240	240	목조	1동	19	19	-	
	파고라	①	시설지 내	-	-	-	-	-	-	2	
휴양시설	소 계			400	400	-	-	-	-	-	
	약수터	가	홍제동 산 33-44	400	400	-	-	-	-	-	
운동시설	소 계			3,390	3,390	-	-	-	-	11	
	배드민턴장	나		1,583	1,583	-	-	-	-	-	
		나-1		(230)	(230)	-	-	-	-	-	
		나-2		(1,363)	(1,363)	-	-	-	-	-	
	체력단련장	다		1,807	1,807	-	-	-	-	-	
		다-1		(1,277)	(1,277)	-	-	-	-	-	
		다-2		(310)	(310)	-	-	-	-	-	
		다-3		(220)	(220)	-	-	-	-	-	
	체력단련시설	②		-	-	-	-	-	-	11	
		②-1		-	-	-	-	-	-	(6)	
		②-2		-	-	-	-	-	-	(3)	
		②-3		-	-	-	-	-	-	(2)	
교양시설	소 계			2,400	2,400	-	-	-	-	-	
	괴목전시장	라	홍제동 산 79-70	1,200	1,200	-	-	-	-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습지원	마	홍제동 산33-131	1,200	1,200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46,821	-	-	-	-	-	-	
				46,821	-	-	-	-	-	-	

7-3.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홍제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169	2,788				폐 지 (구역편입)
당 초	산책로	계			1,169	2,788				
폐 지			2	4	207	828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43	MTB코스
폐 지			26	2	204	408	등산로	산책로 41	산책로 2	
폐 지			27	2	158	316	등산로	소로 1-2	산책로 26	
폐 지			28	2	92	184	등산로	소로 1-2	산책로 29	
폐 지			29	2	203	406	등산로	산책로 30	산책로 2	
폐 지			30	2	269	538	등산로	소로 1-2	산책로 39	
폐 지			33	2	36	108	등산로	산책로 39	산책로 42	

8-1.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천연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3,595	4,230	-	19	19	10	폐 지 (구역편입)
기반시설	소계	930	930	-	-	-	-	
	도로	930	930	-	-	-	-	
조경시설		200	200	-	19	19	-	
휴양시설		2,600	2,600	-	-	-	-	
운동시설		500	500	-	-	-	10	
녹지 및 기타		9,365	9,365	-	-	-	-	

8-2.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천연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3,595	4,230	-	-	19	19	10	폐 지 (구역편입)
기반시설	소 계			930	930	-	-	-	-	-	
	도 로			930	930	-	-	-	-	-	
조경시설	소 계			200	200	-	-	19	19	-	
	정자	1	천연동 산4-4일대	200	200	목조	1동	19	19	-	
휴양시설	소 계			2,600	2,600	-	-	-	-	-	
	야유회장	가	천연동 산4-4일대	2,600	2,600	-	-	-	-	-	
운동시설	소 계			500	500	-	-	-	-	10	
	체력 단련장	나		500	500	-	-	-	-	-	
		나-1	천연동 산 4	(60)	(60)	-	-	-	-	-	
		나-2	천연동 산 4	(60)	(60)	-	-	-	-	-	
		나-3	천연동 산 4-4	(60)	(60)	-	-	-	-	-	
		나-4	천연동 산 4-4	(60)	(60)	-	-	-	-	-	
		나-5	천연동 산 1-39	(260)	(260)	-	-	-	-	-	
	체력 단련 시설	①		-	-	-	-	-	-	10	
		①-1	천연동 산 4	-	-	-	-	-	-	(2)	
		①-2	천연동 산 4	-	-	-	-	-	-	(2)	
		①-3	천연동 산 4-4	-	-	-	-	-	-	(2)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①-4	천연동 산 4-4	-	-	-	-	-	-	(2)	
		①-5	천연동 산 1-39	-	-	-	-	-	-	(2)	
녹지및기타	소 계			9,365	-	-	-	-	-	-	
	녹 지			9,365	-	-	-	-	-	-	

8-3. <폐지> 안산도시자연공원(천연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358	930				폐 지 (구역편입)
당 초	산책로	계			358	930				
폐 지			53	2	144	288	등산로	소로 1-2	야유회장	
			54	3	214	642	등산로	산책로 55	산책로 50	

라. 지구별 세부조서<변경>

1-1.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1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920.00	367.67	-	-	-	-	신 설 (현황반영)
기반시설	소계	367.67	367.67	-	-	-	-	
	도로	367.67	367.67	-	-	-	-	
녹지 및 기타		5,552.33	-	-	-	-	-	

1-2.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5,920.00	367.67	-	-	-	-	-	신 설 (현황반영)
기반시설	소 계			367.67	367.67	-	-	-	-	-	
	도 로			367.67	367.67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5,552.33	-	-	-	-	-	-	
	녹 지			5,552.33	-	-	-	-	-	-	

1-3.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	-				
변 경	산책로	계			175.31	367.67				
신 설			1	4.0	41.88	167.52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0→167.52㎡)
신 설			2	1.5	74.59	111.89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3	신 설 (0→111.89㎡)
신 설			3	1.5	58.84	88.26	산책로	산책로2	공원경계	신 설 (0→88.26㎡)

2-1.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2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1,872.00	4,943.26	1	32.30	32.30	14	신 설 (현황반영)
기반시설	소계	2,012.78	2,012.78	-	-	-	-	
	도로	1,716.71	1,716.71	-	-	-	-	
	광장	296.07	296.07	-	-	-	-	
휴양시설		165.30	165.30	-	-	-	11	
유희시설		2,732.88	2,732.88	-	-	-	3	
편익시설		32.30	32.30	1	32.30	32.30	-	
녹지 및 기타		6,928.74	-	-	-	-	-	

2-2.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1,872.00	4,943.26	-	1	32.30	32.30	14	
기반시설	소 계			2,012.78	2,012.78	-	-	-	-	-	
	도 로			1,716.71	1,716.71	-	-	-	-	-	
	광 장	가	흥제동 산41-30	296.07	296.07	-	-	-	-	-	신 설 (현황반영)
휴양시설	소 계			165.30	165.30	-	-	-	-	11	
	휴게소	나	흥제동 산41-30	165.30	165.30	-	-	-	-	-	신 설 (현황반영)
	평의자	①	제2호 놀이터	-	-	-	-	-	-	9	신 설 (현황반영)
	등의자	②	제2호 놀이터	-	-	-	-	-	-	2	신 설 (현황반영)
유희시설	소 계			2,732.88	2,732.88	-	-	-	-	3	
	제1호 놀이터	다		438.83	438.83	-	-	-	-	-	신 설 (현황반영)
		다-1	흥제동 산41-29	268.13	268.13	-	-	-	-	-	
		다-2	흥제동 산41-29	108.16	108.16	-	-	-	-	-	
		다-3	흥제동 산41-29	62.54	62.54	-	-	-	-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제2호 놀이터	라	흥제동 산41-40	2,294.05	2,294.05	-	-	-	-	-	신 설 (현황반영)
	미끄 럼틀	③	제2호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짚라인	④	제2호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거미줄 정글짐	⑤	제2호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편 익 시 설	소 계			32.30	32.30	-	1	32.30	32.30	-	신 설 (현황반영)
	화장실	1	흥제동 산41-29	32.30	32.30	-	1	32.30	32.30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6,928.74	-	-	-	-	-	-	
	녹 지			6,928.74	-	-	-	-	-	-	

2-3.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합 계				375.78	1,716.71				
변 경	소 로	계			375.78	1,716.71				
신 설		1	1	2.0~20.0	55.10	821.92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	신 설 (현황반영) (0㎡→821.92㎡)
신 설		3	1	3.0	24.57	73.59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대	신 설 (현황반영) (0㎡→73.59㎡)
신 설		3	2	6.0	23.91	143.59	연결로	제 2호 놀이터 라	광장 가	신 설 (현황반영) (0㎡→143.59㎡)
신 설		3	3	3.0	78.68	298.01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	신 설 (현황반영) (0㎡→298.01㎡)
변 경	산책로	계			248.62	379.60				
신 설			1	1.5~6.5	14.79	27.01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2	신 설 (현황반영) (0㎡→27.01㎡)
신 설			2	1.5	182.82	263.00	연결로	제 2호 놀이터 라	제 2호 놀이터 라	신 설 (현황반영) (0㎡→263.00㎡)
신 설			3	1.5~5.5	11.56	19.72	연결로	소로 1-1	산책로 2	신 설 (현황반영) (0㎡→19.72㎡)
신 설			4	1.5~5.0	21.50	37.19	연결로	산책로 2	산책로 2	신 설 (현황반영) (0㎡→37.19㎡)
신 설			5	1.5~4.5	7.60	12.66	연결로	소로 1-1	산책로 2	신 설 (현황반영) (0㎡→12.66㎡)
신 설			6	1.5~7.5	10.35	20.02	연결로	광장 가	산책로 2	신 설 (현황반영) (0㎡→20.02㎡)

3-1.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3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1,029.40	2,624.82	1	23.40	23.40	24	
기반시설	소계	665.56	665.56	-	-	-	-	
	도로	665.56	665.56	-	-	-	-	신 설 (현황반영)
휴양시설		52.82	52.82	-	-	-	10	고은지구
유희시설		1,521.62	1,521.62	-	-	-	9	고은지구
운동시설		338.82	338.82	-	-	-	5	고은지구
편익시설		46.00	46.00	1	23.40	23.40	-	신 설 (현황반영)
녹지 및 기타		8,404.58	-	-	-	-	-	

3-2.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3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1,029.40	2,624.82	-	1	23.40	23.40	24	
기반시설	소 계			665.56	665.56	-	-	-	-	-	
	도 로			665.56	665.56	-	-	-	-	-	
휴양시설	소 계			52.82	52.82	-	-	-	-	10	
	휴게 쉼터	가	홍제동 449-1	52.82	52.82	-	-	-	-	-	신 설 (현황반영)
	사각 정자	①	휴게 쉼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평의자	②	전지역	-	-	-	-	-	-	8	신 설 (현황반영)
	등의자	③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유희시설	소 계			1,521.62	1,521.62	-	-	-	-	9	
	어린이 놀이터	나		1,521.62	1,521.62	-	-	-	-	-	
		나-1	홍제동 449-1	376.46	376.46	-	-	-	-	-	신 설 (현황반영)
		나-2	홍제동 312-185	1,145.16	1,145.16	-	-	-	-	-	고은지구 변경 (1,760.00㎡→1,145.16㎡, 감 614.84㎡)
	조합 놀이대A	④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조합 놀이대B	⑤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그네	⑥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시소	⑦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흔들 놀이대A	⑧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흔들 놀이대B	⑨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매달 리기	⑩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설치 검사 안내판	⑪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기어 오르기	⑫	어린이 놀이터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운동시설	소 계			338.82	338.82	-	-	-	-	5	
	다목적 운동장	다		338.82	338.82	-	-	-	-	-	신 설 (현황반영)
		다-1	홍제동 312-196	173.00	173.00	-	-	-	-	-	
		다-2	홍제동 449-1	165.82	165.82	-	-	-	-	-	
	체력단련 시설	⑬	다목적 운동장	-	-	-	-	-	-	5	신 설 (현황반영)
편익시설	소 계			46.00	46.00	-	1	23.40	23.40	-	신 설 (현황반영)
	화장실	1	홍제동 312-185	46.00	46.00	-	1	23.40	23.40	-	
녹지및기타	소 계			8,404.58	-	-	-	-	-	-	
	녹 지			8,404.58	-	-	-	-	-	-	

3-3.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합 계				277.41	665.56				
변 경	소 로	계			86.90	292.50				
신 설		3	1	1.0~5.5	86.90	292.50	진입로	공원경계	어린이 놀이터 나	신 설 (0㎡ → 292.50㎡)
변 경		계			190.51	373.06				
신 설	산책로		61	3	32.00	96.00	등산로	어린이 놀이터	소로 3-5	신 설 (0㎡ → 96.00㎡)
신 설			1	2.0	100.08	199.99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신설 (0㎡ → 199.99㎡)
신 설			2	2.0	81.75	163.84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다-2	공원경계	신설 (0㎡ → 163.84㎡)
신 설			3	1.0	8.15	8.18	산책로	산책로 2	다목적운동장 다-1	신설 (0㎡ → 8.18㎡)
신 설			4	2.0	0.53	1.05	산책로	산책로 2	다목적운동장 다-1	신설 (0㎡ → 1.05㎡)

4-1.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1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2,010.70	1,090.86	-	-	-	4	신 설 (현황반영)
기반시설	소계	673.86	673.86	-	-	-	-	
	도로	673.86	673.86	-	-	-	-	
유희시설		417.00	417.00	-	-	-	4	
녹지 및 기타		10,919.84	-	-	-	-	-	

4-2.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2,010.70	1,090.86	-	-	-	-	4	
기반시설	소 계			673.86	673.86	-	-	-	-	-	
	도 로			673.86	673.86	-	-	-	-	-	신 설 (현황반영)
유희시설	소 계			417.00	417.00	-	-	-	-	4	
	어린이 놀이터	가	홍제동 78	417.00	417.00	-	-	-	-	4	신 설 (현황반영)
녹지및기타	소 계			10,919.84	-	-	-	-	-	-	
	녹 지			10,604.12	-	-	-	-	-	-	
	배수지			315.72	-	-	-	-	-	-	신 설 (현황반영)

4-3.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합 계				296.09	673.86				
변 경	산책로	계			296.09	673.86				
신 설			1	2.0~4.5	50.69	171.99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현황반영) (0㎡→171.99㎡)
신 설			2	2.4	171.1	427.60	산책로	산책로 1	공원경계	신 설 (현황반영) (0㎡→427.60㎡)
신 설			3	1.0	74.3	74.27	산책로	산책로 2	공원경계	신 설 (현황반영) (0㎡→74.27㎡)

5-1.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2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9,529.70	756.86	-	-	-	2	신 설 (현황반영)
기반시설	소계	673.82	673.82	-	-	-	-	
	도로	496.25	496.25	-	-	-	-	
	광장	177.57	177.57	-	-	-	-	
휴양시설		66.00	66.00	-	-	-	2	
운동시설		17.04	17.04	-	-	-	-	
녹지 및 기타		8,772.84	-	-	-	-	-	

5-2.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9,529.70	756.86	-	-	-	-	2	
기반시설	소 계			673.82	673.82	-	-	-	-	-	
	도 로			496.25	496.25	-	-	-	-	-	
	광 장	가		177.57	177.57	-	-	-	-	-	신 설 (현황반영)
		가-1	홍제동 322-11	61.62	61.62	-	-	-	-	-	
		가-2	홍제동 322-11	57.24	57.24	-	-	-	-	-	
		가-3	홍제동 322-11	58.71	58.71	-	-	-	-	-	
휴양시설	소 계			66.00	66.00	-	-	-	-	2	
	쉼터	나		66.00	66.00	-	-	-	-	-	신 설 (현황반영)
		나-1	홍제동 산33-110	50.00	50.00	-	-	-	-	-	
		나-2	홍제동 322-11	16.00	16.00	-	-	-	-	-	
	팔각정자	①	홍제동 산33-110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파고라	②	홍제동 322-11	-	-	-	-	-	-	1	신 설 (현황반영)
녹지및기타	소 계			8,772.84	-	-	-	-	-	-	
	녹 지			8,772.84	-	-	-	-	-	-	

5-3.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합 계				234.85	496.25				
변 경	산책로	계			234.85	496.25				
신 설			1	2.5	31.51	79.04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신 설 (0㎡ → 79.04㎡)
신 설			2	2.5	11.50	28.87	산책로	광장 가-1	공원경계	신 설 (0㎡ → 28.87㎡)
신 설			3	3.0	59.68	185.74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신 설 (0㎡ → 185.74㎡)
신 설			4	1.5	22.40	33.74	산책로	산책로 5	공원경계	신 설 (0㎡ → 33.74㎡)
신 설			5	1.5	42.47	63.71	산책로	산책로 6	쉼터 나-1	신 설 (0㎡ → 63.71㎡)
신 설			6	1.5	18.55	32.00	산책로	광장 가-2	쉼터 나-2	신 설 (0㎡ → 32.00㎡)
신 설			7	1.5	48.74	73.15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2	신 설 (0㎡ → 73.15㎡)

6-1.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1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95,115.30	10,917.14	2	301.07	450.67	19	
기반시설	소계	5,909.36	4,936.07	-	-	-	-	
	도로	5,262.36	4,289.07	-	-	-	-	신 설 (현황반영)
	광장	647.00	647.00	-	-	-	-	연희1지구
조경시설		1,938.00	1,938.00	-	-	-	2	연희1지구
휴양시설		1,037.00	1,037.00	-	-	-	13	연희1지구
운동시설		298.00	298.00	-	-	-	4	연희1지구
교양시설		1,909.00	1,909.00	-	-	-	-	연희1지구
편익시설		362.00	362.00	-	-	-	-	연희1지구
관리시설		437.07	437.07	2	301.07	450.67	-	연희1지구
녹지 및 기타		83,224.87	-	-	-	-	-	

6-2.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1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95,115.30	10,917.14	-	2	301.07	450.67	19	
기반시설	소 계			5,909.36	4,936.07	-	-	-	-	-	
	도 로			5,262.36	4,289.07	-	-	-	-	-	
	광 장	가	연희동 산2-75	647.00	647.00	-	-	-	-	-	연희1지구
조경시설	소 계			1,938.00	1,938.00	-	-	-	-	2	연희1지구
	허브원	나	연희동 산2-137	1,169.00	1,169.00	-	-	-	-	-	
	홍제천 수변마당	다	연희동 산2-76	343.00	343.00	-	-	-	-	-	
	인공 폭포	라	연희동 산2-75	373.00	373.00	-	-	-	-	-	
	소연못	마	연희동 산2-75	53.00	53.00	-	-	-	-	-	
	가제보			-	-	-	-	-	-	1	
	현판			-	-	-	-	-	-	1	
휴양시설	소 계			1,037.00	1,037.00	-	-	-	-	13	연희1지구
	숲속 쉼터	바	연희동 산2-128	885.00	885.00	-	-	-	-	-	
	쉼터	사	연희동 산2-5	79.00	79.00	-	-	-	-	-	
	정자 휴게소	아	연희동 산2-144	73.00	73.00	-	-	-	-	-	
	야외 테이블			-	-	-	-	-	-	5	
	등의자			-	-	-	-	-	-	8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소 계			298.00	298.00	-	-	-	-	4	연희1지구
	체력 단련장	자	연희동 산2-31	25.00	25.00	-	-	-	-	4	
	배드민턴장	차	연희동 산2-136	273.00	273.00	-	-	-	-	-	
교양시설	소 계			1,909.00	1,909.00	-	-	-	-	-	연희1지구
	안산방축	카	연희동 산2-107	1,058.00	1,058.00	-	-	-	-	-	
	잔디마당	타	연희동 산2-128	851.00	851.00	-	-	-	-	-	
편익시설	소 계			362.00	362.00	-	-	-	-	-	연희1지구
	주차장	파	연희동 산2-122	228.00	228.00	-	-	-	-	-	
	전망 데크	하	연희동 산2-122	134.00	134.00	-	-	-	-	-	
관리시설	소 계			437.07	437.07	-	2	301.07	450.67	-	
	관리 사무소	1	연희동 산2-122	312.00	312.00	-	1	176.00	325.60	-	연희1지구 시설면적변경 (176.00㎡→312.00㎡, 증 136.00㎡)
	수변 공원 관리소	2	연희동 산2-77	125.07	125.07	-	1	125.07	125.07	-	연희1지구
녹지및기타	소 계			83,224.87	-	-	-	-	-	-	
	녹 지			83,224.87	-	-	-	-	-	-	

6-3.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합 계				1,395.5 (157.46)	4,289.07 (973.29)				
변 경	소 로	계			423.3 (157.5)	2,268.15 (973.29)				
신 설		3	1	3.0~6.0	31.4	313.02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신 설 (0㎡ → 313.02㎡)
신 설		3	2	3.5~12.0	392.0	1,955.13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신 설 (0㎡ → 1,995.13㎡)
신 설		3	3	6.0	(157.5)	(973.29)	도시계획도로			신설 (0㎡ → 973.29㎡)
변경	산책로	계			972.2	2,020.92				
신 설			1	2.0	42.1	85.58	등산로	소로 3-2	잔디마당	신설 (0㎡ → 85.58㎡)
신 설			2	2.0	106.4	214.10	등산로	산책로 1	소연못	신설 (0㎡ → 214.10㎡)
신 설			3	2.0	42.1	90.06	등산로	숲속쉼터	산책로 5	신설 (0㎡ → 90.06㎡)
신 설			4	2.0	4.3	8.93	등산로	산책로 5	소연못	신설 (0㎡ → 8.93㎡)
신 설			5	2.0	150.2	299.72	등산로	홍제천수변마당	소로 3-2	신설 (0㎡ → 299.72㎡)
신 설			6	2.0	88.8	187.67	등산로	산책로 5	산책로 5	신설 (0㎡ → 187.67㎡)
신 설			7	1.5~2.3	30.2	49.00	등산로	산책로 5	소로 3-2	신설 (0㎡ → 49.00㎡)
신 설			8	1.5	120.4	180.64	등산로	소로 3-2	산책로 10	신설 (0㎡ → 180.64㎡)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9	1.5	66.5	99.82	등산로	산책로 12	쉼터	신설 (0㎡→99.82㎡)
신 설			10	1.5	25.5	38.23	등산로	쉼터	산책로 11	신설 (0㎡ → 38.23㎡)
신 설			11	2.0	154.2	315.42	등산로	소로 3-2	공원경계	신설 (0㎡ → 315.42㎡)
신 설			12	3.2	107.4	382.77	등산로	소로 3-2	산책로 11	신설 (0㎡ → 382.77㎡)
신 설			13	2.0	34.1	68.98	등산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신설 (0㎡ → 68.98㎡)

7-1.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2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0,184.40	9,951.00	1	1,998.84	6,949.23	-	
기반시설	소계	4,010.75	(4,010.75)	-	-	-	-	
	도로	4,010.75	(4,010.75)	-	-	-	-	신 설 (현황반영)
교양시설		9,951.00	9,951.00	1	1,998.84	6,949.23	-	연희1지구
녹지 및 기타		6,222.65	-	-	-	-	-	

7-2.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2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0,184.40	9,951.00	-	1	1,998.84	6,949.23	-	
기반시설	소 계			4,010.75	(4,010.75)	-	-	-	-	-	
	도 로			4,010.75	(4,010.75)	-	-	-	-	-	신 설 (현황반영)
교양시설	소 계			9,951.00	9,951.00	-	-	1,998.84	6,949.23	-	
	자연사 전시관	가	연희동 141-52	7,750.00	7,750.00	콘크리트	1	1,998.84	6,949.23	-	연희1지구 시설면적변경 (6,013.00㎡→7,750.00㎡, 증 1,737.00㎡)
	자연 학습장	나	연희동 산4-19	2,201.00	2,201.00	-	-	-	-	-	연희1지구
녹지및기타	소 계			6,222.65	-	-	-	-	-	-	
	녹지			6,222.65	-	-	-	-	-	-	

7-3.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합 계				(367.54)	(4,010.75)				
변 경	중 로	계			(107.73)	(1,322.60)				
신 설		3	1	12.0~ 12.5	(107.73)	(1,322.60)	도시계획도로			신 설 (0㎡ → 1,322.60㎡)
변경	소 로	계								
신 설		1	1	11.5	(169.45)	(1,855.83)	도시계획도로			신 설 (0㎡ → 1,855.83㎡)
신 설		1	2	9.0~ 11.0	(90.36)	(832.32)	도시계획도로			신 설 (0㎡ → 832.32㎡)

8-1.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3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94,167.30	8,632.54	-	-	-	-	
기반시설	소계	10,463.88	7,680.84	-	-	-	-	
	도로	10,294.28	7,511.24	-	-	-	-	신 설 (현황반영)
	광장	169.60	169.60	-	-	-	-	연희2지구
유희시설		292.00	292.00	-	-	-	-	연희2지구
운동시설		659.70	659.70	-	-	-	-	연희2지구
녹지 및 기타		82,751.72	-	-	-	-	-	

8-2.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3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94,167.30	8,632.54	-	-	-	-	-	
기반시설	소 계			10,463.88	7,680.84	-	-	-	-	-	
	도 로			10,294.28	7,511.24	-	-	-	-	-	신 설 (현황반영)
	광장	가		169.60	169.60	-	-	-	-	-	연희2지구
		가-1		51.10	51.10	-	-	-	-	-	
		가-2		68.00	68.00	-	-	-	-	-	
		가-3		50.50	50.50	-	-	-	-	-	
유희시설	소 계			292.00	292.00	-	-	-	-	-	연희2지구
	놀이터	나	연희동 196-25	292.00	292.00	-	-	-	-	-	
운동시설	소 계			659.70	659.70	-	-	-	-	-	연희2지구
	맨발 지압로	다	연희동 196-8	48.00	48.00	-	-	-	-	-	
	배드민턴장	라	연희동 196-1	611.70	611.70	-	-	-	-	-	
녹지 및 기타	소 계			82,751.72	-	-	-	-	-	-	
	녹지			82,751.72	-	-	-	-	-	-	

8-3. <신설> 안산근린공원(연희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합 계				2,082.60	7,511.24 (2,783.04)				
변 경	대 로	계				(2,783.04)				
신 설		3	1	-		(1,678.56)	도시계획도로			신 설 (0㎡ → 1,678.56㎡)
신 설		3	1	-		(1,104.48)	도시계획도로			신 설 (0㎡ → 1,104.48㎡)
변경	소 로	계			26.72	213.09				
신 설		3	1	9.5	6.53	61.85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신 설 (0㎡ → 61.85㎡)
신 설		3	2	8.0	20.19	151.2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 설 (0㎡ → 151.24㎡)
변경	산책로	계			.2,055.88	7,298.15				
신 설			3	1.5~ 4.0	33.34	469.89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6	신 설 (0㎡ → 469.89㎡)
신 설			4	2.0	28.02	2,270.56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3	신 설 (0㎡ → 2,270.56㎡)
신 설			5	2.0	19.66	39.34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8	신 설 (0㎡ → 39.34㎡)
신 설			6	2.0	193.86	464.41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8	신 설 (0㎡ → 464.41㎡)
신 설			13	1.5	27.33	42.41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2	신 설 (0㎡ → 42.41㎡)
신 설			15	1.5	58.92	89.68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2	신 설 (0㎡ → 89.68㎡)
신 설			16	1.5	10.15	17.60	산책로	산책로 15	체력단련장 마	신 설 (0㎡ → 17.60㎡)
신 설			14	1.5	13.10	19.84	산책로	산책로 18	광장 가-3	신 설 (0㎡ → 19.84㎡)
신 설			11	4.0~ 6.0	15.69	73.83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8	신 설 (0㎡ → 73.8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10	2.0	132.88	278.13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18	신 설 (0㎡ → 278.13㎡)
신 설			1	2.0	204.41	446.11	산책로	소로 3-2	공원경계	신 설 (0㎡ → 446.11㎡)
신 설			2	2.0	60.55	121.11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	신 설 (0㎡ → 121.11㎡)
신 설			7	2.0	139.61	279.63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9	신 설 (0㎡ → 2,779.63㎡)
신 설			8	2.0	13.64	27.33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7	신 설 (0㎡ → 27.33㎡)
신 설			9	2.0	193.79	387.76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18	신 설 (0㎡ → 387.76㎡)
신 설			12	2.0	6.73	13.48	산책로	산책로 10	배드민턴장 라	신 설 (0㎡ → 13.48㎡)
신 설			17	3.0	11.11	33.37	산책로	산책로 18	배드민턴장 라	신 설 (0㎡ → 33.37㎡)
신 설			18	2.0~ 15.0	551.86	1,812.86	산책로	공원경계	도시계획도로	신 설 (0㎡ → 1,812.86㎡)
신 설			19	1.2	49.56	59.52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신 설 (0㎡ → 59.52㎡)
신 설			20	1.2	60.04	72.05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	신 설 (0㎡ → 72.05㎡)
신 설			21	1.2	88.89	106.72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2	신 설 (0㎡ → 106.72㎡)
신 설			22	1.2	109.41	131.33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0㎡ → 131.33㎡)
신 설			23	1.2	33.33	41.19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2	신설 (0㎡ → 41.19㎡)

9-1.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3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873.00	-	-	-	-	-	신 설 (현황반영)
기반시설	소계	25.58	(25.58)	-	-	-	-	
	도로	25.58	(25.58)	-	-	-	-	
녹지 및 기타		847.42	-	-	-	-	-	

9-2.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3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873.00	-	-	-	-	-	-	
기반시설	소 계			25.58	(25.58)	-	-	-	-	-	
	도 로			25.58	(25.58)	-	-	-	-	-	신 설 (현황반영, 도시계획도로)
녹지및기타	소 계			847.42	-	-	-	-	-	-	
	녹지			847.42	-	-	-	-	-	-	

9-3.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합 계				(27.0)	(25.58)				
변 경	중 로	계			(27.0)	(25.58)				
신 설		3	1	6.0~12.0	(27.0)	(25.58)	도시계획도로			신 설 (0㎡→25.58㎡)

10-1.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4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25.00	-	-	-	-	-	
녹지 및 기타	1,025.00	-	-	-	-	-	

10-2.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4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025.0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1,025.00	-	-	-	-	-	-	
	녹지			1,025.00	-	-	-	-	-	-	

10-3. <신설> 안산근린공원(고은4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해당사항 없음										

11-1.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4지구)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66.00	-	-	-	-	-	
녹지 및 기타	466.00	-	-	-	-	-	

11-2.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4지구)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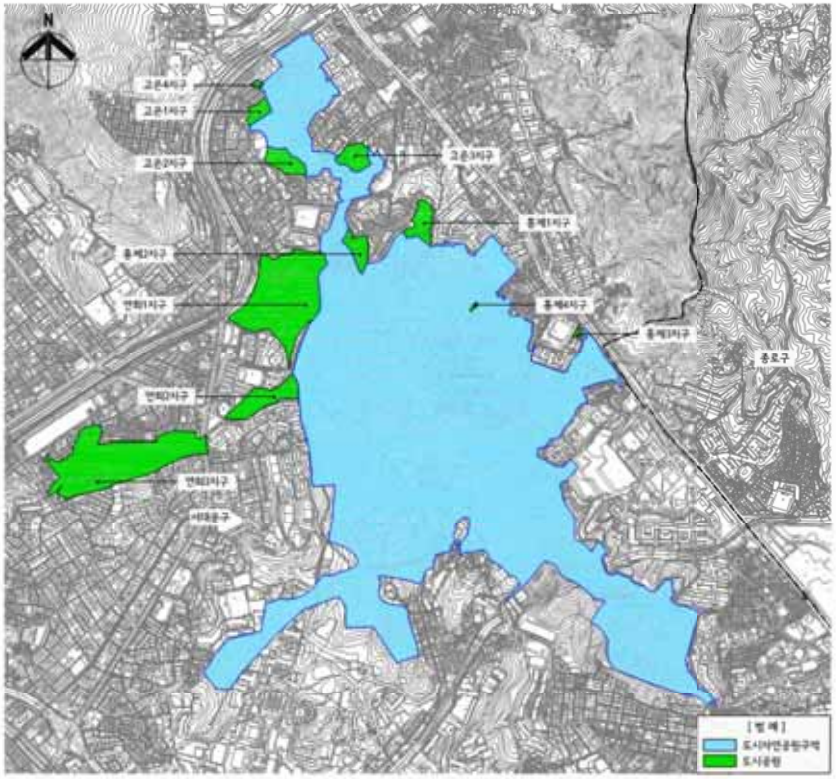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466.00	-	-	-	-	-	-	
녹지및기타	소 계				466.00	-	-	-	-	-	-	
	녹지				466.00	-	-	-	-	-	-	

11-3. <신설> 안산근린공원(홍제4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해당사항 없음										

위 치 도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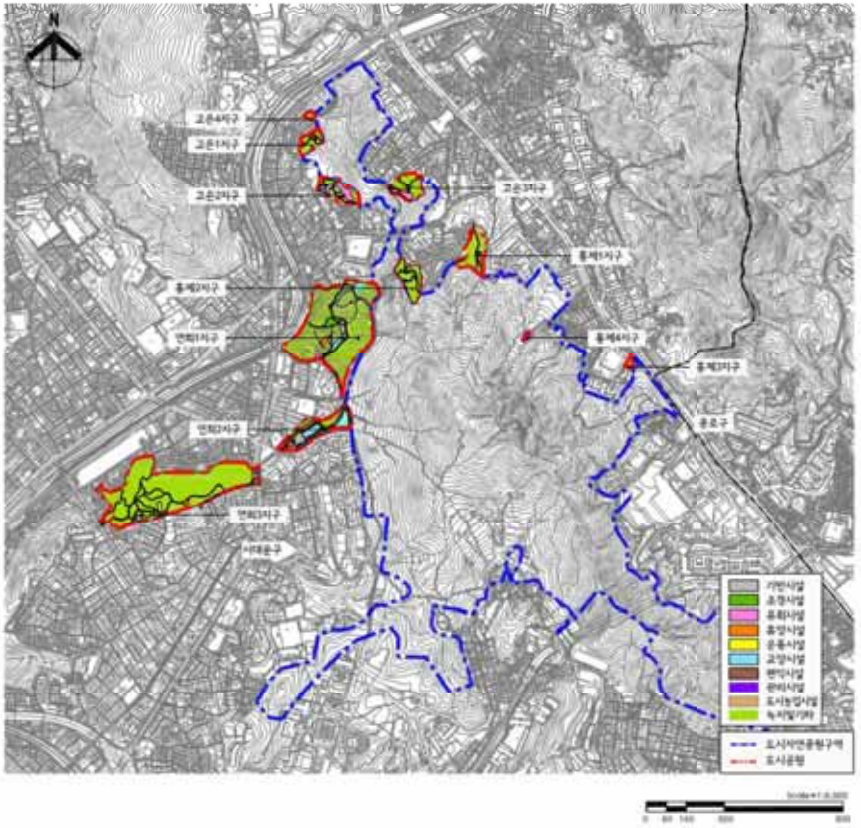
안산근린공원



■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01	고은1지구	서대문구 통제동 산 41-38	5,920.00	
02	고은2지구	서대문구 통제동 산 41-29	11,972.00	
03	고은3지구	서대문구 통제동 312-196	11,029.40	
04	통제1지구	서대문구 통제동 산33-112	12,010.70	
05	통제2지구	서대문구 통제동 322-11	9,529.70	
06	연희1지구	서대문구 연희동 산2-74	95,115.30	
07	연희2지구	서대문구 연희동 141-62	20,184.40	
08	연희3지구	서대문구 연희동 산166-15	94,167.30	
09	통제3지구	서울 서대문구 통제동 42-4	873.00	
10	고은4지구	서울 서대문구 통제동 334-160	1,025.00	
11	통제4지구	서울 서대문구 통제동 54	466.00	

안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



■ 총괄표

구분		총계	고은1지구	고은2지구	고은3지구	통제1지구	통제2지구
부지 총 면적		262,192.80	5,920.00	11,672.00	11,039.40	12,010.70	5,529.70
사업 총 면적		39,264.15	367.67	4,943.26	2,624.82	1,090.86	756.86
기반시설	소계	17,010.60	367.67	2,012.76	665.56	673.86	673.82
	도로	15,720.36	367.67	1,716.71	665.56	673.86	496.25
	광장	1,290.24	-	296.07	-	-	177.57
조경시설		1,938.00	-	-	-	-	-
휴양시설		1,321.12	-	168.30	52.82	-	86.00
휴게시설		4,963.50	-	2,732.88	1,521.82	417.00	-
운동시설		1,313.56	-	-	338.82	-	17.04
교양시설		11,860.00	-	-	-	-	-
편익시설		440.30	-	32.30	46.00	-	-
관리시설		437.07	-	-	-	-	-
녹지 및 기타		215,115.99	5,552.33	6,928.74	8,404.58	10,919.84	4,772.84
건축물	동수(동)	5	-	1	1	-	-
	바닥면적	2,355.61	-	32.30	23.40	-	-
	연면적	7,455.60	-	32.30	23.40	-	-
공작물(기)		63	-	14	24	4	2
비고		도시계획도로 7,752.66					

구분		연희1지구	연희2지구	연희3지구	통제3지구	고은4지구	통제4지구
부지 총 면적		95,115.30	20,184.40	94,167.30	873.00	1,025.00	466.00
사업 총 면적		10,917.14	9,951.00	8,632.54	-	-	-
기반시설	소계	4,936.07	-	7,660.54	-	-	-
	도로	4,289.07	-	7,511.24	-	-	-
	광장	647.00	-	169.60	-	-	-
조경시설		1,938.00	-	-	-	-	-
휴양시설		1,037.00	-	-	-	-	-
휴게시설		-	-	292.00	-	-	-
운동시설		298.00	-	659.70	-	-	-
교양시설		1,909.00	9,951.00	-	-	-	-
편익시설		362.00	-	-	-	-	-
관리시설		437.07	-	-	-	-	-
녹지 및 기타		83,224.87	5,222.65	82,751.72	847.42	1,025.00	466.00
건축물	동수(동)	2	1	-	-	-	-
	바닥면적	301.07	1,899.84	-	-	-	-
	연면적	450.67	5,949.23	-	-	-	-
공작물(기)		18	-	-	-	-	-
비고		도시계획도로 573.29	도시계획도로 4,010.75	도시계획도로 2,783.04	도시계획도로 25.58		

* 공원사업율 : 39,264.15 / 262,192.80 = 14.98%
* 도서관·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공동사업율
: 1,313.56 / 39,317.55 = 3.35%
* 건폐율 : 2,355.61 / 262,192.80 = 0.90%

조성계획도 [변경후]

고은1지구



■ 조성계획표

구분	계	주거용지 (㎡)	상업용지 (㎡)		공공청사	공원 (㎡)	기타
합계							
비율							
세대 수							
인구							

조성계획도 [변경후]

고은2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1,872.00	4,943.26	-	1	32.30	32.30	14	
기반시설	소계		2,012.76	2,012.76	-	-	-	-	-	
	도로		1,716.71	1,716.71	-	-	-	-	-	
	광장	가	296.07	296.07	-	-	-	-	-	
휴양시설	소계		168.30	168.30	-	-	-	-	11	
	휴게소	나	165.30	165.30	-	-	-	-	-	
	랜드마크	①	-	-	-	-	-	-	9	
	동상(1)	②	-	-	-	-	-	-	2	
유희시설	소계		2,732.88	2,732.88	-	-	-	-	3	
	체크&놀이터	다	438.83	438.83	-	-	-	-	-	
		다-1	268.13	268.13	-	-	-	-	-	
		다-2	108.16	108.16	-	-	-	-	-	
		다-3	62.54	62.54	-	-	-	-	-	
	체크&놀이터	라	2,294.05	2,294.05	-	-	-	-	-	
	피크닉쉼터	③	-	-	-	-	-	-	1	
	징하신	④	-	-	-	-	-	-	1	
	서비큘 정글짐	⑤	-	-	-	-	-	-	1	
행정시설	소계		32.30	32.30	-	1	32.30	32.30	-	
	화장실	1	32.30	32.30	-	1	32.30	32.30	-	
녹지 및 기타	소계		6,928.74	-	-	-	-	-	-	
	녹지		6,928.74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고은3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주요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11,029.40	2,624.82	-	1	23.40	23.40	24	
기반시설	소계		665.56	665.56	-	-	-	-	-	
	도로		665.56	665.56	-	-	-	-	-	
휴양시설	소계		52.62	52.62	-	-	-	-	10	
	휴게텐트	가	52.62	52.62	-	-	-	-	-	
	샤갈정자	①	-	-	-	-	-	-	5	
	행의자	②	-	-	-	-	-	-	4	
	등의자	③	-	-	-	-	-	-	1	
유희시설	소계		1,521.62	1,521.62	-	-	-	-	9	
	어린이놀이터	나	1,521.62	1,521.62	-	-	-	-	-	
		나-1	376.46	376.46	-	-	-	-	-	
		나-2	1,149.16	1,149.16	-	-	-	-	-	
	조합놀이대A	④	-	-	-	-	-	-	1	
	조합놀이대B	⑤	-	-	-	-	-	-	1	
	그네	⑥	-	-	-	-	-	-	1	
	시소	⑦	-	-	-	-	-	-	1	
	운동놀이대A	⑧	-	-	-	-	-	-	1	
	운동놀이대B	⑨	-	-	-	-	-	-	1	
	매달리기	⑩	-	-	-	-	-	-	1	
	철제망사안내판	⑪	-	-	-	-	-	-	1	
	기어오르기	⑫	-	-	-	-	-	-	1	
공동시설	소계		338.82	338.82	-	-	-	-	5	
	다목적운동장	다	338.82	338.82	-	-	-	-	-	
		다-1	173.00	173.00	-	-	-	-	-	
		다-2	165.82	165.82	-	-	-	-	-	
	체력인증시설	⑬	-	-	-	-	-	-	5	
관리시설	소계		46.00	46.00	-	1	23.40	23.40	-	
	화장실	1	46.00	46.00	-	1	23.40	23.40	-	
녹지 및 기타	소계		9,404.56	-	-	-	-	-	-	
	녹지		9,404.56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홍제1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층수(층)	비고
합계			12,010.70	1,090.86	-	-	-	-	4	
기반시설	소계		673.86	673.86	-	-	-	-	-	
	도로		673.86	673.86	-	-	-	-	-	
유희시설	소계		417.00	417.00	-	-	-	-	4	
	어린이놀이터	가	417.00	417.00	-	-	-	-	4	
녹지 및 기타	소계		10,919.84	-	-	-	-	-	-	
	녹지		10,604.12	-	-	-	-	-	-	
	배수지		315.72							

조성계획도 [변경후]

홍제2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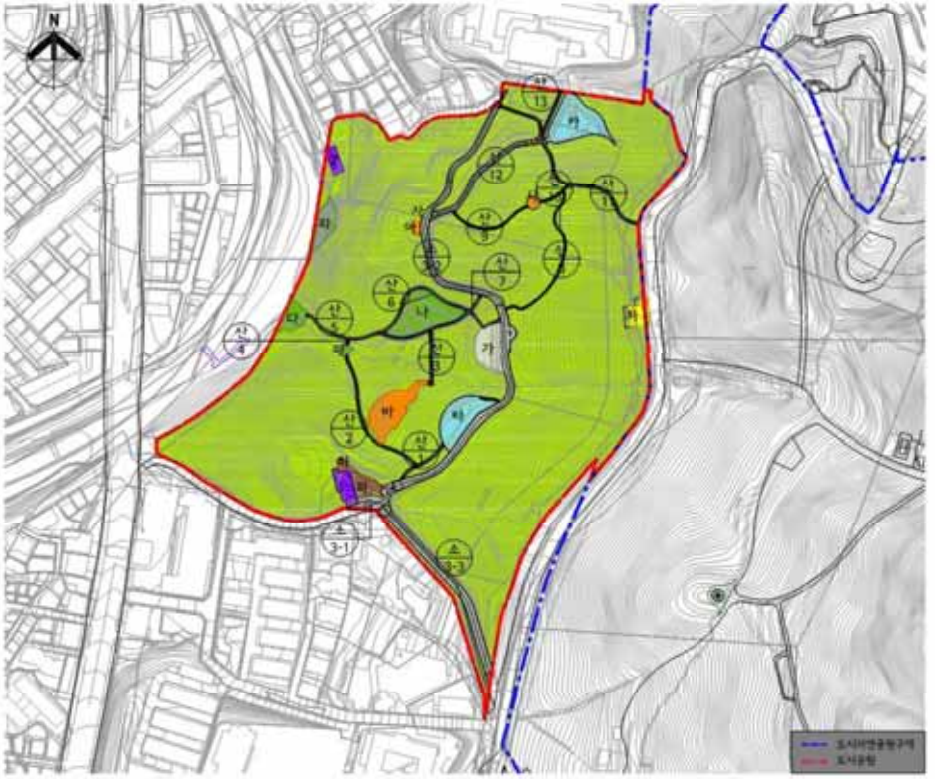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용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9,529.70	756.86	-	-	-	-	2	
기반시설	소계		673.82	673.82	-	-	-	-	-	
	도로		496.25	496.25	-	-	-	-	-	
	광장	가	177.57	177.57	-	-	-	-	-	
		가-1	61.62	61.62	-	-	-	-	-	
		가-2	57.24	57.24	-	-	-	-	-	
		가-3	58.71	58.71	-	-	-	-	-	
용양시설	소계		66.00	66.00	-	-	-	-	2	
	쉼터	나	66.00	66.00	-	-	-	-	-	
		나-1	50.00	50.00	-	-	-	-	-	
		나-2	16.00	16.00	-	-	-	-	-	
	철각정자	①	-	-	-	-	-	-	1	
	파고라	②	-	-	-	-	-	-	1	
공동시설	소계		17.04	17.04	-	-	-	-	-	
	체력단련장	다	17.04	17.04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8,772.84	-	-	-	-	-	-	
	녹지		8,772.84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연희1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투자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주차장 (기)	비고
합계			95,115.30	93,917.14	-	2	301.07	450.67	19	
지원시설	소계		5,909.36	4,936.07	-	-	-	-	-	
	도로		5,262.36	4,289.07	-	-	-	-	-	
	광장	가	647.00	647.00	-	-	-	-	-	
주거시설	소계		1,938.00	1,938.00	-	-	-	-	2	
	커뮤니티	나	1,169.00	1,169.00	-	-	-	-	-	
	홍제천수변마당	다	343.00	343.00	-	-	-	-	-	
	만공육호	라	373.00	373.00	-	-	-	-	-	
	소연못	마	53.00	53.00	-	-	-	-	-	
	가제보		-	-	-	-	-	-	1	
	현판		-	-	-	-	-	-	1	
공공시설	소계		1,037.00	1,037.00	-	-	-	-	13	
	홍속쉼터	바	885.00	885.00	-	-	-	-	-	
	쉼터	사	79.00	79.00	-	-	-	-	-	
	장서휴게소	아	73.00	73.00	-	-	-	-	-	
	마차대이음		-	-	-	-	-	-	5	
	등지지		-	-	-	-	-	-	8	
운동시설	소계		298.00	298.00	-	-	-	-	4	
	체력단련장	자	25.00	25.00	-	-	-	-	4	
	배드민턴장	차	273.00	273.00	-	-	-	-	-	
교정시설	소계		1,909.00	1,909.00	-	-	-	-	-	
	인산방송	카	1,058.00	1,058.00	-	-	-	-	-	
	천다리당	타	851.00	851.00	-	-	-	-	-	
환경시설	소계		362.00	362.00	-	-	-	-	-	
	주차장	파	228.00	228.00	-	-	-	-	-	
	전망데크	하	134.00	134.00	-	-	-	-	-	
관리시설	소계		437.07	437.07	-	2	301.07	450.67	-	
	문화사무소	1	312.00	312.00	-	1	176.00	325.60	-	
	주민공동한마음	2	125.07	125.07	-	1	125.07	125.07	-	
녹지 및 기타	소계		83,224.87	-	-	-	-	-	-	
	녹지		83,224.87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연희2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연톤율(㎡) 바닥면적	연톤율(㎡)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0,164.40	9,951.00	-	1동	1,998.84	6,949.23	-	
기반시설	소계		4,010.75	4,010.75	-	-	-	-	-	
	도로		4,010.75	4,010.75	-	-	-	-	-	
공공시설	소계		9,951.00	9,951.00	-	-	-	-	-	
	자연친화놀이	가	7,750.00	7,750.00	경량	1동	1,998.84	6,949.23	-	
	자연학습장	나	2,201.00	2,201.00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6,222.65	-	-	-	-	-	-	
	녹지		6,222.65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연희3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해당면적	건축물(㎡) 미해당	공작물 (기)	비고
합계			94,167.30	6,632.54	-	-	-	-	-	
기반시설	소계		10,463.88	7,680.84	-	-	-	-	-	
	도로		10,294.28	7,511.24	-	-	-	-	-	
	광장	가	169.60	169.60	-	-	-	-	-	
		가-1	51.10	51.10	-	-	-	-	-	
		가-2	68.00	68.00	-	-	-	-	-	
		가-3	50.50	50.50	-	-	-	-	-	
유희시설	소계		292.00	292.00	-	-	-	-	-	
	놀이터	나	292.00	292.00	-	-	-	-	-	
공용시설	소계		659.70	659.70	-	-	-	-	-	
	연철지입로	다	48.00	48.00	-	-	-	-	-	
	체육단연장	라	611.70	611.70	-	-	-	-	-	
녹지 및 (3호)	소계		82,751.72	-	-	-	-	-	-	
	녹지		82,751.72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홍제3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인축용(㎡) 허락면적	인축용(㎡) 안전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873.00	-	-	-	-	-	-	
기반	소계		25.58	-	-	-	-	-	-	
시설	도로		25.58	-	-	-	-	-	-	
녹지 및	소계		847.42	-	-	-	-	-	-	
기타	녹지		847.42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고은4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연후폭(m) 버스전면적	연후폭(m) 연면적	공적율 (%)	비고
합계			1,025.00	-	-	-	-	-	-	
기반시설	소계		-	-	-	-	-	-	-	
	도로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1,025.00	-	-	-	-	-	-	
	녹지		1,025.00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홍제4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66.00	-	-	-	-	-	-	
기반시설	소계		-	-	-	-	-	-	-	
	도로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466.00	-	-	-	-	-	-	
	녹지		466.00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9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서울교육대학교)

건설부고시 제1973-76호(1973.2.2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호(2014.1.16.)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호(2016.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일대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교육대학교 내 건축물 대장과 맞게 건축물 조서를 변경하고 기숙사를 신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학교	대학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	86,349.9	-	86,349.9	건설부고시 제1973-76호 (1973.2.28)	제2종 일반주거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구역계획 [변경없음]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10,484.3
	②	27,846.7
	③	18,124.7
	소 계	56,455.7
상징경관구역	④	5,447.6
	소 계	5,447.6
외부활동구역	⑤	21,867.6
	⑥	2,579.0
	소 계	24,446.6
합 계		86,349.9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 건폐율 (%)	사용건폐율(%)		관리 건폐율 (%)	비고
			기정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86,349.9	60.0	25.7	26.0	28.0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없음 - 비오톱1등급지 없음

※ 학교용지 면적(86.349.9㎡) 대비 법정건폐율 60.0%, 사용건폐율 (기정) 25.7% → (변경) 26.0%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 · 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200	115.0	114.9	114.9	-	120.0	지표로부터 20m 이하	부설초등학교
②	200	91.6	91.7	91.7	-	95.0	지표로부터 32m 이하	-
③	200	145.6	144.5	144.5	-	150.0	지표로부터 20m~32m 이하	-
④	200	90.5	90.5	90.5	-	93.0	지표로부터 13m 이하	상징경관구역 (미술관,가사관,제2미술관,학군단,과학관)
⑤	200	41.2	39.4	39.4	-	46.0	지표로부터 5m~3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시설에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대운동장, 야외학습장, 구령대, 융복합스포츠센터)
⑥	200	0.0	0.0	0.0	-	3.0	지표로부터 5m 이하 (외부공간 부대시설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부설초운동장)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구역	부설초교 (전관동)	2,214.42	2,091.12	4,798.52	4,790.15	4,298.03	4,299.72	지하1 /지상4	지하1 /지상4	준공에 의한 면적 반영
	부설초교 (후관동)	932.66	920.99	3,496.21	3,496.29	3,496.21	3,496.29	지상5	지상5	준공에 의한 면적 반영
	다울채	706.07	675.67	2,237.03	2,229.98	1,720.39	1,713.34	지하1 /지상3	지하1 /지상3	준공에 의한 면적 반영
	온실	153.00	135.00	153.00	135.00	153.00	135.00	지상1	지상1	오기정정 (건축물대장 면적반영)
② 구역	정문수위실	40.83	51.99	40.83	51.99	40.83	51.99	지상1	지상1	준공에 의한 면적 반영
③ 구역	기숙사(가)	- (633.30)	-	- (2,759.55)	-	- (2,533.20)	-	- (지하1 /지상4)	-	기존 철거예정 →금회 철거
	기숙사(나)	- (610.32)	-	- (2,473.68)	-	- (2,473.68)	-	- (지상4)	-	
	기숙사	1,000.00	1,549.96	9,000.00	11,953.52	8,000.00	7,903.64	지하1 /지상8	지하2 /지상10	금회 신축 (건축계획 변경)
	서록2관	1,199.60	1,199.60	8,485.70	8,485.70	7,773.31	7,738.31	지하1 /지상10	지하1 /지상10	오기정정 (건축물대장 면적반영)
	라커룸주2)	88.2	- (35.0)	88.2	- (35.0)	88.2	- (35.0)	지상1	-	금회철거 (기숙사신축에 의한 철거)
	샤워장주3)	-	- (35.0)	-	- (35.0)	-	- (35.0)	-	- (지상1)	금회철거 (기숙사신축에 의한 철거)
⑤ 구역	융복합스포츠 센터	2,879.52	2,806.22	13,002.65	12,364.62	8,788.30	8,392.72	지하2 /지상6	지하2 /지상6	준공에 의한 면적 반영

주1) ( )는 금회 철거하는 건물의 현황 면적임
주2) 라커룸은 대장상 면적인 35.00㎡로 오기정정 및 금회 철거
주3) 샤워장은 누락 된 건축물 반영 및 금회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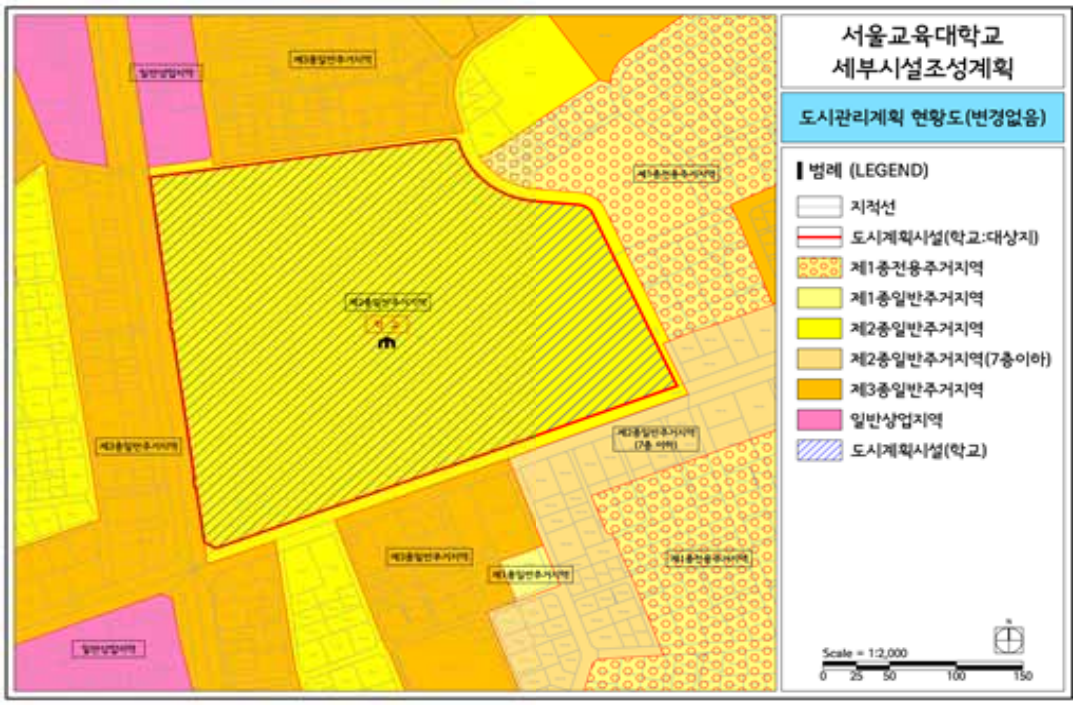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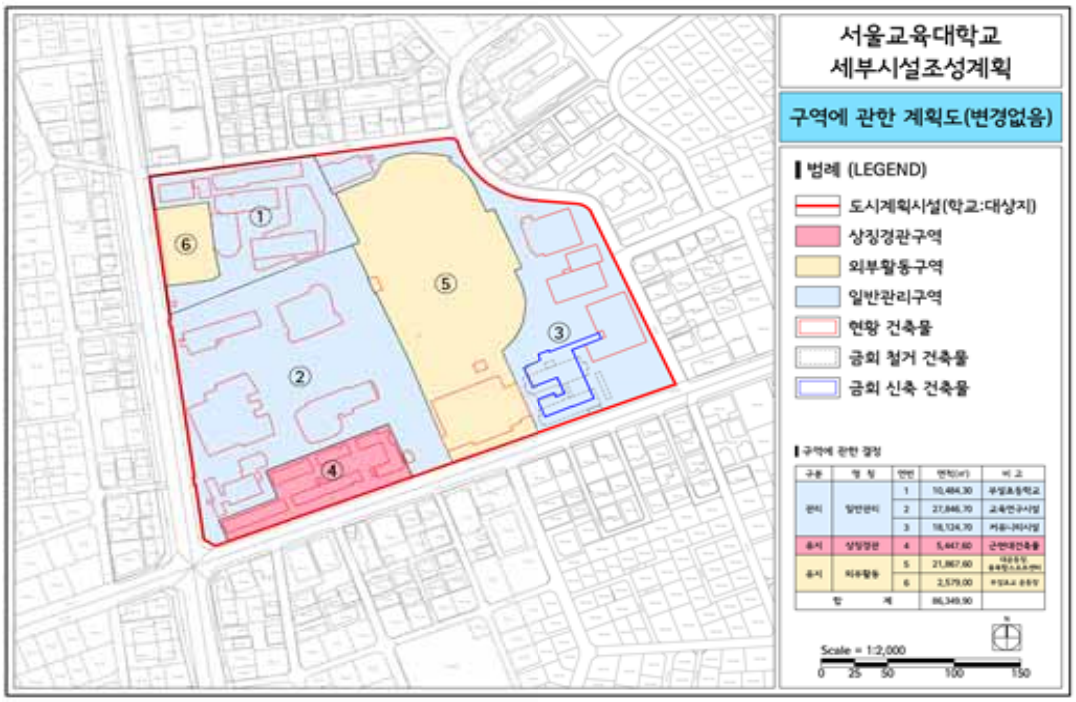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1) 및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2155-6794)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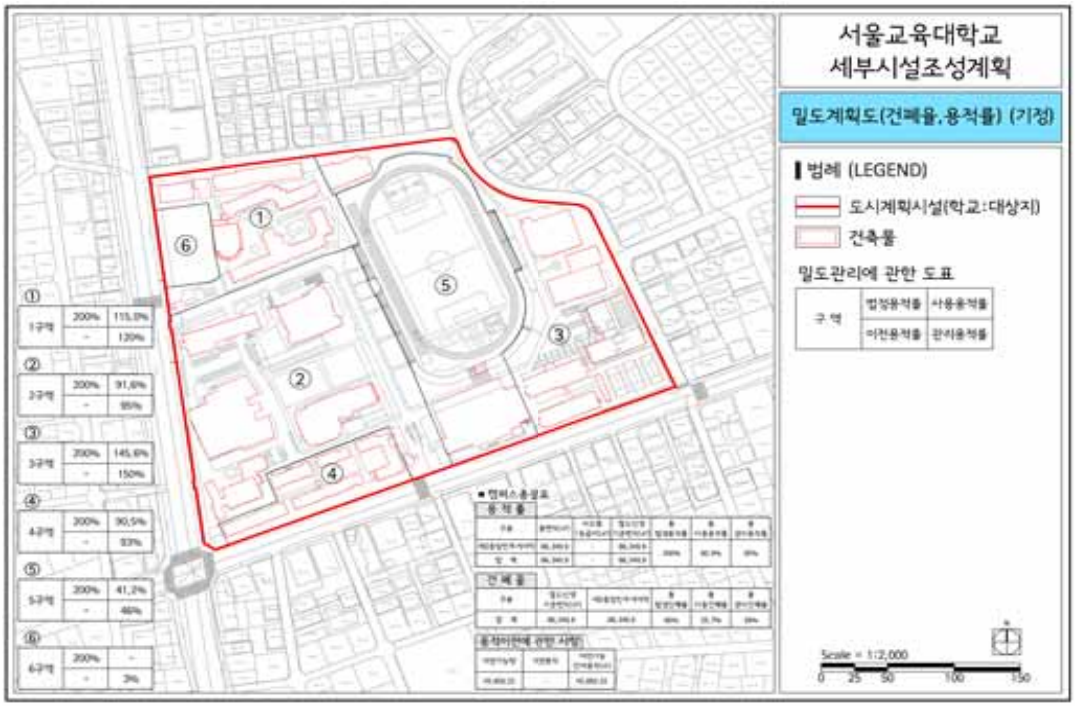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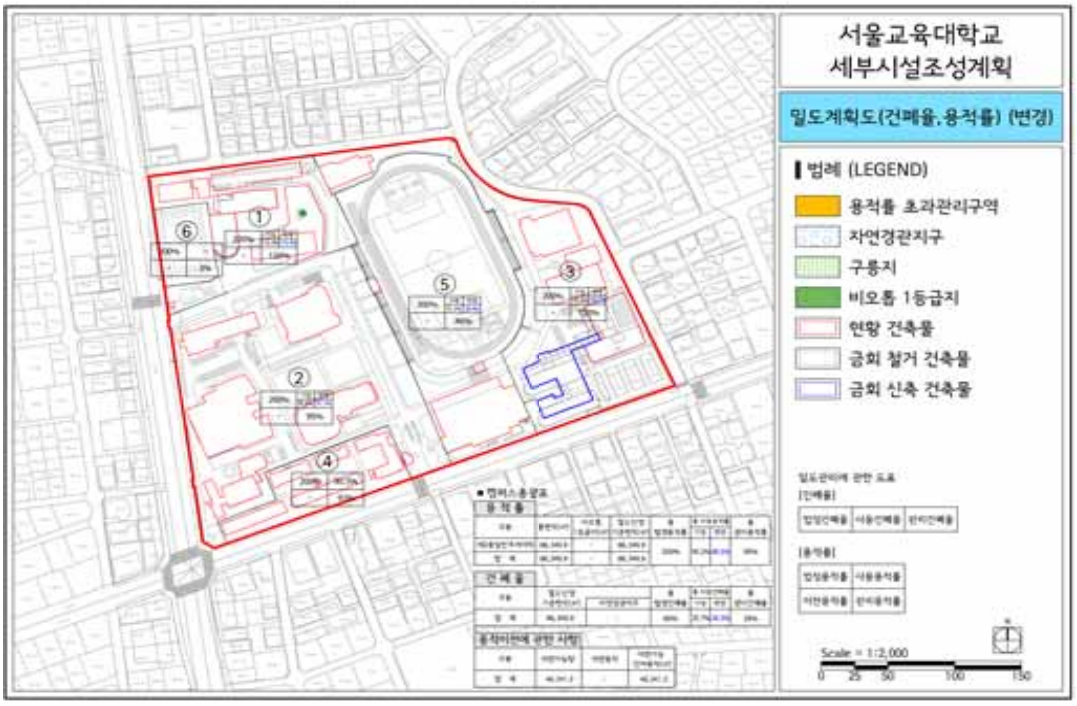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에 관한 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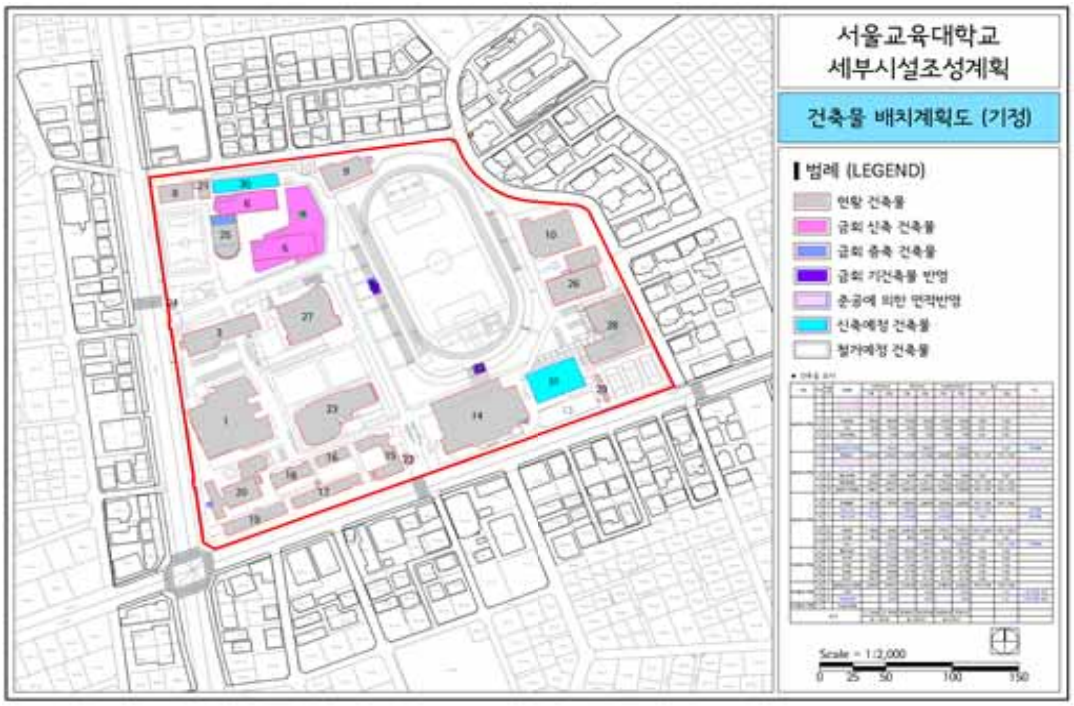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 용적률)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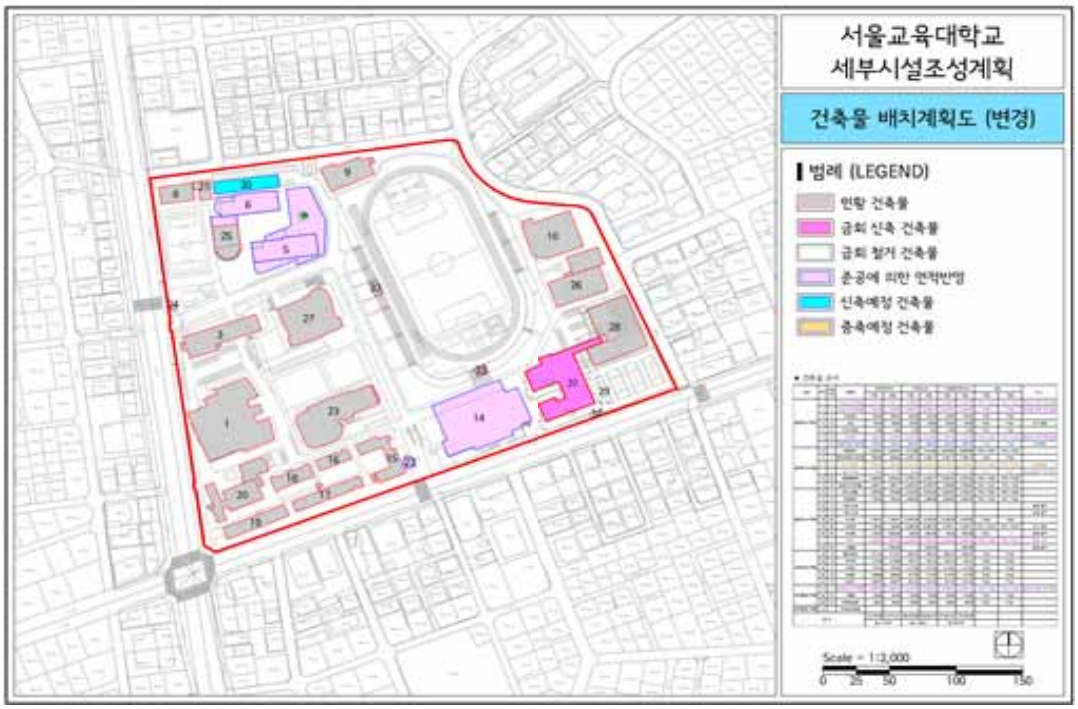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도(건폐율 · 용적률)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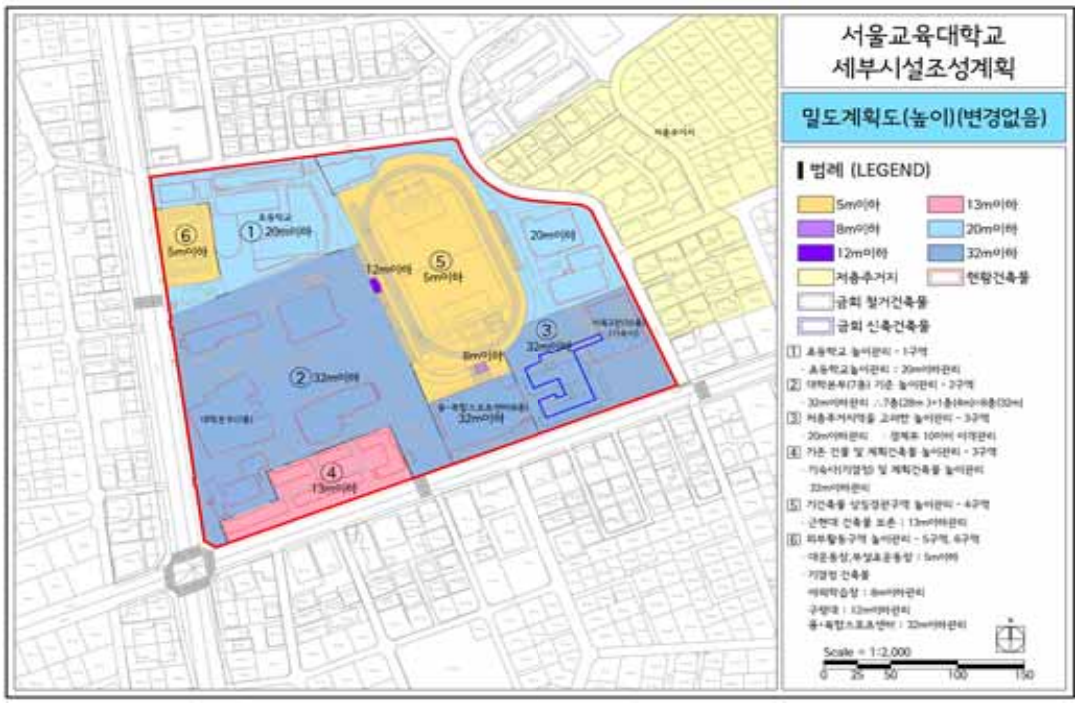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물 배치계획도 [기정]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물 배치계획도 [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98호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3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목적, 위치, 면적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나. 주거와 건축에 대한 시민의식수준 및 생활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따라 미래 서울도시 주거의 대안을 제시함과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지구명	위 치	사 업 명	사업면적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51,845㎡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사업명	용 도	사업면적	최고층수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1,845㎡	29층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비 고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배제	- 공중의 통행 및 주민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공용공간 확보를 위함 - 연도형 저층복도형 주동의 복도폭 확대로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성 향상 및 커뮤니티 형성 등의 공공성 확보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비 고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배제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되는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거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계획을 위하여 높이제한 적용배제함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

① 공모방법 : 공동주택 현상설계공모

② 설 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고덕강일 총괄 MP 기획회의 도출안건을 설계에 반영

나.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 방법

① 공사감리 : 설계 및 디자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업무 시행(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감독자를 투입하여 해당공사 전반의 감독업무를 수행)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접 감독을 통하여 공사감리 추진

②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에 따라 공사에 대한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자 선정방식으로 발주하여 설계의도 구현 및 현장품질 확보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① 기 고시된 [고덕강일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국토교통부 제2015-579호)] 기준

구분	항목·내용·사유	비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8조 (용적률, 높이, 건폐율) - 다양한 공용공간 계획을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함	-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02-2133-7081),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화:02-3410-796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599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나.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다. 면 적 : 26,421㎡

2. 권리산정기준일 : 2021. 11. 4.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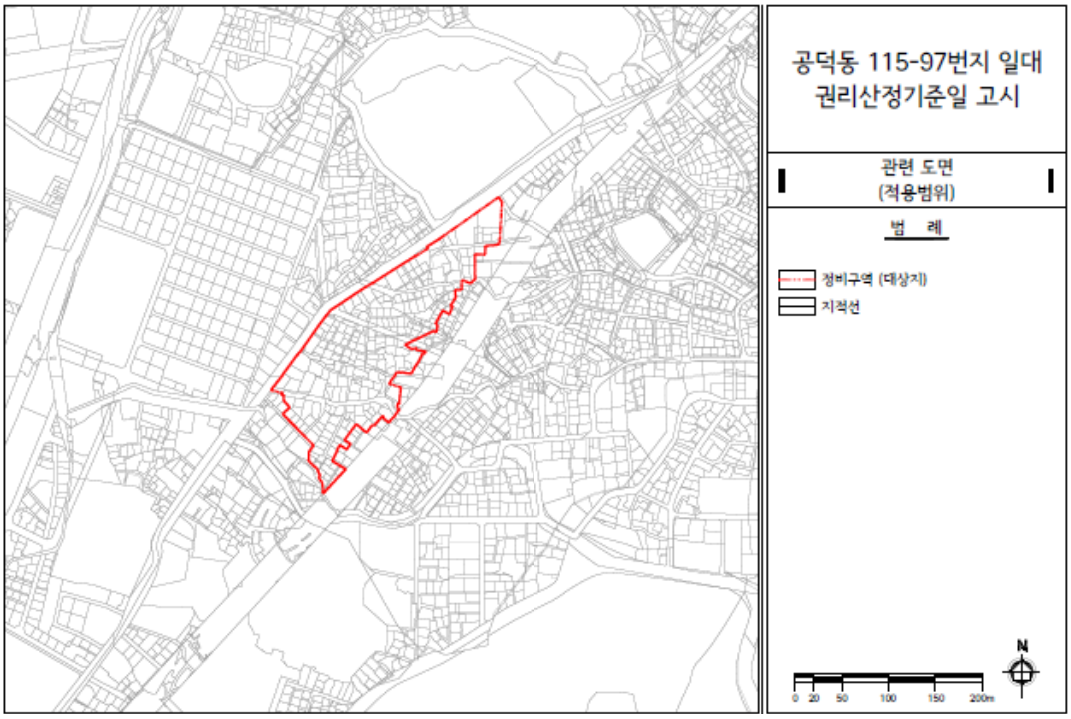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고시 관련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87) 및 마포구 주택과(☎02-3153-9333)에서 열람 가능함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관련 도면
(적용범위)
범 례
정비구역 (대상지)
지적선
0 20 50 100 150 200m
N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00호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1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06.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미대사관 이전과 관련하여 그 간 대한민국 정부-미국정부-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 및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	97,259.5	97,259.5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①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97,259.5	• 미대사관 청사의 원활한 이전 및 미대사관 부지로서 해당 국가의 문화 및 대사관 기능 제고하고 합리적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7,259.5	-	97,259.5	100.0	
자연녹지지역	86,817.1	감) 86,817.1	-	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41.3	증) 95,718.2	97,259.5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901.1	감) 8,901.1	-	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86,817.1	200% 이하	•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와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직원숙소 및 기타시설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청사 이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	8,901.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연장 (m)	기 점	종 점	기 능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3	7~14	일반도로	210	용산고교 교차로	용산동2가 1-1594	보조 간선도로	-	총고제722 (36.12.26) *서고제326호 (20.7.30)	후암로 (미집행 구간의 실표)
변경	중로	1	13	7~12	일반도로	102	용산동2가 (대3-가)	용산동2가 1-1594	보조 간선도로	-		구역외
변경	대로	3	가	26	일반도로	108	용산구 용산중·고교앞	용산동2가 (중1-13)	보조 간선도로	-		
기정	중로	1	37	20	일반도로	552 (449)	후암동 194-25	갈월동 (광3-9)	보조 간선도로	-	총고제757 (39.09.18)	
변경	중로	1	37	20~30 (30)	일반도로	552 (449)	후암동 194-25	갈월동 (광3-9)	보조 간선도로	-		
신설	중로	2	가	16~16.5	일반도로	213	남영동 (중1-37)	남영동 48-1	집산도로	-		

주) ( )는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3	중로1-13	• 도로 폭원 및 연장(기점변경) - 연장 : 210m→102m - 폭원 : 7~14m→7~12m - 기점 : 용산고교교차로 → 용산동2가(대3-가)	• 미대사관 주변도로 폭원 확장에 따라 기정 노선 분리 및 폭원, 연장, 기점 변경
중로1-13	대로3-가	• 도로 폭원(종점변경) - 폭원 : 7~14m→26m - 종점 : 용산동2가1-1594 → 용산동2가(중-13)	•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와 미국정부간 건축협약에 따른 미대사관 주변 도로 폭원 확장 및 노선분리
중로1-37	중로1-37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20m → 20~30m	• 서울시와 미정부간 건축협약에 따른 미대사관 주변도로 확장
-	중로2-가	• 도로신설 - 연장 : 213m - 폭원 : 16~16.5m	• 주한미국 대사관 청사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서울시와 미국정부간 건축협약에 따른 미대사관 주변 도로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 고
			위 치	계획내용	면 적(㎡)	
신설	①	A-1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미대사관 청사	48,623.3	획지
		A-2		(공원)	30,360.0	획지
-	-	-	용산동1가 1-4번지 일원	기반시설	18,276.2	도로

주) A-2획지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 체결된 양해각서('21.5.27.)에 따라 향후 재산교환 후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편입 예정

○ 가구 및 획지 결정사유서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비 고
획지	• 미대사관 청사 건립(A-1) 및 향후 대체숙소와 교환되는 부지(A-2) 구분을 위해 획지계획 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	A-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1-5번지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완화	•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용도완화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수)		• 최고높이 55m이하(12층이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계획	형태	• 남산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외국공관으로써 상징적인 형태로 계획 권장
				재료 색채	• 색채 : 서울시 경관별 색채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변 경관을 고려한 G계열(청자) 색채 활용 권장 • 외부마감재 : 유리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채광 테라코타 활용 권장
				야간 조명	•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 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준용 • 주거지 내 위치한 공공건축물의 지나친 야간경관조명 금지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 지반	• 자연지반 보존을 위한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권장
			기타 사항	담장의 설치	• 투시형 금속 담장 설치 (예시 : 저층부 회색벽돌 + 투시형 금속) • 주변 지역과의 위압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
			대지내 공지 계획	건축한계선	• 서측(중로2-가) : 3.5m, 동측 및 남측 : 2.75m
				전면공지	• 서측(중로2-가) : 기존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 (보도부속형) • 동측 및 남측 : 공원과 연접한 구간은 조경으로 조성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의거 미대사관 부지 전체가 보안 시설이므로 공개공지는 미확보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교차로로부터 50m 이내)
	A-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수)		• 최고높이 55m이하(12층 이하)

가. 건축물 용도계획

◯ 허용용도

도면번호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①	A-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불허용도

도면번호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①	A-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용도완화

도면번호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	A-1	•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용도완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나. 건축물 밀도 및 높이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밀도	건폐율	• 60% 이하	
A-2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55m 이하 (12층 이하)	

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형태 및 외관	A-1	형태	• 남산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외국공관으로써 상징적인 형태로 계획 권장
		재료 색채	• 색채 : 서울시 경관별 색채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변 경관을 고려한 G계열(청자) 색채 활용 권장 • 외부마감재 : 유리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채광 테라코타 활용 권장
		야간 조명	•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 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준용 • 주거지 내 위치한 공공건축물의 지나친 야간경관조명 금지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 자연지반 보존을 위한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권장
기타사항		담장의 설치	• 투시형 금속 담장 설치 (예시 : 저층부 회색벽돌 + 투시형 금속) • 주변 지역과의 위압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계획	A-1	건축한계선	• 서측(중로2-가) : 3.5m, 동측 및 남측 : 2.75m
		전면공지	• 서측(중로2-가) : 기존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보도부속형) • 동측 및 남측 : 공원과 연접한 구간은 조경으로 조성
		공개공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의거 미대사관 부지 전체가 보안 시설이므로 공개공지는 미확보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교차로로부터 50m 이내)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계 획 내 용
• 대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 •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의 신설(변경, 폐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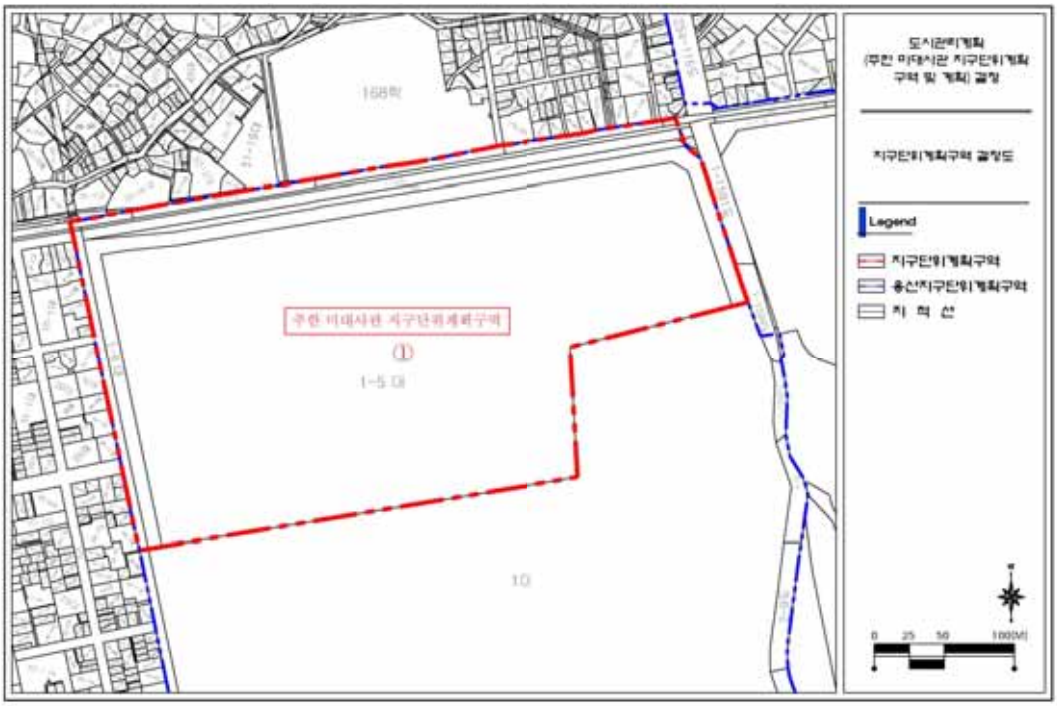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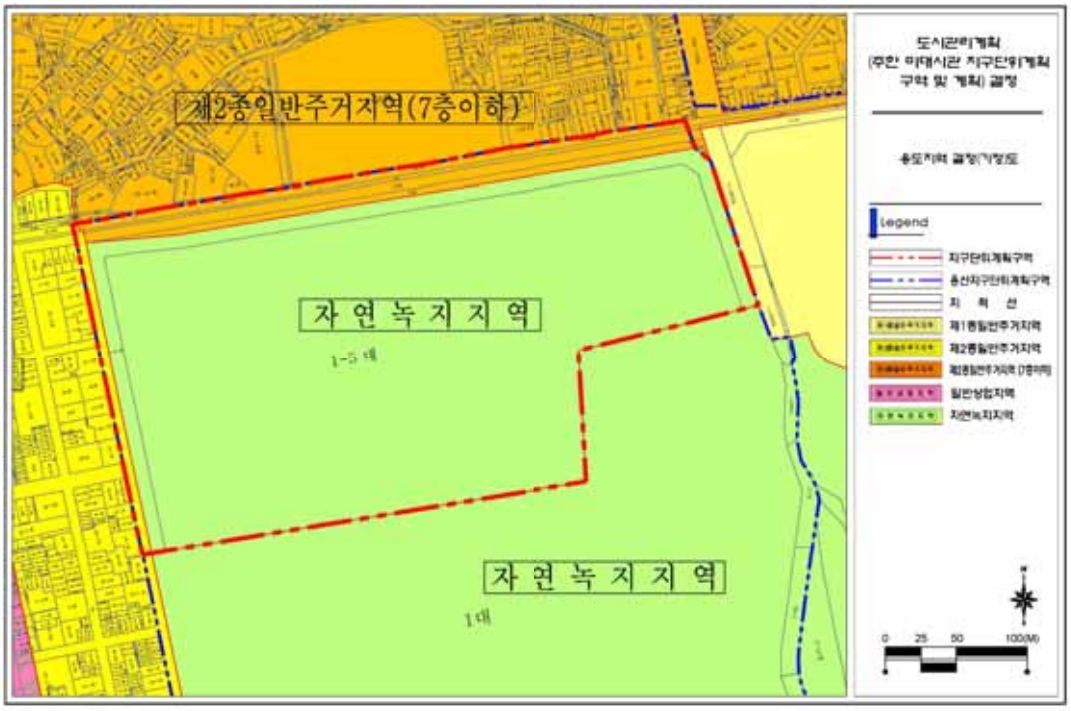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0)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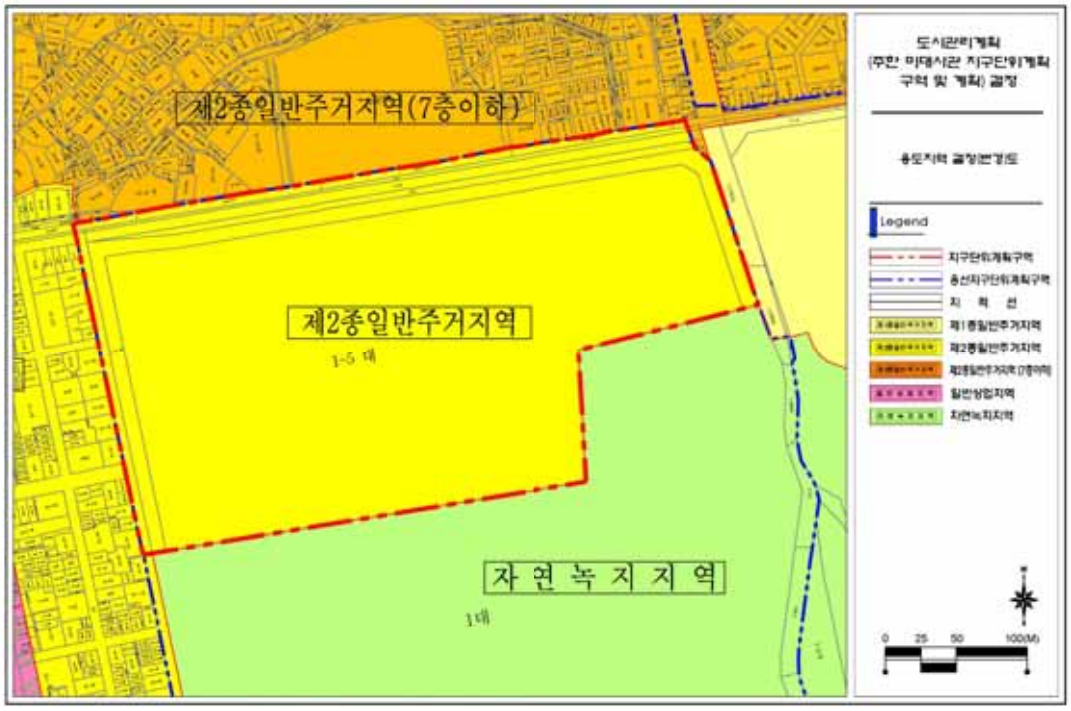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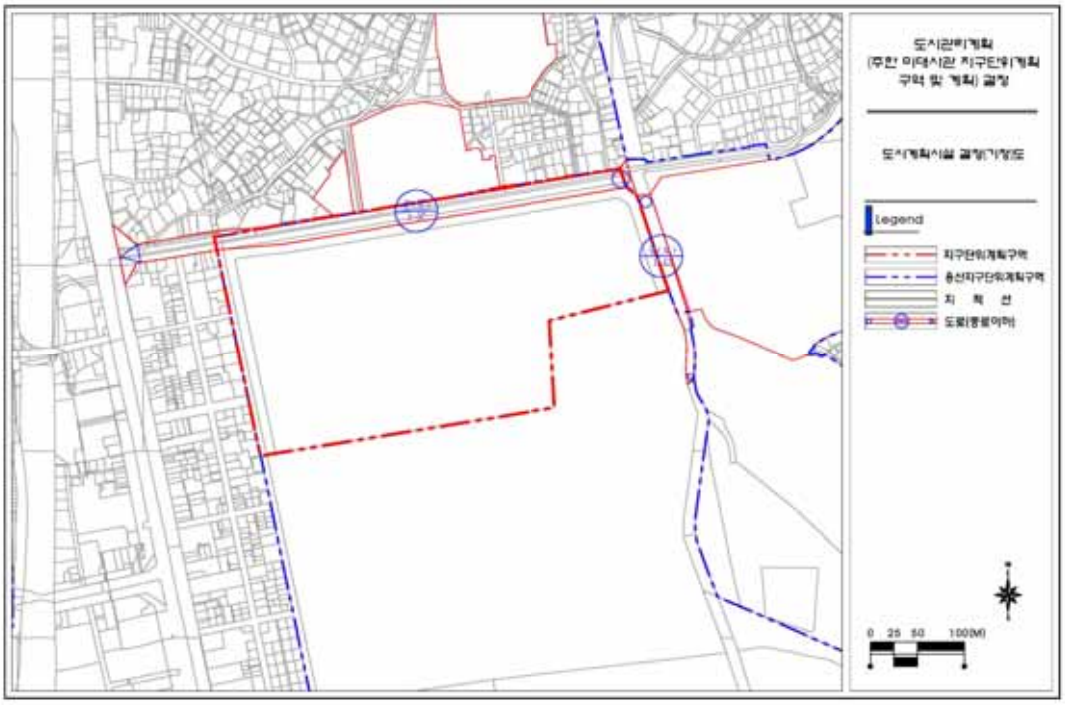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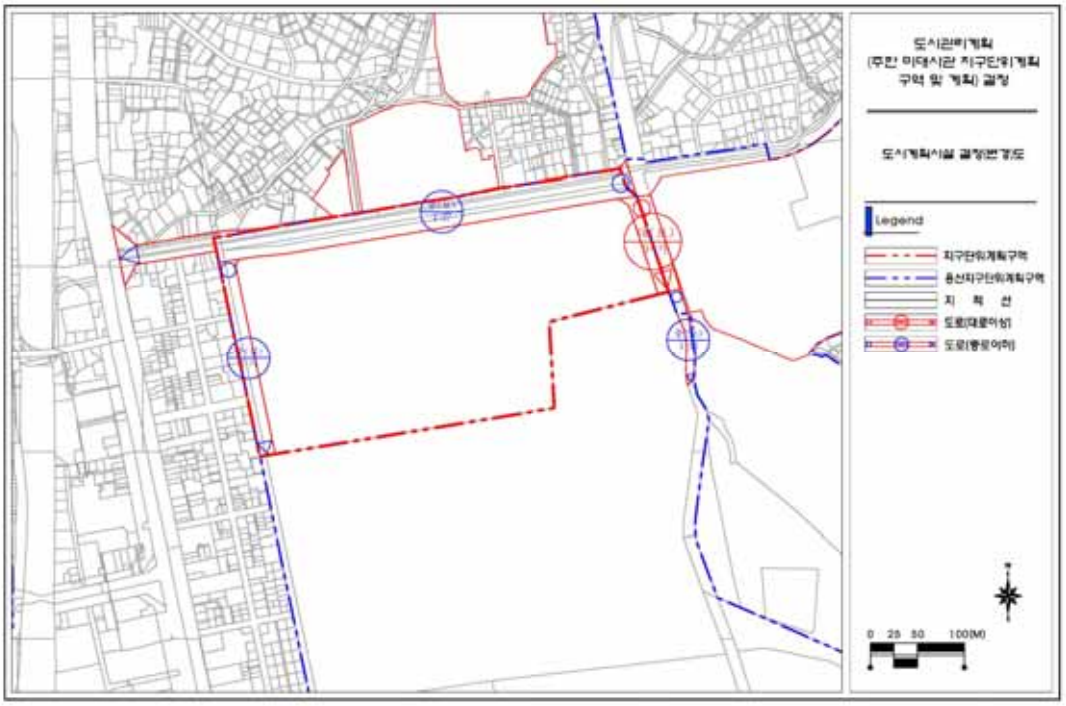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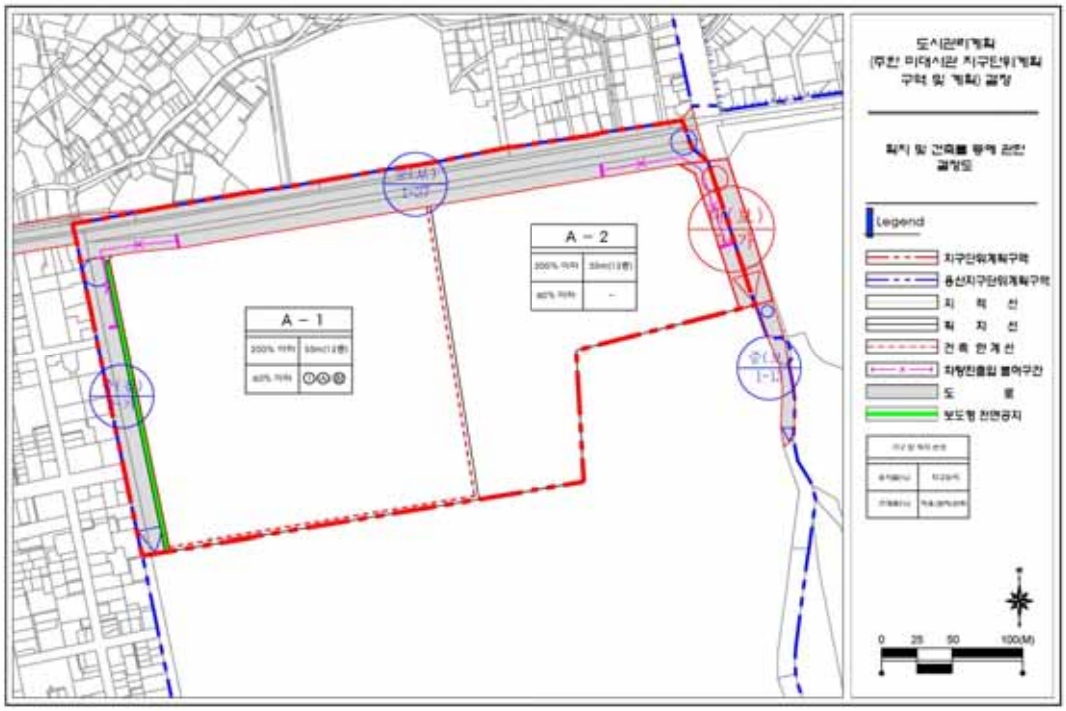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주)마스턴제12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미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0층

※ 자산보관신탁: 위탁자(주식회사 마스턴제12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수탁자(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나. 대지면적 : 2,031.92㎡
 다. 건폐율 : 59.95%(건축면적 : 1,218.13㎡)
 라. 용적률 : 959.08%(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19,487.79㎡)
 마. 용도 : 공동주택(공공임대78세대/SH선매입7세대/민간임대 354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바. 규모 : 1개동, 지하 5층/지상 22층, 연면적 25,904.66㎡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09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개요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경혜인빈상시호죽책 (敬惠仁嬪上諡號竹冊)	10점	(죽책)25×183 (갑)70×93 (격유보)23.5×16.5	1755년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 (靑磁陽刻牡丹文金口碗)	1점	(높이)6.1 (굽지름)3.8 (입지름)14.5	고려시대	서울시 양천구 (김**)
	법화영험전 (法華靈驗傳)	2권 1책	26.7×17.7	1544년	서울시 영등포구 (대한불교조계종 자운사)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 (護國地藏寺 佛腹藏 저고리)	1점	171×64	17세기 전반	서울시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지장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 (固城李氏 錦菴家 經書 筆寫本 四種)	17책	(시전)23.2×13.9 (서전)23.0×14.1 (주역)22.7×13.5 (예기)22.5×13.4	1775년	서울시 종로구 (이**)

나. 지정 사유

1) 유형문화재

【 경혜인빈상시호죽책(敬惠仁嬪上諡號竹冊) 】

1755년(영조 31년)에 영조의 명에 따라 선조의 후궁인 인빈(仁嬪) 김씨(1555~1613)에게 '경혜(敬惠)'란 시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죽책이다. 6개의 대나무 조각에 변철(邊鐵)을 대어 하나의 첩(貼)으로 만들고, 다시 원환(圓環) 방식으로 첩과 첩을 이어 총 10개의 첩을 연결하였다. 시책문의 내용은 인빈 김씨의 뛰어난 부덕(婦德)과 행실을 찬양하는 것으로, 새겨진 모든 글자는 니금(泥金)으로 채워 장식하였다. 죽책을 감싸 포장하는 갑(匣) 1점과 죽책을 접었을 때 첩 사이에 완충재로 끼워 넣는 격유보(隔襦袱) 8점이 함께 남아 있는데 갑에는 2개의 상아 단추도 남아

있다. 제작연대에 비해 구성재질인 대나무, 금속, 직물 등의 전반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본 죽책의 제작에 관한 내용은『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敬惠仁嬪上謚封園圖鑑儀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들과 전문성에 따라 세분화된 당대 최고 장인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고급 왕실 공예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중 어책 338점과도 일군을 이루는 기록물로서 내용, 문장의 형식, 글씨체 등을 통해 왕실기록문화의 특징과 변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치 높은 문화재이다.

【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靑磁陽刻牡丹文金口碗) 】

신청문화재는 구연에 금속테(金釦)를 두른 청자 완이다. 이물질이 적고 입자가 고운 치밀질 태토를 사용해 물레성형 하였는데 기벽이 얇고 몸체가 사선형에 가깝게 완만한 곡선을 이룬 간결한 형태이다. 안바닥에 작은 원각(內底圓刻)을 두고 중심에 꽃문양을 양각하였으며 바깥으로는 4송이의 커다란 모란과 넝쿨문양을 양각하였다. 꽃과 넝쿨의 윤곽은 조각칼을 뉘어 깎아 얕은 부조로 나타냈고 잎맥은 가늘게 음각(細線刻)했는데 그 표현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다. 구연부 안쪽에도 음각당초문대를 돌려 장식하였다. 전면(全面)의 유색은 반투명한 담청녹색으로 유층에 미세한 기포가 형성되어 유색이 밝고 표면 광택도 은은하다. 따라서 유층을 투과해 보이는 문양 역시 잔잔하게 드러나며 조각의 깊이에 따른 유색의 농담이 부드럽다. 그릇 내외면에 일부 태토가 드러나고 유약이 뭉친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유면은 고른 편이다. 굽 안바닥은 얕게 깎아내고 규석받침을 사용해 받쳐구워 직경 3~5mm가량의 규석알갱이 흔적이 3곳에 남아 있다. 구연부는 얇고 가는 금속판으로 금구를 붙여 마감했는데 표면이 산화되어 짙은 적갈색을 띤다. 금구의 재질은 2020년 12월 22일 실시한 과학적 조사 결과 동합금(황동)으로 밝혀졌다. 금구 속 구연의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드러난 부분은 손상된 곳 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 】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은 법화경을 지니고 독송, 필사, 강설하는 여러 가지 영험들의 실례를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 경전과 논서(論書)에서 찾아 엮은 것이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은 1331년 왕사가 된 천태종 승려인 요원(了圓)이 여러 불교 영험문헌에서 법화경의 영험담(靈驗談)만을 뽑아 간행한 책을 바탕으로 후에 함경도 안변(安邊)의 석왕사(釋王寺)에서 1544(중종39)년에 2권1책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자운사 소장본은 1544년에 중간한 것으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희귀한 함경도 안변 석왕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신청 대상본이 비록 중간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현존하는 판본이 매우 희귀함에 따라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서지학 및 불교학 연구 등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민속문화재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護國地藏寺 佛腹藏 저고리)】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는 17세기 전반 시기로 추정되는 저고리형태 및 조형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겉감은 곱게 다듬이한 짙은 초록색 주(紬)이고, 안감은 소색 주(紬)이며, 깃·고름·곁마기에 자주색 별색을 대었고, 저고리 및 회장감의 색상 및 직물이 잘 남아 있다. 겉깃은 목판형이나 깃끝이 당코깃 형태인 목판당코깃이고, 당시에 유행한 짧은 고름이 달려 있다. 현존하는 동시대의 유물은 대부분 출토유물이어서 색상을 알 수 없었으나, 이 저고리를 통하여 당시 저고리의 색상 및 염색의 연구 뿐 아니라, 저고리 봉재법, 저고리의 형태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따라서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3) 문화재자료

【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固城李氏 錦菴家 經書筆寫本 四種)】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固城李氏 錦菴家 經書 筆寫本 四種)은 경북 안동의 고성이씨 금암가에 세전되어 오던 『시전(詩傳)』, 『서전(書傳)』, 『주역(周易)』, 『예기(禮記)』 4종의 경서를 필사한 책이다. 전체 내용은 시전 20권 4책, 서전 10권 3책, 주역 24권 5책, 예기 30권 5책 등 총 17책으로 구성되었다. 고성이씨 중에 금암 이시룡가의 이원욱이 필사하여 세전되어 오던 시전, 서전, 주역, 예기 4종의 경서로, 동일한 인물에 의해서 일관된 필법으로 작성되었고 그 시기와 필사 주체, 배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정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암 이시룡의 아들 이원욱의 친필인 것으로 여겨지며 18세기 후반 양반가의 독실한 수양과 학문태도 등을 엿볼 수 있다. 사서나 삼경 또는 오경의 필사본은 전존하는 것이 매우 많지만 이처럼 필사자와 전래과정 등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흔치 않으므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소중하게 보존하고 교육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문화재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경혜인빈상시호죽책(敬惠仁嬪上謚號竹冊) 】

1. 문화재 현황 및 특징

1) 유물의 현황

<경혜인빈상시죽책>은 1755년(영조 31) 영조의 명으로 조선 선조(1552~1608)의 후궁이었던 인빈 김씨(仁嬪 金氏; 1555~1613)에게 '경혜(敬惠)'라는 시호를 올리고, 인빈의 신주를 모셨던 사당을 저경궁(儲慶宮)으로 격상시키고 확장하여 조성할 때 제작하였던 것으로 현재 대나무(竹簡)에 글을 새기고 엮은 죽책 1점과 그것을 싸는 책갑(冊匣) 1점 및 책과 책 사이에 끼우던 솜보자기(裌褓衹) 8점의 총1건 10점 일체이며, 2019년 5월 27일 K옥션 경매에 나온 것을 구입하여 한성백제박물관에 소장되었다가 서울공예박물관에 이관하여 현존하고 있다.



경혜인빈죽책 10첩

2) 죽책의 주인공

인빈 김씨는 1555년 아버지 감찰 김한우(金漢佑)와 어머니 충의위(忠義衛) 이효성(李孝性)의 딸로 태어났다. 명종의 후궁 숙의 이씨의 외종으로 일찍이 궁중에서 자랐고,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천거로 14세에 선조의 후궁이 되어 소용에 봉해졌다가 귀인이 되었으며 빈으로 승격하였다. 인빈 김씨는 공빈 김씨가 1577년 광해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은 해부터 17년간 선조의 총애를 받아 4남 5녀를 두었고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중 정원군(1580~1619)은 조선 16대 왕 인조(1623~1649)의 아버지로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원종으로 추종됐다. 이처럼 인빈은 생존 당시에는 후궁의 지위였지만 추종 원종의 사친이자 인조의 할머니로서, 인조 즉위 후 왕들은 모두 인빈 김씨의 후손으로서 그녀의 신주를 별묘에 모시고 국왕이 사묘에 친제를 드리기도 하였다.

3) 죽책의 제작 배경

조선 21대 왕 영조(1724~1776)가 후궁인 인빈 김씨에게 시호를 올리고 무덤을 원으로 확장 조성한(上謚封園) 이유는 후궁(숙빈 최씨) 소생인 영조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영조는 1744년(영조 20) 국왕의 사친을 위한 궁원제를 제도화하면서 자신의 사친인 숙빈의 사당을 승격시켜 육상궁(毓祥宮)으로 올리고, 무덤은 소령묘(昭寧墓)라고 올려 불렀다가 1753년(영조 29) 사당인 육상궁을 확장하고 무덤인 소령원(昭寧園)으로 승격시켜 다시 조성하면서 사당에 모실 신주에 '화경(和敬)'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죽책을 만들어 봉안한 적이 있었다.

이것을 전례로 삼아 1755년(영조 31) 6월부터 7월까지 영조는 추존 원종의 사친인 인빈 김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당시 인빈 김씨의 사당인 송현궁(松峴宮)은 서울 남부 회현방에 위치한 원종의 옛 저택(舊邸)에 소재하였는데, 영조는 이곳의 궁호를 저경궁(儲慶宮)으로 승격하여 확장 조성하였고, 그녀의 무덤인 인빈묘(仁嬪墓)는 순강원(順康園)으로 원호를 승격하여 이장하여 정자각 · 비각 · 석양 · 석호 · 석마 등을 새로 조영하였다. 이때 저경궁에 모실 죽책과 옥인 등의 의물을 제작하였으며, 당시 제작한 죽책이 현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영조가 인빈에게 시호를 올린 것은 숙빈 최씨에게 시호를 올린 것에 대한 사후 정당화 작업의 일환이다.

4) 상시봉원도감의 설치와 운영

1755년 영조가 궁원제에 따라 저경궁을 건립하고 순강원을 조영하면서, 저경궁의 책장에 봉안할 죽책을 제작할 당시의 전말은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敬惠仁嬪上謚封園都監儀軌)』(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의궤는 영조에게 올리는 어람용으로 작성되었다. 한말까지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었다가 2011년 5월 27일, 297책과 함께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


시죽책 도설


책갑 도설

1755년 6월 3일 상시봉원도감을 설치한 영조는 6월 14일 영조는 인빈에게 경혜(敬惠)'라는 시호를 올렸고, '경혜인빈지인(敬惠仁嬪之印)'이라 새긴 은인을 만들었으며, 그 전말을 기록한 죽책을 만들었다. 6월 21일 도감을 떠난 죽책은 은인은 각각 채여에 실어 돈화문을 거쳐 명정전에 봉안하였다가, 6월 22일 각각을 채여에 담아 명정전에서 승지가 받들어 돈화문을 거쳐 저경궁(儲慶宮)으로 모시고 가서 책장(冊欌)과 인장(印欌)에 안치하였다.

5) 죽책문의 내용

죽책문은 『영조실록』과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에 수록되어 있다.

1755년 6월 3일 의궤 계사질에 의하면 죽책문의 서식은 계유년 숙빈 최씨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제술관은 행판중추부사 유척기(兪拓基), 예차에 영돈녕부사 이천보(李天輔)였고, 서사관은 겸이조판서 신만(申晩), 예차는 행부사직 홍계희(洪啓禧)를 정하였다. 그러나 3일 뒤인 6월 6일 죽책문 제술관으로 정했던 유척기가 신병으로 인해 그만두어 이천보가 작성하였다. 6월 13일 작성한 시책문을 영조가 어람하였고, 14일 죽책문 초도서를 세자가 예람한 후 서사관 신만이 정서하였다.

(1) 제술관 이천보(李天輔, 1698-1761);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의숙(宜叔), 호는 진암(晉庵). 이일상(李一相)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성조(李成朝)이고, 아버지는 옥천군수 이주신(李舟臣)이며, 어머니는 김만기(金萬基)의 딸이다. 1739년(영조 15)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749년 이조참판에 올랐으며 1752년 우의정에 승진하고, 같은 해 좌의정에 올랐다가 영돈녕부사로 전임되었다. 1761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평양 원유사건(遠遊事件)에 인책, 음독 자결하였다. 담론을 잘하여 허식을 차리지 않고 남과 희소(喜笑)하기를 즐겼으며, 시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는『진암집(晉庵集)』8권 4책이 있다. 당대에 이미 팔문장(八文章) 중으로 한 사람으로 꼽혔고, 후대에는 영조시대 문학의 사대가(四大家)로까지 일컬어지기도 했다.

(2) 서사관 신만(申晩, 1703-1765);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조부는 이천부사 신단(申鍛), 부친은 영중추부사 신사철(申思喆), 모친은 이규일(李揆一)의 딸이다. 1725년 진사가 되고, 1726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실록청도청낭청(實錄廳都廳郎廳)이 되었으나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이 득세할 때 파직 당하였다. 1729년 검열로 다시 등용되었고 이후 경기관찰사, 예조·이조·호조·병조판서,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썼으며, 전하는 작품으로 <이현응묘갈(李顯應墓碣)>(1753)이 있다.

「품목질」에 의하면 1755년 6월 5일 죽책문 서사관 죽책문 초도서나 정서를 할 때 저주지 3장, 초주지 3장을 들이고, 종이를 자를 소전판 2개는 반납했다. 서사관에게는 황필 2자루, 진문 1정, 자연 1면을 주었다. 북칠할 때 쓸 황필 2자루, 진묵 1정, 황밀 5냥, 장서판 1개, 죽청지 6장, 당주홍 1돈, 편연지 1/4편, 화필 1자루, 명교 1돈 등을 진배하였다.

(3) 죽책문의 내용; 『영조실록』, 영조 31년 을해(1755, 건륭) 6월 22일(갑자) 에 자세히 실려 있다.

“죽책문(竹冊文)에 이르기를,

“유세차(維歲次) 을해년 6월 계묘 삭(癸卯朔) 22일 갑자에 국왕(어휘(御諱)이다.)은 머리를 조아리며 책문(冊文)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큰 복을 만대에 물려주셨으니, 그 의범(懿範)을 그리워하여 백년이 지난 오늘날 전례(典禮)를 닦아 시호(諡號)를 올려 감히 아름다움을 밝히기 위해 경건히 정성을 표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인빈(仁嬪)께서는 행실이 단정하고, 성품이 온순하시어 어린 나이에 명가(名家)의 간택(揀擇)에 응하셨을 때는 장추궁(長秋宮)의 기이한 꿈과 일치되었고, 현철한 의범은 육궁(六宮)의 칭송이 자자하여 후비(后妃)의 덕화(德化)를 도우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처하셨으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 아름답

고 길한 일이 더욱 이르게 하고, 위태로운 처지를 당하여서는 끝내 형통하게 해 화순(和順)의 심덕(心德)이 더욱 드러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경사(慶事)를 쌓아 나라가 넉넉해지게 하셨고, 풍성한 복을 내려 왕손(王孫)이 번창하게 하셨는 바 성자(聖子)께서 그 음덕(陰德)을 이어 연익(燕翼)의 공적을 남기셨고, 신손(神孫)께서는 보위(寶位)에 올라 마침내 용비(龍飛)의 위업을 이룩하셨습니다. 그 기조(基祚)가 오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계도하고 보우해 주신 덕택 때문이니, 아득한 옛일이라 하여 어찌 물려 주신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높이 받드는 전례(典禮)가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덕에 비추어 표장(表章)이 부족하여 사제(私第)에서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었으니 어찌 사모하는 마음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의문(儀文)이 열조(列朝)에 미치지 못하니 의당 추보(追報)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므로 작년에 장릉(章陵)의 구저(舊邸)를 수리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지난 봄에 풍양(豊壤)의 높은 언덕으로 찾아가 뵈니,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일어났습니다. 어버이를 드러내는 전례에 의거하여 궁원(宮園)의 호를 올리고 사묘(祠廟)를 더욱 빛내어 신령(神靈)을 이곳에서 제사하오니 이 일이 오늘에 이루어진 것은 하늘의 뜻인 듯하여 이 마음에 거의 유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호를 ‘경혜(敬惠)’라 올리오니 삼가 바라건대, 작은 정성을 살피시어 아래로 강림(降臨)하시어 이 아름다운 일을 역사에 기록하여 전해지도록 해주시고 왕실(王室)을 음덕(陰德)으로써 도와 경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재배하며 시책을 올립니다.”

○竹冊文曰:

維歲次乙亥六月癸卯朔二十二日甲子, 國王[御諱] 稽首上冊 ° 謹以衍景祉於萬世, 緬懷懿規, 修曠典於百年, 聿陳顯冊, 敢云彰美, 祇爲伸誠 ° 伏惟仁嬪, 飭行端貞, 稟性溫粹, 夙齡膺名家之選, 叶異夢於長秋, 哲範播六宮之譽, 贊柔化於椒木 ° 處福綏而若懼, 益迓休吉之來, 履艱危而終亨, 著苦和順之積 ° 惟毓慶誕裕邦國, 故錫羨乃昌本支, 聖子承庥, 載垂燕翼之烈, 神孫御極, 果符龍飛之祥 ° 基祚靈長, 實資啓佑之遺澤, 年代夐邈, 詎忘淑嘉之餘徽? 顧典禮亶合於致隆, 而表章猶闕於考德, 香火替奉於私第, 曷勝永慕之懷? 儀文未遑於列朝, 宜有追報之道, 昨歲修章陵之舊邸, 夫豈偶然? 前春拜豐壤之故岡, 尤有感者 ° 宮園揭號, 援近例於顯親, 祠廟增輝, 慰神理於移享, 是謂若待今日, 庶幾無憾此心 ° 謚號曰敬惠, 伏惟冀鑑微衷俯賜昭格, 紀蹟彤管, 垂芳猷於簡編, 流慶瑤圖, 降冥隲於宗祐 ° 再拜上冊 °

(4) 사자관의 북칠(北漆)

제술관 이천보가 지은 책문은 서사관 신만이 종이(초주지) 위에 쓰며, 이 글씨를 죽편 위에 베껴 쓰는 것은 사자관의 역할이다. 사자관은 홍성원(洪聖源)을 비롯한 7명이다.(洪聖源, 彭潤, 朴尙春, 金昌瑞, 朴泰廉, 金岳齡, 趙復)



경혜인빈상시죽책, 1755년

6) 죽책의 제작과정

죽책의 재료는 청대죽(靑大竹)이며 단단하고 마디가 긴 60마디를 사용한다. 이러한 청대죽은 시장에서 흔히 사고팔 물건이 아니어서, 전례대로 내의원에 소장되어 있는 청대죽을 책인조성소로 들였다.

(1) 죽편의 가공

청대죽은 일정한 길이로 자르고 쪼개어 외피와 속대를 훑은 다음,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큰 솥에 넣고 푹 삶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시 큰 솥(大釜) 1좌, 도제 시루(陶甑) 1좌와 땔나무 10단을 등록에 의거하여 진배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나무를 잘 다루는 소목장 김일주(金一柱) 등 3명이나 대나무의 속성을 잘 아는 사립장(金世緯)의 역할이다. 대나무 위에 주칠을 하는 작업은 칠장 강수징(姜守徵)을 비롯한 3명이 했다.

죽편 1개는 길이 9치(25.0cm), 너비 1치(2.7cm)이고, 죽편 6칸을 1첩으로 만들어 대마디 총 60마디를 사용하였다. 1첩은 세로 25.0cm, 세로 16.8cm이고, 10첩의 전체 길이는 183cm이다. 일반적인 국왕 사친의 죽책은 7첩이지만, 인빈의 죽책은 10첩이어서 유일하다.

(2) 죽편의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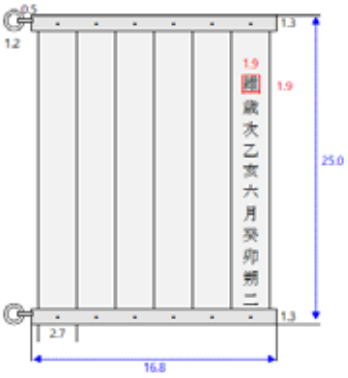
책문(冊文)의 극항(極行)은 13자, 중항(中行)은 12자, 평항(平行)은 11자이다. 사자관들이 북칠한 죽편60개는 김수해(金壽海)를 비롯한 각수 13명이 새긴다. 각수가 사용하는 도구는 각도(刻刀)와 각정(刻釘)이며 강철(强鐵) 2근으로 만든다. 새김칼(刻刀)의 끝을 벼려주는 역할은 김봉옥(金鳳玉)을 비롯한 도자장(刀子匠) 13명의 역할이다. 각수와 도자장의 숫자는 같아서 각수 1인당 도자장 1인이 1:1로 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글씨를 다 새기고 나면 김성오(金省吾)를 비롯한 7명의 화원이 60개의 죽편 중 니금(泥金)으로 채운다(塡金).

(3) 죽책의 회장

죽책의 상하 부분에는 홍광적을 배첩한다. 회장은 두석장 장후선(張後先)을 비롯한 3명이 숙동에 쪼이질(召伊)을 하여 문양을 새기고 황금으로 도금한 변철(邊鐵)로 장식을 한다. 재료에 수은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은아말감기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변철의 높이는 1.3cm이고, 변철의 두께는 0.8-1.0cm이다. 글자의 크기는 가로세로 1.7-1.9cm 정도이다. 원환의 경우 바깥 지름은 1.2cm, 안지름은 0.7cm이다. 매 칸의 죽편의 상하마다 둥근 못을 박고, 매 첩의 상하에는 도금한 둥근 고리(圓環)을 연첩(連貼)한다. 원환과 변철의 연결부는 0.5cm이다. 첩의 외면은 홍광적으로 옷을 싼다.



경혜인빈상시죽책, 1755년



시죽책 실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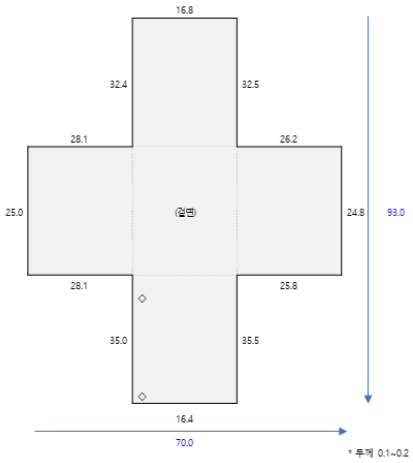
7) 책갑과 겹유복의 제작

(1) 책갑

책갑 1부를 제작할 때 바깥감은 홍방주(紅方紬)이고 안감은 남경광주(藍輕光紬)이며, 속감으로는 초주지(草注紙)를 넣는다. 이렇게 홍색과 남색의 명주를 사용해서 책갑을 만드는데, 이것은 1719년에 제작한 기사계첩의 포갑을 쪽빛 무명으로 제작한 것과 비교된다. 다만 양자는 모두 속감을 여러 겹의 종이를 넣는 줌치기법을 사용한 점은 공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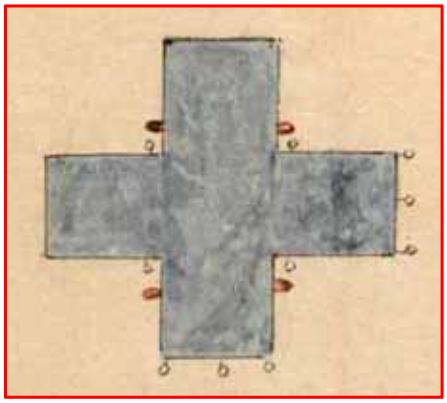
책갑 유물



책갑의 실측 치수

십(十)자 형의 갑에는 양 끝과 허리에 각각 상아 단추를 매달았다. 갑 안에 죽책을 넣고 위아래를 접은 다음 단추를 끼우고, 오른쪽과 왼쪽에 접은 다음 단추를 끼워 마감하며, 네 모서리의 허리도 단추로 꿰는 구조이다. 갑을 꿰매고 바느질하는 침선비(針線婢)의 도구는 전도(剪刀) 1개, 인도(引刀) 1개, 울도(熨刀) 1개, 전판(剪板) 1개, 지의(地衣) 1부, 토화로(土火爐) 1좌, 버들고리(柳篋) 1부이다.

현재 죽책과 맞닿은 부분은 마찰에 의해 약간 헤져 있고, 안감과 겉감에 해당되는 홍색과 남색 명주의 접합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헤져서 벌어진 틈을 통해 안쪽의 초주지가 확인된다. 갑을 고정시킨 단추의 경우 대부분 탈락되고 현재는 2개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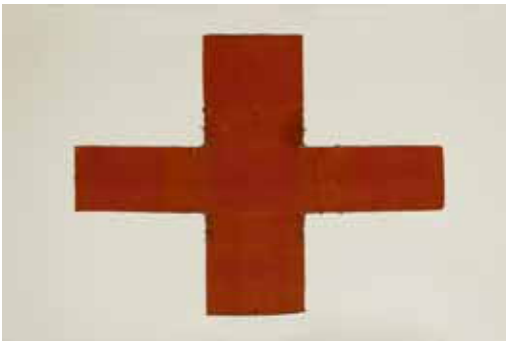
의궤에 도설된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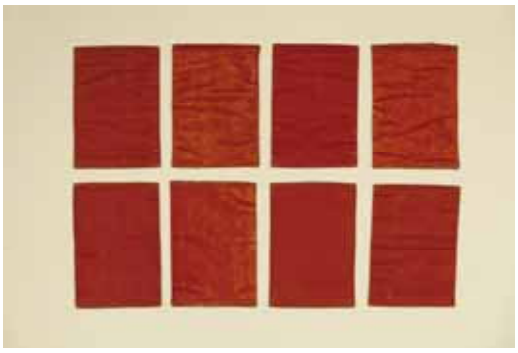
갑의 안쪽(남경광주) 모습

(2) 겹유보(隔襦袱)

죽책이 10첩이어서 그 사이사이를 보호하기 위해 넣는 <사이 솜보자기>(隔襦袱)는 원래 9건을 제작해야 한다. 격유복(隔襦袱) 9건을 새로 만들기 위해 들인 재료는 홍광적 매 폭 길이 6치, 너비 5치, 소감 설면자 9돈, 꿰맬 감 홍진사 3돈, 진말 1홉, 자적대록피 전체 길이와 너비 1치 5푼, 2조리는 상하층 결영자 감이다. 상하막이용 홍광적 8치, 옷감 홍광적 길이 8치, 백지 10장, 자문지 반 장, 도금용 황금 3돈, 숙동 3근, 붕사 5돈, 황밀 5돈, 진말 5홉, 땜은 3돈, 비상 5돈, 홍진사 4냥 3돈, 명교 3돈, 도련지 1장, 니금 6돈 5푼, 수은 1냥 8돈, 녹각교(鹿角膠) 3돈이었다. 그런데 현재 8건만 남아 있고 1건은 유실된 상태이다. 이 솜보자기를 제작하는 재료는 홍광적이다. 그 길이는 매 폭 길이 6치, 나비 5치이고, 속감으로는 설면자 9돈을 넣고, 홍진사 3돈으로 꿰맸다. 직물류의 실은 합사(合絲)하기 위해 봉조군(縫造軍) 3명을 동원하였다. 현재 솜보자기의 표면에는 죽책에 새긴 글씨에 넣은 니금의 금색이 이염된 흔적이 남아 있다.



책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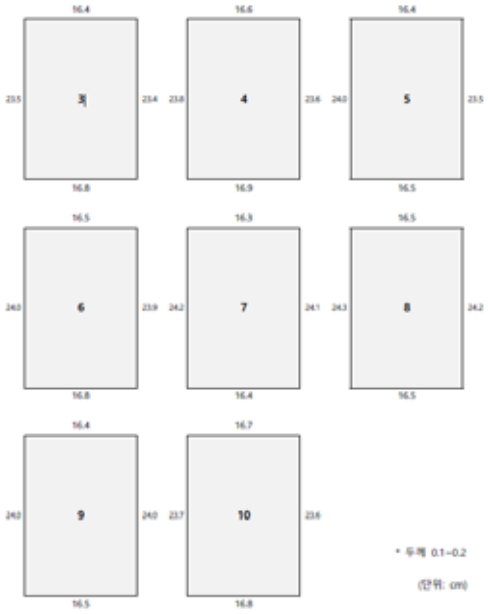
겹유보 8점

8) 제작 감조관과 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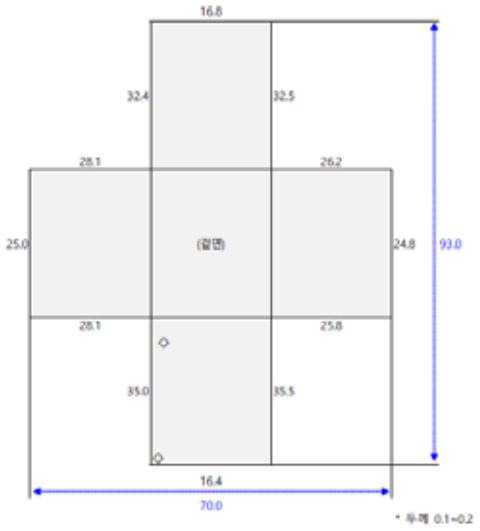
의궤 별단 및 책인조성소의 장인질 명단을 통해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다. 1755년 6월 23일 시상을 했는데, 죽책의 별간역은 변이진(卞爾珍)과 최진강(崔震崗)이었고, 책인조성소에는 서리 4인, 서원 1인, 사령 5명이 있었다.

(1) 별단의 시상내역

죽책조성소의 장인 중 1등상을 시상한 장색에는 소목장, 사립장이 있는데, 이들은 죽책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 쪽을 쪼개고 끓는 물에 담가 뒤틀림을 없애는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과 함께 동원된 은장이나 인통장, 소로장, 주장 등은 인빈에게 올린 상시호 은인(銀印)을 제작하는데 동원된 장인이다. 이들을 살펴보면 소목장 김일주(金一柱) 사립장 김세위(金世緯), 은장 하유복(河有福), 인통장 송룡서(宋龍瑞), 소로장(小爐匠) 이창원(李昌元), 각수 김수해(金壽海) 등 3명, 주장(注匠) 박춘기(朴春起) 등 2명, 시장(匙匠) 한찬주(韓贊周), 두석장 장후선(張後先), 마경장 엄찬이(嚴贊伊). 칠장 강수징(姜守徵)이 1등이었다.



겹유복 8점의 실측 칫수



책갑의 실측 칫수

2등상을 시상한 장인들도 죽책과 관련 물품을 제작한 장인 뿐 아니라 은인 및 내함과 외궤를 제작한 장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사자관 홍성원(洪聖源) 등 2인, 화원 김성오(金省吾) 등 2인, 소목장 김철중(金哲重) 등 2명, 쇄약장 김로미(金老味) 등 2명, 시장 오태민(吳泰民) 등 2명, 천혈장 황세태(黃世泰), 이지장 이성좌(李聖佐) 등 2명, 각수 유태창(劉太昌) 등 5명, 두석장 김순징(金順徵) 등 2명, 도자장(刀子匠) 김봉익(金鳳翼) 등 5명, 동장 이억휘(李億輝) 등 2명, 다회장 서태석(徐太石), 병풍장 이규상(李奎相) 등 2명, 마경장 유재창(劉再昌) 등 2명, 박배장 이이상(李二相) 등 2명, 관자장 김태수(金太壽) 등 2명, 시인(矢人) 이춘기(李春起) 등 2명, 입사장 유기한(劉起漢) 등이었다.

4등을 시상한 장인으로는 부금장(付金匠) 이원엽(李元燁) 등 2명, 각수 한복만(韓福萬) 등 4명, 도자장 정득형(鄭得亨) 등 2명, 책장 이세번(李世蕃), 요장(褥匠) 이유복(李有福), 가칠장 이만빈(李萬彬), 우산장 강도중(姜道中), 과록장(裹盝匠) 오세태(吳世奉), 인장(茵匠) 김이손(金二孫), 천혈장 한이김(韓二金) 등 2명, 침선비 차애(次愛) 등 4명, 시장 한찬영(韓贊英) 등 3명, 칠장 김중태(金中太) 등 2명, 단추장(丹樞匠) 이성휘(李成輝). 소목장 권중하(權中夏). 두석장 이한추(李漢秋), 은장 진재기(陳再起) 등 2명, 보장(寶匠) 박성봉(朴聖鳳) 등 3명, 소로장 송일행(宋一行) 등 2명, 담편장(擔鞭匠) 김만이(金萬伊)였다.

(2) 공장질의 장인

화원(畫員)은 金省吾, 張尙周, 許倓, 李聖麟, 趙廷璧, 劉光澤, 卞光翼.

사자관(寫字官)은 洪聖源, 彭潤, 朴尙春, 金昌瑞, 朴泰廉, 金岳齡, 趙復.

소목장(小木匠)은 金一柱, 金哲貴, 權重夏.

사립장(斜笠匠)은 金世緯.

두석장(豆錫匠)은 張後先 金順徵 李順老味

시장(匙匠) 南太輝, 吳太民, 玄萬壽, 韓贊周, 崔卜山, 丁三才, 韓贊英, 崔鳳振, 金卜乭, 李孝才.
칠장(漆匠) 姜守徵, 金中太, 崔昌文.
다회장(多繪匠) 徐太石, 朴東傑, 金龜齡
마경장(磨鏡匠) 嚴贊伊, 劉再昌, 金碩振, 金大位, 朴明輝, 蔣太信, 金太興.
단추장(丹樞匠) 李成輝.
책장(冊匠) 金世光.
각수(刻手) 金壽海, 劉大昌, 韓福萬, 禹廷弼, 安世彦, 劉道昌, 李時泰, 朴雲秀, 南泰伯, 宋德才, 金致鶴, 池漢相, 金弼雲.
도자장(刀子匠) 金鳳玉, 鄭得亨, 宋廷敏, 李東昌, 朴致武, 李春興, 宋二土里, 金廷瑞, 金重强, 李杰老味, 金同伊, 林萬甲, 朴師玉.
침선비(針線婢) 次愛, 鳳月, 粉愛, 桃花.

(3) 죽책 관련 장인들의 도구

죽책을 만들었던 장인들이 사용한 도구로는 칠장, 천혈장, 각수, 소목장, 침선비의 것이 기록되어 있다.

소목장(小木匠)의 것으로는 도관(陶罐) 1개, 등자쇠(鐙子金) 1개, 양판(凉板) 1닙, 정현면사(正絃綿絲) 3돈, 토화로(土火爐) 1좌, 공석(空石) 2닙, 밧줄(條所) 2근의. 목적(木賊) 2돈, 연일숫돌(延日礪石) 1괴, 사어피(沙魚皮) 반령이다.

칠장의 경우 가장 많은 것들이 사용되어 칠기(漆機) 1부, 토우(土宇) 1칸, 파지의(破地衣) 1부, 사유둔(四油芚) 2번 공석(空石) 5닙, 상면자(常綿子) 2냥 5돈, 걸래포(乃布) 3자, 백저포(白苧布) 3자, 양수염(羔鬚) 1냥, 말갈기(馬鬣) 2냥, 사분자(砂盆子) 1개, 사탕기(砂湯器) 1닙, 사자완(砂磁碗) 4닙, 당사발(唐砂鉢) 1닙, 도소라(陶所羅) 1좌, 방문리(方文里) 2개, 집돼지털(家猪毛) 2냥, 태말(太末) 3되, 소나무 숯(松炭) 5되, 골회(骨灰) 5되, 양판(凉板) 1닙, 가함(假函) 1척, 초둔(草芚) 1부, 송연(松煙) 1냥, 연일숫돌(延日礪石) 1괴, 체(綃篩) 1부, 법유(法油) 4홉, 파유둔(破油芚) 7번, 파장(破帳) 1부이다.

죽책에 글씨를 새기는 각수(刻手)의 도구는 4치 끌(四寸釘) 15개, 착채 끌(鑿釵釘) 15개, 넓은 칼(廣刀) 4개, 오리목줄(鴨項迸) 2개, 새김칼(刻刀) 10개, 백목겹보자기(白木襦袱) 2건, 공석(空石) 2닙, 파유둔(破油芚) 1번, 자물쇠 달린 궤자(櫃子) 1부이다.

구멍을 뚫는 천혈장(穿穴匠)의 경우 소등상(小凳板) 1닙, 비배도(飛排刀) 1개, 중간숫돌(中礪石) 1괴, 참기름(眞油) 1석, 공석(空石) 2닙, 줄우피(迸牛皮) 2조리, 백우피(白牛皮) 1령이다.

경첩 등 장석을 만드는 두석장(豆錫匠)의 경우 소로(小爐) 1좌, 모구피(毛狗皮) 1령, 모로대(毛老臺) 1좌, 양판(凉板) 1닙, 백휴지(白休紙) 4냥, 수건포(手巾布) 1자 5치, 교철(橋鐵) 4개, 공석(空石) 3닙, 5푼정(五分釘) 5개, 등자쇠(鐙子金) 2개, 자물쇠 갖추 궤자(櫃子) 1부, 비누(飛陋) 5홉, 파유둔(破油芚) 1번, 박배장피(朴排獐皮) 1령이다.

9) 현존하는 죽책과 비교

조선왕실의 책문은 옥책 258점, 교명 32점, 죽책 43점, 금책 7점 등 총340점이다. 이중 죽책은 본 공예박물관에 소장된 1점을 비롯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40점,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2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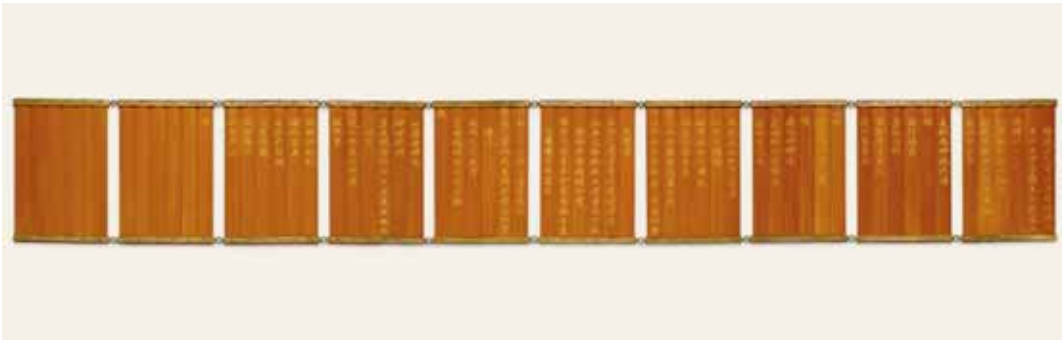
현존하는 죽책 43점은 1649년 현종을 왕세손으로 책봉하는 등 왕세자(손)의 책봉 관련 15건과 왕세자(손)빈의 책봉 관련 11건, 추존 왕과 왕비의 상시호 죽책 13건, 왕의 사친인 후궁의 상시호 죽책이 4건이다. 이중 국왕사친의 상시호 죽책은 선조후궁 인빈 김씨의 상시호 죽책 2건과 영조 후궁 정빈 이씨의 상시호 죽책 2건이 현존하고 있다.

간지	연대	대상	목적	죽책	첩수	소장처
영조 을해	1755	선조후궁 인빈 김씨	상시호	죽책	10첩	서울공예박물관
영조 병신	1776	선조후궁 인빈 김씨	상시호	죽책	8첩	고려대 박물관
정조 무술	1778	영조후궁 영빈 이씨	상시호	죽책	8첩	국립고궁박물관
고종 기해	1899	영조후궁 영빈 이씨	상시호	죽책	8첩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인빈죽책은 현존하는 후궁상시호 죽책유물 4점 중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사례이고, 나머지 죽책들이 8첩인데 비해 10첩으로서 독특함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2. 지정 여부 : 可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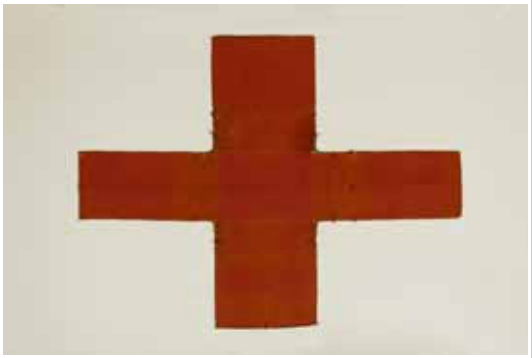
경혜인빈상시호죽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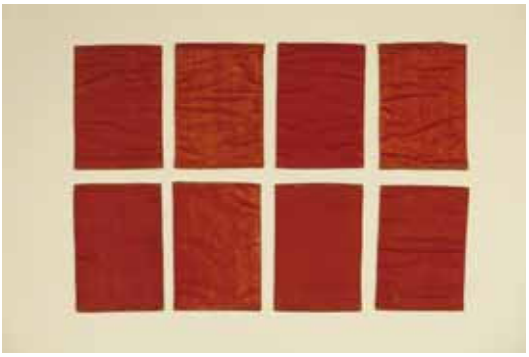
죽책(부분확대)



죽책(접은모습)



갑



격유보 : 8점

【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靑磁陽刻牡丹文金口碗) 】

1. 문화재 현황

신청문화재는 구연에 금속테(金釦)를 두른 청자 완이다. 이물질이 적고 입자가 고운 치밀질 태토를 사용해 물레성형 하였는데 기벽이 얇고 몸체가 사선형에 가깝게 완만한 곡선을 이룬 간결한 형태이다. 안바닥에 작은 원각(內底圓刻)을 두고 중심에 꽃문양을 양각하였으며 바깥으로는 4송이의 커다란 모란과 넝쿨문양을 양각하였다. 꽃과 넝쿨의 윤곽은 조각칼을 뉘어 깎아 얕은 부조로 나타냈고 잎맥은 가늘게 음각(細線刻)했는데 그 표현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다. 구연부 안쪽에도 음각당초문대를 돌려 장식하였다. 전면(全面)의 유색은 반투명한 담청녹색으로 유층에 미세한 기포가 형성되어 유색이 밝고 표면 광택도 은은하다. 따라서 유층을 투과해 보이는 문양 역시 잔잔하게 드러나며 조각의 깊이에 따른 유색의 농담이 부드럽다. 그릇 내외면에 일부 태토가 드러나고 유약이 뭉친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유면은 고른 편이다. 굽 안바닥은 얕게 깎아내고 규석받침을 사용해 받쳐 구워 직경 3~5mm가량의 규석알갱이 흔적이 3곳에 남아 있다. 구연부는 얇고 가는 금속판으로 금구를 붙여 마감했는데 표면이 산화되어 짙은 적갈색을 띤다. 금구의 재질은 2020년 12월 22일 실시한 과학적 조사 결과 동합금(황동)으로 밝혀졌다. 금구 속 구연의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드러난 부분은 손상된 곳 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2. 조사내용

금구자기는 ‘광종(光宗, 재위 949~975)이 원종대사(869~958)에게 ‘금구자발(金釦瓷鉢) 등을 선물하였다’라는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 비문으로 미루어 이미 고려 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문에 등장하는 금구자발이 고려의 생산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전하는 고려청자 가운데 금구를 더한 사례는 파주 혜음원지, 강화도 석릉, 북한의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등에서 다수 발굴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소장품 가운데에는 국보 제253호 <청자양각연당초 상감모란문 은구대접>을 비롯하여 <청자상감 운학문 완>, <청자상감 국당초문 은구합> 등이 전해진다. 이처럼 알려진 금구청자는 대부분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2~13세기에 제작된 대접, 접시, 잔, 탁, 합 등으로 장식기법은 음·양각, 상감 등 다양하다. 금구의 재질 역시 금동, 은, 주석, 황동 등 여러 가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문화재는 대만고궁박물관의 <청자상감 운학문 완>과 기종 및 동합금 계통의 금구 재질이 유사하나 문양의 소재와 장식기법이 다르며, 국보 제253호 <청자양각연당초 상감모란문 은구대접>과는 내면에 양각이 있는 점이 유사하나 압출양각이 아닌 직접 새긴 저부조의 양각을 장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구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처럼 섬세한 양각문양은 주로 매병, 정병, 합 같은 특별한 기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요가 많고 구조적으로 도범(陶范)을 사용하기 유리한 대접, 완, 접시 등 음식용기의 경우는 대부분 압출양각(壓出陽刻 또는 陽印刻)기법으로 양각하였다. 보다 공들인 경우는 압출양각 한 다음 세부를 음각해 강조하거나 상감장식을 더하기도 하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양각 모란당초문 완>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 완은 기형과 문양소재는 물론 문양의 구성까지 신청문화재와 거의 같은 동일 양식이다. 따라서 신청문화재의 문양 역시 이와 유사하게 압출 양각 후 세부를 조각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데, 신청문화재의 문양은 얕은 부조에 가까운 조각, 음각의 섬세함 등을 적절하게 구사해 기법으로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완보다 문양 표현이 섬세하고 입체감이 뚜렷해

조형성 또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신청문화재는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2~13세기경 강진 등지에서 최고급 수요층을 위해 제작된 양질 청자 완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다. 특히, 내면에 표현된 양각당초문은 현전 청자 완들 가운데서도 드물게 뛰어난 양각솜씨를 보여준다. 더불어 금구장식이 더해져 그 희소성과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3. 지정 여부 : 可

상기 신청문화재는 고려시대 금구청자 양식을 대표할 만 한 사례이자 양각청자 완의 대표적인 유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신청문화재 전면



신청문화재 내면



신청문화재 굽



혜음원지 출토 〈청자상감 화문 육각접시〉



〈청자양각 당초문 접시〉



〈청자양각연당초 상감모란문 은구대접〉 전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양각연당초 상감모란문 은구대접〉 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양각연당초 상감모란문 은구대접〉 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운학문 완〉,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청자상감 국당초문은구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Ⅰ 조사개요

□ 조사 내용

❍ 청자양각모란문금구완은 구연에 금속 테두리(금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수리흔적이 없고 유약의 상태도 매우 양호함.

❍ 도자기의 금속테두리(금구) 부착 시기

–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구연에 금속 테두리가 부착되 최초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 광종 때 세워진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에 ‘금구자발(金釦瓷鉢) 등을 선물로 헌납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고려초기부터 도자기의 구연에 금속 테두리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고려 예종 15년(1120년) ~ 17년(1122년) 사이에 건립된 파주 혜음원지(고려 왕실 숙박기관으로 추정)에서 금속테두리가 부착된 채로 출토된 청자소문접시 등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에 금속테두리 부착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도자기의 금속테두리(금구) 부착 목적

– 도자기 구연에 금, 은, 주석, 동합금 등 금속테두리를 부착함으로써 장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착. (복소법 등 처음부터 구연부에 유약을 시유하지 않고 소성한 도자기에 부착한 사례가 많음 : 신안 해저 인양 도자기 등)

– 도자기의 구연이 다른 부분보다 충격에 매우 약해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착.

– 충격으로 구연이 약간씩 파손된 도자기를 수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부착하는 등 세 가지 목적으로 부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도자기의 금속테두리(금구) 부착 방법

– 은, 주석, 동합금 등 금속판을 구연부 크기와 같게 일정한 넓이와 길이로 재단한 다음, 테두리 내부 또는 도자기 구연에 옻칠 등의 접착제를 발라 부착함.

❍ 도자기의 금속테두리(금구) 부착 재료

– 도자기 금속테두리 재료는 금동, 은, 주석, 동합금 등을 주로 사용하였음.

– 금동으로 테두리를 부착한 사례는 백자금테두리사발(북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소장)로 유물명칭이 금테두리로 되어 있는데 금속 테두리의 부식상태를 볼 때 동으로 테두리를 제작한 후 금을 도금한 것으로 판단됨.

– 은을 부착한 대표적인 사례는 국보 제 253호인 청자양인각연당초상감모란문은구대접(국립중앙박물관소장)으로 현재의 상태는 은이 부식되어 검은색을 띠고 있음.

– 주석을 사용한 사례는 파주 혜음원지 출토 청자소문접시나 신안 해저 인양 도자기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로 판단됨.

– 동합금을 사용한 사례로는 고려청자상감문완(대만고궁박물관소장) 등이 있음.

❑ 조사일자 및 조사자

❍ 조사 일자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조사 방법

❍ 성분 분석 : 이동형 XRF를 이용한 표면 성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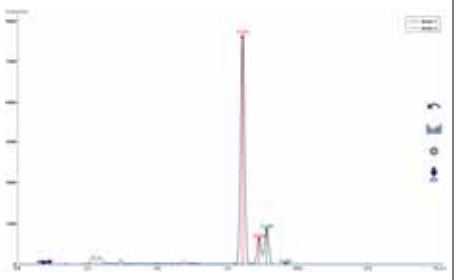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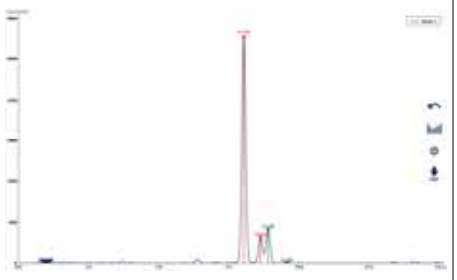
- 성분분석은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Vanta C series, Olympus Corporation, U.S.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금속의 성분분석을 실시
- 분석 조건은 Tube Voltage 10~40kV, Rh Target, Silicon Drift Detector, Alloy mode(Al to U, 2beams x 30sec, total 60sec), spot size 15㎜를 사용
- 분석 장비의 재현성과 정확성은 분석 현장에서 에너지, 강도, 분해능 등을 교정하고 표준시료로 검증한 다음 분석을 실시

Ⅱ 조사결과



그림 1. 분석 위치

표 1. XRF 분석 결과

No.	분석 위치	분석 스펙트럼	분석 결과	추정 안료
1			Cu : 83.4% Si : 7.67%(바탕) Zn : 6.89 Al : 1.46%(바탕) Sn : 0.354%	▶ 동합금(황동)
2			Cu : 80.2% Si : 9.27%(바탕) Zn : 6.31% Al : 3.46%(바탕) Sn : 0.312%	▶ 동합금(황동)

Ⅲ 종합 결론

❍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의 구연부 금속 테두리 성분 분석 결과, 구리(Cu)와 아연(Zn)이 주 성분으로 검출되고, 주석(Sn)이 미량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동합금(황동)[2]으로 확인됨.

【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 】

1. 문화재 현황

–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은 1331년 왕사가 된 천태종 승려인 요원(了圓)이 여러 불교 영험문헌에서 법화경의 영험담(靈驗談)만을 뽑아 간행한 책을 바탕으로 후에 함경도 안변(安邊)의 석왕사(釋王寺)에서 1544(中宗39)년에 2권1책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 본서의 저자 요원(了圓, 1320–1392)은 고려 후기의 천태종 승려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사적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에는 고려 후기 법통설의 중심에 있는 환암(幻庵) 혼수(混修)로 소개하고 있으나, 정작 그가 남긴 저술에 이 책은 빠져 있다. 흔히 혼수는 공민왕에게 불법을 전했으며, 계율을 굳게 지키고 선교(禪敎)의 모든 경전에 통달하였으나, 고려 말 무학 자초(自超)와의 경쟁적 관계에서 물러나 정계에서 멀어지고 건국 초기에 입적함으로써 그의 법계가 점차 쇠퇴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에서 『해동전홍록』 등이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 요원은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社) 계통의 천태종 승려로 여겨진다. 그는 고려 말 원나라의 거듭된 침략과 무신정치(武臣政治)로 말미암은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지식인들의 환멸감이 그들로 하여금 불교에 심취하게 하고 교리의 탐구와 함께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현세의 평안을 기원하는 경향으로 흘렀다고 할 수 있다.

– 『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은 법화경을 지니고 독송, 필사, 강설하는 여러 가지 영험들의 실례를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 경전과 논서(論書)에서 찾아 엮은 것이다. 당나라 혜상(慧詳)의 『홍찬법화전(弘贊法華傳)』 10권과 송나라 종효(宗曉)의 『현응록(現應錄)』 4권, 고려 진정국사(眞淨國師)의 『해동전홍록(海東傳弘錄)』 4권 및 그 밖의 문헌들에서 기이하다고 생각되는 107개의 영험설화를 선별하여 편찬한 것이다. 서품에 앞서 법화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구마라집(鳩摩羅什)의 설화를 소개하여 번역자의 전기(傳記)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해동전홍록』에서 전하던 내용들임을 밝히고 있고, 또 중국의 설화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설화도 19편이나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중국 문헌에 나타난 신라 설화 3편도 있다. 법화경 각 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권이 9단, 하권이 8단으로서 모두 17단으로 편찬되어 있다.

– 상권 제1단에는 법화경의 서품(序品)과 관련하여 『태평광기(太平廣記)』와 『법화홍찬』에서 영험담 4편을 옮겨 실었다. 제2단에는 법화경의 진리를 말해 주는 단원인 방편품(方便品)과 관련하여 『법화홍찬』, 『영서집』, 『현응록』에서 4편을 뽑아 실었다. 제3단에서는 비

2) 황동(brass, 黃銅)은 구리에 아연을 첨가하여 만든 합금이다. 일반적으로 금속 문화재에서 황동으로 표기할 때 아연(Zn) 함량이 10%~40% 정도 검출되었을 때 사용하지만, 청자 양각 모란문 금구완에서는 아연 함량이 낮아 구리 합금(Copper alloy)으로 표기하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품(比喩品)·신해품(信解品)·약초유품(藥草喩品)·수기품(授記品)과 관련하여 『법화홍찬』에서 6편의 영험담을 옮겨 싣고 있다. 제4단에는 화성유품(化城喩品)과 관련하여 『현응록』, 『법화홍찬』에서 4편을 옮겨 수록하였다. 제5단에는 수기품·인기품(人記品)과 관련하여 6편을, 제6단에서는 법사품(法師品)·견보탑품(見寶塔品)과 관련하여 6편을 수록하였다. 제7단에는 제바품(提婆品)·권지품(勸持品)과 관련하여 6편을, 제8단에는 안락행품(安樂行品)과 관련하여 8편의 설화를 소개하였다. 제9단에는 용출품(涌出品)·수량품(壽量品)·공덕품(功德品)과 관련하여 7개의 설화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하권이 시작되는 제10단에는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과 관련하여 6편을, 제11단에는 상불경품(常不輕品)·신력품(神力品)·촉루품(囑累品)과 관련하여 6편을 실었다. 제12단에는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과 관련하여 10편을, 제13단에는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과 관련하여 6편을 실었다. 제14단에는 보문품(普門品)과 관련하여 15편을, 제15단에서는 다라니품(陀羅尼品)·장엄품(莊嚴品)·권발품(勸發品)과 관련하여 4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제16단과 제17단에는 법화경의 품과 관련 없이 각각 12편과 4편의 영험담(靈驗談)을 수록하여 놓았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불교 특색의 하나인 법화사(法華社)나 백련사와 같은 결사운동(結社運動)으로 번지고, 나아가 이들은 법화경에 근거한 천태종의 지관(止觀)의 수행과 미타신앙을 겸행하는 특징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은 당시 교계의 상황을 담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법화경 강좌의 교재였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청 대상본인 자운사 소장본은 조선조 함경도 안변 석왕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상하 2권 1책(57張)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는 卍字紋의 능화판 표지이며, 표지에 서명이 '蓮華驗'으로 묵서 되어 있고, 표지 우측 하단에 '竹史'라 묵서되어 있는데 법명이 죽사인 스님이 원래 소장한 것으로 보인다. 권수제는 '法華靈驗傳'로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바로 저자표시가 없으나, 네 번째 줄 이후에 '兩卷合107奇異'라는 글 아래에 '觀識沙門了圓錄'이라는 저자사항이 보이고 있어 요원이 편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책의 크기는 26.7×17.7 cm이며, 광곽의 형태는 네 변이 단선으로 판각된 사주단변(四周單邊)이며, 반곽의 크기는 17.9×13.6 cm이다. 광곽의 우측 여백에 시주자가 새겨져 있다. 반엽(半葉)의 줄자수는 11줄 20자로 되어 있고 주는 두줄로 되어 있다. 판면의 중앙 부분인 판심에는 상하에 서로 내향하는 흑어미와 大黑口가 있는데 간혹 白口도 나타나고 있다. 어미 사이의 판심제는 '法華靈驗'이다. 그리고 간기는 권말에 '嘉靖二十三年甲辰(1544)三月日咸鏡道安辺釋王寺開板'이라 되어 있다.

- 고려말에 천태종 소속의 법화도량이었던 수원 만의사판(萬義寺板)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존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법화영험전은 1534년(중종 29)에 전라도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 것으로 경상남도 문화재 제645호로 지정된 운암사 소장본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로는 본 조사대상본인 자운사가 소장하고 있는 함경도 안변의 석왕사(釋王寺)판으로 1544년(중종 39)에 간행한 것이다. 그리고 1652년(효종 3) 전라도 보성 개흥사(開興寺)판이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송광사 등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 현존하고 있는 법화영험전이다.

- 신청 대상본은 흔치 않은 판본으로 간기가 뚜렷하게 '嘉靖二十三年甲辰(1544)三月日咸鏡道

安辺釋王寺開板’이라 되어 있고 상태 역시 양호함에 따라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화경 각 품의 내용에 맞추어 영험담들을 서술하고 있어 고려시대의 법화신앙과 불교설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더욱이 유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해동전홍록』 4권의 내용도 일부나마 알 수 있고, 신라와 고려 승려들의 생애와 설화에 관한 내용도 실려 있다. 앞서 밝힌 편집의 유래에 실린 문헌 외에도 『영서집(靈瑞集)』·『송고승전(宋高僧傳)』·『태평광기』·「법화사비(法華寺碑)」 등 18종의 전적이 소개되고 있는 등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의 여러 경론(經論)과 역대 조사들의 어록(語錄) 중에서 선가의 귀감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주해(註解)를 달고 송(頌)과 평(評)을 붙여서 편찬한 책이다. 그리고 합본되어 있는 『선교석(禪敎釋)』은 휴정의 저술로, 불교에 있어서 선과 교(敎)의 차이점을 후학들에게 논술한 책이다. 이 책은 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지침이 될 수행법과 사상을 수록하고 있다.

찬자 휴정(休靜, 1520-1604)은 자는 현응(玄應), 호는 서산 또는 청허(淸虛)이며, 별호는 백화도인(白華道人), 풍악산인(楓岳山人), 두류산인(頭流山人), 묘향산인(妙香山人), 조계퇴은(曹溪退隱) 등 그가 주석하는 곳의 지명을 따서 불리었다. 명종(明宗) 4년(1549) 승과(僧科)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僧兵)을 모집하여 총수(總帥)가 되었다. 서울 탈환에 공을 세워 선교도총섭(禪敎都總攝)이 되었으나 선조(宣祖) 27년(1594) 제자 유정(惟政)에게 물려 주고 묘향산(妙香山) 원적암(圓寂庵)에서 여생을 보냈다. 사후에는 나라에서 수충사(酬忠祠)를 지어 그의 공을 기렸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선과 교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을 위주로 하여 교를 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불교(通佛敎) 운동은 『선가귀감』보다 22년 뒤에 저술된 『선교석』에서 더욱 명확한 이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언해본과 한문이 여러 차례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정법사 소장의 조사 대상본에는 뒤에 서산 휴정이 친히 편찬하고 직접 쓴 『선교석』이 합철되어 있다. 그 내용은 먼저 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연유를 밝히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그 뒤를 이어 저자 휴정과 교학자(敎學者)와의 문답형식으로 선과 교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본론 13항목이 이어지도록 편성되어 있다.

2. 조사내용

휴정의 『선가귀감』은 특이하게도 다른 불서와는 다르게 먼저 언해본이 먼저 간행된 이후 이 언해본을 선별해서 한문이 간행되었다. 현재까지 언해본 2종과 한문본 10여종 이상이 유포되고 있다. 이 중 정법사 소장의 조사 대상본은 1633년에 경기도 삭녕(지금의 연천)의 용복사(龍腹寺)에서 화사 혜순(惠淳)이 주관하고 각수 조운(祖云) 등 9인이 판각 간행한 것이다.

정법사 소장의 용복사본은 권말의 간기에 의하면 1633년 경기도 삭녕의 용복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조사 대상본은 불분권 1책으로 결장이 없이 전체 45장이며, 합철된 『선교석』이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황은 능화문양이 들어 있는 두꺼운 한지를 사용하여 5침으로 장철한 선장 형태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9.3×18.4㎝이다. 표제는 ‘禪家龜鑑’로 묵서되어 있으며, 우측 아래에 원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다.

권수의 서명은 표제와는 동일하게 ‘禪家龜鑑’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다음 행에 별도의 저자표

시는 기재하지 않고 공간으로 비어 있다. 그리고 권수제에 이어 다음 행으로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본문의 천두(天頭) 부분에는 간혹 두주(頭註)는 없으나, 본문 사이에는 현토 구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필로 묵서되어 있다.

조사 대상본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18.2×13.8㎝이다. 반엽을 기준으로 판면은 모두 8행으로 한 행에는 16자씩 배자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에는 간혹 대흑구가 나타나고 어미는 흑어미와 2엽화문어미가 혼재된 상태이며, 어미 사이에 판심제 '龜鑑'과 장차가 표시되어 있다.

권말에는 권말제 다음 장에 왕실의 축원문에 이어 시주질과 연화질이 차례로 새겨져 있으며, 맨 끝부분에 '崇禎6年癸酉(1633)月日 朔寧龍腹寺留板이란 간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간기를 통해서 조사 대상본은 1633년에 삭녕의 용복사에서 간행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권말에는 간행기록과 함께 시주질과 개판에 참여한 화주(化主)를 비롯하여 연판(鍊板)에 참여한 목수(木手)와 각수(刻手)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 책의 간행과정에 대한 전말을 자세히 알 수가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혜순(法淳)이 화주를 맡아 개판 작업을 주관하였으며, 조운(祖云) 등이 각수로 참여하여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용복사판은 판식(板式) 상의 특징으로 볼 때 앞서 1618년에 전라도 순천 송광사(松廣寺)에서 개판된 판본을 저본으로 1633년에 용복사에서 복각 간행한 판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서산 휴정의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조선 중기 사이에만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10여 종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조사 대상본인 용복사본은 현재 국립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3. 지정 여부 : 可

- 이번에 지정 신청한 자운사 소장본은 1544년에 중간한 것으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희귀한 함경도 안변 석왕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 신청 대상본이 비록 중간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현존하는 판본이 매우 희귀함에 따라 본 자료는 조선 전기의 서지학 및 불교학 연구 등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전체 사진		
		
표지	본문(권수제면)	간기
		

【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護國地藏寺 佛腹藏 저고리)】

1. 문화재 현황

- 호국지장사 복장물 저고리는 최초 불상 조성 시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저고리의 형태와 특징으로 보면 16세기 중반 이전 유물로 추정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하고 좋은 자료이다.
- 호국지장사 복장물 저고리는 깃 · 고름 · 곁마기에 자주색 별색을 댄 회장저고리로, 저고리 전체적으로 물 얼룩이 있고 이로 인해서 안감에는 분홍색 곰팡이 자국이 있다. 물 얼룩의 자국이 저고리를 접어서 보관할 때 겹쳐치는 부위에 반복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복장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안감은 70% 이상이 열화되어서 일부 박락된 부분도 있고, 손을 대면 바스러질 것 같은 상태이다. 곁마기의 자색이 이염되어서 안감에 자색 얼룩이 남아 있다. 특히 깃고대 안감 쪽은 많이 열화되고 박락 부식된 것으로 보아서 복장하기 이전에 착용하면서 생긴 오염이며, 저고리의 깃부분에 특히 열화가 빨리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깃고대는 모두 열화 박락되어서 솜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겉감 쪽 동정도 많이 열화되어서 부분적으로만 동정감이 남아있다. 저고리 도련에서 4.6㎝ 올라온 지점에 겉안감을 고정하기 위해 바느질한 세 땀 상침이 있다. 전체적으로 좀벌레의 흔적으로 작은 구멍(0.2~0.3㎝지름)이 10여 군데 이상 보인다.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2. 지정 여부 : 可

호국지장사 불복장 저고리는 17세기 전반 시기로 추정되는 저고리형태 및 조형적인 특징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겉감은 곱게 다듬이한 짙은 초록색 주(紬)이고, 안감은 소색 주(紬)이며, 깃 · 고름 · 곁마기에 자주색 별색을 대었고, 저고리 및 회장감의 색상 및 직물이 잘 남아 있다. 겉깃은 목판형이나 깃끝이 당코깃 형태인 목판당코깃이고, 당시에 유행한 짧은 고름이 달려 있다. 현존하는 동시대의 유물은 대부분 출토유물이어서 색상을 알 수 없었으나, 이 저고리를 통하여 당시 저고리의 색상 및 염색의 연구 뿐 아니라, 저고리 봉재법, 저고리의 형태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따라서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저고리(겉감)



저고리(겉섶쪽)



저고리(안감)



저고리(안감 쪽 깃부분)



저고리 동정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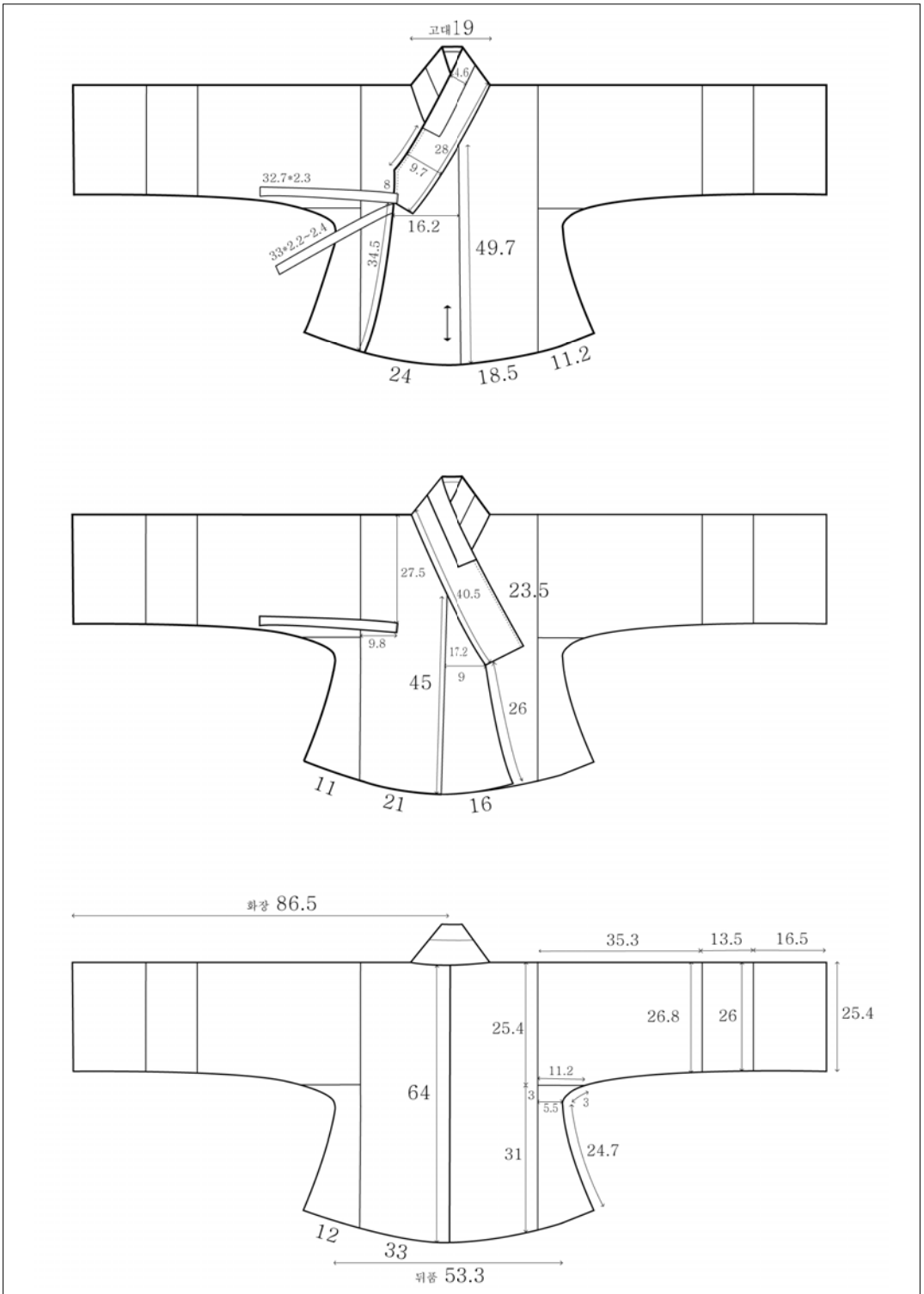
상침실



상침실



상침실



호국지장사불복장저고리 실측도면(저고리 앞면, 후면)

【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固城李氏 錦菴家 經書筆寫本 4種)】

1. 문화재 현황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固城李氏 錦菴家 經書筆寫本 4種)은 경북 안동의 고성이씨 금암가에 세전되어 오던 시전(詩傳), 서전(書傳), 주역(周易), 예기(禮記) 4종의 경서를 필사한 책이다.

책과 함께 필사된 대산 이상정(李象靖, 1710~1781)의 글을 통해서 금암 이시룡(李時龍, 1682~1722)의 아들 이원욱(李元郁)이 1775년 이전에 필사하여 아들 이홍중(李弘重)에게 전해준 책 임을 알 수 있다. 고성이씨 금암 이시룡은 자(字)가 운경(雲卿), 호는 금암(錦菴), 군수 이후영(李後榮, 1649~1712))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배움에 부지런하고 효성이 두터웠다고 한다.

조사대상인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의 전체 내용은 시전 20권 4책, 서전 10권 3책, 주역 24권 5책, 예기 30권 5책 등 총 17책으로 구성되었다. 금안 이시룡의 아들 이원욱(李元郁)에 의해서 필사되었으며 이는 주역 권21의 마지막에 첨부된 대산 이상정(李象靖)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정은 친필로 작성한 글에서 외형(外兄)인 매헌공 이원욱이 나이 장차 70이 되어가는데도 4경을 손수 써서 그 아들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일부 번역한 것은 다음과 같다.(한문원문은 첨부 사진 참조)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자식에게 상자 가득 금을 주는 것이 경서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나의 외형 이공(이원욱)은 나이 70이 되어가는데도 역경, 시경, 서전, 예기를 친히 필사하여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었다. 옛 사람에 비하면 4경은 3경을 더하였으니 어찌 상자의 금덩이에 그칠 뿐이겠는가. 더군다나 70노인의 정기가 곧 이에 미칠 수 있었으니 더욱 공경할 만 하다. (후략) ....을미(영조51, 1775) 섭제월(攝提月 1월) 26일 내제 한산 이상정

조사대상인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의 판식은 계선, 판심이 없는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23.2×13.9㎝(시전), 23.0×14.1㎝(서전) 22.7×13.5㎝(주역), 22.5×13.4㎝(예기)이다. 각 책의 변란은 필사되었는데, 책의 반곽은 18.4×11.1㎝(시전), 18.1×11.2㎝(서전), 17.6×10.0㎝(주역), 17.4×10.3㎝(예기)이다. 표지는 개장한 흔적이 없으며, 오침안(五針眼)의 선장(線裝)이다. 표지서명은 각각 “詩傳”, “書傳”, “周易”, “禮記”이며, 앞서 언급한 이상정의 친필 글씨는 주역의 권21이 끝난 다음에 필사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고성이씨 금암가 경서 필사본 4종에는 필사자 이원욱의 아들인 이홍중의 장서인인 “李弘重印”, “景仁” 등도 확인된다. 아들에게 남겨주었다는 이상정의 글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2. 원형유지정도

조사대상 책의 표지는 처음 제작 당시에 장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식 포갑으로 시전·서전, 예기, 주역의 3포갑이 되어 있으나 원형이 아니며 근래에 비슷한 규격의 포갑을 묶음으로 둔 것이다. 본문과 표지 하단 일부가 훼손된 흔적이 여러 군데 있으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 지정 여부 : 可

조사 대상 서책은 조선 후기 안동지역의 대표적 양반가인 고성이씨가에 전해지는 경서로서 고성이씨 중에 금암 이시룡가의 이원욱이 필사하여 세전되어 오던 시전, 서전, 주역, 예기 4종의 경서이다.

이 필사본의 특징은 동일한 인물에 의해서 일관된 필법으로 작성되었고 그 시기와 필사 주체, 배경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정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암 이시룡의 아들 이원욱의 친필인 것으로 여겨지며 18세기 후반 양반가의 독실한 수양과 학문태도 등을 엿볼 수 있다. 사서나 삼경 또는 오경의 필사본은 전존하는 것이 매우 많지만 이처럼 필사자와 전래과정 등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흔치 않으므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소중하게 보존하고 교육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시전 서전 표지



포갑표지



주역 본문



주역표지



장서인



장서인 서전본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10호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246 - 10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사업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 제2020-317호(2020.7.23)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2.5	-	385,352.5	·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 · 업무 · 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88	증)439	4,327	10,002	증)639	10,641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64	-	2,664	7,032	-	7,032	세대당 2.64인
	60㎡이하	1,153	-	1,153	3,044	-	3,044	
	60~85㎡이하	1,160	-	1,160	3,062	-	3,062	
	85㎡초과	351	-	351	926	-	926	
존치 정비구역	소계	-	-	-	-	-	-	
	60㎡이하	-	-	-	-	-	-	
	60~85㎡이하	-	-	-	-	-	-	
	85㎡초과	-	-	-	-	-	-	
존치관리구역		1,224	증)439	1,663	2,970	증)639주1)	3,610	역세권 청년주택

주1) 인구수(인)는 역세권청년주택 단독세대는 1.0인, 신혼부부세대는 2.0인 적용하여 산정.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변경)사유
-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 주택수 : 3,888호 → 4,327호 - 인구수 : 10,002인 → 10,641인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439세대 건립으로 인한 주택 및 인구수 증가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20) 존치구역의 정비 및 정비계획 (변경)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1)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81,187.9	-	181,187.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1996.6.7.)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1,187.9	-	181,187.9	100.0
주거지역	소계	127,572.9	-	127,572.9	70.4
	제1종일반주거지역	3,854.8	-	3,854.8	2.1
	제3종일반주거지역	47,092.0	-	47,092.0	26.0
	준주거지역	76,626.1	감)1,098.04	75,528.06	41.7
일반상업지역		53,615.0	증)1,098.04	54,713.04	30.2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① 최대개발규모 (변경없음)

②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F	10,611.1	-	-	-

– 변경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F	10,611.1	1	2,031.92	단일필지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구의동 246-10번지에 한하여 획지계획 추가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획지계획을 지정하고자 함

③ 공동개발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①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정용도 계획 (변경)

구분	지정용도		비고
	기정	변경	
가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주1)공동주택(주거복합)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불허용도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전층	비고
일반상업지역 (A)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단독주택 ·고시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제외) ·위락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야영장 시설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추가하여 적용함
준주거지역 간선변 (B)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및 창고시설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준주거지역 이면부 (C)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제3층 일반주거지역 (D)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 발전시설	-

– 변경

구분	전층	비고
일반상업지역 (A)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 단독주택 • 고시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자원순환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야영장 시설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추가하여 적용함

구분	전층	비고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1층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3이상을 기준시간(08:00~22:00)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 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주거복합건물의불허용도 적용 예외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청년주택에 추가하여 적용함
준주거지역 간선변 (B)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준주거지역 이면부 (C)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D)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 발전시설	-

※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대지에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의 복합)은 불허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주거복합건물의 불허용도 적용을 예외로 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 권장용도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전층	비고
일반상업지역 (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운동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 판매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교육연구시설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하여 적용 예외

구분	전층	비고
준주거지역 간선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
준주거지역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판매시설 중 상점 ·노유자시설	-
미가로 먹자골목 (4)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주)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 권장용도 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변경

구분	전층	비고
일반상업지역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운동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적용 예외
준주거지역 간선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
준주거지역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판매시설 중 상점 ·노유자시설	-
미가로 먹자골목 (4)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주)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 권장용도 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지정용도 변경 (가) ·불허용도 변경 (A) ·권장용도 변경 (1)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구의동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건설을 위해 지정용도, 불허용도 및 권장용도를 변경하고자 함

②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준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주)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400%	-
일반상업지역	아차산로변	300%	630%	800%	-
	자양로변	400%	660%	800%	-
	구의동 246-61,62,63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1,000%	1,104%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대지에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의 복합)은 불허함

주6)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beta-\alpha)/\beta$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	

주7)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주택연면적비율(%)	일반상업지역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36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
50 이상 ~ 60 미만	390% 이하	650% 이하		
50 미만	400% 이하	660% 이하		

주8)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필지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주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주5), 주6), 주7)의 적용을 예외로 함

– 변경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h>비고</th></tr>
<tr><td colspan="2">제3종일반주거지역</td><td>250%</td><td>250%</td><td>법정용적률의 2배이하</td><td>-</td></tr>
<tr><td>준주거지역</td><td>준주거지역</td><td>300%</td><td>360%</td><td>400%</td><td>-</td></tr>
<tr><td rowspan="4">일반
상업지역</td><td>아차산로변</td><td>300%</td><td>630%</td><td>800%</td><td>-</td></tr>
<tr><td>자양로변</td><td>400%</td><td>660%</td><td>800%</td><td>-</td></tr>
<tr><td rowspan="2">구의동 246-61,62,63</td><td colspan="2">기본용적률</td><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rowspan="2">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td></tr>
<tr><td colspan="2">1,000%</td><td colspan="2">1,104%</td></tr>
<tr><td rowspan="2">구의동 246-10</td><td colspan="2">기본용적률</td><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rowspan="2">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td></tr>
<tr><td colspan="2">827.1%</td><td colspan="2">960% 이하</td></tr>
</table>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 따름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단,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1.7.)」을 준용

※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산정 시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결정(변경) 고시 이후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대지에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의 복합)은 불허함

주6)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table>
<tr><th colspan="2">기준용적률</th><th colspan="2">허용용적률</th><th colspan="2">상한용적률 배분</th></tr>
<tr><td colspan="3">구분</td><td>주거건립가능</td><td>비주거건립</td></tr>
<tr><td colspan="3" rowspan="2">〈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beta-\alpha)/\beta$</td></tr>
<tr><td colspan="2">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td></tr>
<tr><td colspan="3" rowspan="2">〈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7/10</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3/10</td></tr>
<tr><td colspan="2">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td></tr>
</table>

주7)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주택연면적비율(%)	일반상업지역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36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
50 이상 ~ 60 미만	390% 이하	650% 이하		
50 미만	400% 이하	660% 이하		

주8)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필지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주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주5), 주6), 주7)의 적용을 예외로 함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기본용적률 827.1% - 상한용적률 960% 이하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함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변경없음)
- 역세권청년주택사업(246-10번지) 용적률 적용 기준 (신설)

항목		적용기준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 : 대지면적의 17.3% 이상 ·상한 : 증가된 용적률 1/2이상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준용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용적률 부여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용적률 기준 10%이상 20%이하	
주택 건설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364호 이상 산정식 : (전체건립호 - 299호)×2.5×1.25	
주차장 설치	주차대수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30㎡ 이하 : 0.25대/세대 - 전용50㎡ 이하 : 0.3대/세대 ·아파트 - 전용30㎡ 이하 : 0.5대/세대 - 전용60㎡ 이하 : 0.8대/세대 ·공공업무시설 : 200㎡ 당 1대 ·근린생활시설 : 134㎡ 당 1대	
	자주식	·120대 이상인 경우 자주식 주차창 1/3이상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따름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기정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100m 이하	-
	간선부	70m 이하	-
준주거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57m 이하	-
	간선부	55m 이하	-
	이면부(미가로 주변)	48m 이하	-
	자양로 이면부	24m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48m 이하	-

– 변경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100m 이하	-
	간선부	70m 이하	-
	구의동 246-10	76m 이하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준주거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57m 이하	-
	간선부	55m 이하	-
	이면부(미가로 주변)	48m 이하	-
	자양로 이면부	24m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48m 이하	-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 70m이하 → 76m이하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변경 결정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변경없음)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구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기정	변경	
건축 한계선 (변경없음)	간선도로변	·3~5m(대지분할가능선 제외)	좌동	결정도 참조
	이면도로변	·1~2m(대지분할가능선 제외)	좌동	
1~2층 벽면한계선 (신설)	246-10번지 내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총 6m - 필요시 연결통로 설치 가능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의동 246-10번지에 한하여 신설 – 공공보행통로변 1~2층 벽면한계선 폭원 6m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246-10번지 내 1~2층 벽면한계선 지정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변경없음)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기준		비고
		기정	변경	
공지 (변경없음)	공개공지	·3개소	좌동	결정도 참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3~5m(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이면도로변 : 1~2m(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좌동	
통로 (변경)	공공 보행통로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 구의동 246-10 제외 ·구의동 246-10(1~2층 벽면한계선)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 구의동 246-10 제외로 변경 ·구의동 246-10(1~2층 벽면한계선) 신설	·대상지 내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폭원 및 높이 확보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변경없음)

•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공공기여 계획 (변경)

• 구의동 246-61번지 (변경없음)

• 구의동 246-10번지 (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827.1% 이하	960% 이하	·기본 : 대지면적의 17.3% 이상 주1) ·상한 : 증가된 용적률 1/2 이상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준용
※ 단,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1.7.)」을 준용

(2) 자양9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Ⅳ.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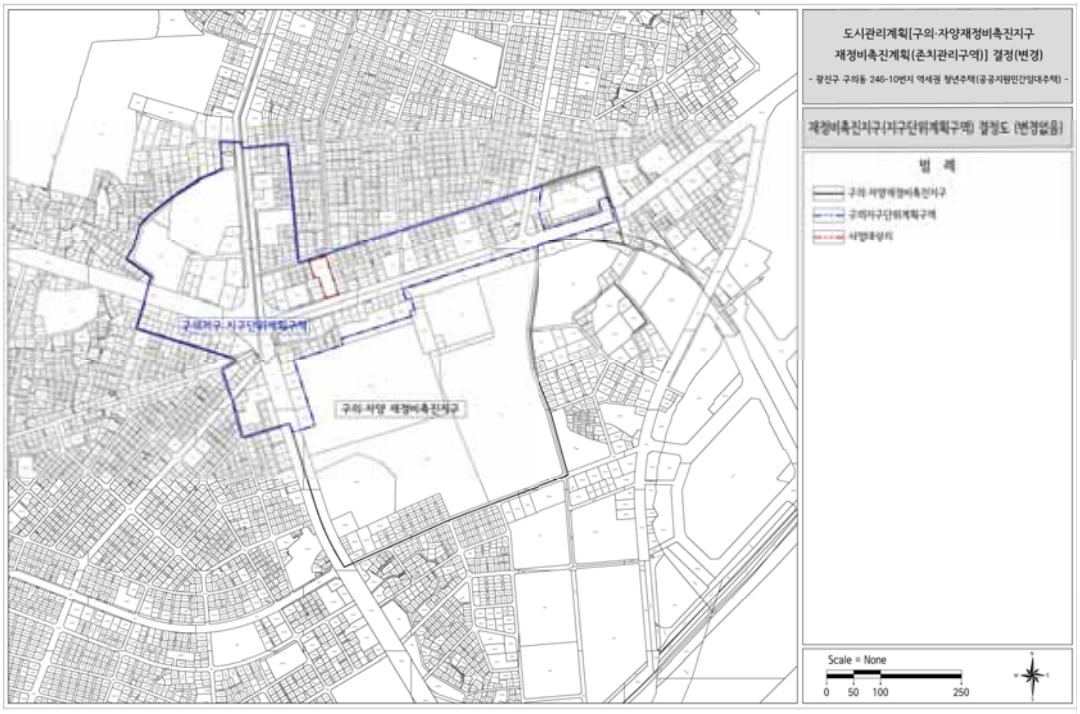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 도서로 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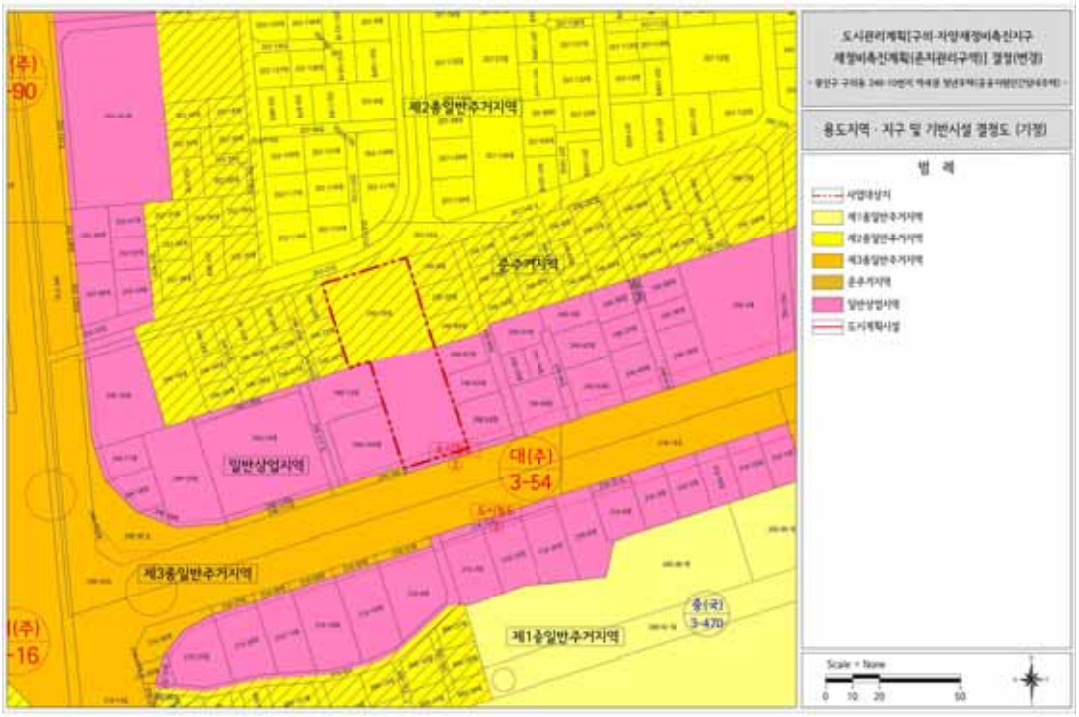
Ⅵ.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7)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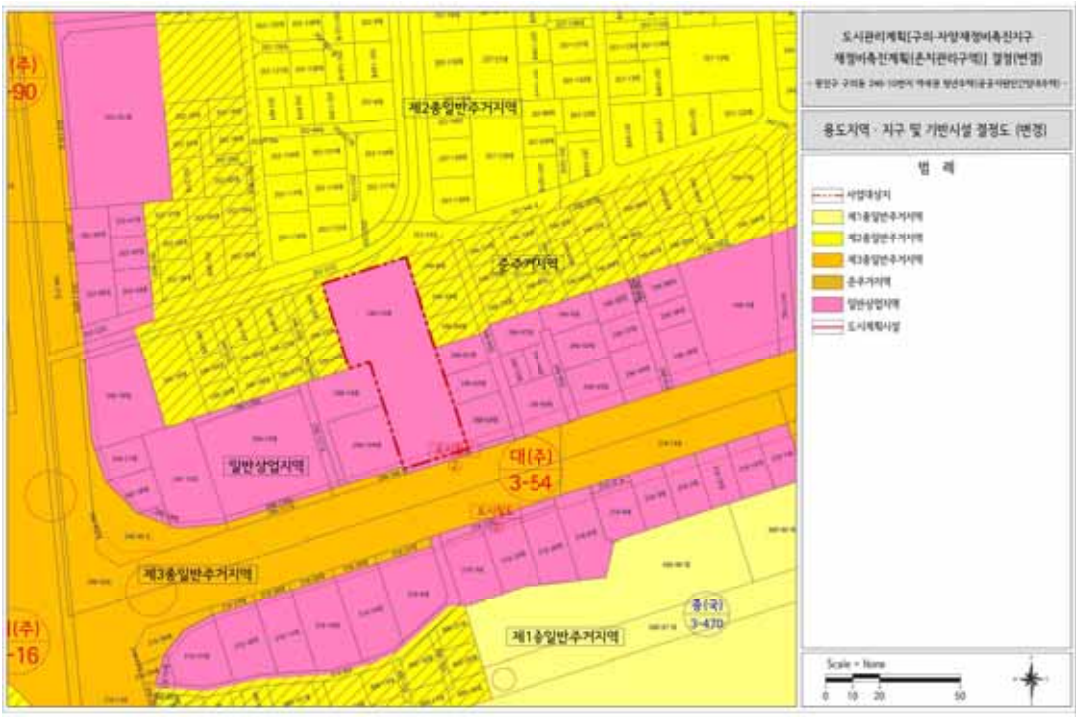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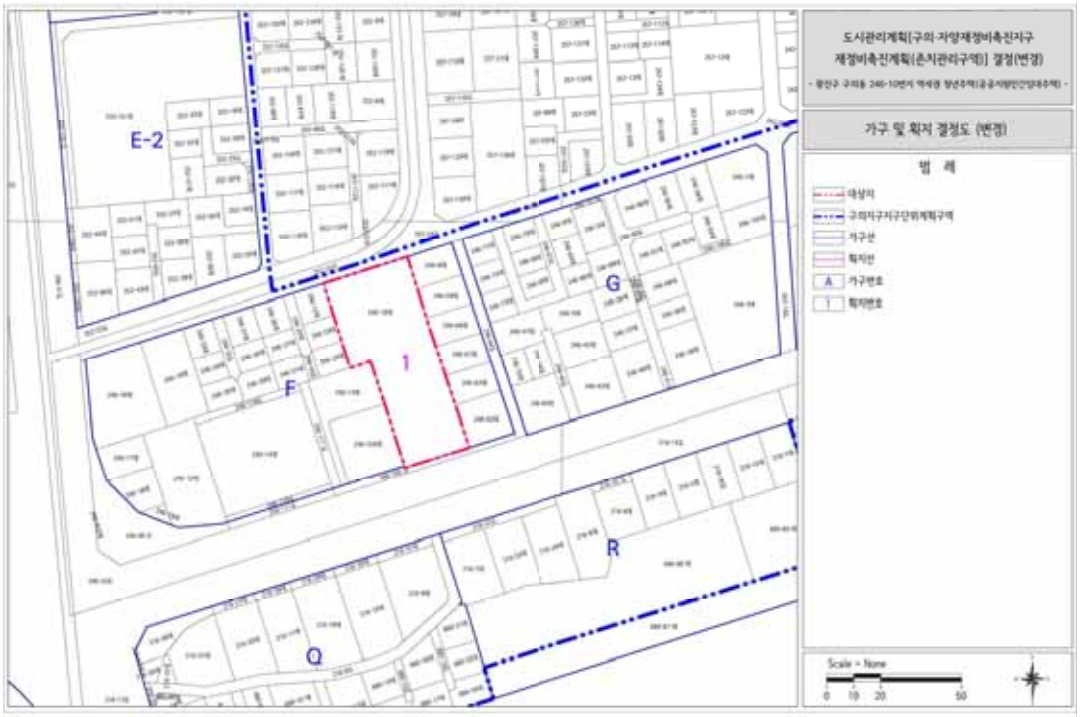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종합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종합결정도(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11호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 12. 26.)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 11.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2011. 2.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 4. 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 5.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 10.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 12.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2016. 8.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호(2017. 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8호(2017.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4호(2017. 8. 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0호(2018. 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4호(2020. 3.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9호(2020. 12.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2호(2021. 8. 26.)로 변경결정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407.5	-	275,407.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 기준연도: 2006년
- 목표연도: (기정) 2025년 / (변경) 2027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75,407.5	-	275,407.5	100.0	
업무	소계	44,663.8	증) 869.0	45,532.8	16.5	
	일반업무	22,418.1	감) 5,083.0	17,335.1	6.3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업무복합	22,245.7	증) 5,952.0	28,197.7	10.2	
상업	소 계	128,902.0	증) 1,460.5	130,362.5	47.4	
	판 매	19,549.1	감) 4,098.0	15,451.1	5.6	
	일반상업	45,950.4	증) 4,686.5	50,636.9	18.4	
	근린상업	24,136.1	-	24,136.1	8.8	
	주상복합	39,266.4	증) 872.0	40,138.4	14.6	
주 거		36,923.1	-	36,923.1	13.4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64,918.6	감) 2,329.5	62,589.1	22.7	
	공 원	3,950.0	감) 1,648.0	2,302.0	0.8	
	공공공지	487.4	감)71.0	416.4	0.2	
	도 로	60,000.9	감) 610.5	59,390.4	21.5	
	경 로 당	171.3	-	171.3	0.1	
	사회복지시설	309.0	-	309.0	0.1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신설 및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존세대수 (세대)	계획세대수(세대)				인구수 (인)
				소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기존세대	
합 계		기정	2,851	3,856	1,478	251	2,127	9,640
		변경	2,851	3,976	1,349	408	2,219	9,940
재정비 촉진구역	천호3	기정	48	116	116	-	-	290
		변경	-	-	-	-	-	-
	천호4	기정	360	670	499	171	-	1,675
	성내1	기정	44	180	180	-	-	450
		변경	-	-	-	-	-	-
	성내3	기정	76	160	160	-	-	400
	성내5	기정	-	407	327	80	-	1,020
	천호8	기정	-	-	-	-	-	-
		변경	196	520	363	157	-	1,300
	소 계	기정	528	1,533	1,282	251	-	3,833
		변경	632	1,757	1,349	408	-	4,392
존치 정비구역	천호8	기정	196	196	196	-	-	490
		변경	-	-	-	-	-	-
	소 계	기정	196	196	196	-	-	490
		변경	-	-	-	-	-	-
존치관리구역		기정	2,127	2,127	-	-	2,127	5,317
		변경	2,219	2,219	-	-	2,219	5,548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신설 및 해제)에 따른 계획세대수 변경 등으로 인주주택 수용계획 변경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66,016.0	감) 174.0	65,842.0	-
도로		60,000.9	감) 610.5	59,390.4	-
공원·광장·공공공지·녹지		4,437.4	감) 1,719.0	2,718.4	-
공공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09.0	증) 1,273.4	1,582.4	(대지지분+건축물)기부채납
	공공청사	1,268.7	-	1,268.7	(대지지분+건축물)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	증) 882.1	882.1	대지지분: 기부채납 / 건물: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신설 및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가) 공원·녹지계획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합 계	개소수(개)	13	감) 3	10	-
	면 적(㎡)	4,437.4	감) 1,719.0	2,718.4	-
공 원	개소수(개)	7	감) 2	5	-
	면 적(㎡)	3,950.0	감) 1,648.0	2,302.0	-
공공공지	개소수(개)	6	감) 1	5	-
	면 적(㎡)	487.4	감) 71.0	416.4	-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신설 및 해제)에 따른 공원 · 녹지계획 변경

나)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

구 분	도면번호		도로구분	류 별	폭 원(m)	연 장(m)	비 고
도로 확보 계획	19	기정	소로	2	8	100	
	5	기정	소로	3	6	308	
	7	기정	중로	3	12	163	
		변경	중로	3	10~12	163	천호3존치관리
	21	기정	소로	1	8~10	502	
	20	기정	중로	2	11~14	141	
	6	기정	중로	3	3~15	277	로데오거리

구 분	도면번호		도로구분	류 별	폭 원(m)	연 장(m)	비 고
	13	기정	소로	1	6	67	
	1	기정	소로	2	6~8	162	
	8	기정	소로	1	10~12	240	
	18	기정	소로	1	10	43	
	2	기정	소로	2	8	93	
	23	기정	중로	1	20	195	천호8촉진
		변경	중로	1	20	195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 실효(2020. 7. 2.)된 도로의 재결정
	14	기정	소로	2	8	126	
		변경	소로	2	3~6	118	천호3존치관리
	12	기정	소로	2	8	121	
	17	기정	소로	3	4	51	
	11	기정	소로	3	4	90	
	3	기정	소로	2	8	6	
	4	기정	소로	3	4.5	8	
	10	기정	소로	3	6	18	
	15	기정	소로	2	8	191	
		변경	소로	2	8	91	성내3촉진
	16	기정	소로	3	6	114	
	22	기정	소로	2	8	100	
	24	기정	소로	2	8	54	
	25	기정	중로	2	8~20	1,065	진황도로
		변경	중로	2	8~20	1,065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 실효(2021. 6. 5.)된 도로의 재결정(천호8촉진)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신설 및 해제)에 따른 교통계획 변경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가) 정비예정구역(변경)

지구명	구역명	구분	위치	면적(㎡)	정비수법	비고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1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55-8번지 일대	10,505.8	전면개발	-
	천호3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09-3번지 일대	5,227	전면개발	-
		변경	천호동 409-3번지 일대	-	-	촉진구역 해제
	천호4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17,394.2	전면개발	-
	천호8촉진구역	신설	천호동 166-4번지 일대	7,613	전면개발	
	성내1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9-14번지 일대	6,299	전면개발	-
		변경	성내동 49-14번지 일대	-	-	촉진구역 해제
	성내3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18	전면개발	-
	성내5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15번지 일대	7,049.2	전면개발	-

나) 구역별 계획(변경)

구역명		위치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m)	사업방식
						기준	최대		
천호1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55-8번지 일대	10,505.8	판매	60% 이하	714	81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천호3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09-3번지 일대	5,227	판매, 업무	60% 이하	600	790	12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해제)	천호동 409-3번지 일대	-	-	-	-	-	-	-
천호4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17,394.2	주거, 근린생활	60% 이하	591	793	12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천호8 촉진구역	신설	천호동 166-4번지 일대	7,613	주거, 사회복지, 근린생활	60% 이하	520	80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성내1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9-14번지 일대	6,299	업무, 판매	60% 이하	600	785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해제)	성내동 49-14번지 일대	-	-	-	-	-	-	-
성내3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18	업무, 판매, 주거, 근린생활	60% 이하	610	80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성내5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15번지 일대	7,049.2	주거, 공공업무, 근린생활	60% 이하	500	650	14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역명		사업구역 면적(㎡)	용도지역	필지수	건물수	비고
합계	기정	53,193.2	-	221	115	-
	변경	49,280.2	-	143	77	-
천호1촉진구역	기정	10,505.8	일반상업	30	8	-
천호3촉진구역	기정	5,227	일반상업	101	55	-
	변경	-	-	-	-	촉진구역 해제
천호4촉진구역	기정	17,394.2	일반상업	23	10	-
천호8촉진구역	신설	7,613	일반상업	41	25	존치정비 → 촉진구역
성내3촉진구역	기정	6,718	준주거, 일반상업	45	29	-
성내1	기정	6,299	일반상업	18	8	촉진구역 해제
	변경	-	-	-	-	-
성내5촉진구역	기정	7,049.2	근린상업	4	5	-

나) 존치지역(변경)

구역구분			사업구역 면적(㎡)	용도지역	필지수	건물수	비고
존치정비구역	천호8	기정	7,613	일반상업	41	25	-
		변경	-	-	-	-	존치정비 → 촉진구역
	소계	기정	7,613	-	41	25	-
		변경	-	-	-	-	-
존치관리구역	천호1	기정	72,079.3	일반상업	259	148	-
	천호2	기정	55,339.8	일반상업, 제3종일반주거	160	82	-
	천호3	신설	5,227	일반상업	101	55	촉진구역 해제
	성내1	기정	28,815.5	일반상업	120	111	-
	성내1-1	신설	6,299	일반상업	18	8	촉진구역 해제

구역구분			사업구역 면적(㎡)	용도지역	필지수	건물수	비고
	성내2	기정	22,557.2	근린상업, 준주거, 제3종일반주거	85	71	-
	소계	기정	178,791.8	-	624	412	-
		변경	190,317.8	-	743	475	-
합계		기정	186,404.8	-	665	437	-
		변경	190,317.8	-	743	475	-

9.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5,407.5	-	275,407.5	100.0
주거지역	소 계	87,612	-	87,612	31.8
	제3종일반주거지역	60,877	-	60,877	22.1
	준주거지역	26,735	-	26,735	9.7
상업지역	소 계	187,795.5	-	187,795.5	68.2
	일반상업지역	172,882.3	-	172,882.3	62.8
	근린상업지역	14,913.2	-	14,913.2	5.4

10.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호-129호, 2019. 4. 18.)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 폐지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계획(변경)

구 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촉진 구역	천호1	판매	판매	60%이하	60%이하	-
	천호3	업무,판매	-	60%이하	-	촉진구역 해제
	천호4	주거, 근린생활	주거, 근린생활	60%이하	60%이하	-
	천호8	주거, 근린생활	주거, 사회복지, 근린생활	60%이하	60%이하	존치정비 → 촉진구역
	성내1	업무, 판매	-	60%이하	-	촉진구역 해제
	성내3	업무, 판매, 주거, 근린생활	업무, 판매, 주거, 근린생활	60%이하	60%이하	-
	성내5	주거, 공공업무, 근린생활	주거, 공공업무, 근린생활	60%이하	60%이하	-

나)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구역명		면적(㎡)	획지면적(㎡)	용적률		비 고
					기준(%)	최대(%)	
촉진 구역	천호1	기정	10,505.8	8,978.9	714	810	-
	천호3	기정	5,227.0	4,098.0	600	790	
		변경	-	-	-	-	촉진구역 해제
	천호4	기정	17,394.2	13,756.7	591	793	-
	천호8	기정	7,613.0	5,433.0	520	700	존치정비
		변경	7,613.0	6,305.0	520	800	촉진구역
	성내1	기정	6,299.0	5,083.0	590	760	-
		변경	-	-	-	-	촉진구역 해제
	성내3	기정	6,718.0	5,056.0	610	800	-
	성내5	기정	7,049.2	6,411.5	500	650	-

다) 건축물의 높이 계획(변경)

구 분	구역명	최고높이(m)		비 고
		기정	변경	
촉진 구역	천호1	140	140	-
	천호3	120	-	촉진구역 해제
	천호4	120	120	-
	천호8	120	140	존치정비 → 촉진구역
	성내1	140	-	촉진구역 해제
	성내3	140	140	-
	성내5	140	140	-

라) 건축배치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획내용		대상구역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25m이상)	3~5m	3~5m	천호대로, 올림픽로
	이면도로변 (20m이하)	3m이하	3m이하	성내본길, 진황도로, 구천면로, 달맞이2길, 내부 이면도로

구 분		계획내용		대상구역
		기정	변경	
			천호4구역 도로경계선에서 8m	소로2-4 (천호3존치관리)
		도로중심선으로부터 9m	도로중심선으로부터 9m	로데오거리, 달맞이길
		도로중심선으로부터 7.5m	도로중심선으로부터 7.5m	천호옛길
		도로중심선으로부터 3m	도로중심선으로부터 3m	천호동 이면부 (상업활성화 지역)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m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m	기타 이면부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사업 면적 (㎡)	획지 면적 (㎡)	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 부담률 (%)
					계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녹지	공공시설 (대지지분+건축물)	공공임대 주택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민간부문	천호 1촉진	기정	10,505.8	8,978.9	1,526.9	1,201.5	325.4	-	-	-	363.0	1,163.9	11.1
	천호 3촉진	기정	5,227.0	4,098.0	1,129.0	1,058.0	71.0	-	-	172.0	275.0	682.0	13.0
		변경	촉 진 구 역 해 제										
	천호 4촉진	기정	17,394.2	13,756.7	3,637.5	2,503.5	1,134.0	-	-	19.3	-	3,618.2	20.8
	성내 1촉진	기정	6,299.0	5,083.0	1,216.0	440.0	776.0	-	-	-	-	1,216.0	19.3
		변경	촉 진 구 역 해 제										
	성내 3촉진	기정	6,718.0	5,056.0	1,662.0	629.0	1,033.0	-	-	128.0	255.0	1,279.0	19.0
	성내 5촉진	기정	7,049.2	6,411.5	1,906.4	637.7	-	1,268.7	-	-	-	1,906.4	27.0
	천호 8촉진	기정 (존치정비)	7,613.0	5,433.0	2,180.0	1,308.0	872.0	-	-	355.0	447.0	1,378.0	18.1
		변경	7,613.0	6,305.0	3,463.5	1,308.0	-	1,273.4	882.1	355.0	447.0	2,661.5	35.0
	계	기정	60,806.2	48,817.1	13,257.8	7,777.7	4,211.4	1,268.7	-	674.3	1,340.0	11,243.5	18.5

구 분			사업 면적 (㎡)	획지 면적 (㎡)	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 부담률 (%)
					계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녹지	공공시설 (대지지분+건축물)	공공임대 주택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변경	49,280.2	40,508.1	12,196.3	6,279.7	2,492.4	2,542.1	882.1	502.3	1,065.0	10,629.0	21.6
공공부문	천호 1관리	기정	68,280.1	66,773.1	1,507.0	1,507.0	-	-	-	-	-	-	-
	천호 2관리	기정	48,870.6	48,442.6	428.0	428.0	-	-	-	-	-	-	-
	천호 3관리	기정	-	-	-	-	-	-	-	-	-	-	-
		변경	5,227.0	4,686.5	540.5	540.5	-	-	-	-	-	-	-
	성내 1관리	기정	28,598.5	27,721.5	877.0	877.0	-	-	-	-	-	-	-
	성내 1-1 관리	기정	-	-	-	-	-	-	-	-	-	-	-
		변경	6,299.0	5,952.0	347.0	347.0	-	-	-	-	-	-	-
	성내 2관리	기정	22,538.5	22,228.5	310.0	310.0	-	-	-	-	-	-	-
	구역 외	기정	2,843.0	-	2,843.0	2,843.0	-	-	-	-	-	-	-
	계	기정	170,860.7	164,895.7	5,965.0	5,965.0	-	-	-	-	-	-	-
		변경	182,386.7	175,534.2	6,852.5	6,852.5	-	-	-	-	-	-	-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신설 및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변경으로 비용계획 변경
※ 공공부문 기반시설면적은 존치지역 내 기반시설 중 확보가 필요한 면적(사유지)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구역명	계획 세대수(세대)		임대주택수(세대)			
				계	전용 45㎡ 이하	전용 60㎡ 이하	전용 60~85㎡ 이하
합계		기정	1,729	251	80	129	42
		변경	1,757	408	168	163	77
재정비촉진구역	천호3	기정	116	-	-	-	-
		변경	-	-	-	-	-
	천호4	기정	670	171	-	129	42
	천호8	기정	-	-	-	-	-
		변경	520	157	88	34	35
	성내1	기정	180	-	-	-	-
		변경	-	-	-	-	-
	성내3	기정	160	-	-	-	-
	성내5	기정	407	80	80	-	-
존치정비구역	천호8	기정	196	-	-	-	-
		변경	-	-	-	-	-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신설 및 해제)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등 변경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해당구역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 인가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해당구역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 인가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천호1구역 천호3구역 천호4구역 성내1구역	2017년	2018년	2020년	천호1구역	2017년	2018년	2020년	-
2단계	성내5구역 성내3구역	2020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3년 2022년	천호4구역 성내5구역 성내3구역	2017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24년 2024년 2024년	-
3단계	천호8구역	2020년	2023년	2025년	천호8구역	2023년	2025년	2027년	-

1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천호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나) 천호3재정비촉진구역(해제)

- 천호3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다) 천호4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라) 천호8재정비촉진구역(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존치정비)	증 감	변 경	
신 설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천호동 166-4 일대	7,613	-	7,613	존치정비 → 촉진구역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존치정비)	증 감	변 경		
합 계		7,613.0	-	7,613.0	100.0	
택 지 (획 지)	소 계	5,433.0	증) 872.0	6,305.0	82.8	
	획 지	5,433.0	증) 872.0	6,305.0	82.8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180.0	감) 872.0	1,308.0	17.2	
	도 로	1,308.0	-	1,308.0	17.2	
	공 원	872.0	감) 872.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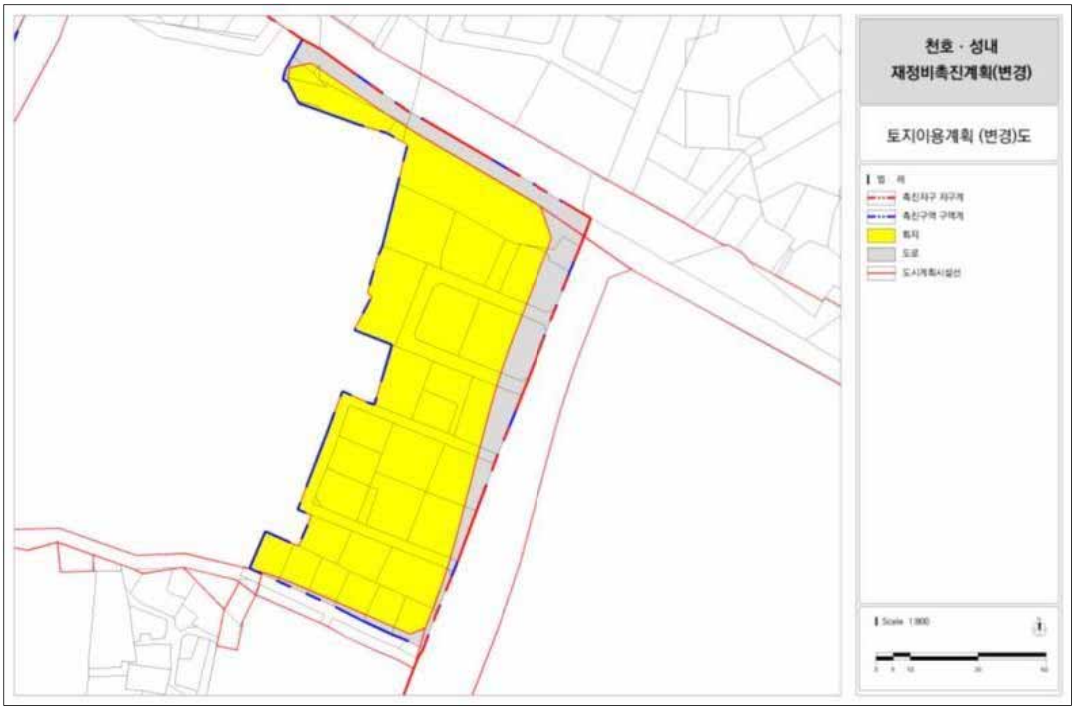
※ 천호8존치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존치정비구역 내 결정되어 있던 공원 폐지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은 천호8존치정비구역의 결정내용임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존치정비)	증(감)	변 경		
합 계	7,613	-	7,613	100.0	
일반상업지역	7,613	-	7,613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 점		
기정	중로	1	천호2	8~ 20	보조 간선	1,065 (101)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서울시고시 제2001-177호 (01.6.5.)	진황 도로
변경	중로	1	천호2	8~ 20	보조 간선	1,065 (101)	길동 413-45	천호동 550-6	-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실효(2021.6.5.)된 도로의 재결정
기정	중로	1	천호3	20	보조 간선	195 (131)	광로 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서울시고시 제3호(69.1.18.)	
변경	중로	1	천호3	20	보조 간선	195 (131)	광로 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실효(2020.7.2.)된 도로의 재결정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54 (54)	천호동 450-23	천호동 566-10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

※ 기반시설계획(기정)은 천호8존치정비구역의 결정내용이며, 연장 내 ( )는 천호8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임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 중로1-천호2 도로 변경	·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실효(2021.6.5.)된 도로의 재결정
변 경	· 중로1-천호3 도로 변경	·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실효(2020.7.2.)된 도로의 재결정

○ 공원(변경)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폐 지	⑧	소공원	천호동 450-25 일대	872	감) 872	-	공공임대주택(69세대) 대체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 지	· 공원(소공원) 872㎡ 폐지	· 천호8존치정비구역 내 결정되어 있던 공원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69세대) 대체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은 천호8존치정비구역의 결정내용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적(㎡)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166-4 일대	층	-	증)지상2층: 1,628.5㎡ 증)지상1층: 1,625.1㎡ 증)지하1층: 651.4㎡	지상2층: 1,628.5㎡ 지상1층: 1,625.1㎡ 지하1층: 651.4㎡	관리청: 강동구 (시설연면적 3,905.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상1, 2층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지하1층은 지하주차장 면적이며,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결정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 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하1층 일부~지상2층 일부, 연면적 3,905.0㎡(지하주차장 포함)	· 구역 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하는 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신설)

●지상2층



●지상1층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산설)
- 지상1층 -

●지하1층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산설)
- 지하1층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신설)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천호8재정비 촉진구역 내	-	증) 226.0	226.0	
	어린이집		-	증) 337.8	337.8	
	작은도서관		-	증) 189.7	189.7	
	어린이놀이터		-	증) 195.6	195.6	
	주민휴게시설		-	증) 320.6	320.6	
	주민운동시설		-	증) 108.0	108.0	
	커뮤니티시설			증) 451.5	451.5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7,613	-	5,433	천호동 450-25일대	25	-	25	-	-	존치정비구역
변경		7,613	-	6,305		-	-	-	3	-	-

○ 용적률 계획(신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택지
(공동주택등)</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대지지분, 건축물 포함)</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7,613㎡</td><td>6,305㎡</td><td>3,463.5㎡</td><td>355</td><td>447</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463.5㎡ - 355㎡ - 447㎡ = 2,661.5㎡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도로 무상귀속 면적: 1,308㎡
‣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면적: 1,273.4㎡(대지지분 333.1㎡+환산부지면적 940.3㎡)
‣ 공원 대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대지지분 882.1㎡(건물: 표준건축비 매입)</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 520%</td></tr>
<tr><td rowspan="2">최대용적률</td><td colspan="5">○ 최대용적률=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 토지+0.7×α 현금·건축물)
‣ 대상지
· 기준용적률 520% / 최대용적률 800%
· α 토지 = 1,721.2 ÷ 5,089.8 = 0.3382
· α 현금·건축물 = 940.3 ÷ 5,089.8 = 0.1847
‣ 최대용적률
= 520.0% × (1+(1.3×(1×0.3382)+(0.7×0.1847))
= 520% × (1+(1.3 × 0.3382 + 0.1293))
= 815.85% ≥ 건축계획(안) 794.9%</td></tr>
<tr><td colspan="5">○ α 토지 = $\frac{\text{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면적} - \text{국공유지면적}}{\text{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후대지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 현금·건축물 = $\frac{\text{공공시설등부지(현금및건축물설치비용환산부지)제공면적}}{\text{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공후대지면적}}$</td></tr>
</table>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천호8존치 정비구역	7,613	-	5,433	천호동 166-4 일대	- 1)	주거, 근린생활	60이하	기준520 /최대700	120 이하
변경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	6,305		- 1)	주거, 근린생활, 사회복지		기준520 /최대800	140 이하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 - 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규모 - 전용면적 85㎡ 초과(일반분양) : 59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일반분양) : 137세대 ○ 건설비율(세대수) - 일반분양 : 100%이하 ○ 건립예정세대수 : 196세대
	변경	○ 건립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일반분양) : 174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공공임대) : 35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일반분양) : 35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공공임대) : 34세대 - 전용면적 45㎡ 이하(일반분양) : 154세대 - 전용면적 45㎡ 이하(공공임대) : 88세대 ○ 건설비율(세대수) - 일반분양 : 69.8% - 임대분양 : 30.2% ○ 건립예정세대수 : 520세대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중로1-천호2 2m, 중로1-천호3 3m ○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변경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건축한계선 : 중로1-천호3 3m(보도) - 전면공지 : 중로1-천호3 3m(보도) ○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기정	○ 차량출입허용구간 : 중로1-천호3 일부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구간
	변경	○ 차량출입허용구간 : 중로1-천호3 일부구간, 소로2-6 일부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구간 ○ 진황도로변 공개공지(900㎡ 이상) 조성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구간은 보도형 공개공지로 조성하고 연결공지는 공개공지1, 공개공지2와 일체형으로 조성 ○ 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필로티구조 : 폭원6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로 지정

주1) 연면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44호, 2009. 2. 6.) 개정에 따라 삭제함
※ 기정계획은 천호8존치정비구역의 결정내용임

■ 건축계획(기정)

구 분		내 용	비 고	
구역면적(㎡)		7,613		
대지면적(㎡)		5,433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38,009.3		
건축면적(㎡)		3,248.9		
용적률(%)		699.6	700%이하	
건폐율(%)		59.8	60%이하	
주차대수	지상	-	- 법정 주차대수(263대) ·근린생활시설 : 78대 ·공동주택 : 185대	- 계획 주차대수(270대) ·근린생활시설 : 70대 ·공동주택 : 200대
	지하	270		
	계	270		

■ 건축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구역면적(㎡)		7,613		
대지면적(㎡)		6,305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0,118.6		
건축면적(㎡)		3,155.2		
용적률(%)		794.9	800%이하	
건폐율(%)		50.04	60%이하	
주차대수	지상	-	- 법정 주차대수(478대) ·공공시설 : 8대 ·근린생활시설 : 12대 ·공동주택 : 458대	- 계획 주차대수(540대) ·공공시설 : 8대 ·근린생활시설 : 12대 ·공동주택 : 520대
	지하	540		
	계	540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계획기준	· 공공임대주택 건설 ▶ 공원(소공원, 872㎡) 폐지: 공공임대주택 대체, 전용면적 59㎡~85㎡이하 ▶ 주거복합비율 변경(주거: 60% 이하 → 90% 이하):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전용면적 45㎡ 이하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 520세대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총 157세대 ※ 공원 대체(69세대) + 주거복합비율 변경(88세대) – 전체 연면적 77,323.7㎡의 24.2%에 해당하는 연면적 18,678.7㎡ 공급		
건립규모(전용면적)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 계	157	30.2	100.0
40㎡ 이하	69	13.3	43.9
45㎡ 이하	19	3.7	12.1
60㎡ 이하	34	6.5	21.7
85㎡ 이하	35	6.7	22.3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임대 선추첨, 후분양)

■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시행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세대)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존치정비)	변 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20	2023	조합	196	520	이상없음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건축물 25동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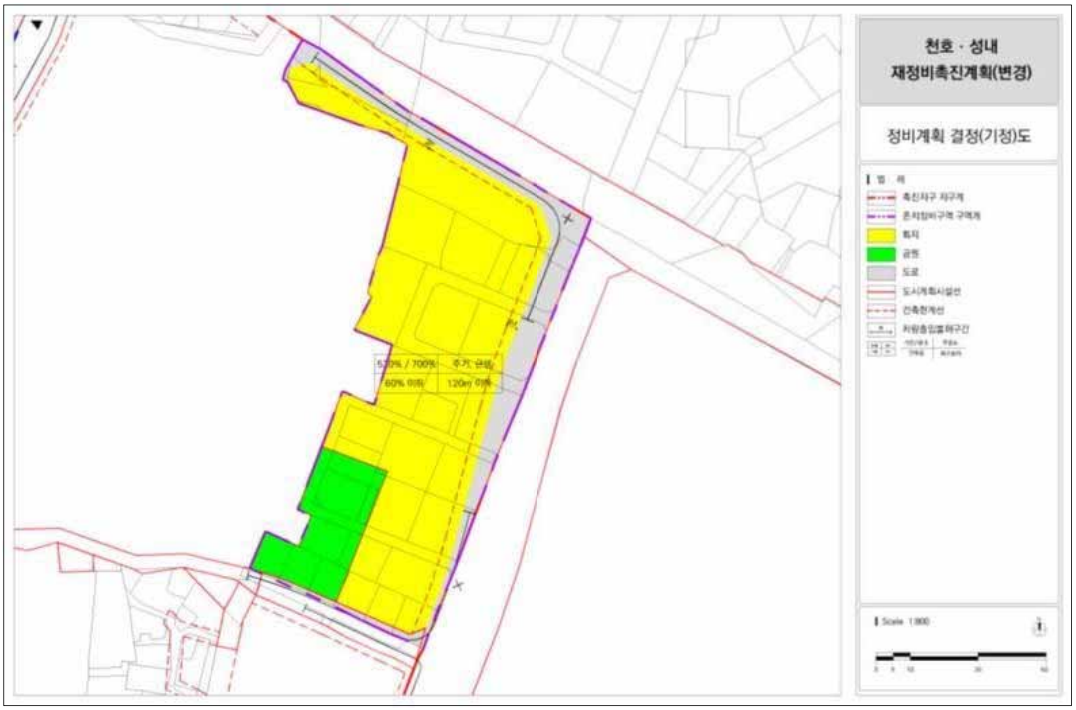
■ 생태 면적률(관련규정에 따름)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 검토결과

구 분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계획에 반영 사항
1.생태 면적율	30%	- 일부 조경녹지를 제외하고 토양포장 상태로 사용(생태면적율 30%이상 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전면투수포장 등 적용
2.녹지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구역내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 자연지반녹지, 인공녹지 조성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절성토 비율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하여 계획
4.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	-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5.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일조영향 예측시 연속 2시간이상 확보	- 근린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변 주거지를 감안하여 일조분석 결과 동지를 기준으로 2시간 이상의 일조확보가 가능함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남북 방향 2개의 주동배치로 바람길 확보	- 풍향,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바람차단 최소화
7.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 또는 2등급 획득 목표	- 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가 65점 이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1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용	-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신재생공급 비율 의무기준 6.5% 이상 설치예정
8.경관	Skyline 보전	-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지역 높이계획과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지역위계와 입지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가로녹시율 30%	- 계획구역내 녹시율은 일부 조경녹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없음	- 조경녹지, 공개공지 등 조성하여 적용
9.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공개공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 여가공간 조성
10.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수립	- 대상지는 주택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로 보차혼용도로 설치	- 도로변 공지 등을 계획하여 차도와 구분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단지내부와 연결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주변지역에 자전거전용도로 전무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검토 필요	-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11.대기질		-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영향 배기가스 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등
12.물 순환(수질)		- 운영시 오수발생	-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 처리
13.폐기물		- 기존건축물 철거시 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
14.소음 및 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 등 발생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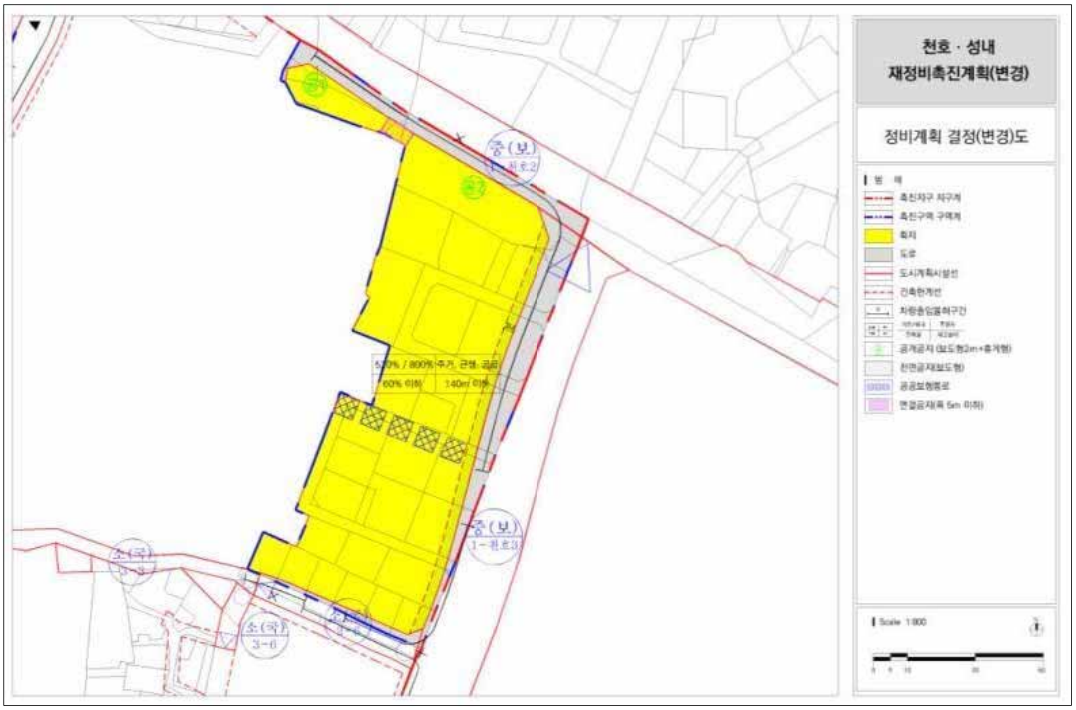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2018. 12. 21.)」에 따라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대상임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정비계획 결정(기정)은 천호8존치정비구역의 결정내용임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마) 성내1재정비촉진구역(해제)

– 성내1-1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바) 성내3재정비촉진구역(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718	-	6,718	100.0	
택지(획지)	소계	5,056	-	5,056	75.3	
	획지	5,056	-	5,056	75.3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662	-	1,662	24.7	
	도로	629	-	629	9.4	
	공원	1,033	-	1,033	15.3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91	성내동 77-41	성내동 48-14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
변경	소로	2	8	8	국지도로	91	성내동 48-27	성내동 48-14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7	성내동 57-12	성내동 48-27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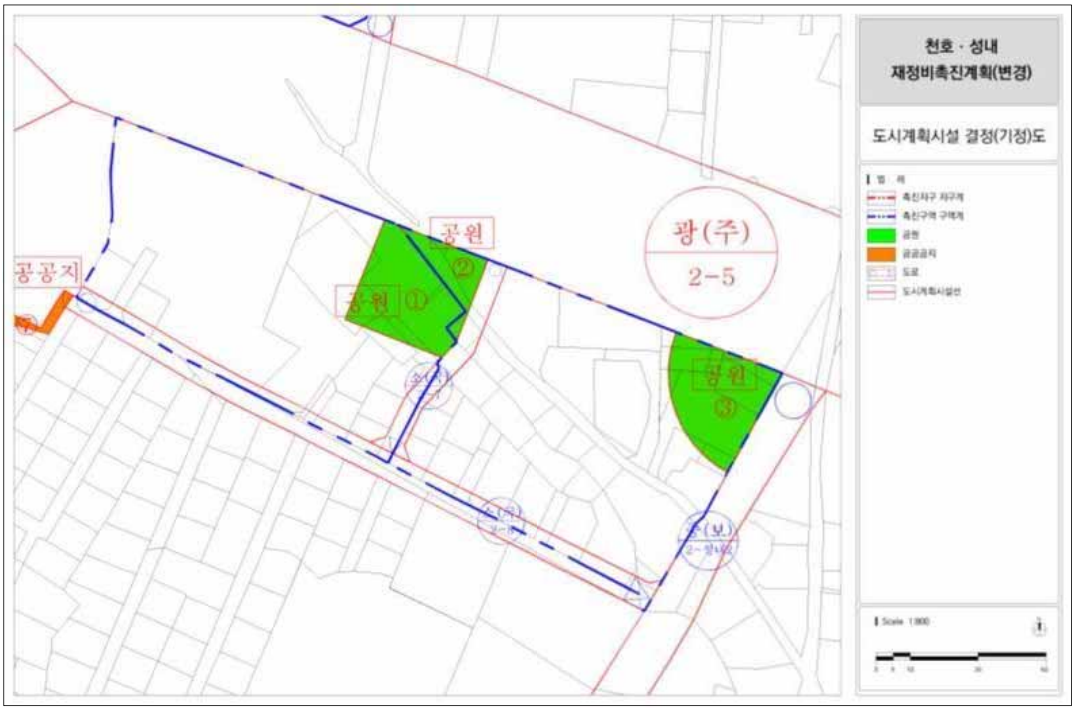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8	소로 2-8	· 연장 축소(191m→91m)	· 성내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및 기점변경

○ 공원(변경없음)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②	소공원	성내동 57-12 일대	261	-	261	-
기정	③	문화공원	성내동 50-19일대	772	-	772	-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태 면적률(변경없음)

■ 건축계획(변경없음)

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가)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계획(변경)

■ 천호8존치정비구역 해제(천호8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나)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계획

■ 구역별 현황(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방식	추진현황
존치관리구역	기정	천호1	천호동 425-17	72,079.3	개별건축	-
	기정	천호2	천호동 566번지 일대	55,339.8	개별건축	-
	신설	천호3	천호동 409-3 일대	5,227.0	개별건축	신설
	기정	성내1	성내동 51번지 일대	28,815.5	개별건축	-
	기정	성내2	성내동 11-14번지 일대	22,557.2	개별건축	-
	신설	성내1-1	성내동 49-14 일대	6,299.0	개별건축	신설
계				190,317.8	-	-

(1) 천호1 존치관리구역(변경없음)

(2) 천호2 존치관리구역(변경없음)

(3) 천호3존치관리구역(신설)
■ 천호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4) 성내1존치관리구역(변경없음)

(5) 성내2존치관리구역(변경없음)

(6) 성내1-1존치관리구역(신설)
■ 성내1-1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17.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방재계획(변경없음)

20. 정보화계획(변경없음)

21. 에너지 순환계획(변경없음)

22. 특성화 계획(변경없음)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광로	2	5	50	주간선	7,200 (495)	천호대교 (천호사거리)	상일동시계 (성내동 산18-4)	건고198호 (71.4.7)	천호대로 (부분편입)
기정	대로	3	110	25~ 31	주간선	3,000 (268)	풍납동 광5	암사동 강변	건고 210호 (75.12.17)	올림픽로 (부분편입)
기정	중로	1	163	20	보조간선	300	천호동 434-2	천호동 406-2	서울시고시 제1977-312호 (77.8.29)	구천면길
기정	중로	1	천호2	8~ 20	보조간선	1,065 (354)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서울시고시 제2001-177호 (01.6.5)	진황도로
변경	중로	1	천호2	8~ 20	보조간선	1,065 (354)	길동 413-45	천호동 550-6	-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실효 (2021.6.5.)된 도로의 재결정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43	천호동 566-8 (천호대로)	천호동 566-6	서울시고시 제1993-467호 (94.1.5)	
기정	소로	1	2	10~12	집산도로	240	광로2-5 (천호동 451-20)	천호동 410-372 (진황도길)	-	
기정	중로	1	천호3	20	보조간선	195	광로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서울시고시 제3호 (69.1.18)	
변경	중로	1	천호3	20	보조간선	195	광로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실효 (2020.7.2.)된 도로의 재결정
기정	소로	1	3	10	집산간선	100	성내동 19-9	광로2-5 (성내동 19-1)	서울시고시 제1992-335호 (92.10.24)	
기정	소로	3	31	6	집산도로	908	대로3-110 (천호동 430-15)	천호동 413-8	서울시고시 제3호 (69.1.18)	
기정	중로	3	천호1	12	집산도로	163	천호동 411-64	천호동 452-33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변경	중로	3	천호1	10~12	집산도로	163	천호동 411-64	천호동 452-33	-	
기정	소로	1	4	8~10	집산도로	502	성내동 14-5	성내동 80-7	서울시고시 제3호 (69.1.18)	
기정	중로	2	성내2	11~14	보조간선	141	광로2-5 (성내동 50-32)	성내동 43-11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기정	중로	3	407	3~15	보조간선	277	광로2-5 (천호동 453-15)	천호동 409-3	서울시고시 제2001-177호 (01.6.5)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91	성내동 77-41	성내동 48-14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변경	소로	2	8	8	국지도로	91	성내동 48-27	성내동 48-14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7	성내동 57-12 (천호대로)	성내동 48-27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기정	소로	2	1	6~8	국지도로	162	대로3-110 (천호동 427-3)	천호동 425-105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00	광로2-5 (천호동 455)	천호동 455-5	강동구고시 제4994-28호 (94.5.21)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26	천호동 410-42	중로2-412 (천호동409-28)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변경	소로	2	4	3~6	국지도로	118	천호동 410-42	천호동 409-34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21	광로2-5 (천호453-40)	천호동 453-6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	천호동 430-2	천호동 430-14	서울시고시 제2015-400호 (15.12.17)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3	중로1-163 (천호동 425-8)	천호동 427-103	서울시고시 제354호 (90.10.24)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51	천호동 427-23	천호동 427-31	서울시고시 제354호 (90.10.24)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4	천호동 450-23	천호동 566-10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90	천호동 566-10	천호동 566-6	서울시고시 제1993-467호 (94.1.8)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114	광로2-5 (성내동 13-9)	성내동 12-3	서울시고시 제34호 (76.2.20)	
기정	소로	3	5	4.5	국지도로	8	천호동 430-12	천호동 430-9	서울시고시 제2015-400호 (15.12.17)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8	천호동 566-10	천호동 450-67	서울시고시 제2015-400호 (15.12.17)	

※ 연장 내 ( )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는 구간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천호2	중로1-천호2	· 도로 재결정(폭원 8~20m, 연장 354m)	·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실효 (2021.6.5.)된 도로의 재결정
중로1-천호3	중로1-천호3	· 도로 재결정(폭원 20m, 연장 195m)	· 미집행으로 인한 일부실효 (2020.7.2.)된 도로의 재결정
중로3-천호1	중로3-천호1	· 폭원 변경(12m→10~12m)	·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폭원 축소
소로2-8	소로2-8	· 연장 변경(191m→91m)	·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2-4	소로2-4	· 폭원 변경(8m→3~6m) · 연장 변경(126m→118m)	·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폭원 축소, 연장 및 종점 변경

■ 지하공공보도시설 결정(변경없음)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①	-	소공원	성내동 49-14일대	776	감) 776	-	-
기정	②	-	소공원	성내동 57-12 일대	261	-	261	-
기정	③	-	문화공원	성내동 50-19일대	772	-	772	-
기정	④	-	소공원	천호동 410-100 일대	1,134	-	1,134	-
기정	⑥	-	소공원	천호동 566-9 일대	67.9	-	67.9	-
기정	⑦	-	소공원	천호동 566-10 일대	67.1	-	67.1	-
폐지	⑧	-	소공원	천호동 450-25 일대	872	감) 872	-	-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소공원	· 폐지 : 776㎡	· 성내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공원폐지
⑧	소공원	· 폐지 : 872㎡	· 공공임대주택(69세대) 대체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공지	천호동 430-31 일대	120	-	120	-
폐지	②	공공공지	천호동 409-26 일대	71	감)71	-	-
기정	③	공공공지	천호동 430-9 일대	55	-	55	-
기정	④	공공공지	천호동 430-12 일대	66	-	66	-
기정	⑤	공공공지	천호동 430-6 일대	90	-	90	
기정	⑦	공공공지	성내동 77-64 일대	91	-	91	-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공공지	· 폐지 : 71㎡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공공공지 폐지

(4)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①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426-2일대	128	-	128	서울시고시 제2012-139제 (12.05.31.)	-
기 정	②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426-6일대	181	-	181	서울시고시 제2012-139호 (12.05.31.)	-
신 설	-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166-4 일대		증) (1,273.4)	(1,273.4)	-	-

※ ( )는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1,273.4㎡)은 공공시설 기부채납(대지지분 333.1㎡+환산부지면적 940.3㎡) 면적임

(5)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 후	
기 정	-	주민센터 복합청사	성내동 15번지 일대	층	지하2층 942.2㎡ 지하1층 1,559.5㎡ 지상1층 579.1㎡ 지상2층 1,414.3㎡	-	지하2층 942.2㎡ 지하1층 1,559.5㎡ 지상1층 579.1㎡ 지상2층 1,414.3㎡	시설연면적 : 5,659.5㎡
신 설	-	사회복지 시설	천호동 166-4 일대	층	-	증) 지상2층: 1,628.5㎡ 증) 지상1층: 1,625.1㎡ 증) 지하1층: 651.4㎡	지상2층:1,628.5㎡ 지상1층:1,625.1㎡ 지하1층: 651.4㎡	시설연면적 : 3,905.0㎡ (관리청:강동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주민센터 복합청사의 층별 면적은 전용·공용 면적 등을 합한 면적이고,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상1, 2층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지하1층은 지하주차장 면적이며,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공공시설은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 결정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 설	·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하1층 일부~지상2층 일부, 연면적 3,905.0㎡(지하주차장 포함)	· 구역 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하는 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성내5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천호8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존치정비)	증감	변경		
신 설	-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천호동 166-4 일대	7,613	-	7,61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소 계	7,613	-	7,613	100.0	-
일반상업지역	7,613	-	7,613	100.0	-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종 점		
기정	중로	1	천호2	8~20	보조간선	1,065 (101)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서울시고시 제2001-177호 (01.6.5.)	진황 도로
변경	중로	1	천호 2	8~20	보조간선	1,065 (101)	길동 413-45	천호동 550-6	-	미집행으로인한 일부실효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종 점		
										(2021.6.5.)된 도로의 재결정
기정	중로	1	천호 3	20	보조간선	195 (131)	광로 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서울시고시 제3호(69.1.18.)	-
변경	중로	1	천호3	20	보조간선	195 (131)	광로 2-5 (천호동 449)	천호동 166-43	-	미집행으로인한 일부실효 (2020.7.2.)된 도로의 재결정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4 (54)	천호동 450-23	천호동 566-10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

※ 기반시설계획(기정)은 천호8존치정비구역의 결정내용이며, 연장 내 ( )는 천호8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임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존치정비)	증감	변경	
폐지	⑧	소공원	천호동 450-25 일대	872	감) 872	-	공공임대주택 (69세대) 대체

■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적(㎡)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	사회복지시설	천호동 166-4 일대	층	-	증) 지상2층: 1,628.5㎡ 증) 지상1층: 1,625.1㎡ 증) 지하1층: 651.4㎡	지상2층:1,628.5㎡ 지상1층:1,625.1㎡ 지하1층: 651.4㎡	관리청:강동구 (시설연면적 : 3,905.0㎡)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상1, 2층면적은 시설의 전용·공용·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고, 지하1층은 지하주차장 면적이며,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성능수준, 설비, 세부용도, 등은 강동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준공 시 강동구에 기부채납(대지지분 포함)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	7,613	-	천호동 166-4 일대	5,433	존치정비구역
변 경		7,613		천호동 166-4 일대	6,305	재정비촉진구역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	용 도	비 고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근린생활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제109조 사회복지시설	-

○ 건폐율 계획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공동주택 등	60%이하	-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최대용적률	
공동주택 등	520%이하	-	800%이하	-

○ 용적률 완화사항

- 최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 · 건축물)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공동주택 등	35.0%	-	도로+공공시설(대지지분+건축물)

○ 높이 계획

구 분	높 이	비 고
공동주택 등	140m 이하(최고층수 40층 이하)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도 로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중로1-천호3 (천호대로163길)	3m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5) 경관계획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의 방향성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 되도록 배치 ·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배치 권장	
건물 진출입구	· 근린생활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 전체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지양
저층부 외관	구역 전체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장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지양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색채	구역 전체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구역 전체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개방감	· 인접 건축물(강동 팰리스)과의 통경축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
조명계획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의 야간 조명설치 계획 ·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한 야간조명 계획
스카이라인	· 주변지역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계획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중로1-천호2 (진황도로변)	· 900㎡이상 조성 - 결정도 상 연결공지는 공개공지①, 공개공지②와 일체형으로 조성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구간: 보도형 공개공지	
전면공지	중로1-천호3 (천호대로163길)	· 3m(보도형)	

■ 대지내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 필로티구조: 폭원 6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천호2 (진황도로변)	·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중로1-천호3 (천호대로163길)	· 대상지 진입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소로 2-6	· 대상지 진출구 일부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차량통행 금지	
통행체계	대상지 연접도로	· 양방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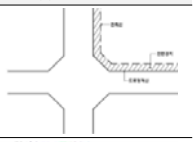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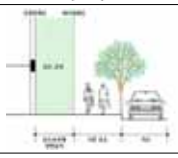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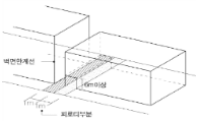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주택의 규모별 비율: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건립규모(전용면적)	전체세대수	전체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합 계	520	100.0	157	30.2	100.0
40㎡ 이하	137	26.3	69	13.4	43.9
45㎡ 이하	105	20.2	19	3.6	12.1
60㎡ 이하	69	13.3	34	6.5	21.7
85㎡ 이하	209	40.2	35	6.7	22.3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임대 선추첨, 후분양)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 중로1-천호3(천호대로163길) : 3m	
보도형전면공지	· '전면공지' 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보도 등으로 조성 - 중로1-천호3(천호대로163길) : 보도형 3m	
공개공지	· '공개공지' 는 대지 안에 시민의 보행 · 휴식 · 녹지공간의 연속적 조성 등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 진황도로변 공개공지(900㎡ 이상) 조성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구간은 보도형 공개공지로 조성하고 연결공지는 공개공지1, 공개공지2와 일체형으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 대상지와 연접한 구립어린이집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필로티 구조: 최소 폭원 6m 이상, 유효높이 6m 이상) 지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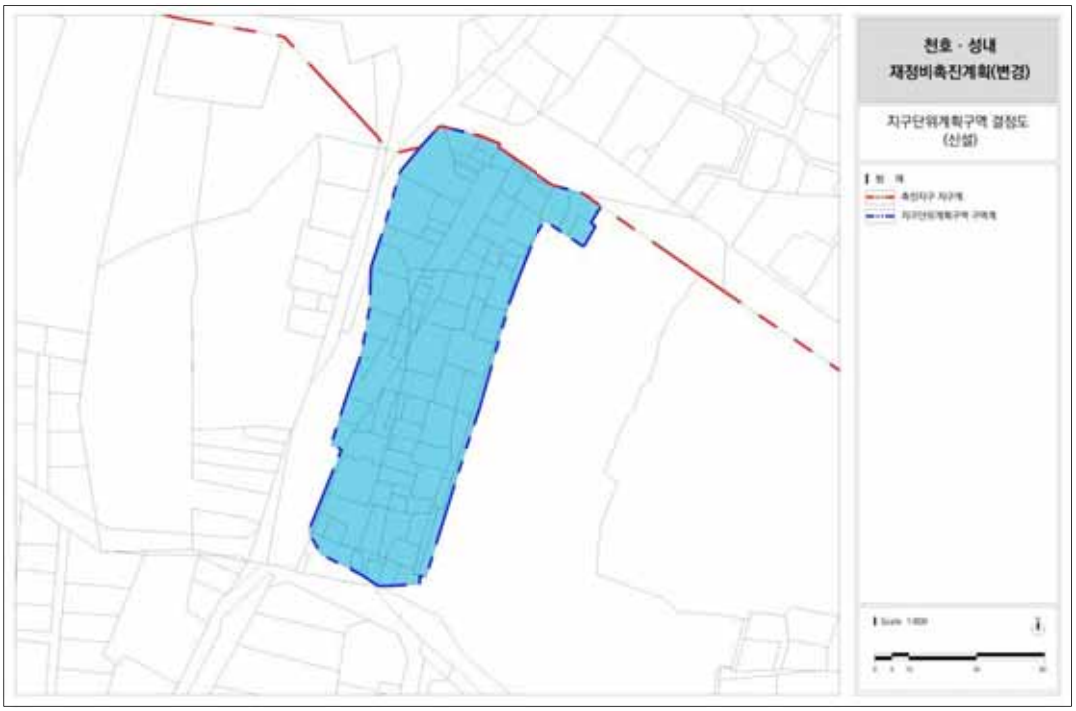
▨ 천호3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	천호3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천호동 409-3 일대	-	증) 5,227	5,22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소계	5,227	-	5,227	100.0	-
일반상업지역	5,227	-	5,227	100.0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형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천호2	8~20	보조간선	1,065 (54)	길동 413-45	천호동 550-6	-	서울시고시 제2001-177호 (01.6.5.)	-
기정	중로	3	천호1	12	집산도로	163 (31)	천호동 411-64	천호동 452-33	-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
변경	중로	3	천호1	10~12	집산도로	163 (31)	천호동 411-64	천호동 452-33	-	-	-
기정	중로	3	407	3~15	보조간선	277 (127)	광로2-5 (천호동 453-15)	천호동 409-3	-	서울시고시 제2001-177호 (01.6.5.)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26 (126)	천호동 410-42	중로 2-412 (천호동 409-28)	-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
변경	소로	2	4	3~6	국지도로	118 (118)	천호동 410-42	천호동 409-34	-	-	-

※ 연장 내 ( )는 천호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구간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천호1	중로3-천호1	· 폭원 변경(12m→10~12m)	·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폭원 축소
소로2-4	소로2-4	· 폭원 변경(8m→3~6m) · 연장 변경(126m→118m)	·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도로폭원 축소, 연장 및 종점 변경

■ 공공공지(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촉진구역)	증감	변경	
폐지	②	공공공지	천호동 409-26 일대	71	감) 71	-	-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공공공지	· 폐지 : 71㎡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공공공지 폐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기반시설계획(기정)은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의 결정내용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인센티브부여)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는 공동개발을 불허함. 다만, 부정형 및 세장비의 적정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공동개발 허용여부 등)할 수 있음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불허용도

도면표시	불 허 용 도
공 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및 시설은 불허 ·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1층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창고시설, 공장, 장례시설(병원 부속시설 제외) ·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의 당초 주용도는 업무·판매로서 불허용도계획은 최초 결정되는 사항임

○ 건축물의 권장용도

도면표시	권 장 용 도	비 고
공 통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의 당초 주용도는 업무·판매로서 권장용도계획은 최초 결정되는 사항임

○ 건축물의 건폐율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 건축물의 용적률

용도지역	전면도로 폭원(m)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상업	-	500 이하	6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시 - 기준용적률×(대지면적÷150)×0.05	· 기 개발된 필지,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05	· 건축선 후퇴 등으로 인한 의무면적 제외
건축물 용도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지상연면적)	· 권장용도면적: 연면적의 20% 이상(주차장제외)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 기준용적률×0.05	

○ 높이 계획

구 분	높 이	비 고
천호3존치관리구역	60m 이하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도로	적용범위 및 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중로1-천호2 (진황도로)	· 2.5m(필지분할선이 계획된 필지는 필지분할선으로부터 적용)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중로3-407 (로데오거리)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9m	
	소로2-4 (동측 이면도로)	· 천호4구역 도로경계선에서 8m	
필지분할선	중로1-천호2 (진황도로)	· 연속적인 도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에 지정 · 향후 개발시 도로 조성후 기부채납(상한용적률 적용)	
	중로3-407 (로데오거리)	· 건축한계선에서 로데오거리쪽으로 3m 이격한 지점에 지정 · 향후 개발시 도로 조성후 기부채납(상한용적률 적용)	

※ 필지분할선 등으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봄

(5) 경관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걷고싶은 거리변 건축물의 1층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권장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건축물 외 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 •로데오거리변에 면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저층부 및 전면부에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반사, 발광소재 사용 및 과도한 철골구조 노출 금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설치시설 관련	•로데오거리변 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건물 입면에 건축설비 노출 자제, 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 공간 확보 권장	
	야간조명	•10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기 타 사 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을 고려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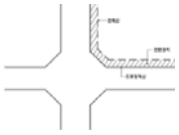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중로1-천호2 (진황도로)	· 필지분할선에서 건축한계선 구간: 2.5m(보도형)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중로3-407 (로데오거리)	· 필지분할선에서 건축한계선 구간: 3m(보도형)	
	소로2-4 (동측 이면도로)	· 건축한계선에서 천호4구역 방향 도로경계선 구간(보도형) ※ 차도형으로 조성하는 폭원 6m 이외 구간을 보도형으로 조성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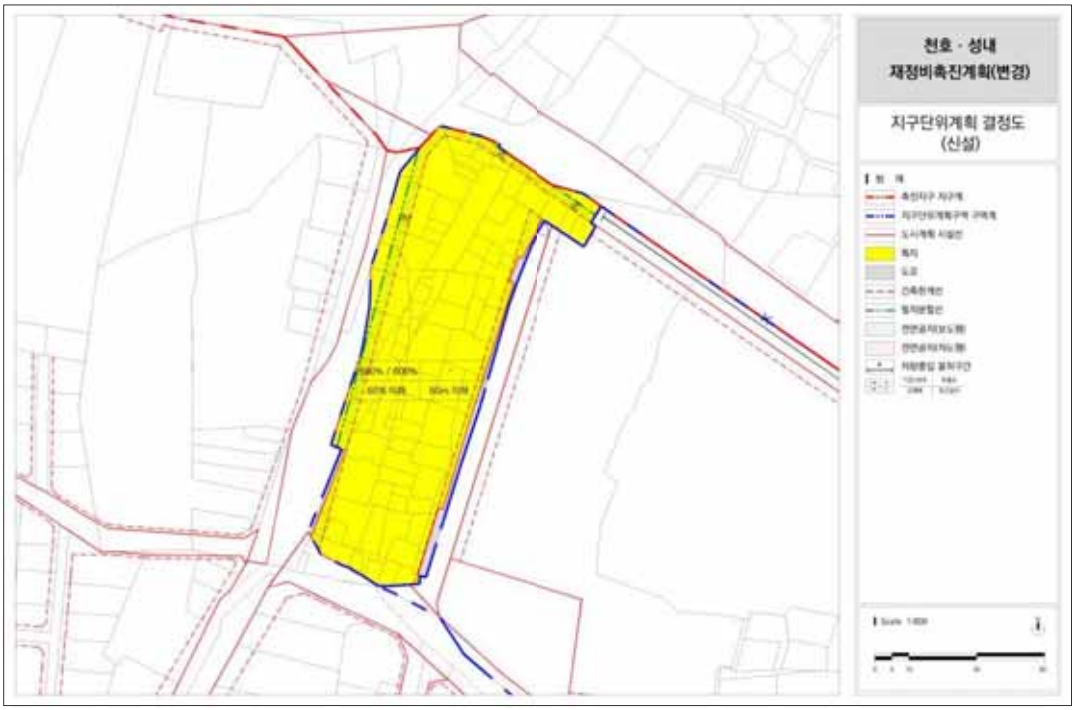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통행체계	중로3-407(로데오거리)	· 일방통행(진황도로→천호대로 / 북→남)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이전 ·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대한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 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강동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강동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생태면적률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지정 등) 2. 건축한계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등)의 위치 및 조성방법(신설, 폐지 포함)의 변경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 중로1-천호2(진황도로): 2.5m (필지분할선 계획 필지는 필지분할선으로부터 적용) - 중로3-407(로데오거리): 도로중심선에서 9m - 소로2-4(동측 이면도로): 천호4구역 도로경계선에서 8m	
보도형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보도 등으로 조성 - 중로1-천호2(진황도로): 필지분할선에서 건축한계선 구간 2.5m(보도형) - 중로3-407(로데오거리): 필지분할선에서 건축한계선 구간 3m(보도형) - 소로2-4(동측 이면도로): 건축한계선에서 천호4구역 방향 도로경계선 구간(보도형) ※ 차도형으로 조성하는 폭원 6m 이외 구간을 보도형으로 조성	
차도형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차도 등으로 조성 - 소로2-4(동측 이면도로): 천호4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천호3구역 방향으로 폭원 6m 구간	
필지분할선	· '필지분할선'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하나의 필지나 대지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한다. · 진황도로 및 로데오거리의 연속적인 도로 확보를 위해 필지분할선을 지정하고 향후 개발 시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한다.(상한용적률 적용) · 필지분할선이 계획된 필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고시 후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 중로3-407(로데오거리): 건축한계선에서 로데오거리쪽으로 3m - 중로1-천호2(진황도로): 연속적인 도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에 지정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성내1-1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	성내1-1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내동 49-14번지 일대	-	증) 6,299	6,29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소계	6,299	-	6,299	100.0	-
일반상업지역	6,299	-	6,299	100.0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7	성내동 57-12 (천호대로)	성내동 48-27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08.12.26.)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촉진구역)	증감	변경	
폐지	①	소공원	성내동 49-14 일대	776	감) 776	-	-

-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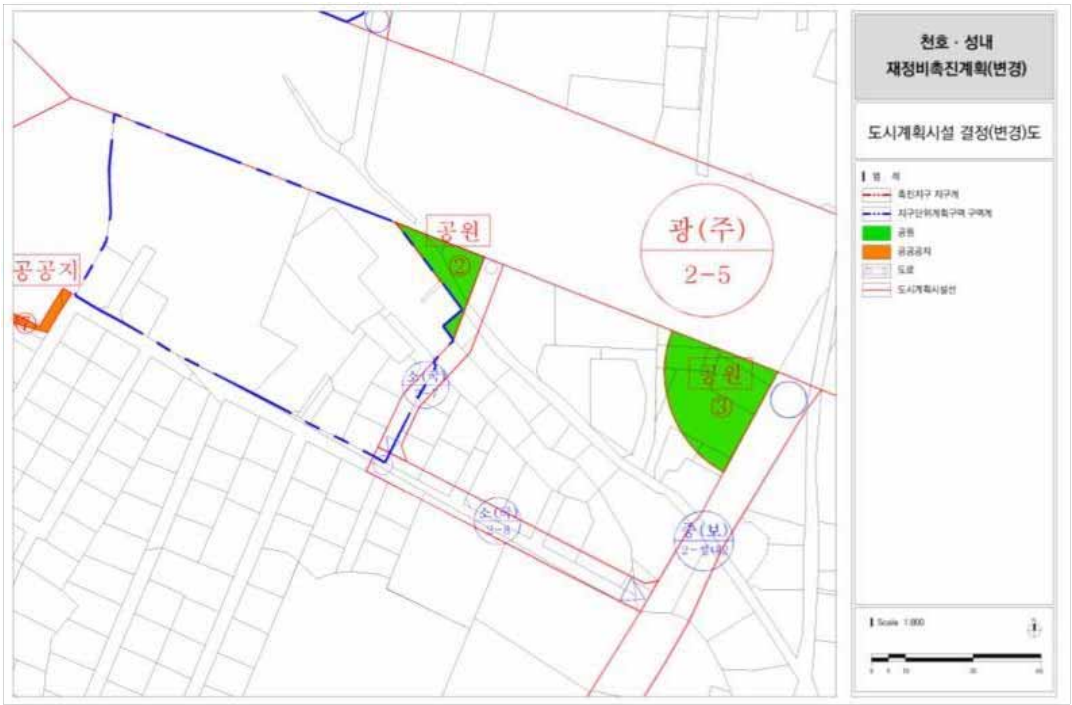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 지	· 공원(소공원) 776㎡ 폐지	· 성내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공원 폐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기반시설계획(기정)은 성내1재정비촉진구역의 결정내용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최대개발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최대개발규모	· 간선부(천호대로변): 미지정 · 이면부(천호대로변 제외필지): 1,500㎡ 이하	간선부와 이면부 공동개발시 간선부 기준 적용 ※ 기 개발된 필지 적용 제외

○ 공동개발

구 분	내 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인센티브 부여)	-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는 공동개발을 불허함. 다만, 부정형 및 세장비의 적정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공동개발 허용여부 등)할 수 있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불허용도

도면표시	불 허 용 도
공 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및 시설은 불허 ·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1층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창고시설, 공장, 장례시설(병원 부속시설 제외) ·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성내1재정비촉진구역의 당초 주용도는 업무·판매로서 불허용도계획은 최초 결정되는 사항임

○ 건축물의 권장용도

도면표시	권 장 용 도	비 고
천호대로변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 관광숙박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

※ 성내1재정비촉진구역의 당초 주용도는 업무·판매로서 권장용도계획은 최초 결정되는 사항임

○ 건폐율 계획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전면도로 폭원 (m)	신설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상업	-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 2001. 6. 5. 용도지역 변경 (일반주거 → 일반상업)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0.7×α현금·건축물)

※ 지하철 출입구를 대지 또는 건물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상한용적률 적용
-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지하철출입구의 건폐면적÷대지면적)
-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지하철출입구의 연면적÷건물 연면적)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 간선부: 기준용적률×2×α · 이면부: 기준용적률×3×α	· 2필지 : α = 0.35 · 3필지 : α = 0.4 · 4필지 : α = 0.45 · 5필지이상 : α = 0.5 ※ 기 개발된 필지, 동일소유자 필지 제외
건축물 용도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지상연면적)×2	· 권장용도면적: 연면적의 20%이상(주차장제외)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천호대로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건축선 3m로 지정된 면적은 의무면적

내 용		완화기준	비 고
공개공지	위치준수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 α = 2 · 개방형 α = 4 · 지정위치 준수에 따른 30%p 추가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이전설치 등	· 기준용적률×0.3	· 지하철 출입구 제외

○ 높이 계획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간선부(천호대로변)	120m 이하	-
이면부(천호대로변 제외)	30m 이하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적용범위 및 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광로 2-5 (천호대로변)	· 5m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소로 3-7	· 3m	
	남측 이면도로	· 2m	

(5) 경관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천호대로변 거리변 건축물의 1층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권장	
	1층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 ·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건축물 외 관	재료/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	
	설치시설 관련	•천호대로변 건축물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 금지 •건물 입면에 건축설비 노출 자제 •옥상부에 설비설치 가능 공간 확보 권장	
	야간조명	•10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 미술작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기 타 사 항	담장 및 옹벽의 처리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개방성을 고려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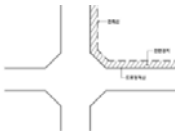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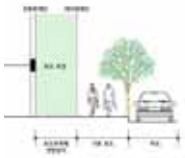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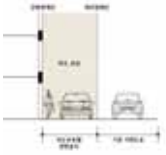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광로2-5 (천호대로)	· 천호대로변과 성내3구역 공공공지 연접부에 설치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전면공지	광로2-5 (천호대로)	· 5m(보도형 열린공간)	
	소로 3-7	· 3m(보도형)	
	남측 이면도로	· 2m(차도형)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광로2-5 (천호대로)	·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통행체계	소로 3-7	· 일방통행(천호대로 → 이면도로 / 북→남)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이전 ·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대한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강동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강동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생태면적률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강동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강동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지정 등) 2. 건축한계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등)의 위치 및 조성방법(신설, 폐지 포함)의 변경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 광로2-5(천호대로): 5m - 소로 3-7: 3m - 남측 이면도로: 2m ※ 건축한계선이 없는 도로(사도)와 공동개발 할 경우 연접도로의 건축한계선과 연결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보도형전면공지	· '전면공지' 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보도 등으로 조성 - 광로2-5(천호대로): 5m(보도형 열린공간) - 소로3-7: 3m(보도)	
차도형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조성되는 공지로 연접도로와 연계하여 차도 등으로 조성 - 남측 이면도로: 2m(차도)	
공개공지	· '공개공지' 는 대지 안에 시민의 보행·휴식·녹지공간의 연속적 조성 등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 천호대로변과 성내3구역 공공공지 연접부에 설치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세부사항 결정도 참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라. 2021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2021. 7. 6.) 심의결과: 수정가결

심 의 결 과	조 치 계 획	비고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 •임대주택은 세입자 대책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규모를 확대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 천호8재정비촉진구역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 2019. 3.)」에 의거하여 연면적의 10%이상을 전용면적 45㎡이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고, 그 외 45㎡이하 규모의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은 심의의견에 따라 전용면적 59㎡~85㎡ 이하의 규모로 확대 · 계획하였음.	반영
•대상지는 주차상한제 지역임을 고려하여 비주거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주차대수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천호8구역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임을 고려하여 비주거시설의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이하로 계획하고, 주거시설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겠음 •참고로,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성내3구역, 성내5구역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임을 고려하여 주거시설의 주차대수는 각각 세대당 1.1대, 1.2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되었음	반영
•건축계획은 인접 건축물(강동 팰리스) 통경축과 연계하여 40층 이하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금번 계획된 높이계획(최고높이 140m 이하)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층수계획과 함께 결정(최고높이 140m 이하, 최고층수 40층 이하)하였으며, 건축계획 시 인접 건축물(강동 팰리스) 통경축과 연계 · 배치하도록 지침에 반영하였음	반영
•공공보행통로는 원활한 보행을 위해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금번 계획된 공공보행통로(폭원 4m 이상, 높이 6m 이상)는 원활한 보행을 위해 폭원을 확대 계획(폭원 6m 이상, 높이 6m 이상)하였음	반영
•차량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 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차량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 공공보행통로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차량출입구는 진출과 진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진출만 가능한 출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진입을 위한 차선은 2개 차선을 확보할 것	•대상지 동측 전면도로에 차량 진입구(2개 차선)와 차량 진출구(1개 차선)를 배치하고, 대상지 남측 이면도로에 차량 진출구(1개 차선)를 배치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겠음	반영
•대상지는 공공성 및 사업촉진을 위해 SH와 협의하여 공공재개발 등 공공시행방식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결정 후 추진주체가 결정되면, 공공재개발 등 공공시행방식에 대해 SH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추후 검토
【 성내1-1존치관리구역 】 •성내1-1존치관리구역 연접 성내3구역 내 기 결정된 공원은 유지하되, 기존 건물 출입구와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성내1-1존치관리구역 】 •성내3구역의 공원(소공원)은 유지하고, 성내동 49-14 일대 건축물의 기존 차량출입구는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이용하도록 하며, 향후 성내동 49-14 일대 개발시 대상지 이면도로로 차량출입구를 계획한 사항임	반영
【 천호3존치관리구역 】 •대상지는 30%이상 맹지지역으로 소규모 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수법을 적극 강구할 것	【 천호3존치관리구역 】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천호 및 천호 ·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존치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천호3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본 재정비용역에서 적극 검토하겠음	반영

마. 기타 관련사항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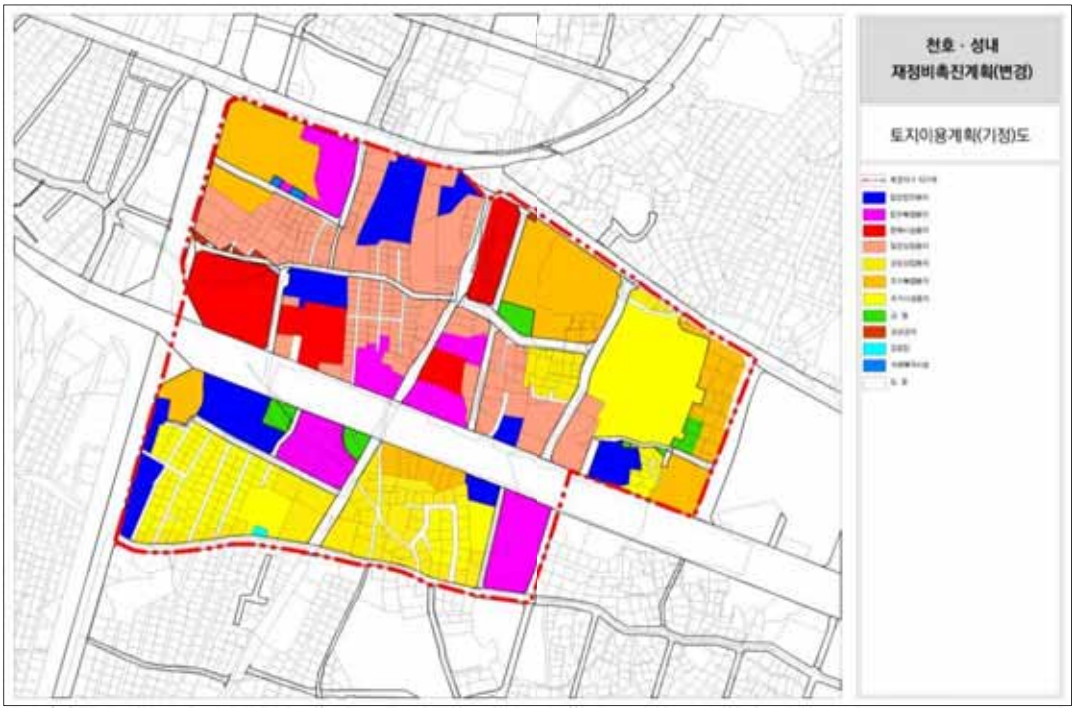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 참조: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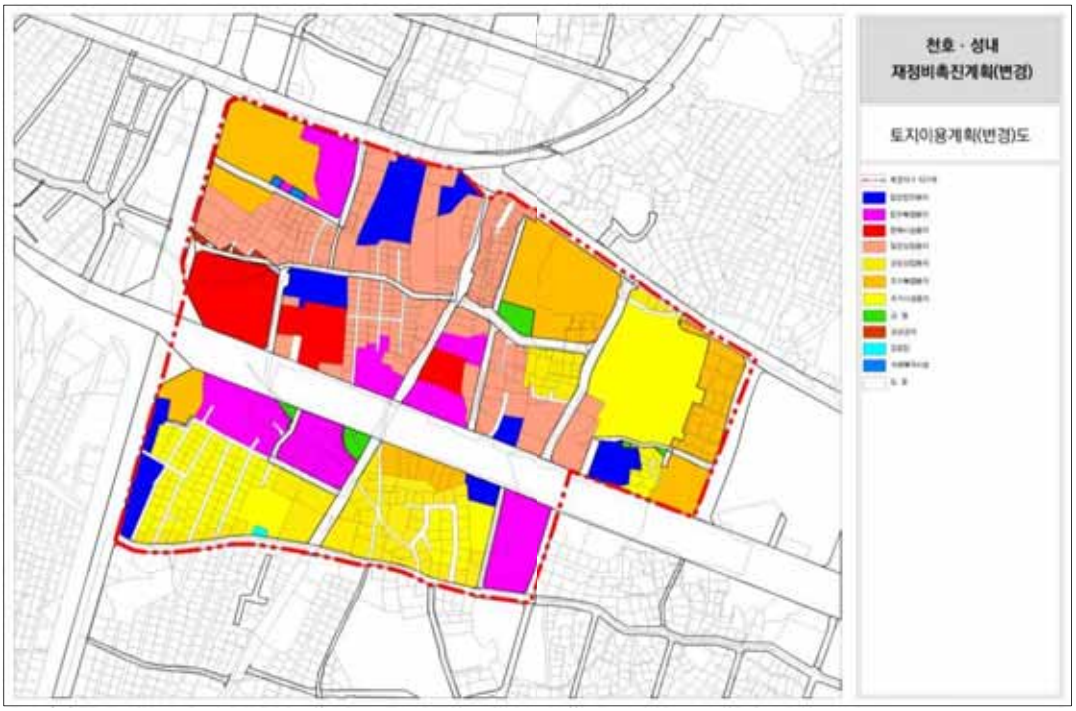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7)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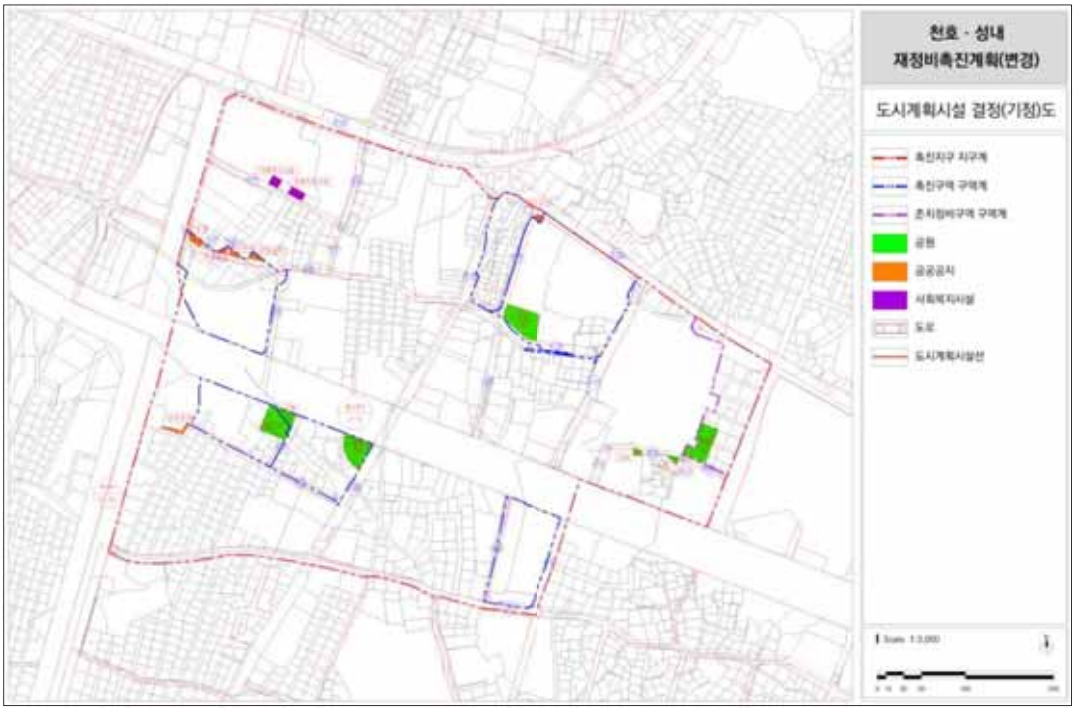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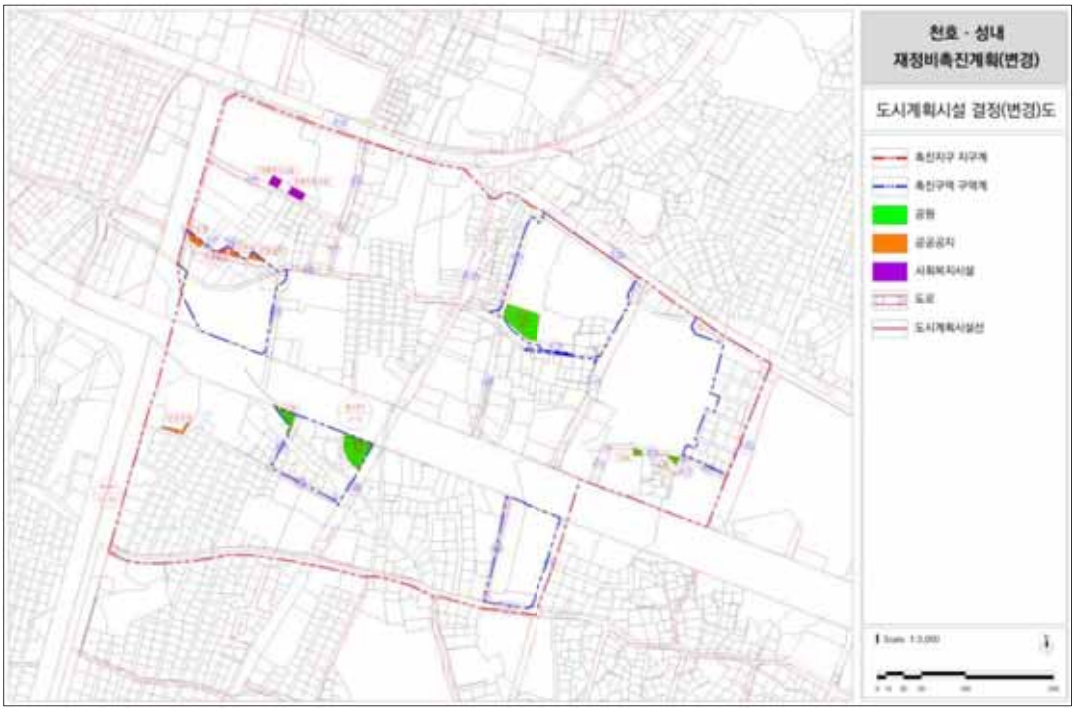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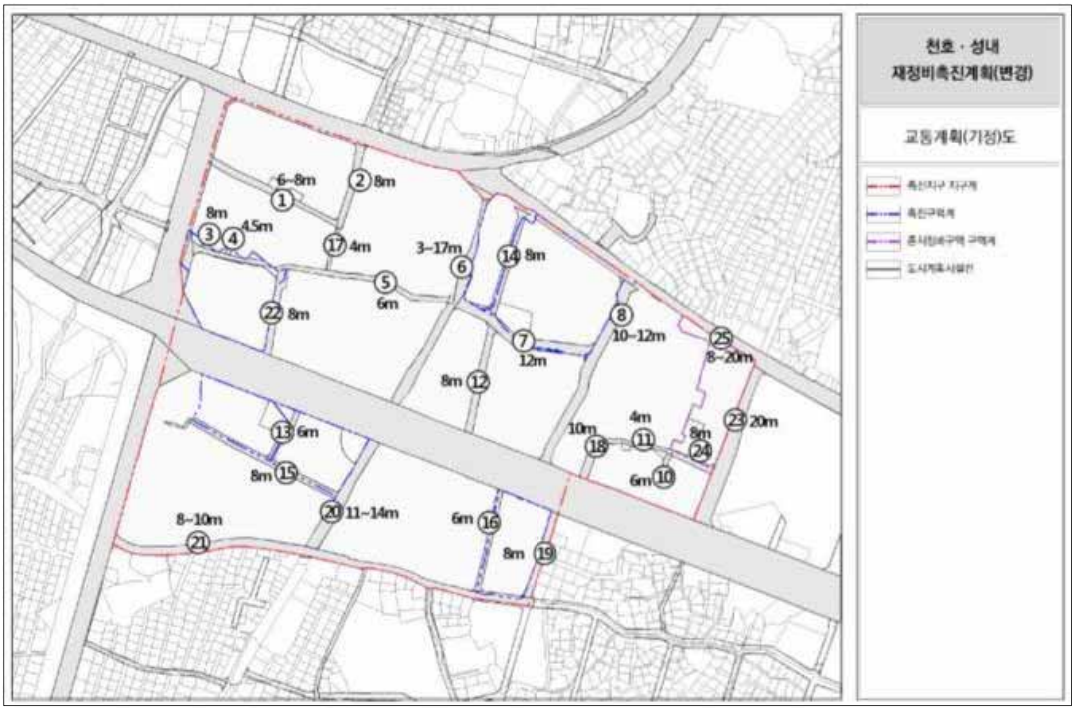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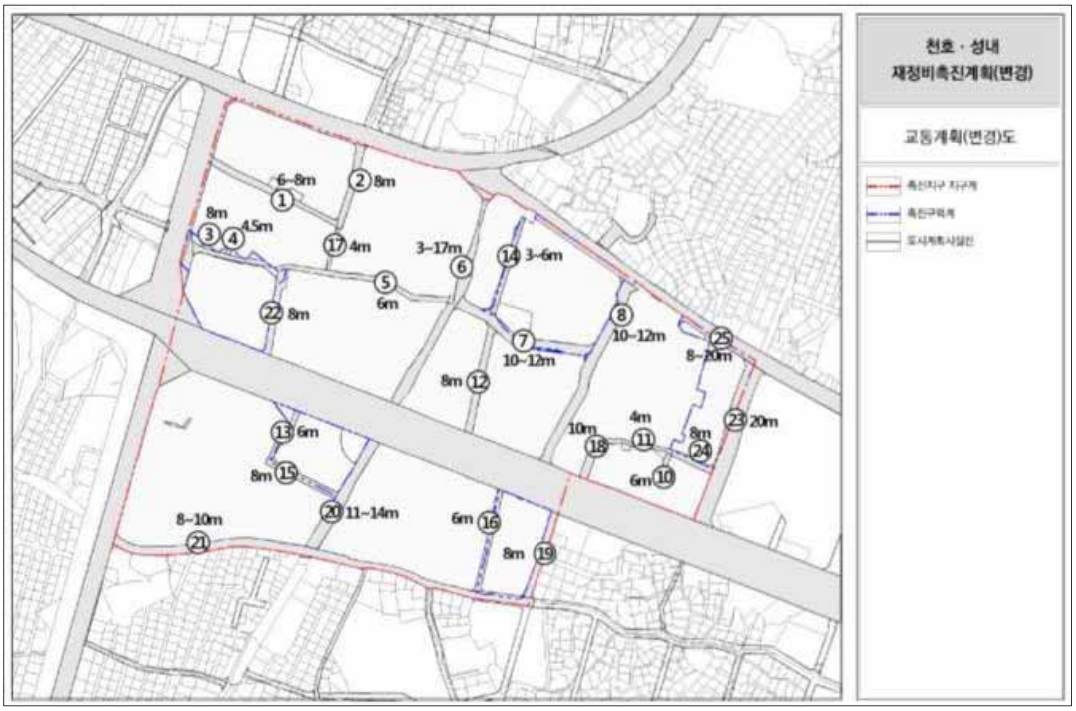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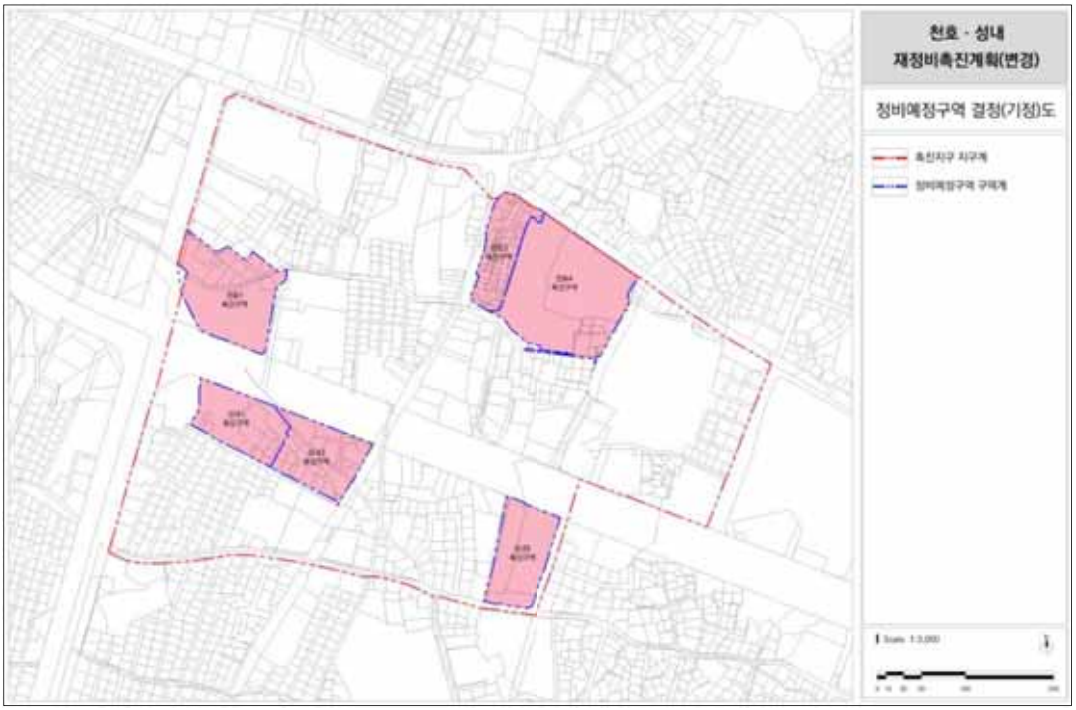
- 교통계획(기정)도



- 교통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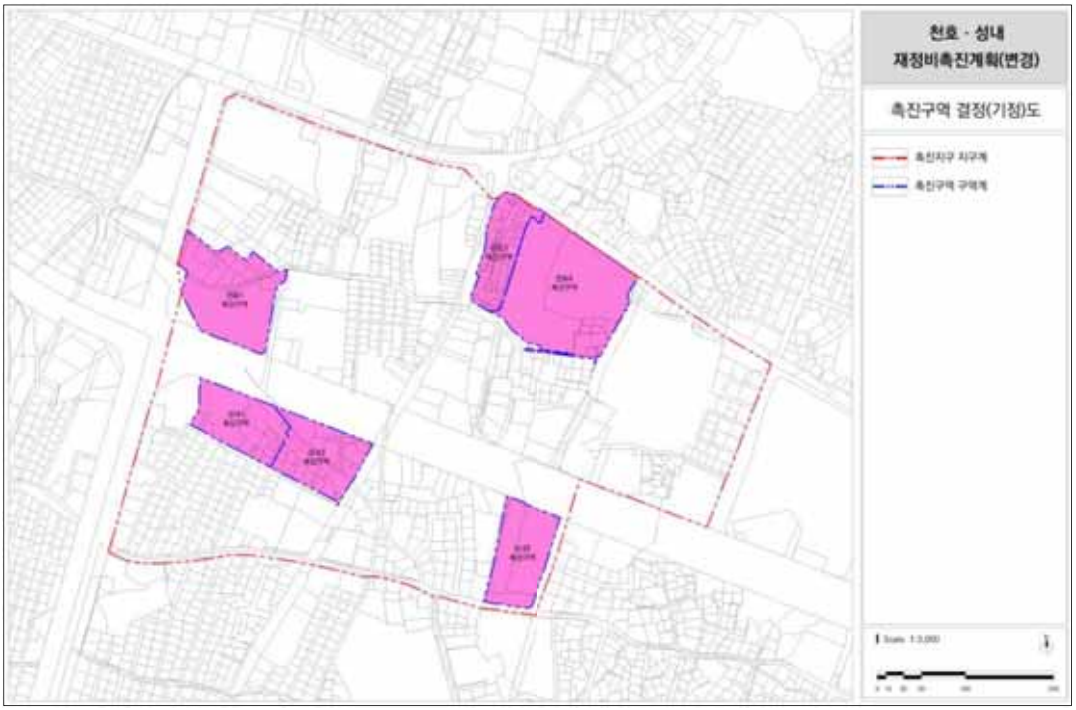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기정)도



– 정비예정구역(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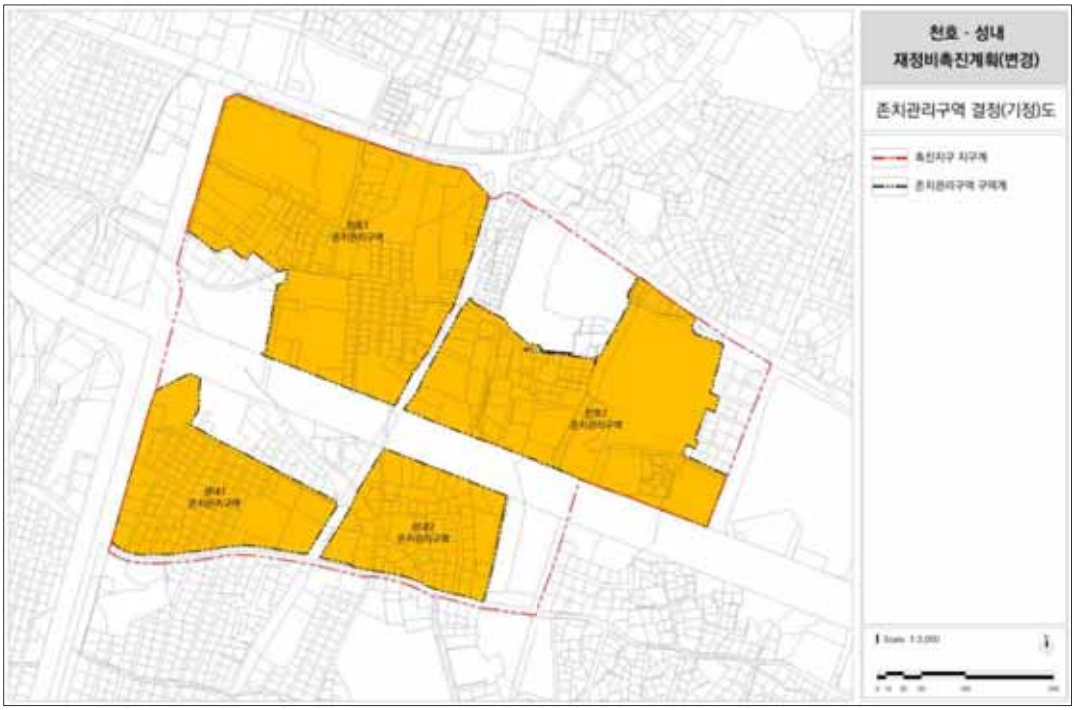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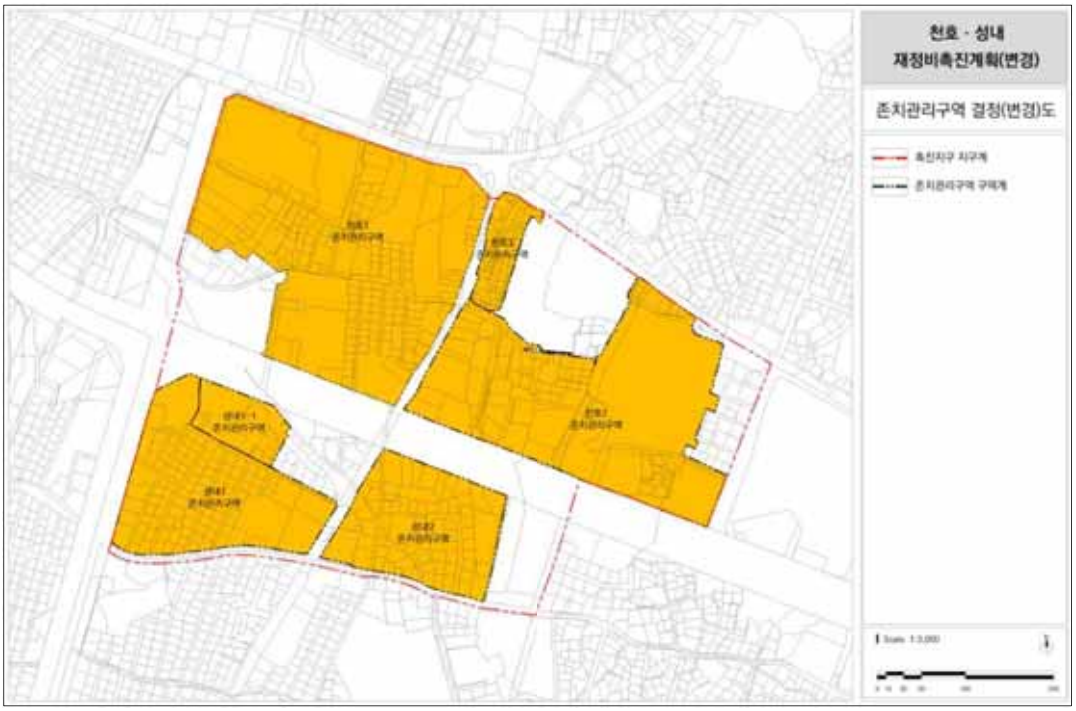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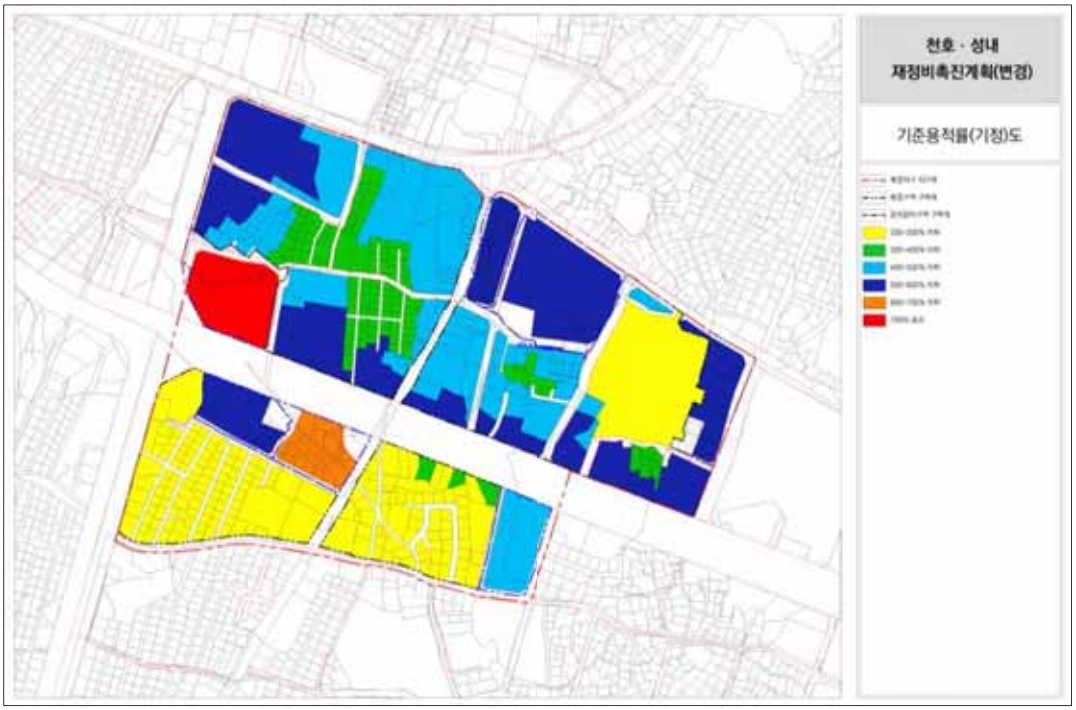
– 존치관리구역(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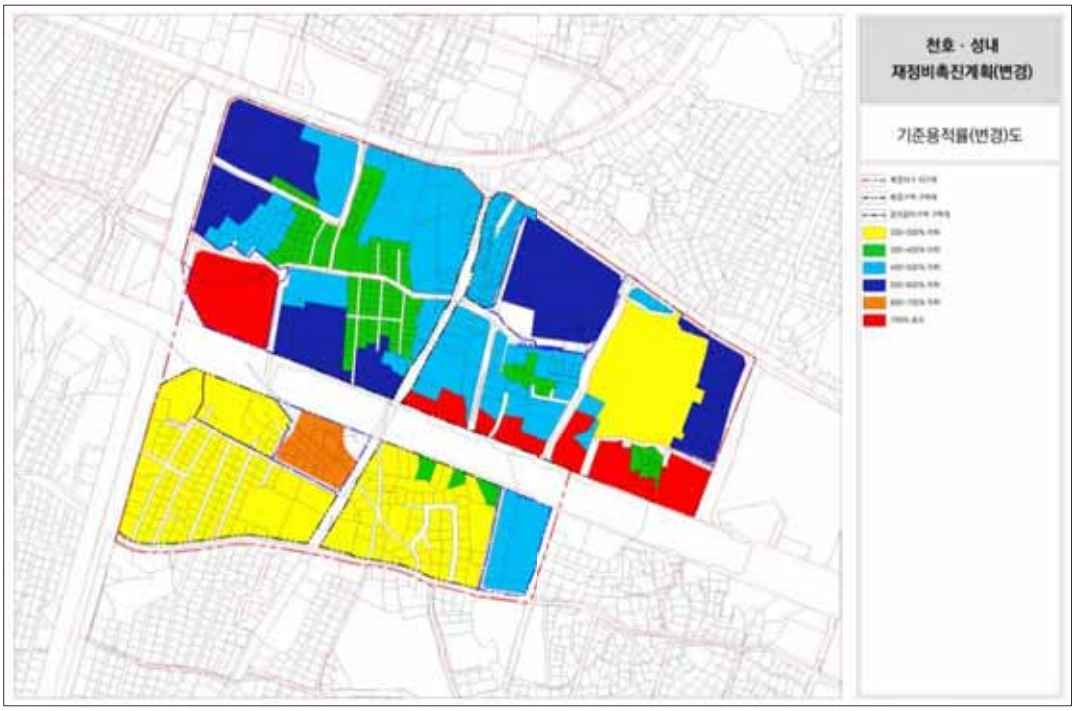
– 존치관리구역(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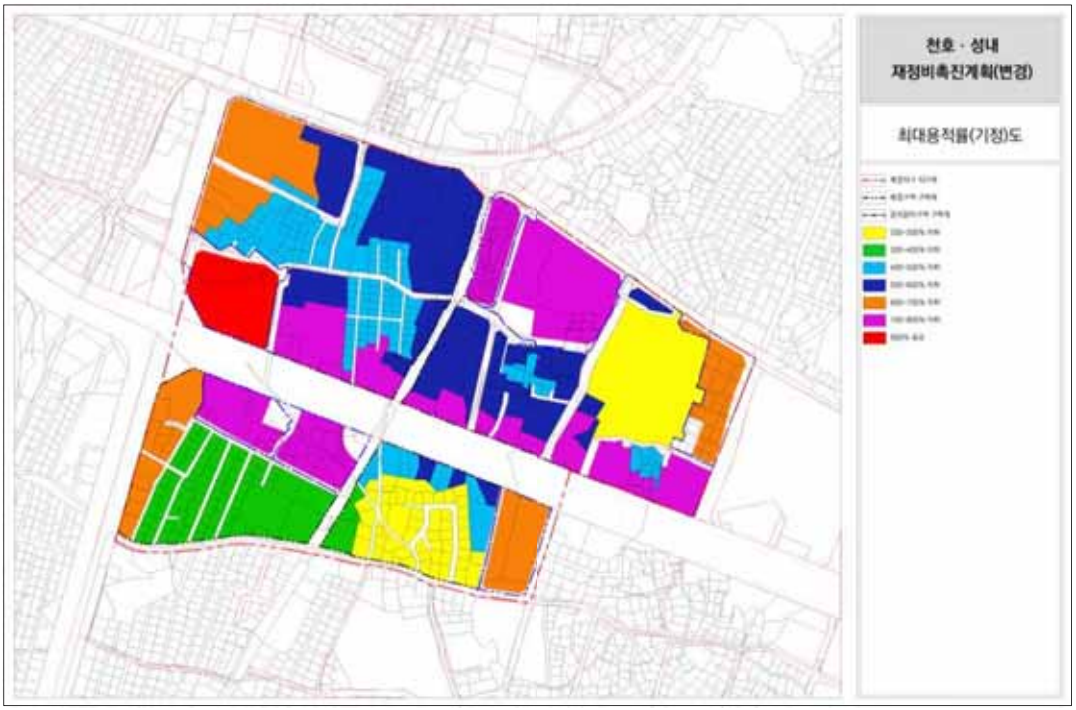
- 기준용적률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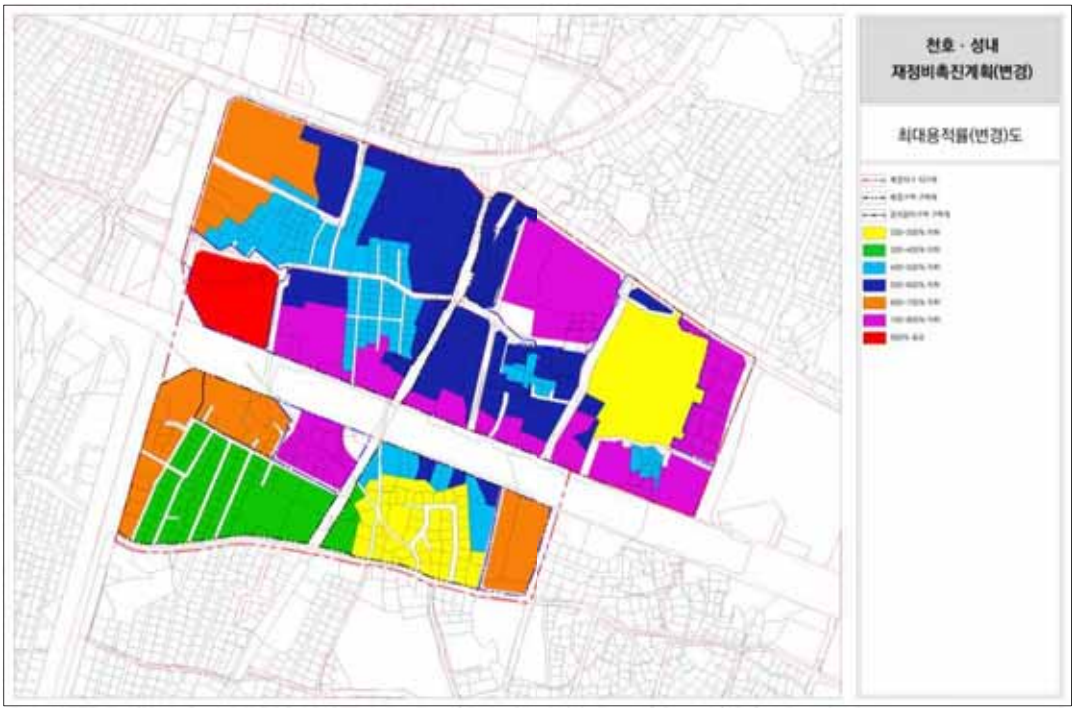
- 기준용적률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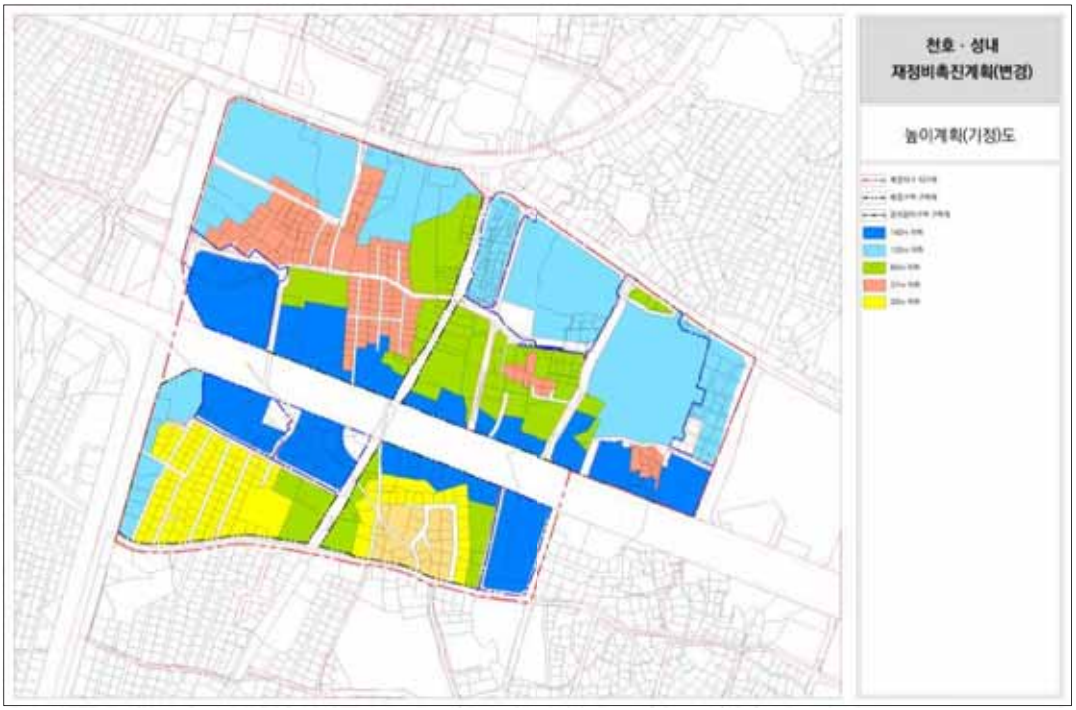
– 최대용적률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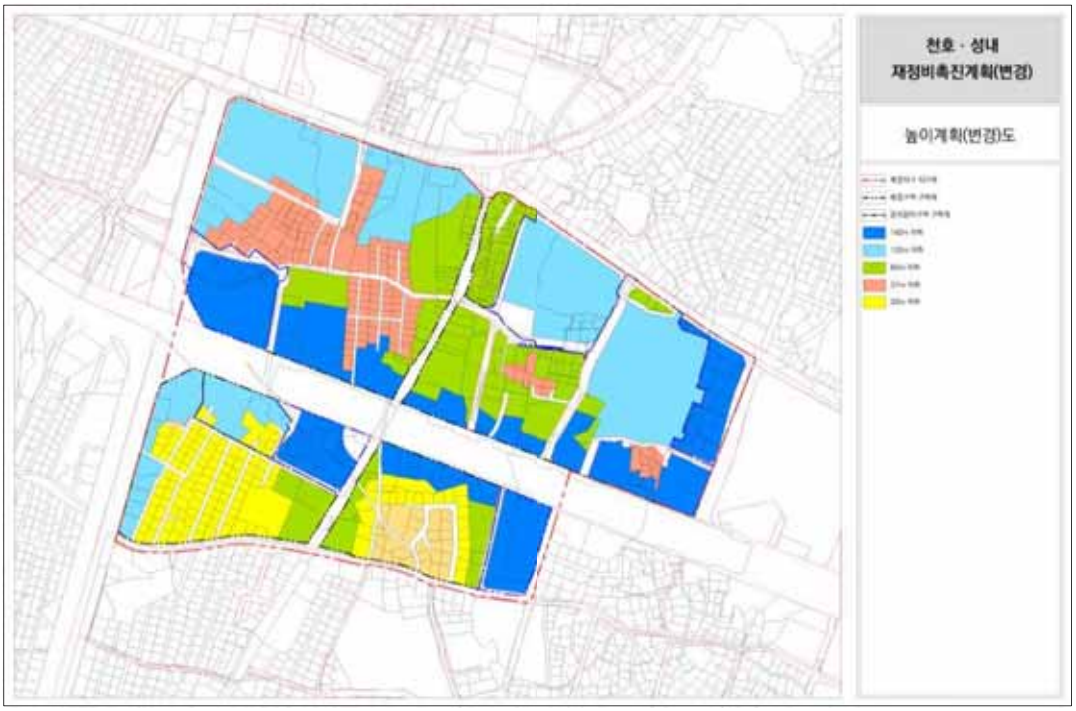
– 최대용적률계획(변경)도



– 높이계획(기정)도



– 높이계획(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12호

광진구 구의동 246 - 1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진구 구의동 246-1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성광진구 구의동 246-1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진구 구의동 246-1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246-10
○ 면 적 : 2,102.1㎡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11월 4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마스턴 제124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정 미 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0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 서초사옥)
○ 법인등록번호 : 110111-783283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수탁자		
	행정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구의동	246	10	대	2,102.1	2,102.1	주식회사마스턴제12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0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서초사옥)	1/1	엔에이치투자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신탁

2)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명칭	구조	규모			소유자		
	행정동	지번			지하 (층)	지상 (층)	면적 (㎡)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구의동	246-10	-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1	-	292.89	주식회사파고다2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지하1층 (관철동)	-
		246-10 시동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슬라브지붕	1	-	406.42			
합 계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81,187.9	-	181,187.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20-2133-6293)와 광진구청 5층 도시계획과(02-450-76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광진구 구의동 246-10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6-10

○ 면 적 : 2,102.1㎡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마스턴 제124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정 미 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20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 서초사옥)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2,031.92	96.7	임대주택
도로용지	70.18	3.3	도로
합 계	2,102.1	100.0	-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639인

2) 주택건설계획 : 439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25형	50	11.39	50.0	7.83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50형(A)	16	3.64	42.4	6.64	
	50형(B)	12	2.73	31.8	4.98	
	소 계	78	17.77	124.2	19.45	
공공지원민간임대	25형	261	59.45	261.0	40.86	
	50형(A)	56	12.76	148.4	23.24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주택	50형(B)	37	8.43	98.05	15.35	
	25형(선매입)	7	1.59	7.0	1.10	
	소 계	361	82.23	514.45	80.55	
합 계		439	100.0	638.7	10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공공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공공업무시설	광진구 구의동 246-10	건축연면적 : 564.68	광진구에 기부채납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1.7.)」 준용
- 공공시설(광진구에 기부채납)은 부속토지 및 공사비를 포함함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2)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용적률 적용기준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 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 : 대지면적의 17.3% 이상[주1]	기본	• 공공시설 부속토지면적 : 2.4% (49.75㎡)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14.9% (301.94㎡)	기본 용적률 827.1% / 상한 용적률 960% 이하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광진구 구의동 246-10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상한 : 증가된 용적률 1/2이상	상한	• 기결정 도로 : 3.5% (70.18㎡) • 공사비 환산면적 : 3.2% (64.32㎡)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4.1% (83.12㎡)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용적률 기준[주2] 10%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주거 : 비주거 = 89.47% : 10.53%			
주택 건설 비중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 원룸 : 전용 19.66㎡ - 신혼부부 : 전용 39.4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원룸 : 전용 19.66㎡ - 신혼부부 : 전용 39.4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 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364호 이상 산정식 : (전체건립호 - 299호)×2.5×1.25	• 522.46㎡ 계획 - 3F : 카페형 세탁실 (56.80㎡), 피트니스 (350.46㎡) - 4F : 작은도서관 (115.20㎡)			

※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 및 공공기여율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1.7.)」을 준용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주차장 설치	주차 대수	•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30㎡ 이하 : 0.25대/세대 - 전용50㎡ 이하 : 0.3대/세대 • 아파트 - 전용30㎡ 이하 : 0.5대/세대 - 전용60㎡ 이하 : 0.8대/세대 • 공공업무시설 : 200㎡ 당 1대 • 근린생활시설 : 134㎡ 당 1대	• 주거 - 법정 160대 - 계획 197대 • 근생 - 법정 15대 - 계획 17대	• 도시형생활주택 : 계획 98대 - 전용30㎡ 이하 : 54.25대 - 전용50㎡ 이하 : 24.60대 • 아파트 : 계획 99대 - 전용30㎡ 이하 : 50.50대 - 전용60㎡ 이하 : 31.20대 • 공공업무시설 : 계획 2대 • 근린생활시설 : 계획 15대	기본 용적률 827.1% / 상한 용적률 960% 이하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광진구 구의동 246-10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
	자주식	• 120대 이상인 경우 자주식 주차창 1/3이상	• 계획 214대(자주식 72대 이상) - 자주식 86대, 기계식 128대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주2)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으로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주거 용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에 위치. 다만,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 등의 사유와 상업지역에서 지상 2층까지 비주거 비율 10%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3) 공공기여 계획

구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827.1% 이하	960% 이하	• 기본 : 대지면적의 17.3% 이상주1) • 상한 : 증가된 용적률 1/2 이상	기본	• 공공시설 부속토지면적 : 2.4% (49.75㎡)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14.9% (301.94㎡)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상한	• 기결정 도로 : 3.5% (70.18㎡) • 공사비 환산면적 : 3.2% (64.32㎡)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4.1% (83.12㎡)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준용
※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 및 공공기여율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1.7.)」을 준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지 등) 조성을 통해 도심지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임
- 생태면적률 확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지내 보도 등은 인조화강석블럭 포장재를 사용토록 할 계획임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륜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설치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관련도면

< 공급촉진지구 구역결정도(신설) >



< 토지이용계획도 >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붙임]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2.5	-	385,352.5	·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 · 업무 · 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88	증)439	4,327	10,002	증)639	10,641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64	-	2,664	7,032	-	7,032	세대당 2.64인
	60㎡이하	1,153	-	1,153	3,044	-	3,044	
	60~85㎡이하	1,160	-	1,160	3,062	-	3,062	
	85㎡초과	351	-	351	926	-	926	
존치 정비구역	소계	-	-	-	-	-	-	
	60㎡이하	-	-	-	-	-	-	
	60~85㎡이하	-	-	-	-	-	-	
	85㎡초과	-	-	-	-	-	-	
존치관리구역		1,224	증)439	1,663	2,970	증)639주1)	3,610	역세권 청년주택

주1) 인구수(인)는 역세권청년주택 단독세대는 1.0인, 신혼부부세대는 2.0인 적용하여 산정.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변경)사유
-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 주택수 : 3,888호 → 4,327호 - 인구수 : 10,002인 → 10,641인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439세대 건립으로 인한 주택 및 인구수 증가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방재계획 (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20) 존치구역의 정비 및 정비계획 (변경)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1)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구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 일대	181,187.9	-	181,187.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1,187.9	-	181,187.9	100.0
주거지역	소계	127,572.9	-	127,572.9	70.4
	제1종일반주거지역	3,854.8	-	3,854.8	2.1
	제3종일반주거지역	47,092.0	-	47,092.0	26.0
	준주거지역	76,626.1	감)1,098.04	75,528.06	41.7
일반상업지역		53,615.0	증)1,098.04	54,713.04	30.2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① 최대개발규모 (변경없음)

②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F	10,611.1	-	-	-

– 변경

가구		획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면적(㎡)	
F	10,611.1	1	2,031.92	단일필지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 구의동 246-10번지에 한하여 획지계획 추가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획지계획을 지정하고자 함

③ 공동개발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①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정용도 계획 (변경)

구분	지정용도		비고
	기정	변경	
가	-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주1)공동주택(주거복합)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불허용도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전층	비고
일반상업지역 (A)	•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 단독주택 • 고시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

구분	전층	비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야영장 시설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추가하여 적용함
준주거지역 간선변 (B)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준주거지역 이면부 (C)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제3층 일반주거지역 (D)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발전시설	-

– 변경

구분	전층	비고
일반상업지역 (A)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단독주택 ·고시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제외) ·위락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야영장 시설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추가하여 적용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1층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3이상을 기준시간(08:00~22:00)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 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주거복합건물의불허용도 적용 예외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청년주택에 추가하여 적용함
준주거지역 간선변 (B)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
준주거지역 이면부 (C)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미관지구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구분	전층	비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D)	·해당 미관지구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발전시설	-

※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대지에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의 복합)은 불허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주거복합건물의 불허용도 적용을 예외로 함
※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규정 적용

• 권장용도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전층	비고
일반상업지역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운동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하여 적용 예외
준주거지역 간선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
준주거지역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판매시설 중 상점 ·노유자시설	-
미가로 먹자골목 (4)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주)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 권장용도 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변경

구분	전층	비고
일반상업지역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운동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적용 예외
준주거지역 간선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단, 불허용도 제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금융업소 제외)	-
준주거지역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판매시설 중 상점 ·노유자시설	-
미가로 먹자골목 (4)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주)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 권장용도 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지정용도 변경 (가) ·불허용도 변경 (A) ·권장용도 변경 (1)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건설을 위해 지정용도, 불허용도 및 권장용도를 변경하고자 함

②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준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주)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400%	-
일반 상업 지역	아차산로변	300%	630%	800%	-
	자양로변	400%	660%	800%	-
	구의동 246-61,62,63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1,000%	1,104%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내용을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대지에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의 복합)은 불허함

주6)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	

주7)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주택연면적비율(%)	일반상업지역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36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
50 이상 ~ 60 미만	390% 이하	650% 이하		
50 미만	400% 이하	660% 이하		

주8)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필지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주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주5), 주6), 주7)의 적용을 예외로 함

– 변경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법정용적률의 2배이하	-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360%	400%	-
일반 상업지역	아차산로변	300%	630%	800%	-
	자양로변	400%	660%	800%	-
	구의동 246-61,62,63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1,000%		1,104%	
	구의동 246-10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청년주택에 한함
		827.1%		960% 이하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준용
주2)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에 따르며, 조례 개정 시 개정된 규정 따름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단,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1.7.)」을 준용
※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산정 시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결정(변경) 고시 이후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 기존 준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단, 준주거지역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주4)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주거부분이라 함은 공동주택(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중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을 말함

주5) 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기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은 전체연면적의 70%이하 적용

※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 대지에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의 복합)은 불허함
주6)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7/10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3/10
		기부채납에 의해 증가되는 용적률 배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용도용적제 적용	

주7) 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

주택연면적비율(%)	일반상업지역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 이상 ~ 70 미만	36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
50 이상 ~ 60 미만	390% 이하	650% 이하		
50 미만	400% 이하	660% 이하		

주8)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필지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상한용적률 완화 적용
주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주5), 주6), 주7)의 적용을 예외로 함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기본용적률 827.1% - 상한용적률 960% 이하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함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변경없음)
- 역세권청년주택사업(246-10번지) 용적률 적용 기준 (신설)

항목		적용기준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 : 대지면적의 17.3% 이상 ·상한 : 증가된 용적률 1/2이상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준용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용적률 부여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용적률 기준 10%이상 20%이하	
주택 건설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364호 이상 산정식 : (전체건립호 - 299호)×2.5×1.25	
주차장 설치	주차대수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30㎡ 이하 : 0.25대/세대 - 전용50㎡ 이하 : 0.3대/세대 ·아파트 - 전용30㎡ 이하 : 0.5대/세대 - 전용60㎡ 이하 : 0.8대/세대 ·공공업무시설 : 200㎡ 당 1대 ·근린생활시설 : 134㎡ 당 1대	
	자주식	·120대 이상인 경우 자주식 주차장 1/3이상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따름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기정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100m 이하	-
	간선부	70m 이하	-
준주거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57m 이하	-
	간선부	55m 이하	-
	이면부(미가로 주변)	48m 이하	-
	자양로 이면부	24m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48m 이하	-

– 변경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100m 이하	-
	간선부	70m 이하	-
	구의동 246-10	76m 이하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준주거지역	간선도로 교차부	57m 이하	-
	간선부	55m 이하	-
	이면부(미가로 주변)	48m 이하	-
	자양로 이면부	24m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48m 이하	-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의동 246-10번지 일원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 70m이하 → 76m이하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변경 결정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변경없음)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

구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고
		기정	변경	
건축 한계선 (변경없음)	간선도로변	·3~5m(대지분할가능선 제외)	좌동	결정도 참조
	이면도로변	·1~2m(대지분할가능선 제외)	좌동	
1~2층 벽면한계선 (신설)	246-10번지 내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총 6m - 필요시 연결통로 설치 가능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의동 246-10번지에 한하여 신설 - 공공보행통로변 1~2층 벽면한계선 폭원 6m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246-10번지 내 1~2층 벽면 한계선 지정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변경없음)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기준		비고
		기정	변경	
공지 (변경없음)	공개공지	·3개소	좌동	결정도 참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 3~5m(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이면도로변 : 1~2m(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좌동	
통로 (변경)	공공 보행통로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 구의동 246-10 제외 ·구의동 246-10(1~2층 벽면한계선)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 전구간 : 3개소(건축한계선) - 구의동 246-10 제외로 변경 ·구의동 246-10(1~2층 벽면한계선) 신설	·대상지 내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폭원 및 높이 확보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변경없음)

•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공공기여 계획 (변경)
• 구의동 246-61번지 (변경없음)
• 구의동 246-10번지 (신설)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827.1% 이하	960% 이하	• 기본 : 대지면적의 17.3% 이상 주1) • 상한 : 증가된 용적률 1/2 이상	구의동 246-1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준용
※ 단,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21.7.)」을 준용

(2) 자양9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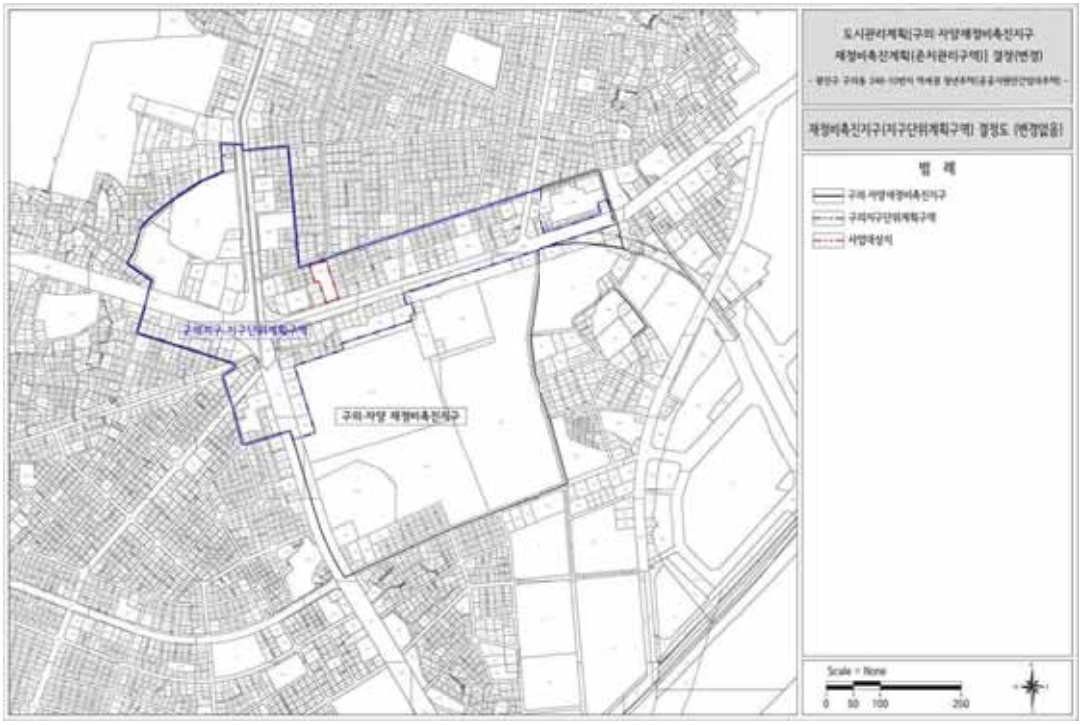
2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Ⅳ.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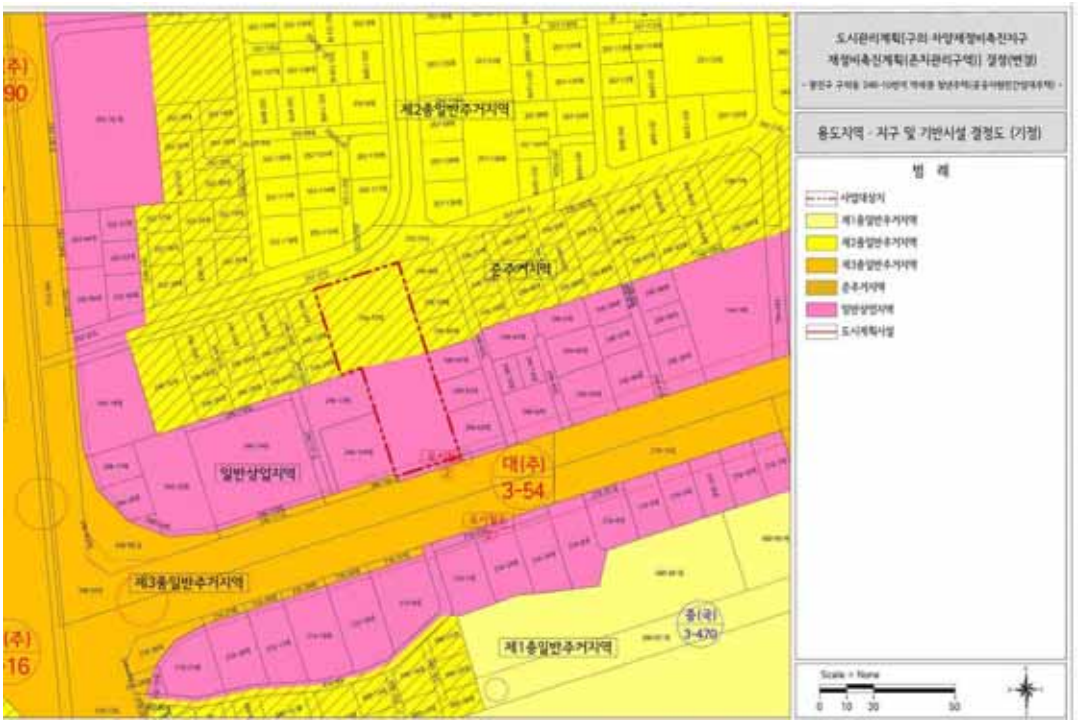
Ⅴ.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 도서로 갈음)

Ⅵ.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7) 및 광진구 도시 계획과(☎02-450-768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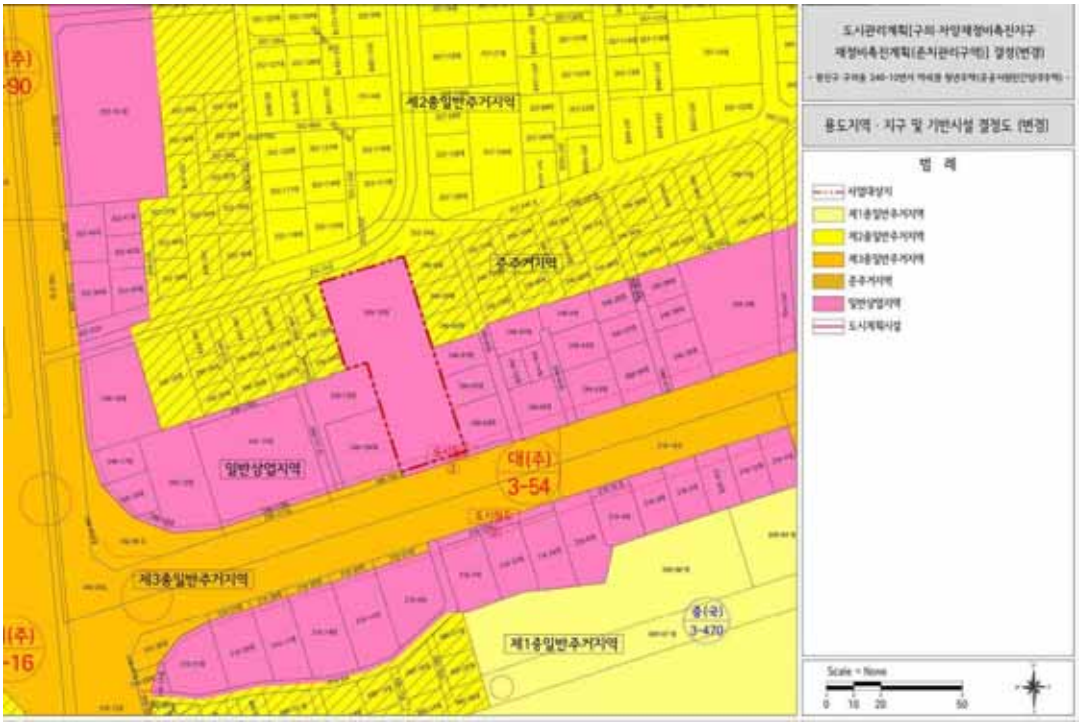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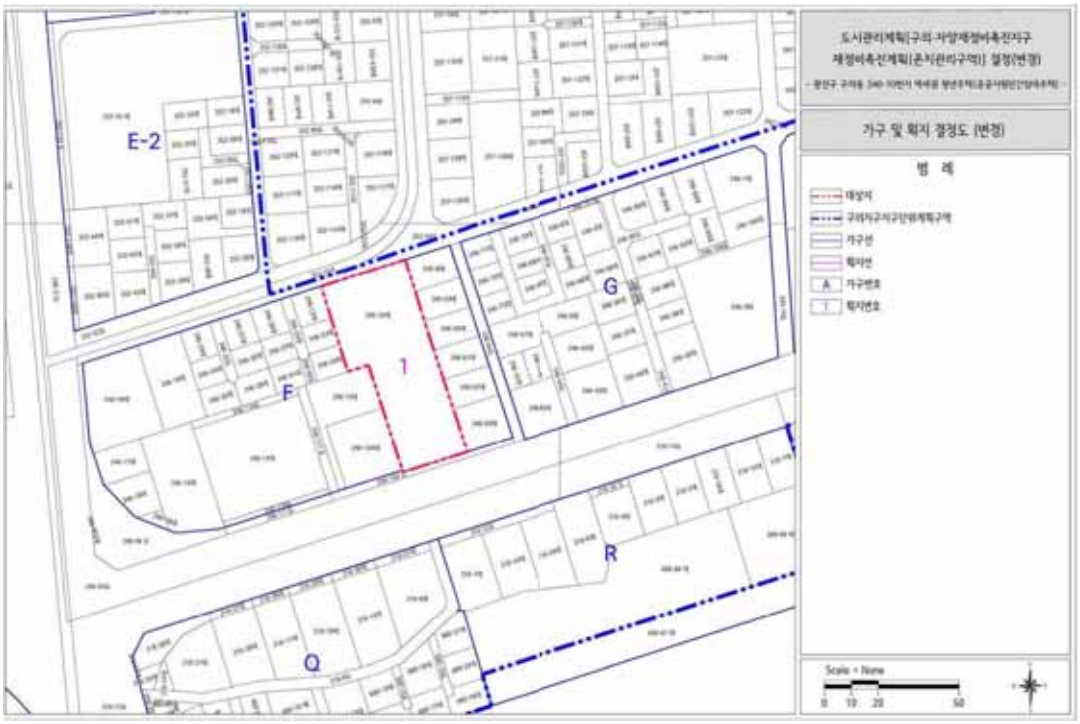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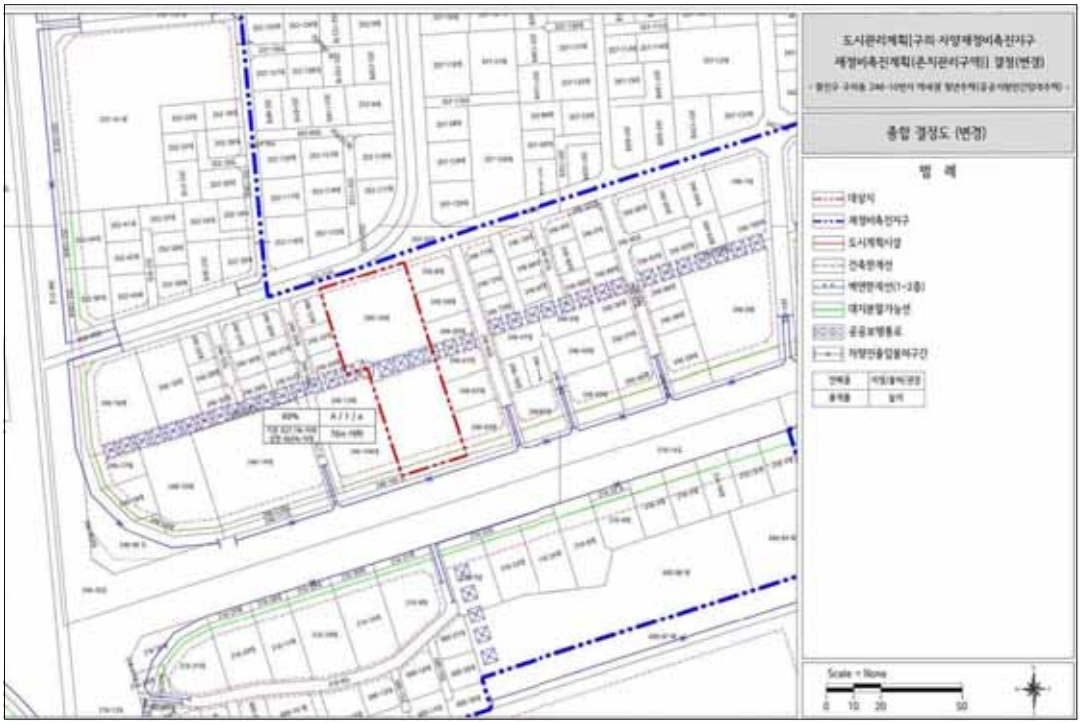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종합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종합결정도(변경)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668호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다. 사업규모 :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본선 10개소, 지선 2개소), 차량기지 1개소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마.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11. 04. ~ 12. 02 (20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지 역	장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772-7149
송파구	송파구청 환경과, 교통과, 위례동·마천1동·거여2동 주민센터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65
성남시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성남)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031-729-3151
하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하남)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031-790-6613

 다.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게시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 게시 내용 : 공고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주민의견 제출서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정

- 개최장소 : 밀리토피아 호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
- 일 정

시·구	장 소	일 정	참석가능 인원수(명)	비 고
송파구	밀리토피아 호텔 포트리스홀	2021.11.15(월) 10:00	91	송파구민 참석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 포트리스홀	2021.11.16(화) 10:00	91	성남시민 참석
하남시	밀리토피아 호텔 포트리스홀	2021.11.16(화) 14:00	91	하남시민 참석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설명회 참석인원수은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주체측 포함) 미만으로 제한하며, 해당 지자체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설명회 장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설명회 참석자는 설명회 당일 지역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시기 : 공람기간 시작일~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12.09(목)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 및 홈페이지에 첨부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1) 해당지자체 공람장소
2) 전자우편(wooyaci@seoul.go.kr)
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설명회 개최

나.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설명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 설명회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참여바랍니다.

라. 참석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신분증 지참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67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474	2021-07-09	주식회사 마글론이에프씨 김광석 134811-0419227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705호(문정동)
2	203475	2021-07-09	주식회사 하이퍼시스템즈 채승호 110111-2850059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28, 엠에스에이빌딩 3층(상암동)
3	203476	2021-07-09	디스플레이허브 주식회사 김동협 110111-432585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55, 에스케이테크노빌딩 604호(성수동1가)
4	203477	2021-07-15	하스트 주식회사 김종혁 110111-75161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8, 에이스한솔타워 15층 1507호(가산동)
5	203478	2021-07-15	주식회사 온앤오프미디어 주봉주 110111-24444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우림이비지센타,607호,607-1호(구로동)
6	203479	2021-07-15	주식회사 세인엔에스 김종술 110111-56491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1006호(염창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7	203480	2021-07-15	주식회사 시그널아이씨티 강민희 110111-790807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5, 가산하우스디와이즈타워 1018호(가산동)
8	203481	2021-07-15	주식회사 지투아이넷 박승후 110111-425630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018호(가산동)
9	203482	2021-07-19	천도시스템 유한회사 전해석 110114-0264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403호(영등포동8가)
10	203483	2021-07-19	장학건설 주식회사 정세학 110111-1079816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1 , 3층(문정동, 덕우빌딩)
11	203484	2021-07-19	뮤지엄아이 주식회사 김영훈 110111-37396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휴렛팩커드빌딩4층,5층,6층,8층서울핀테크랩 (여의도동)
12	203485	2021-07-19	주식회사 아이티오티넷 오우진 110111-6881357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6, 한성빌딩 5층 501호(능동)
13	203486	2021-07-19	헬스커넥트 주식회사 임동석 110111-475839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76, 밤부빌딩 4층,5층(성수동1가)
14	203487	2021-07-23	주식회사 혁산정보시스템 전세원 110111-11773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606호(문래동3가)
15	203488	2021-07-23	유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박성규 110111-17735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52, 삼환디지털벤처타워 303호(성수동2가)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6	203489	2021-07-23	드라발 주식회사 강문석 110111-107006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13, 수영빌딩(한남동)
17	203490	2021-08-05	주식회사 소비코시스템 권경섭 110111-108306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5길 77, 2층(방배동)
18	203491	2021-08-05	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김진현 110111-7356606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1, 삼성아이티해링턴타워 616호(가산동)
19	203492	2021-08-05	비티엠써비스 주식회사 박규준 110111-21529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21호(문래동3가)
20	203493	2021-08-05	주식회사 엘이디세이버 홍현철 110111-471789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210호(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2차)
21	203494	2021-08-05	주식회사 리더스시스템즈 이부석 110111-27303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SKV1center 18층 이-1801~5호(당산동4가)
22	203495	2021-08-12	주식회사 윈텍정보통신 박영규 110111-692132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4길 20, 2층 201호(방배동)
23	203496	2021-08-19	주식회사 일광테크 임기철 110111-08321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3길 17(독산동)
24	203497	2021-08-19	주식회사 넷세이프코리아 김봉수 110111-3853391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422호(독산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25	203498	2021-08-20	주식회사 니치테크 장근옥 110111-35003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선유도우림라이온스밸리A A동 1506호(양평동5가)
26	640167	2021-08-23	주식회사 제주아이티엘 최하늘 220111-0215723	서울 서초구 논현로 75, 4층(양재동, 유로빌딩)
27	203499	2021-08-24	주식회사 씨큐윈 박근우 110111-510969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924호(성수동2가)
28	203500	2021-08-24	에이치티액세스 주식회사 이건구 110111-36034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23길 18, 2,3층(신길동)
29	203501	2021-08-24	주식회사 스타버킷 김영섭 110111-525645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이앤씨드림타워7차 302호(가산동)
30	203502	2021-08-24	주식회사 유앤유 유광태 110111-420495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IT밸리 1003~1005호(구로동)
31	203503	2021-08-24	주식회사 한세스 유기현 110111-09316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44, 우영테크노센터 303호(성수동2가)
32	203504	2021-08-31	나이스씨엠에스 주식회사 박현섭 110111-39562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2층(충정로3가)
33	203505	2021-08-31	주식회사 엘에스케이 이승권 110111-74842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시티2 10층 1016~1018호(문래동6가)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34	203506	2021-09-10	주식회사 니드아이 박수진 110111-7779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7, 304호(양평동2가)
35	203507	2021-09-10	주식회사 건담앤컴퍼니 이상현 110111-662398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 송암빌딩 3층(방이동)
36	203508	2021-09-10	주식회사 이화글로벌 이혜숙 110111-48978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4(대현동)
37	203509	2021-09-15	주식회사 스누아이랩 유명호 110111-702525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지원시설 940동 111,112호(신림동)
38	203510	2021-09-15	주식회사 넥스트정보기술 박승주 110111-53486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선유도우림라이온스밸리1차 A동 906호(양평동5가)
39	203511	2021-09-15	로봇앤컴 주식회사 이경일 110111-66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나길 26, 102호(자양동)
40	203512	2021-09-16	아리온통신 주식회사 박용범 110111-29737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701호(문래동3가)
41	203513	2021-09-16	주식회사 넷앤시큐어 김성배 110111-606102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아이티타워 212호(구로동)
42	203514	2021-10-07	주식회사 서이시스템 박형호 110111-6630853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아이온스퀘어 920호(장지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43	203515	2021-10-07	주식회사 신성씨앤에스 전성우 110111-412817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대륭테크노타운18차 1301~1305호(가산동)
44	203516	2021-10-08	주식회사 아이티콘 이준형 110111-37361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선유도역1차아이에스비즈타워 2601호(양평동5가)
45	203517	2021-10-18	주식회사 경우테크 김경일 110111-549409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10길 14, 에이스하이엔드성수타워 502호(성수동2가)
46	203518	2021-10-18	주식회사 리번드 임성일 110111-44336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이앤씨드림타워8차 706호(가산동)
47	203519	2021-10-18	주식회사 스프린텍 염승명 110111-66231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227호(화양동)
48	203520	2021-10-18	프리커스 주식회사 최훈 110111-407639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A동 1704,1705호(가산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68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교량과 고속철도	건설 엔지니어링업 영업정지 6개월 (2021.10.25~2022.4.24)	○ ㈜교량과고속철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건설기술인 A씨 퇴사(2019.10.10.)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관련 [별표 5]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함.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기한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1차 영업정지 (' 21.6.28~9.27)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1차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된 시점에도 아직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관련 [별표6] 2. 개별기준 사목 규정에 따라 2차 영업정지(6개월)를 처분함.(영업정지기간 : 2021.10.25. ~ 2022.4.24)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백경지앤씨	과징금 3천만원	㈜백경지앤씨는 소속 기술인력의 일신상의 사유로 2021년 5월 11일부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법정기한(50일) 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6 개별기준 사목에 따라 3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개별기준 사목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68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사망말소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1.11. 4. ~ 2021.11.18.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669818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2-8(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63-8)	수도요금	2019.7 외 13납기	14회	877,66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2-8	권용호	531030-1****** (등기번호1105002403477,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8길 20 211동 1113호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877,660원	2021.11.19이후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58422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1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24-10)	수도요금	2018.10 외 17납기	18회	875,37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87-140	조진환	770317-1****** (등기번호1105002404074 폐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3길 24-10(홍제동)	875,370원	2021.11.19이후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6695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56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길 76-4)	수도요금	2017.3 외 4납기	5회	3,417,88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563	신영관	211017-1****** (사망말소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563	3,417,880원	2021.11.19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02-3146-35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694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통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11개 업체(명단 별첨)

2. 행정처분 및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경고 : 2개 업체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30일 사전통지 : 3개 업체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사전통지 : 6개 업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4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물류정책과
   - 담 당 자 : 김형남(02-2133-4096)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서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 행정처분내역 : 경고 –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4630	(주)블루파이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114길 11-1(논현동, 종인빌딩) 3층	2021-05-24
2	3618	주식회사 위스코앤지비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2차) 803호	2021-05-2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업체

–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30일 –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4644	(주)앤씨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3길 63(합정동) 앤씨엘빌딩	2021-03-10
2	4682	(주)월드아이멕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78(화곡동, 동도센트리움오피스텔) 1502호	2021-03-19
3	4980	티제이엘로지스틱(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7길 8(신월동) 1층	2021-03-2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업체

–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1523	(주)신세계항공해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6가길 41(등촌동, 민경빌딩) 2층 1호	2020-12-15
2	1958	디엔에스로지스틱스(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7나길 8 2층(방화동)	2020-12-12
3	4430	케이지에스월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10길 46(마곡동) 405호 보타닉파크프라자	2020-09-03
4	4712	주식회사 하이에어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다길 41(창천동) 2층 597호	2020-11-28
5	4758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해피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9길 16(논현동) 103동	2020-12-20
6	5005	(주)알바트로스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4(태평로2가, 삼정빌딩) 1902호	2020-12-20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6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나. 공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다. 공고원인 : 하천부지(제방, 서울시)내에 축조된 불법건축물 자진정비 불이행

라. 공고대상

위 치	소유자 및 주소	대상 또는 종류	건축면적 (㎡)	위반내용
강동구 암사동 532-2번지	미 상	불법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약 82.5㎡ (2층)	하천부지내 무단으로 건축물 축조

마. 공고기간 : 2021. 11.05. ~ 11. 30.(26일간)

바. 공고 및 게시장소 : 서울특별시 시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사. 기타사항 : 상기 불법건축물(2층, 1동)은 '14년 9월 거주자 퇴거 및 폐쇄한 후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상기 불법건축물을 2021. 11. 30(화)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대집행 대상 위치도 및 현황

위 치	소유자 및 주소	대상 또는 종류	건축면적 (㎡)	위반내용
강동구 암사동 532-2번지	미 상	불법건축물 (철근콘크트조)	약 82.5㎡ (2층)	하천부지내 무단으로 건축물 축조

■ 위치도



■ 현황사진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18호

재산압류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이 체납된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압류 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한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상 · 하수도 요금 체납 건물의 재산압류 예고서 공시송달

2. 근거: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3. 공시송달 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재산압류 예정일: 2021. 11. 19.
   - ’ 21. 10. 08. 기준 체납요금이므로 실제 체납요금은 증가할 수 있음

5. 공고기간: 2021. 11. 4. ~ 2021. 11. 18.
   - 공고 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2104)에서 수도요금 청구서를 발부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 안내
   - 재산압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8, ☎02-3146-2104, FAX: 030309140236)로 방문, 우편, 팩스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No	고객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압류대상 종류	압류대상 소재지	총체납금
1	005051497	김민조	830628-1******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13번길	건물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76나길	778,040원
2	005071747	유재영	651107-1******	경기도 남양주수 화도읍 경춘로	건물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68길	720,040원
3	034353656	최은하	710322-2******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111	건물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13길	126,310원
4	001713849	함종어씨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04-26	건물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700,330원
5	007362763	박인희	540722-2******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71길	건물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71길	520,630원
6	007217212	장성진	840529-1******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건물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22나길	178,600원
7	000189887	노기환	781118-1******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길	건물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나길	44,320원
8	000148421	이정숙	310105-2******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2길	건물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2길	87,020원
9	036120603	백명식	50051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건물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46,250원
		유완식	551201-1******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나길			
		서종수	901115-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1로			
		오택원	700811-1******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8길			
		진병낙	390226-1******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서영자	430314-2******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김상희	510801-2******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안건출	780428-1******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2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112029	2021-08-06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이강만 110111-02497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63한화생명빌딩(여의도동)	합병
2	530319	2021-08-26	주식회사 굿센 박연정 110111-309110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 아이티센빌딩(서초동)	합병
3	320323	2021-08-27	주식회사 나지정보통신 엄혜선 110111-794138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8길 116, 103호(중계동)	법인전환
4	111192	2021-09-30	㈜신한개발 이종순 110111-11825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26, 701호, 702호(성수동2가, 하우스디세종타워)	분할합병
5	201792	2021-10-07	주식회사 건영정보기술 김재곤 110111-80107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32(삼성동)	법인전환
6	203069	2021-10-28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 하운식 110111-0062200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4, (주)케이티앤지을지로타워(초동)	합병
7	111446	2021-10-28	퓨처웨어 주식회사 박영철 110111-218026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13, 배유빌딩(방배동)	합병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2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비본어게인 인셀덤 목동	서울 후 제 1363호	박보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52, 1층(오류동, 동선빌딩)	소재지 '21.7.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 9층 932호(마곡동, 마곡나루역캐슬파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52, 1층(오류동, 동선빌딩)
2	얀새	서울 후 제 1416호	윤정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57, 상가동 2층 3호(염창동, 등촌제이스카이)	소재지 '21.7.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 101동 903호(양평동3가, 거성파스텔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57, 상가동 2층 3호(염창동, 등촌제이스카이)
3	인셀덤 벨라돈나(Bella Donna)	서울 후 제 1212호	문관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7, 1605호(서초동, 밀라텔 쉐르빌)	소재지 '21.7.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A동 B-1층 308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7, 1605호(서초동, 밀라텔 쉐르빌)
4	인셀덤 은평대리점	서울 후 제 1125호	양정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2길 9, 2층 201호(응암동)	소재지 '21.7.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8길 18-9, 409호(응암동, 자선메르시안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2길 9, 2층 201호(응암동)
5	믿음	서울 후-제667호	경 정 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1606동 708호(상계동, 주공아파트)	소재지 '21.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1615동 802호(상계동, 주공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86, 1606동 708호(상계동, 주공아파트)
6	인셀덤 DDM(동대문)	서울 후 제 1174호	이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17길 7, 1층 102호(풍납동, 하나빌라)	소재지 '21.7.1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길 66-5, 1동 지하02호(자양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17길 7, 1층 102호(풍납동, 하나빌라)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7	수미	서울 후-제1001호	정순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1층 177호(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소재지 '21.7.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다길 20-5 , 1층 103호 (구로동, 디지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1층 177호(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상호 '21.7.16	수니	수미
8	인셀덤 무지개샵	서울 후-제840호	신유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5길 18, 201호(대림동)	소재지 '21.7.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12길 30-7(도림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5길 18, 201호(대림동)
9	탑 인셀덤	서울 후-제1010호	한혜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7길 28, 302호(방학동, 현대캐슬)	소재지 '21.7.1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7길 28, 302호(방학동, 현대캐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7길 28, 302호(방학동, 현대캐슬)
					상호 '21.7.13	올리브스킨케어	탑 인셀덤
10	오휘명동점	서울 후-제478호	이 남 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21, 2층(명동1가, 명동포커스빌딩) (☎ 02-3442-5252)	소재지 '21.7.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1길 52, 2층(논현동)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9길 21, 2층(명동1가, 명동포커스빌딩)
					상호 '21.7.13	오휘논현지사	오휘명동점
11	인셀덤 드라마 대리점	서울 후-제1228호	윤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80, 1층 128호(답십리동, 답십리 뉴타운 카운티 에비뉴)	소재지 '21.7.7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6, 304호(구의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80, 1층 128호(답십리동, 답십리 뉴타운 카운티 에비뉴)
12	광명페이스샵	서울 후-제1073호	이선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 3층 301호(공릉동)	소재지 '21.6.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56, 102동 304호(공릉동, 효성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 3층 301호(공릉동)
13	인셀덤 강남점 벨라(Bella)	서울 후-제958호	박주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85, 1층 101-2호(상도동)	소재지 '21.7.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길 36-14(사당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85, 1층 101-2호(상도동)
14	금경뷰티	서울 후 제 1426호	PIAO JINGJ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10, 202호(당산동4가)	소재지 '21.7.7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9번길 15-4, 104호(철산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10, 202호(당산동4가)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5	지인에스테틱	서울 후 제 1168호	박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72, 2층(도곡동, The skin)	소재지 '21.6.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84, 204-1호(도곡동, 신호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72, 2층(도곡동, The skin)
16	인셀덤 삼전대리점	서울 후-제1034 호	최경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3길 9-11, 제1층 제101호(방이동)	소재지 '21.7.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34-20, 101호(삼전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3길 9-11, 제1층 제101호(방이동)
17	인셀덤 수담 넘버원	서울 후 제 1127호	전희진	서울특별시 화곡로 416, 307호, 308호(등촌동, 가양역 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소재지 '21.7.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30, 101동 701호(황학동, 황학동 코아루)	서울특별시 화곡로 416, 307호, 308호(등촌동, 가양역 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18	아모레신설대성 특약점	서울 후-제705호	김 호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3길 10, 2층(신설동)	소재지 '21.6.28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16, 제4층(신설동)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3길 10, 2층(신설동)
19	인셀덤 코리아	서울 후 제 1294호	임수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19층 1908호(목동, 현대41타워)	소재지 '21.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00, 제206동 제1층 제130호(목동, 현대하이페이론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19층 1908호(목동, 현대41타워)
20	사계절 뷰티샵	서울 후-제909호	PIAO JINGYU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103동 907호(천호동)	소재지 '21.7.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6길 43-3, 101호(성내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103동 907호(천호동)
21	럭셔리뷰티천호 점	서울 후-제786호	박정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56, 4층 401호(암사동, 상원빌딩) (☎02-6365-5235)	소재지 '21.6.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98, 5층 5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56, 4층 401호(암사동, 상원빌딩)
22	한국화장품 목동지사	서울 후-제11호	임 호 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16-1, 2층(신정동, 무림빌딩) (☎ 02-2601-2391)	소재지 '21.6.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18, 3층(신정동, 이화빌딩)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16-1, 2층(신정동, 무림빌딩)
23	유니베라새공릉 대리점	서울 후-제767호	장 미 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19, 309호(중화동, 제일프라자)	소재지 '21.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5길 8, 2층 (공릉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19, 309호(중화동, 제일프라자)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4	투명한 빛(인셀덤 강남	서울 후-제843호	박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34, 7층 702호(월계동, 그랑디오피스텔)	소재지 '21.6.1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 1동 13층 1321호(등촌동, 비원오피스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34, 7층 702호(월계동, 그랑디오피스텔)
25	인셀덤 엘드림(El Dream)	서울 후 제 1317호	백영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9길 55-1, 1층(사당동)	소재지 '21.6.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0길 88, 1108호(중화동, 건영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9길 55-1, 1층(사당동)
26	인셀덤 위더스	서울 후 제 1382호	오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38동 308-1호(전농동, 전농에스케이아파트주상가)	소재지 '21.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길 41, 101호(전농동, 화이트빌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138동 308-1호(전농동, 전농에스케이아파트주상가)
27	아모레신도림특약점	서울 후-제227호	김영일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9길 8, 701호(신도림동, 태영프라자) (☎ 02-2679-3062)	소재지 '20.1.20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9길 8, 701호(신도림동, 태영프라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9길 8, 702호(신도림동, 태영프라자)
28	인셀덤&노블하우스	서울 후-제1032호	정성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2길 38, 604동 712호(거여동, 거여6단지아파트)	소재지 '20.12.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3길 12, 1층(거여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2길 38, 604동 712호(거여동, 거여6단지아파트)
29	오휘 문정지사	서울 후-제382호	김 평 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2길 5-12, 1층 101호(문정동, 하이빌) (☎ 02-400-5248)	소재지 '21.6.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2, 4층(문정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2길 5-12, 1층 101호(문정동, 하이빌)
30	인셀덤미소	서울 후-제1013호	한춘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80, 1층 113호(답십리동, 답실리 뉴타운 카운티 에비뉴)	소재지 '21.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212동 2102호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80, 1층 113호(답십리동, 답실리 뉴타운 카운티 에비뉴)
31	인셀덤TOP	서울 후 제 1327호	강정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43, 101동 110호(하월곡동, 성북힐스테이트)	소재지 '21.5.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59, 108동 1004호(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43, 101동 110호(하월곡동, 성북힐스테이트)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32	인셀덤 루시	서울 후-제1063호	박금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0길 15, 102호(신림동)	소재지 '21.5.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5길 14(신림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0길 15, 102호(신림동)
33	인셀덤 엠버	서울 후 제 1291호	문미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613동 7층 706호(하계동, 장미아파트)	소재지 '21.5.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25길 50, 103동 1806호(신내동, 벽산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613동 7층 706호(하계동, 장미아파트)
34	인셀덤 에이스	서울 후-제883호	장영애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101동 1402호(개봉동, 두산아파트)	소재지 '21.5.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4길 11, 402동 607호(신길동, 우성아파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101동 1402호(개봉동, 두산아파트)
					상호 '21.5.21	앨트원(ALT1)	인셀덤 에이스
35	이음사랑뷰티샵 큐(Q)사랑	서울 후 제 1286호	윤춘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03, 3층 301호(신정동)	소재지 '21.5.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38길 29, 1층 가운데(신정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03, 3층 301호(신정동)
					상호 '21.5.10	이음사랑뷰티샵	이음사랑뷰티샵큐(Q)사랑
36	인셀덤 역삼점	서울 후-제817호	배영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22, 2층(역삼동)	소재지 '21.5.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100, 31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7길 22, 2층(역삼동)
					상호 '21.5.13	인셀덤 동대문 대리점	인셀덤 역삼점
37	뷰티팜	서울 후-제801호	김미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43, 401동 907호(망원동, 신부파스카아파트)	소재지 '21.5.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6-17 하나가드리움 100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43, 401동 907호(망원동, 신부파스카아파트)
38	인셀덤JY판매점	서울 후 제 1277호	박지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53, 1층 코너상가(전농동)	소재지 '21.5.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90, 11동 801호(전농동, 전농1차우성아파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53, 1층 코너상가(전농동)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39	비본어게인 인셀덤 목동	서울 후 제 1363호	박보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 9층 932호(마곡동, 마곡나루역캐슬파크)	소재지 '21.5.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329호(오류동, 이좋은집)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 9층 932호(마곡동, 마곡나루역캐슬파크)
40	인셀덤 시현뷰티	서울 후-제988호	강시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64, 202호(화곡동, 대륙타운)	소재지 '21.5.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20길 62-8, 706호(화곡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64, 202호(화곡동, 대륙타운)
41	인셀덤 오로라	서울 후 제 1347호	박세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13길 28, 2층(상암동)	소재지 '21.5.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2나길 24, 4층(상암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13길 28, 2층(상암동)
42	인셀덤 여의도점	서울 후-제892호	이내욱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44, 1층(창전동)	소재지 '21.5.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안길 11, 602호(노고산동, 엘루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44, 1층(창전동)
43	인셀덤 라움	서울 후 제 1138호	이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1길 28, 501호(천호동)	소재지 '21.5.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1길 28, 101호(천호동, 천호라움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1길 28, 501호(천호동)
44	마이 인셀덤	서울 후 제 1315호	김명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34, 401호(삼전동, 동성주택)	소재지 '21.5.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55-22, 101동 302호(방이동, 오르본인투파크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34, 401호(삼전동, 동성주택)
45	꽃보다 인셀덤	서울 후-제939호	홍지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5, 1104호(구로동, 티타운빌딩)	소재지 '21.4.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67, 3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25, 1104호(구로동, 티타운빌딩)
46	인셀덤뷰티서울 본부	서울 후-제955호	오예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0, A동 4층 422호-A220(마곡동, 마곡그랑트윈타워)	소재지 '21.5.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2길 52, 새울샌스빌 나동 4층 401호(창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0, A동 4층 422호-A220(마곡동, 마곡그랑트윈타워)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47	뷰티 나인원	서울 후 제1123호	문선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비동 807호(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소재지 '21.5.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4가길 26, 지층 2호(한남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비동 807호(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상호 '21.5.3	인셀덤 나인원	뷰티 나인원
48	인셀덤 아카데미	서울 후-제1049호	추진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1길 71, 101호(우면동, 행복한 집)	소재지 '21.4.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1길 71, 102호(우면동, 행복한 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1길 71, 101호(우면동, 행복한 집)
49	인셀덤 몽비쥬(Mon Bijou)	서울 후-제1053호	이경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213호(대치동, 디아이타워)	소재지 '21.4.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10, 4층 403호 (삼성동, 퍼시픽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213호(대치동, 디아이타워)
50	인셀덤 유명대리점	서울 후-제836호	김명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 413동 1204호(중계동, 목화아파트)	소재지 '21.4.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55길 5, 1층 101호(송정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9길 31, 413동 1204호(중계동, 목화아파트)
51	럭키 전설옥	서울 후 제1304호	QUAN XUEY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0길 28-6, 202호(구로동)	소재지 '21.4.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3길 10, 202호(구로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0길 28-6, 202호(구로동)
52	강동인셀덤	서울 후 제1203호	윤현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4, 3층 302호(명일동)	소재지 '21.4.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3길 30, 101동 602호(천호동, 강동이루미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14, 3층 302호(명일동)
53	인셀덤&보타렙 블리스 개봉점	서울 후 제1208호	박정진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19, 405호(개봉동, 대림프라자)	소재지 '21.4.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02, 107동 705호(개봉동, 센트레빌 레우스 1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19, 405호(개봉동, 대림프라자)
54	비송 인셀덤	서울 후-제838호	박수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46, 3층 301호(서교동)	소재지 '21.3.2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142-4, 4층(망원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46, 3층 301호(서교동)
					상호 '21.3.23	인셀덤 마포창조	비송 인셀덤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55	인셀덤 엔터	서울 후 제 1238호	박순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지하1층 103-2호(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소재지 '21.3.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40길 20-16, 5층 502호(오금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지하1층 103-2호(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56	퍼레버(FOREVER)	서울 후 제 1162호	TSEND MUNKHT SATSRAL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14, 301호(장충동1가)	소재지 '21.3.2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14, 302호(장충동1가, 탑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8길 14, 301호(장충동1가)
57	인셀덤 레나클	서울 후 제 1276호	구민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에이동 720호(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소재지 '21.3.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11가길 4-5(이문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에이동 720호(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58	투명한 빛(인셀덤 강남)	서울 후-제843호	박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 1동 13층 1321호(등촌동, 비원오피스텔)	소재지 '21.3.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7길 77, 3동 1012호(염창동, 염창우성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 1동 13층 1321호(등촌동, 비원오피스텔)
59	초이스	서울 후-제671호	김숙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70, 1207호(쌍문동, 금용아파트) (☎ 070-4076-5632)	소재지 '2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7길 24, 102호(수유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70, 1207호(쌍문동, 금용아파트)
60	인셀덤기쁨	서울 후 제 1175호	정금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지하 102, 12호(남대문로2가, 소공지하도상가)	소재지 '20.1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8길 42, 501호(구의동, 엘지빌라2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지하 102, 12호(남대문로2가, 소공지하도상가)
61	인셀덤대박	서울 후 제 1279호	한미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4, 지하층 에이-27호(양재동, 양재한신휴플러스)	소재지 '21.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62, 403호(양재동, 다보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4, 지하층 에이-27호(양재동, 양재한신휴플러스)
62	인셀덤 시온샵	서울 후 제 1158호	YIN JINGXIAN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6길 20-1, 지층 B02호(신정동)	소재지 '21.3.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1길 8-2(신정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6길 20-1, 지층 B02호(신정동)
63	눈부시게 인셀덤	서울 후 제 1210호	김지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가길 27, 3층 303호(창동)	소재지 '21.3.5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2길 13, 104동 1204호(창동, 신창아파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가길 27, 3층 303호(창동)
64	아름드리뷰티샵	서울 후 제 1229호	정훈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4길 7-4, 1층(구의동)	소재지 '21.3.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0가길 7-5, 4층 402호(구의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4길 7-4, 1층(구의동)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65	인셀덤퀸	서울 후-제931호	유현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1동 15층 08호(목동, 현대41타워)	소재지 '21.2.2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 715동 1204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1동 15층 08호(목동, 현대41타워)
66	인셀덤 레시피	서울 후 제 1124호	노희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7, 105동 1401호(불광동, 북한산래미안아파트)	폐업 '21.7.22		
67	목동 건강생활	서울 후-제123호	노 운 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86, 3층 301호 (신정동) (☎ 02-2698-4725)	폐업 '21.7.20		
68	인셀덤 성실대리점	서울 후-제911호	정성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7길 61, 201호(성내동)	폐업 '21.7.14		
69	인셀덤 리앙 코리아	서울 후-제982호	황도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 1동 618호(청담동, 청담신원아침도시마인)	폐업 '21.7.8		
70	미소인셀덤	서울 후 제 1222호	채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5가길 58(중화동)	폐업 '21.7.8		
71	상도인셀덤	서울 후 제 1235호	최순덕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78, 101동 1825호(노량진동, 신동아아파트)	폐업 '21.7.5		
72	인셀덤 평촌특약점	서울 후 제 1190호	최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43, 101동 504호(일원동, 한신아파트)	폐업 '21.7.5		
73	인셀덤 일원특약점	서울 후 제 1270호	이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43, 101동 504호(일원동, 한신아파트)	폐업 '21.7.5		
74	인셀덤 그린 대리점	서울 후-제1031 호	이재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264, 302호(문정동, 문정그린아파트)	폐업 '21.7.5		
75	인셀덤 테라피	서울 후 제 1246호	이옥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6길 33, 101호(논현동)	폐업 '21.7.5		
76	해피트리	서울 후-제870호	박민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53길 8 201호	폐업 '21.7.5		
77	인셀덤	서울 후-제871호	우재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127, 106동 703호(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폐업 '21.7.5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78	인셀덤뷰티	서울 후 제 1251호	김혜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8길 64, 102동 2104호(오류동, 영풍마드레빌아파트)	폐업 '21.7.5		
79	인셀덤미래	서울 후-제980호	오세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9길 43-1, 4층(삼성동)	폐업 '21.7.5		
80	사랑, 기쁨 스킨케어	서울 후-제1093호	박영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80, 501호(오금동)	폐업 '21.7.5		
81	인셀덤 행복(전문상담센터)	서울 후-제996호	ZHAOZAI SHUN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9나길 25, 503호(구로동)	폐업 '21.7.5		
82	강서마곡지사	서울 후-제630호	심 명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62, 6층 (가양동, 도우빌딩) (☎ 02-3664-8889)	폐업 '21.6.25		
83	인셀덤 은평대리점	서울 후-제858호	이광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6길 18-17 동아연립 1동 202호	폐업 '21.6.2		
84	인셀덤강남	서울 후-제1043호	정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47, 502호(홍은동, 코지펠리스)	폐업 '21.6.2		
85	인셀덤구로디지털	서울 후-제1003호	최예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6길 23, 101호 (구로동)	폐업 '21.6.2		
86	인셀덤(갤러리)	서울 후 제 1135호	정희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06, 106동 1503호(역삼동, 개나리래미안)	폐업 '21.6.2		
87	인셀덤하얀	서울 후 제 1290호	이남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0길 15, 107동 1502호(응암동, 백련산해모로)	폐업 '21.6.2		
88	인셀덤 서초 대리점	서울 후 제 1260호	장혜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2길 19, A동 101호(서초동, 티에스프리우스아파트)	폐업 '21.6.2		
89	세월흔적지우개 (인셀덤)	서울 후-제979호	배주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54, 6층 6124호(역삼동)	폐업 '21.6.2		
90	뷰티보라매	서울 후-제1079호	유순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다길 5-8(신대방동)	폐업 '21.6.2		
91	알즈너 수빈대리점	서울 후-제788호	정수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8길 14-30(미아동)	폐업 '21.6.2		
92	서울인셀덤V그룹 BR	서울 후-제948호	신승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3길 22, 지층(봉천동)	폐업 '21.5.31		
93	알즈너 거상대리점	서울 후-제454호	윤 옥 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5길 162, 103동1003호 (상계동, 은빛아파트)	폐업 '21.5.28		
94	시크한 인셀덤	서울 후 제 1120호	권은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다길 5-15, 201호(목동, 목동예스빌)	폐업 '21.5.21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95	인셀덤 서창	서울 후-제940호	강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67, 삼전빌딩 306호	폐업 '21.5.7		
96	다현농장(인셀덤)	서울 후 제 1182호	유다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 29-1	폐업 '21.5.4		
97	인셀덤봄봄	서울 후 제 1181호	이금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15, 106동 102호(현석동, 강변힐스테이트)	폐업 '21.5.4		
98	꽃향기	서울 후 제 1219호	윤종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70, 101동 1110호(불광동, 북한산한양수자인아파트)	폐업 '21.5.4		
99	놀이모아	서울 후-제889호	채은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4다길 14-1, 1층(제기동)	폐업 '21.5.4		
100	인셀덤 송파점	서울 후-제962호	이다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6, 103동 1604호(오금동, 송파레미니스)	폐업 '21.4.30		
101	인셀덤영원	서울 후-제1064	양영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28길 17, 105호(봉천동, 벤처하우스)	폐업 '21.4.19		
102	아모레중랑특약점	서울 후-제211호	김정원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56, 4층(면목동, 한성빌딩) (☎ 02-492-6230)	폐업 '21.4.5		
103	인셀덤 퀸(인셀덤강남)	서울 후 제 1141호	박소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다길 25(봉천동)	폐업 '21.4.2		
104	모블리스(인셀덤)	서울 후-제904호	김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1, 3층(신사동)	상호 '21.3.18	에스엠뷰티랜드(인셀덤)	모블리스(인셀덤)
105	인쎌뎀(양재점)	서울 후-제1085 호	박현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5(양재동)	폐업 '21.4.2		
106	인셀덤차칸대리점	서울 후-제970호	임병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4가길 28-15(중화동)	폐업 '21.4.2		
107	마포센트럴점	서울 후-제766호	이 영 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96, 6층 (서교동, 영훈빌딩) (☎ 02-332-2086)	폐업 '21.3.30		
108	알즈너조은대리점	서울 후-제652호	김 춘 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2층 223호(중계동, 씨앤미복합빌딩)	폐업 '21.3.30		
109	유니베라 중랑	서울 후-제701호	백 기 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19,306호 (중화동, 제일프라자) (☎02-2209-8202)	폐업 '21.3.29		
110	리엔케이금천두산지사	서울 후-제752호	이 승 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오피스텔 1508호(역삼동) (☎ 02-566-0629)	폐업 '21.3.29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11	닥터 인셀덤	서울 후-제890호	국영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1701호(답십리동, 클래식타워)	폐업 '21.3.26		
112	왕대박 인셀덤	서울 후-제1100 호	하시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13길 29, 3층(목동)	폐업 '21.3.22		
113	모블리스(인셀덤)	서울 후-제904호	김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1, 3층(신사동)	상호 '21.3.18		
114	㈜에이필드	서울 제833호	이종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9(연남동) (02-1833-5002)	소재지 '21.7.1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23층 (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9(연남동)
115	(주)웅진생활건강	서울 제843호	신승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 3층(연남동, 스페이스원) (☎ 1566-3330)	상호 '21.5.20	(주)웅진릴리에뜨	(주)웅진생활건강
116	엔에이치티케이(주)	서울 제528호	크리스태 지은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1004호(문래동3가, 트리플렉스) (☎ 02-558-0155)	소재지 '21..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49, 109동 2층 201-185호(문래동4가, 리버뷰 신안인스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1004호(문래동3가, 트리플렉스)
117	(주)인큐텐	서울 제922호	김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2-6, 5층(역삼동) (☎1577-8923)	소재지 '21.5.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22, 3층(잠실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2-6, 5층(역삼동)
118	㈜제이온	서울 제814호	김영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27, 5층(광장동, 인성하이텍빌딩) (☎ 1644-8446)	소재지 '21.3.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4~7층 (역삼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27, 5층(광장동, 인성하이텍빌딩)
119	(주)포바디	서울 제905호	이 강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1215호(역삼동, 삼흥오피스텔) (☎ 02-508-3387)	소재지 '21.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3, 10층 1001호 (역삼동, 에이펙스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1215호(역삼동, 삼흥오피스텔)
120	(주)퍼플유	서울 제859호	강 희 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5, 1층(역삼동) (☎ 02-6952-9858)	소재지 '2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4층 (삼성동, 미켈란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5, 1층(역삼동)
121	(주)비더블유엘코 리아	서울 제728호	후양반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13층 101호(서초동, 홍우빌딩) (☎ 02-3675-9190)	소재지 '21.2.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4층 146호(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B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13층 101호(서초동, 홍우빌딩)
122	아이더블유코리 아(유)	서울 제875호	킨지엘리스 펜테코스트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9층 09-118호(역삼동, 케이지타워) (☎ 02-525-5055)	소재지 '21.2.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1(서초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9층 09-118호(역삼동, 케이지타워)
123	유한책임회사 매나테크코리아	서울 제563호	로날드디 노만, 노재홍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8, 9층(역삼동) (☎02-6252-5200)	상호 '20.9.10	유한회사 매나테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매나테크코리아
124	인셀덤 서초 대리점	서울 후 제 1260호	장혜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2길 19, A동 101호(서초동, 티에스프리우스아파트)	상호 '21.2.24	다감뷰티	인셀덤 서초 대리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2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523	2021-10-26	주식회사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110111-4600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41, 6층(대치동)
2	203524	2021-10-26	주식회사 굳앤트 안수화 110111-6011467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1012호(마곡동)
3	203525	2021-10-26	주식회사 이제이정보시스템 정광열 110111-5343390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502호(가산동)
4	203526	2021-10-26	경안이엔지 주식회사 금동중 110111-28153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10, 리버힐오피스텔 310호(광장동)
5	203527	2021-10-26	주식회사 스펙엔지니어링와이엔피 윤정현 110111-40541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2 B동 1407,1408호(문정동)
6	203528	2021-10-27	디지털리얼코리아 유한회사 마크앤드류스미스 110114-024277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4층(한강로2가)
7	203529	2021-10-27	주식회사 파인네트웍스 김미정 110111-80160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LB층 2071호(문정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32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실·본부·국
예산안 (1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조례안 (1건)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자치행정과)
동의안 (2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주택정책실 (주책정책과)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37호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공고

1. 「주택법」 제71조 및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2. 공람기간 : 2021. 11. 4.(목) ~ 2021. 11. 19.(금)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청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4) 및 각 구청 담당부서
4. 공람내용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기초조사 및 수요예측
   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수립
   마. 리모델링 공공지원 강화
   바. 그 밖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의견제출방법
   공람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울시청 공동주택지원과와 각 구청 담당부서에 서면 또는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우) 04514 / 전화 : 02-2133-7144
2) 각 구청 담당부서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전화번호	비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4	
중구 도심재생과	☎02-3396-5722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85	
용산구 주택과	☎02-2199-7365	
성동구 주거정비과	☎02-2286-6575	
광진구 주택과	☎02-450-7698	
동대문구 주택과	☎02-2127-5652	
중랑구 주택과	☎02-2094-2133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913	
강북구 주택과	☎02-901-6825	
도봉구 주택과	☎02-2091-3523	
노원구 도시재생과	☎02-2116-3907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3423-6117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02-3425-5996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890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9	
은평구 건축과	☎02-351-7532	
서대문구 주택과	☎02-330-1533	
마포구 주택과	☎02-3153-9325	
구로구 주택과	☎02-860-2942	
동작구 주택과	☎02-820-9782	
금천구 주택과	☎02-2627-1614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70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1	
강서구 주택과	☎02-2600-6825	
관악구 주택과	☎02-879-632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38호

서울특별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등록)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 제9조(문화재자료) · 제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 제9조(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지정 및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계획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미타사 금수암 치성광여래도 (彌陀寺 金水庵 熾盛光如來圖)	1점	전체 : 138.8×139.2㎝ 그림 : 133×132.3㎝	1883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 (彌陀寺 金水庵 神衆圖)	1점	전체 : 164.5×156㎝ 그림 : 155.3×145.8㎝	1900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 (彌陀寺 極樂殿 地藏十王圖)	1점	전체 : 164×245㎝ 그림 : 152×228㎝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 (彌陀寺 極樂殿 現王圖)	1점	전체 : 163×246㎝ 그림 : 154.5×239.6㎝	1887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봉은사 시왕도 (奉恩寺 十王圖)	3첩	제2·4대왕 116×148.5㎝	1777년	강남구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제5·7·9대왕 113×1213㎝		중구 (국유)
			제6·8·10대왕 115×216㎝		
	경조낭청구선생안 (京兆郎廳舊先生案)	1책	49×33.5㎝	조선시대 (1644년~18세기)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경성당상구선생안 (京兆堂上舊先生案)	1책	48.9×33.5㎝	조선시대 (1640년~18세기)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특별시문화재 자료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彌陀寺 淨水庵 塑造如來坐像)	1점	높이 : 30㎝ 무릎 너비 : 19㎝	1930년	성동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서울특별시등록문화재	남산도서관 소장 일제강점기 잡지 3종	3종 16책	서울(1종 3책) 15×21.7~22㎝	1919~1920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儆聲(1종 1책) 15×22.2㎝	1931년	
			우리의 가뎡(1종 12책) 14.5×20.7㎝	1914년	
	남산도서관 소장 경성부 발간 자료 22종	22종 22책	京城府における公定價格集 15×21.8㎝	1942년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京城府勸業施設概況 15×22.3㎝	1934년	
			京城府勸業施設概況 15×22.2㎝	1937년	
			京城府立圖書館報 19×26㎝	1936년	
			京城府立順化院要覽 15.3×22.5㎝	1935년	
			京城府方面委員提要 13×19㎝	1928년	
			京城府歲入歲出豫算書 19×26.5㎝	1923년	
			京城府歲入歲出豫算書 19.2×26.5㎝	1927년	
			京城府人口統計 26.5×18.5㎝	1942년	
			京城府一般會計特別會計歲入出豫算書 19.3×26.5㎝	1931년	
			京城府一般會計特別會計歲入出豫算書 19.5×26.5㎝	1932년	
			京城府學事一覽 15.2×22.3㎝	1926년	
			京城府學事一覽 15.2×22.5㎝	1927년	
			京城學校組合歲入出豫算書 19.3×26.3㎝	일제강점기	
			京城彙報 22.5×29.5㎝	일제강점기	
			京城彙報 21.5×29.5㎝	1923년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內鮮風俗習慣のしるべ 13×18.8㎝	일제강점기	
			商工累年統計書 19×26.5㎝	1924년	
			商工累年統計書 19×26.5㎝	1925년	
			商工累年統計書 20.5×26.8㎝	1926년	
			重要商品調査：線布の部 15.2×22.3㎝	1924년	
			會社と所得稅 15.2×22.5㎝	1933년	

나.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등록)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1) 유형문화재

【 미타사 금수암 치성광여래도(彌陀寺 金水庵 熾盛光如來圖) 】

미타사 금수암 치성광여래도는 도교적 사고가 약화된 설법회도 형식을 갖고 있으며, 수미단 위 청련좌(靑蓮座)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왼 손에 법륜(法輪)을 들고 있는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머리광배(頭光) 좌우로는 칠원성군(七元聖君) 형식의 좌우 보·필성(輔弼星)을 두었다. 보·필성 바깥쪽으로 북두칠성을 여래화 한 7불(좌측3불, 우측 4불)을 배치하였으며 본존불 하단으로는 협시보살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위시하여 칠원성군을 두었는데, 7불과 수를 맞추어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좌측에 4구 우측에 3구를 배치하였다. 조성연대 및 조성지와 봉안처가 분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당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큰 활약상을 보인 '체훈' 이 차화승으로 참여한 불화로서 그 기량을 엿볼 수 있다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彌陀寺 金水庵 神衆圖) 】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는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크기의 화면을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서로 마주 보듯 서서 합장하고 있는 제석천(帝釋天:향우측)과 범천(梵天:향좌측)을 비롯하여 중앙부에는 쌍계(雙髻) 머리를 하고 공양하고 있는 천동(天童) 3명이 자리하고 있으며, 제석천과 범천 바깥쪽에는 주악천녀(奏樂天女)가 자리 하였다. 화면 구성 및 도상의 차용에 있어 19세기 후반 조성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신중도〉(186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의 영향을 받은 서울 흥천사 극락보전 〈신중도〉(1885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7호), 서울 흥천사 대방(만세루) 〈신중도〉(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0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화로서 20세기 초반 경기지역 신중도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彌陀寺 極樂殿 地藏十王圖) 】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상을 비롯하여 십대왕 등의 도상이라든가 각 존상들의 배치로 보아 서울 성북구 소재의 흥천사 지장시왕도(1867년 作)를 모본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흥천사 지장시왕도를 주도하여 조성한 '의운자우'의 경우 경상북도 문경 대승사 중심의 사불산파(四佛山派) 화승으로서 그 영향관계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기를 통해 광서 13년인 1887년 학허석운이 수화승을 맡고 한봉창엽과 금화기형이 동참하여 조성 동참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조성하여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이 파악된다. '한봉창엽'과 '금화기형'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약상을 보인 대표적 화승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경상지역의 대표적인 화파인 사불산화파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미타사 극락전 봉안의 지장시왕도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彌陀寺 極樂殿 現王圖) 】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극락전 안 서벽에 모셔져 있으며, 41.7㎝×51.5㎝폭의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바탕을 만들고 중앙의 現王을 중심으로 22위의 존상들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특히 현왕 및 성왕들의 원유관과 홀 및 각 기물의 금속장식 및 향로 등에 화려하게 금박을 올려 적색과 녹색의 보색에 황금색의 대비를 줌으로써, 각 존상들의 움직임 있는 표현과 더불어 화면에 생기가 넘쳐 남을 느낄 수 있다. 화면 중앙 하단에 마련된 화기 중의 '光緖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金魚 比丘影明天機 比丘義菴現照 竺潭…'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1887년 영명천기와 의함현조 및 축담에 의해 조성되어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이 확인된다.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서울·경기지역 도상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도상 유형을 살필 수 있다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타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봉은사 시왕도(奉恩寺 十王圖) 】

봉은사 시왕도는 제1·3대왕도, 제5·7·9대왕도, 제2·4대왕도, 제6·8·10대왕도의 4폭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울지역 시왕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오래전 사찰에서 유출되었다가 제5·7·9대왕도와 제6·8·10대왕도 2점은 일찍이 회수되어 동국대학교박물관에 기탁(국유)되어 왔다. 제1·3대왕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996년 미국 경매를 통해 수집하였고, 제2·4대왕도 역시 2018년 미국 텍사스주 뉴브론필스 이베이옥션에 경매로 나온 것을 낙찰 받아 봉은사로 환수한 것이다. 제1·3대왕도와 제2·4대왕도는 비록 현재 화기가 잘려있고 화면에 접혔었던 금이 다수 보이고 채색이 약간 탈락되어 있긴 하지만 그림의 원형은 잘 유지되어 있다. 현존 시왕도 중에서는 연대가 앞서는 불화이며 자연스러운 화면구성과 섬세한 필치 등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불화이다. 제작시기도 올라가고 섬세한 필치와 격조 있는 화풍을 지니고 있으며, 화기가 일부 잘리긴 하였으나 그림은 큰 훼손이 없이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봉은사 시왕도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충족하는 불화이며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경조낭청구선생안(京兆郎廳舊先生案) 】

《경조낭청구선생안(京兆郎廳舊先生案)》은 조선시대(후기) 한성부에 재직한 낭청, 즉 서윤(종4품), 판관(종5품), 겸참군, 참군(정7품)의 명단을 수록된 책이다. 《경조낭청구선생안》의 작성 시기는 1644년(인조 22)을 기점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록된 인물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서윤, 판관, 겸참군, 참군들이다. 맨 마지막에 수록된 참군 정교량은 1758년(영조 34)에 한성부참군에 제수되었다. 《경조낭청구선생안》은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18세기) 한성부의 낭청(4품 이하), 즉 역대 서윤, 판관, 참군을 역임한 인물들을 수록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지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대 실무 관료의 명단을 수록한 원본 자료로서의 유일성과 희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자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 】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한성부에 재직한 “삼윤(三尹)”, 즉 판윤, 좌윤, 우윤의 명단이 수록된 책이다. 본문 앞부분에 수록된 <한성부제명기(漢城府題名記)>는 한성부 우윤 허계(許啓, 1594~1653)가 9월 20일에 삼가 적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후기(1700년대 중후반까지)에 제수된 인물까지 열거되어 있어 최종적인 기재 시기는 18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대 고위 관료의 명단을 수록한 원본 자료로서의 유일성과 희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자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2) 문화재자료

【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彌陀寺 淨水庵 塑造如來坐像) 】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은 전체 높이가 30cm 가량 되는 흙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불상이다. 바닥에는 직경 5cm, 깊이 7cm 크기로 원통형 복장공을 마련하여 조성발원문, 후령통, 다라니 등을 납입했다.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은 복장물이 처음 조성 당시 그대로 잘 남아있다. 특히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알려주는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상의 내력을 분명히 알려준다. 조각을 담당한 춘담성한(春潭盛漢)은 원래 불화를 그리는 화승이다. 근대불화에서 일가를 이룬 금호약효(錦湖若效)의 제자이며, 보응문성(普應文性)과는 동문이다. 앞으로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타사 정수암의 이 소조여래좌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춘담성한의 불상 가운데는 가장 이른 예이다.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어 조각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복장물이 조성 당시 그대로 잘 남아있어 1930년 춘담성한이 제작했음이 밝혀졌고, 20세기 전반의 화승인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3) 등록문화재

【 남산도서관 소장 일제강점기 잡지 3종 】

『서울』,『鏞傭』,『우리의 가뎡』은 남산도서관의 전신인 경성부립도서관 장서로 1941년부터 현재까지 남산도서관에서 보존해왔다.『서울』은 1919년 12월 15일 창간되어 1920년 12월에 제8호(임시호)로 종간된 잡지이다. 출판법에 근거한 잡지여서 정치와 시사를 다룰 수 없었지만 1920년대 전반기를 풍미한『개벽』이전의 사회상과 시대사조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자료이다.『鏞傭』은 여느 잡지의 창간호와 다르게 창간 축하 광고의 대부분을 서울의 권번(기생조합) 소속 기생들의 명함 광고로 채운 것이 특징으로 1926년에 창간된 최초의 기생 잡지『장한』처럼 1930년대 초반 서울의 기생 사회를 엿볼 수 있다.『우리의 가뎡』은 일본인 발행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1910년대 전반기에 유일하게 발행된 여성잡지라는 점과 시기적 특성,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역시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될만한 가치가 있다.

【 남산도서관 소장 경성부 발간 자료 22종 】

조사대장 자료는 현재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 경성부와 그 산하기관(부립도서관, 순화원) 또는 유관기관(경성부교육회)에서 발행한 도서류이다. 발행 시기로는 1923년부터 1942년 사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경성부청의 부정(府政)을 홍보하는『경성휘보』와 경성부도서관의 도서출납과 이용자 현황을 알 수 있는『경성부립도서관보』는 남산도서관만 전호를 소장중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며, 이 외 경성부의 부정 일반과 경성부민의 생활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자료군이란 점에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하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조사보고서

【 미타사 금수암 치성광여래도(彌陀寺 金水庵 熾盛光如來圖) 】

1. 문화재 현황

○ 미타사 영역 안의 금수암 법당인 무량수전 내 정면 우측(중앙 본존불 좌측) 벽에 걸어두고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유리로 막음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 패널 형식으로 상단부의 미미한 변색을 제외하고 안료 박락 및 화면 손상 없이 원형유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도교적 사고가 약화된 설법회도 형식의 치성광여래도로서 수미단 위 청련좌(靑蓮座)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왼 손에 법륜(法輪)을 들고 있는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머리광배(頭光) 좌우로는 칠원성군(七元聖君) 형식의 좌우 보·필성(輔弼星)을 두었으며, 보·필성 바깥쪽으로 북두칠성을 여래화 한 7불(좌측3불, 우측 4불)을 배치하였다. 본존불 하단으로는 협시보살인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위시하여 칠원성군을 두었는데, 7불과 수를 맞추어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좌측에 4구 우측에 3구를 배치하였다. 본존인 치성광여래의 경우 변형우견편단에 둥근 모양의 머리광배와 몸광배(身光)를 구비하였는데, 머리광배는 녹색으로 단순화 시킨 반면 몸 광배는 금박 처리하여 본존불로서의 격을 나타내고 있다. 팽이 모양의 육계를 한 머리에는 중앙계주와 정상계주가 갖추어져 있으며, 정상계주 위로 네 가닥의 서기(瑞氣)가 표현되어 있다. 합장하고 있거나 치성광여래와 동일한 손 모양을 한 7불은 모두 정면향으로 서 녹색 머리광배를 구비하였으며, 정상계주 위로 본존불과 같은 모양의 서기를 나타내었다. 둥근 모양의 별이 표현된 원형 관모를 쓰고 조복(朝服)을 입고서 두 손을 모아 홀(笏)을 들고 있는 좌우 보·필성은 칠원성군과 동일한 유형으로 7불과 달리 모두 본존불을 향하고 서있어, 마치 신하가 조복을 갖춰 입고 조정에 나아가 하례를 하는 듯 표현하여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존불을 위시하여 7불과 협시보살상의 경우 표정이 없는 얼굴을 하였으며, 긴 눈썹과 수염을 표현한 권위적인 모습의 칠원성군 역시 눈을 부릅뜨거나 분노형으로 표현하여 화면 전반에 걸쳐 경직성이 엿보인다. 이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당시 흐름과 다소 다르게 탁한 색채 대신 각 존상들의 피부색을 다양하게 하고 법의 및 조복을 화려하게 채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불화 조성에 참여한 화승들과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당시 유명세를 떨쳤던 '금암천여, 경선응석, 금곡영환, 한봉창엽, 영명천기' 등과의 교류를 통해 19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 활약상을 보이던 '체훈(体訓)' 이 차화승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고 하겠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남아 있는 화기로 미루어 보아 이 불화는 광서 9년인 1883년 봉은사에서 조성되어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畵記]
七星幀奉恩寺造成 奉安于終南山彌陀寺

緣化秩
證明 比丘 包含
金魚 比丘 進浩 比丘 休訓 比丘 戒淳 比丘 奉照
供司 太還
化主 比丘尼 義還 致弘 守安
都監 比丘尼 性欣
別座 比丘尼 普錫

光緒九年四月 日

4.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도교적 색채가 약화된 설법도형식의 치성광여래도로서 조성연대 및 조성지와 봉안처가 분명하고 당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당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큰 활약상을 보인 ‘ 체훈 ’ 이 차화승으로 참여한 불화로서 그 기량을 엿볼 수 있다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치성광여래도 전체	좌보성, 칠여래 중 3여래
	

우필성, 칠여래 중 4여래	일광보살, 칠원성군 중 4성군
	
월광보살, 칠원성군 중 3성군	화기
	

【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彌陀寺 金水庵 神衆圖) 】

1. 문화재 현황

○ 미타사 영역 안의 금수암 법당인 무량수전 내 정면 우측(중앙 본존불 좌측) 벽에 걸어두고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유리로 막음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 패널 형식으로 상단부의 미미한 변색을 제외하고 안료 박락 및 화면 손상 없이 원형유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크기의 화면을 상 · 하 2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서로 마주 보듯 서서 합장하고 있는 제석천(帝釋天:향우측)과 범천(梵天:향좌측)을 비롯하여 중앙부에는 쌍계(雙髻) 머리를 하고 공양하고 있는 천동(天童) 3명이 자리하고 있으며, 제석천과 범천 바깥쪽에는 주악천녀(奏樂天女)가 자리 하였다.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서로 중앙을 향하고 있는 제석천과 범천의 경우 장방형으로 턱이 둥글어진 얼굴에 작지만 뚜렷한 모습의 이목구비(耳目口鼻)를 표현하였는데, 크게 치켜 뜬 듯한 눈에 콧수염과 입 꼬리를 살짝 치켜 올려 미소가 엿보인다.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썼으며 녹색 머리광배(頭光)를 구비하였다. 제석천과 범천 사이 중앙에 자리한 천동들의 경우 천도복숭아와 향로를 받쳐 들고 있으며, 화면 좌우 끝부분의 주악천녀는 생황(笙簧)을 연주하고 퉁소(洞簫)를 들고 있다. 천상의 세계인 상단과 달리 하단에는 하늘을 지키는 군대로 민간신앙의 산신(山神)과 관우(關羽)의 영인 관성제군(關聖帝君)의 도상을 차용한 도교신 조왕신(竈王神)이 호위하고 있는 위태천(韋駄天)을 중심으로, 거의 좌우대칭을 이루며 일 · 월궁천자(日月宮天子)와 호법신장(護法神將)이 좌우로 각각 세 구씩 배치되어 있다. 하단 중앙에 위치한 위태천 및 산신과 조왕신 중 정상부에 큰 붉은색 술이 달린 투구를 쓴 위태천의 경우, 두 발을 벌린 채 오른 발을 앞으로 하여 왼쪽으로 몸을 튼 채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배를 내민 당당한 자세로 날이 큰 금강저를 두 손으로 짚고 서 있다. 하늘을 지키는 군대의 수장인 천룡장군(天龍將軍)으로서 투구와 갑옷과 삼지창에 금박(金箔)을 올려 화려함은 물론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뺨이 통통하니 살집이 있어 보이는 얼굴에는 이목구비의 표현이 정연하고 상단의 제석 · 범천과 같이 콧수염과 입 꼬리를 살짝 치켜 올려 웃는 표정을 짓게 하여 대조적이다. 위태천 좌측(향우측)의 산신은 영지버섯을 든 노인 모습으로 긴 눈썹과 수염에 백발이 성성하니 인자함이 느껴진다. 우측(향좌측)의 조왕신은 홀(笏)을 받쳐 든 모습으로 몸은 위태천 쪽을 향해 있으면서 얼굴은 위태천과 동일 방향으로 돌아보고 있다. 머리에는 청회색 두건을 썼으며, 날카로운 눈매에 입을 굳게 다물고 덥수룩한 콧수염과 턱수염을 하여 근엄한 느낌이다. 제석천과 범천 뒤쪽에 위치한 존상은 홀을 든 근엄한 자세로 관모(官帽)에 해 와 달 상징의 붉은색과 흰색이 묘사된 일 · 월궁천자(日月宮天子)를 비롯하여 검을 든 자세로 눈썹과 콧수염 및 턱수염이 덥수룩한 신장상 2구가 그려져 있다. 그 아래 산신과 조왕신 바깥쪽에 위치한 신장상 중 우측부 신장상은 장수형(將帥形) 신장상으로, 신선(神仙) 가운데 순양건(純陽巾)의 변형건을 쓰고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를 든 여동빈(呂洞賓)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변형건이 아닌 동(銅)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있다. 이들 신장들은 비록 무기를 소지한 호법신장들이기는 하지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동세를 느낄 수 있는 신체에 살집 있는 통통한 얼굴로 표정이 밝고 약간 익살스러워 보인다. 상단의 제

석 · 범천을 비롯한 천상계의 상들과 하단의 위태천 및 호법신장들 모두 자연스러운 자세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활기 넘치는 표정을 하여 화면 전반에 걸쳐 생동감이 묻어난다. 그러나 색채의 경우 탁해진 느낌의 적색 위주로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상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는 화면 구성 및 도상의 차용에 있어 19세기 후반 조성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신중도〉(186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의 영향을 받은 서울 흥천사 극락보전 〈신중도〉(1885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7호), 서울 흥천사 대방(만세루) 〈신중도〉(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0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화로서 20세기 초반 구성이 간소화하는 경기지역 신중도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는데 학술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화면 하단 중앙부에 마련된 화기로 보아 이 불화는 광무 4년인 1900년에 조성 · 봉안되었으며, '보암긍법(普庵肯法)' 이 수화승을 맡아 조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수화승 '긍법' 은 19세기 중후반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크게 활약상을 보인 화승으로서, 1887년 '완송당 종현(玩松堂 宗顯)' 과 서울 경국사 〈팔상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2호) 중 4폭(雪山修道相, 樹下降魔相, 鹿苑傳法相, 雙林涅槃相)을 조성하고 1905년에는 서울 봉원사 대웅전 〈극락구품도〉를 조성하는 등 20세기 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畵記]
光武四年更子八月初一日神供十日 點眼奉安于彌陀寺無量壽殿
緣化所
證明 永夏重賢
誦呪 德松道亨
指殿 惺庵泰隱
金魚 普庵肯法 梵華允益 月般奉宗
片手 淸庵雲照 比丘在謙 比丘啓恩
鍾頭 比丘啓訓
茶角 沙彌尼雲涉
供司 比丘尼妙性
別供 比丘尼妙峰 頓悟 廣典 普業 大福
化主 比丘尼致洪
大施主
乾辛亥生孫氏 坤癸丑生金氏 兩主
長子乙亥生孫氏 兩主
次子庚寅生孫氏喜景
乾己未生金氏
長子乙酉生金氏
童子更子生金氏
乾戊午生韓氏
坤乙卯生張氏
乾壬戌生白氏 兩主
乾乙未生金氏

乾壬戌生金氏
乾癸未生朴氏 兩主
乾庚申生朴氏 兩主
乾丁巳生金氏
乾乙酉生崔氏 兩主
乾壬申生崔氏 兩主
乾辛巳生崔氏 兩主
乾乙未生崔氏 兩主
乾甲申生崔氏 兩主
乾丁未生柳氏 兩主
乾庚戌生李氏 坤戊辰生金氏 兩主
坤甲寅生裵氏

4.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화면 구성 및 도상의 차용에 있어 19세기 후반 조성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신중도〉(1867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의 영향을 받은 서울 홍천사 극락보전 〈신중도〉(1885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7호), 서울 홍천사 대방(만세루) 〈신중도〉(1890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10호)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불화로서 20세기 초반 경기지역 신중도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신중도 전체	화면 상단의 제석천과 범천상
	

화면 하단의 위태천 및 산신과 조왕신	화면 상단의 공양 천동상
	
화면 좌측 하단의 산신과 여동빈	화기
	

【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彌陀寺 極樂殿 地藏十王圖) 】

1. 문화재 현황

○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만든 바탕에 지장보살상을 본존으로 하여 십대왕 등 44위의 존상을 좌우대칭 되게 배치한 지장시왕도이다.

2. 원형유지정도

○ 패널 형식의 불화로 극락전 동벽에 걸어두었는데 화면 전반에 걸쳐 부분적으로 그을음과 촛농 및 박락 등이 보이지만, 큰 손상 및 훼손 없이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4.5㎝×51.5㎝ 폭의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만들어 가로 폭이 넓어진 장방형의 화면에 중앙부의 지장삼존(地藏三尊) 및 선악동자(善惡童子)를 중심으로 十大王과 判官 및 錄事, 使者와 將軍, 獄卒, 供養天女, 童子·童女 등의 권속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다. 화면 중앙부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지장보살상은 지장시왕도의 본존상으로서 둥근 머리광배와 몸 광배를 구비한 채 蓮花座 위에 結跏趺坐하고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지장보살의 상징적 지물인 투명 寶珠를 감싸 안고 있다. 머리카락을 표현하지 않은 僧形 민머리에 두 귀에는 큼직한 꽃 모양 귀걸이 장식을 하였으며, 턱이 둥글어진 얼굴에는 눈·코·입의 표현이 뚜렷하고 단정한데 눈 꼬리를 위로 치켜 올리고 입을 작게 표현하여 약간 근엄한 느낌이다. 붉은색 大衣의 경우 끝단에는 채색의 연화당초무늬를 장식하였으며, 몸통에는 큼직한 菱形의 둥근 무늬를 넣었는데, 안과 밖으로 세 가닥의 선을 사용하여 구획지은 다음 테두리에는 삼중 원을 연속적으로 그렸다. 그리고 구획 안쪽으로는 테두리의 삼중 원과 동일한 문양을 이중으로 시문하고 그 위로는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한 구름 문양을 중첩되게 표현하여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좌우로 늘어서 있는 권속들 가운데 지장보살상의 협시인 道明尊者와 無毒鬼王 두 상 모두 합장한 채 본존을 향해 서 있다. 청년 비구 형태의 좌협시 도명존자상은 홑씨 모양의 꽃무늬를 장식하였으며, 왕의 모습으로 원유관을 쓰고 있는 우협시 무독귀왕은 구름무늬를 장식 하였다. 본존을 향해 좌우로 대칭을 이루며 서 있는 十大王(시왕)은 각기 지물을 들거나 홀을 들고 있는데, 朝服의 무늬를 보면 안쪽에 파도문이 보이는 능형 원문과 용무늬, 중첩된 삼중 원문, 작은 원 문양 등의 무늬를 그려 넣어 다양성을 보인다. 지장보살상 무릎 아래쪽에 자리한 善惡童子像은 亡者의 善行과 惡行을 저승명부에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머리 위에 화사하게 피어난 모란화를 얹고 있어 앳되고 귀여운 모습의 동자를 연상케 한다. 좌측(向右側)의 善童子는 지장보살의 지물인 錫杖을 어깨에 걸쳐 들고 있는데, 고리가 네 개 달린 4환장으로 석장 머리 장식에 아미타불 상이 안치되어 있다. 우측의 惡童子는 인장함(印櫃)을 어깨에 둘러메고 있는데, 표면에 高粉法을 사용한 點紋을 장식하여 가슴의 금 고리 장식과 조화를 이룬다. 선악동자 도상은 18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렇듯 머리에 모란꽃을 장식하고 인궤를 어깨에 둘러메는 예는 19세기 후반 경 조성의 서울·경기지역 중심의 지장보살도 및 치성광여래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양식 특징이다. 지장보살삼존상을 둥글게 에워싼 십대왕 주위의 판관 및 녹사와 사자, 장군, 공양천녀, 동자·동녀상들의 경우 위로 갈수록 상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평면의 화면에 공간감을 제공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상을 비롯하여 십대왕 등의 도상이라든가 각 존상들의 배치로 보아 서울 성북구 소재의 흥천사 지장시왕도(1867년 작)를 모본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흥천사 지장시왕도를 주도

하여 조성한 ‘의운 자우(意雲慈雨)’의 경우 경상북도 문경 대승사 중심의 사불산파(四佛山派) 화승으로서 그 영향관계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畵記가 좌측, 중앙, 우측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墨書되어 있다. 화기 내용 중의 “光緖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 …金魚片手 比丘鶴虛石雲 漢峰瑲曄 錦華機炯… …往生極樂之願…”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광서 13년인 1887년 학허석운이 수화승을 맡고 한봉창엽과 금화기형이 동참하여 조성 동참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조성하여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이 파악된다. 특히 ‘한봉창엽’과 ‘금화기형’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약상을 보인 대표적 화승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畵記]

<좌측 ; 向右>

光緖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
證明 比丘含影法曇
誦呪 比丘慶隱 □益
金魚片手 比丘鶴虛石雲 漢峰瑲曄 錦華機炯
持殿 比丘奉碩
鍾頭 比丘富仁

<중앙>

都監 比丘尼奉寂
比丘尼萬保
別座 比丘尼性律
比丘尼取喜
化主 比丘尼妙正
施主秩
淸信士 辛亥生梁□赫
坤命 癸丑生金氏 兩主
淸信士 甲寅生韓慶文
坤命 戊午生李氏 兩主
信女 辛巳生李氏上品花
往生極樂之願

<우측 ; 向左>

乾命 乙卯生池學淵
坤命 庚辰生宋氏 兩主
信士 辛酉生池氏覺心
坤命 癸亥生方氏 兩主
童子 壬午生池世元
童女 乙酉生玉順

乾命 朴永奎
乾命 安弼珠
乾命 白完赫
乾命 崔奇昌
乾命 金仁煥

4.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미타사 극락전 지장시왕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서울 흥천사 지장시왕도 도상을 모본으로 삼고 있어 경상지역의 대표적인 화파인 사불산화파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미타사 극락전 봉안의 지장시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울 미타사 지장시왕도 (1887년)	서울 흥천사 지장시왕도(1867년)
	

지장보살상 부분도	지장보살상 두상 부분도
	
향좌측 부분도	향우측 하단 부분도
	
향좌측 상단 부분도	향우측 상단 부분도
	

선악동자상 부분도	자장보살상 대의 문양
	

화기		
향좌측	중앙	향우측
		

【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彌陀寺 極樂殿 現王圖) 】

1. 문화재 현황

○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만든 바탕에 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현왕과 권속들을 그린 현왕도이다.

2. 원형유지정도

○ 패널 형식의 불화로 극락전 서벽에 걸어두었는데 화면 전반에 걸쳐 부분적으로 그을음과 촛농 및 박락 등이 보이지만, 큰 손상 및 훼손 없이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미타사 극락전 안 서벽에 모셔져 있는 現王圖로서, 41.7㎝×51.5㎝폭의 비단 다섯 폭을 가로로 잇대어 바탕을 만들고 중앙의 現王을 중심으로 22위의 존상들을 좌우로 배치하였다. 화면구성을 보면 10곡 병풍을 배경으로 중앙에는 冥府會主로서 普賢王如來 상징의 現王을 두고, 현왕 앞쪽 좌우로 원유관을 쓴 채 笏을 들거나 두루마리 서류를 펼쳐 든 6위의 聖王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성왕의 바깥쪽과 위쪽으로는 책과 두루마리 문서를 들거나 傘蓋와 寶劍을 든 8위의 검고 투명한 烏紗帽를 쓴 判官 및 綠事가 에워싸듯 자리하고 있으며, 하단 좌우 끝 부분에는 각각 槍과 名簿를 들고 있는 日直 · 月直 · 年直 · 時直 등 四直使者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 좌우 상단에는 부채(團扇)를 받쳐 든 동자와 印櫃와 香爐를 들고 있는 동자와 天女가 위치하였는데, 사자와 동자 · 천녀상의 크기를 중앙부의 현왕 및 성왕, 판관과 녹사 등에 비해 작게 묘사함으로써 평면의 화면에 遠近을 나타내어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다. 녹색 원형 머리광배를 구비하고 용머리 팔걸이에 녹색 등받이를 한 의자에 앉아 있는 현왕은 經冊을 위에 올린 원유관을 쓴 왕과도 같은 모습으로, 뺨까지 내려오는 긴 눈썹과 단정하게 빗어 내린 듯 가슴 부위까지 내려오는 턱수염을 하고 미소 띤 표정을 하여 기품과 함께 인자함이 느껴진다. 복식은 龍袍와도 같은 붉은색 큰 옷으로 양쪽 어깨 부분에 가득 차게 菱形紋 윤곽의 반원형문 안에 파도와 구름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그린 金泥의 日出紋을 묘사하여 장엄하다. 어깨를 제외한 몸통에는 네 모서리에 螺線紋 3개씩을 장식한 마름모꼴 花紋을 그려 넣었다. 허리를 묶은 腹帶에는 채색의 연화문을 장식하고, 목의 깃에는 반원형 구획을 연속되게 마련하고 그 안쪽에 화문을 표현하였다. 자세는 책상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몸은 왼쪽으로 틀고 있으면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성왕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듯 한 자세를 취하였다. 6위의 성왕들 역시 붉은색 朝服의 양어깨에 현왕에서 볼 수 있는 능형 윤곽의 반원형문을 표현하였는데, 안쪽에는 태양 대신 파도와 구름을 뚫고 피어난 연꽃에서 방사하는 빛줄기를 나타내어 특징적이다. 몸통의 문양은 현왕과 거의 동일한 유형의 마름모꼴 화문을 장식하였는데, 다소 간략화 된 판관과 녹사의 마름모꼴 화문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현왕을 비롯한 모든 존상들의 얼굴 표현의 경우 곡선적이고 양감이 있어 보이며 섬세한 이목구비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원만하며 조화로움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현왕 및 성왕들의 원유관과 홀 및 각 기물의 금속장식 및 향로 등에 화려하게 금박을 올려 적색과 녹색의 보색에 황금색의 대비를 줌으로써, 각 존상들의 움직임 있는 표현과 더불어 화면에 생기가 넘쳐 남을 느낄 수 있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각이 진 병풍을 배경으로 하여 한정된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을 주지만, 중앙부 상들보다 크기를 작게 한 권속들을 화면 바깥쪽에 배치시킴으로서 공간감을 부여해 주고 있다.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1844년 '中峰慧晧' 필의 미타사 정수암 현왕도로부터 시작

하여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 1846년의 혜호 작 남양주 흥국사 현왕도를 모본으로 하여 확대 변용시켰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흥국사 현왕도 도상의 경우 1899년 미타사 칠성각 현왕도를 조성할 시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혜호'와의 영향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화면 중앙 하단에 마련된 화기 중의 '光緖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金魚 比丘影明天機 比丘義菴現照 竺潭…'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1887년 영명천기와 의함 현조 및 축담에 의해 조성되어 미타사에 봉안되었음이 확인된다.

〔畵記〕
光緖十三年丁亥十月日 奉安于終南山彌陀寺
緣化所秩
證明 比丘濟菴應荷
誦呪 比丘慶隱□益
金魚 比丘影明天機
比丘義菴現照
竺潭
化主 比丘尼竗正
施主秩
信士 丙寅生朴正心
坤命 辛未生安氏 兩主
坤命 己卯生朴氏
信士 己酉生朴慶□
乾命 丁未生李長□
乾命 乙卯生張啓□

乾命 戊寅生趙奉□
坤命 壬寅生金□□
乾命 高閏相

4.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이상에서 살펴 본 미타사 극락전 현왕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서울·경기지역 도상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도상 유형을 살필 수 있다는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미타사 극락전 봉안의 현왕도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울 미타사 현왕도(1887년)	남양주 흥국사 현왕도(불암사 소장, 1846년)
	
현왕상 상반신 부분도	현왕상 조복 일출문
	
향좌측 부분도	향우측 부분도
	

화기


【 봉은사 시왕도(奉恩寺 十王圖) 】

1. 문화재 현황

시왕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지었던 죄를 죽은 후 10번에 거쳐 심판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마지막에 육도(六道) 중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을 결정하는 지하세계를 주재하는 10명의 왕이다. 시왕도는 명부전(冥府殿)에 봉안된다. 중앙에는 주존인 지장보살상과 후불화인 지장보살도 혹은 지장시왕도를 봉안하고 그 좌우 벽면에 시왕도를 봉안한다. 왼쪽(향우) 벽에는 제1, 3, 5, 7, 9대왕도, 반대쪽에는 제2, 4, 6, 8, 10대왕도를 봉안하는데 각 왕을 한 폭에 그려 10폭으로 제작하는 경우와 2대왕 혹은 3대왕씩 그려 4폭, 6폭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봉은사 시왕도를 비롯해 보광사 시왕도(1872년), 화계사 시왕도(1878년), 흥천사 시왕도(1885년), 봉국사 시왕도(1898년), 봉원사 시왕도(19세기), 안양함 시왕도(1922년) 등이 4폭 형식이다. 봉은사 시왕도는 제1·3대왕도, 제5·7·9대왕도, 제2·4대왕도, 제6·8·10대왕도의 4폭으로 제작되었으며 서울지역 시왕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오래전 사찰에서 유출되었다가 제5·7·9대왕도와 제6·8·10대왕도 2점은 일찍이 회수되어 동국대학교박물관에 기탁되어 왔다. 제1·3대왕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996년 미국 경매를 통해 수집하였고, 제2·4대왕도 역시 2018년 미국 텍사스주 뉴브론필스 이베이옥션에 경매로 나온 것을 낙찰 받아 봉은사로 환수한 것이다. 사찰에서 유출된 지 수 십 년이 지난 후에 4폭이 온전하게 회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도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봉은사로 환수된 대왕도는 2명의 대왕과 해당지옥을 한 폭에 그린 것이다. 향우측의 대왕은 길고 풍성한 흰 수염이 난 노인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적색 곡령대수포(曲領大袖袍)를 입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앉아있다. 오른손으로 홀(笏) 살짝 잡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탁자 위에는 명부와 벼루 등이 놓여있고, 의자 뒤로 병풍이 둘러져 있다. 대왕 주위에는 판관(判官)과 사자(使者), 산개(傘蓋)와 일월선(日月扇) 및 번(幡)을 받쳐들고 있는 천녀(天女), 동자,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마두(馬頭)와 호두(虎頭)옥졸 들이 둘러서 있다. 대왕의 심판 광경 아래에는 기둥에 묶여 있는 죄인 앞에서 옥졸이 죄인의 배꼽에서 창자를 뽑아내고 있는 모습, 칼을 쓰고 벌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그려져 있고, 이러한 지옥광경은 구름층으로 재판 광경과 구별된다. 이렇게 창자를 꺼내는 벌은 받는 추장지옥(抽腸地獄)은 대개 제2초강대왕도에 묘사되는 지옥장면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제2초강대왕도(初江大王圖)임을 알 수 있다. 향좌측의 대왕은 일월관을 썼으며 역시 홀을 들고 있다. 이 대왕은 수염을 검게 표현하여 맞은편의 초강왕과 구별하였다. 탁자와 의자 및 병풍은 같은 모습이며 주위 권속들의 구성도 유사한데 향좌측의 천녀는 공작선(孔雀扇) 들고 있고, 마두는 크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받쳐들고 있으며 맞은편의 옥졸은 붉은 머리칼이 뻗쳐있다. 다양한 인물상들이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화면이 동적이고 활력 있는 모습이다. 구름으로 구획된 지옥의 광경에는 옥졸이 죄인을 창에 꿰어 끓는 가마솥에 넣고 있는 끔찍한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그 주위에는 역시 칼을 쓰고 떨면서 대기하고 있는 죄인들, 명부를 들고 있는 동자, 죄인을 구제하고자 자리한 지장보살 등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확탕지옥(鑊湯地獄)의 광경은 제4오관대왕이 주재하는 지옥이다. 그러므로 이 시왕도는 제2초강대왕도과 제4오관대왕(五官大王圖)임을 알 수 있다. 이 제2·4대왕도는 대부분의 시왕도와는 달리 해당 그림에 왕의 명칭을 써넣지 않았는데 이점은 제5·7·9대왕도나 제6·8·10대왕도도 마찬가지다. 이 불화에서 두 명의 대왕은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듯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하단의 지옥장면은 칸을 구분하지 않고 한 장소인 것처럼 이어져 있다. 심판장면과 지옥장면을 녹색의 구름층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시왕의 뒤에 오곡병풍을 두른 점, 그리고 주조색인 적·녹·청

색의 색감, 지옥을 구분하는 구름의 흰색이 많이 가미된 옥색, 지옥의 짙은 황갈색 바닥면의 설채법 그리고 대왕의 적색 포에 가해진 문양 또한 동국대학교 박물관 기탁본(제5・7・9대왕도, 제6・8・10대왕)과도 공통적인 점이다. 또한 섬세한 인물 묘사, 정교한 필치와 채색 경향은 현존 시왕도 중 주목되는 양식의 불화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시왕도 역시 2명의 왕과 지옥세계가 그려져 있다. 각 대왕의 모습과 자세는 거의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대왕은 탁자를 앞에 놓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으며 둥근 적색의 곡령대수표를 입고 홀을 잡고 있다. 의자 뒤에는 오곡병풍이 둘러져 있고 대왕의 주위로 명부를 읽는 판관과 사자, 일월선과 산개를 받쳐든 천녀, 무기를 들고 있는 옥졸들과 같은 권속들이 모여 있는 재판의 관경을 묘사하고 있다. 옥색 구름층 아래에는 지옥에서 벌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제1대왕 아래에는 칼을 쓰고 앉아 있거나 밧줄에 엮여 옥졸에게 끌려가는 죄인, 그리고 형틀에 눕혀져서 온 몸에 못을 박히는 고통을 당하는 망인이 그려져 있다. 향우측의 지옥장면은 한 사람이 형틀에 묶여 서있는데 그의 혀가 길게 뽑혀 내려와 있고 그 위에 소가 밭을 메듯 쟁기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 뒤에는 옥졸이 채찍으로 소를 내리치며 몰고가는 광경이 첨가되어 있다. 이는 발설지옥(拔舌地獄) 또는 경설지옥(耕舌地獄)이라는 지옥에서 벌받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왕도는 제1진광왕도(秦廣王圖)와 제3송제대왕도(宋帝大王圖)이다. 이 역시 화기의 첫줄 외에 화면이 잘려서 역시 '乾'자만 알 수 있지만 화면의 크기, 각 상의 형태와 이미지, 화풍 등으로 보아 봉은사시왕도의 한 폭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화면구성 및 양식상의 특징들은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제5・7・9대왕도와 제6・8・10대왕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제1・3대왕도와 동일한 구성과 화풍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제2초강대왕도와 제4오관대왕도는 사찰에서 유출될 당시 화면이 칼로 오려져 하단의 화기가 한 줄 정도만 남아있다. 앞부분에 '乾' 자만 보여 건륭년간(1736~1795)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어 동국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시왕도의 연대인 건륭42년인 1777년에 함께 제작되었던 봉은사 시왕도의 한 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화 화면의 크기도 115,5×146cm(제1・3대왕도), 116×148.5cm(제2・4대왕도), 113×213cm(제5・7・9대왕도), 115×216cm(제6・8・10대왕도)여서 세로가 거의 같은 동일 세트로 볼 수 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제5・7・9대왕도와 제6・8・10대왕도는 화면의 구성은 동일하다. 상부에 세명의 대왕이 권속들에 둘러싸여서 명부가 놓인 탁자를 앞에 두고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구름으로 장면을 살짝 구획하여 하단에는 망자들이 벌을 받고 있는 지옥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제5염라대왕도에는 죄인을 업경대(業鏡臺)로 끌고 와 전생의 죄를 비추는 장면과 방아 찧듯이 죄인의 머리를 찧으며 고통을 주는 석애(碩磑)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제7태산대왕도에는 죄인을 톱질하는 거해(鋸解)지옥 장면, 제9도시대왕도에는 업칭(業秤)에 죄의 무게를 다는 장면 등이 묘사되었다. 제6변성대왕도에는 칼이 뾰족하게 꽂혀있는 칼 산에서 찔리며 고통받는 도산(刀山)지옥, 제8평등대왕도에는 암산 사이에 죄인을 넣어 압사시키는 장면, 제10오도전륜대왕도에는 육도윤회하는 장면이 각각 묘사되었다. 두 폭 모두 화기가 온전히 남아있어 제작 연대와 화승 등 관련 사항을 알 수 있어 제1・3대왕도와 2・4대왕도의 봉안처와 제작연대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제5・7・9대왕도의 제작자는 인종(印宗), 도준(道俊), 환봉(喚奉), 연홍(演弘), 정인(定印)이 편수(片手)로 기록되어 있고, 제6・8・10대왕도의 편수는 수밀(守密), 한계(漢戒), 영인(永印), 상훈(尙訓), 번평(煩平), 축함(竺함), 인종(印宗), 축헌(竺軒), 도준(道俊), 환봉(喚奉), 연홍(演泓), 정인(定印)이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승들이고, 화기의 기록으로 보아 이들이 주축이 되어

시왕도, 삼장보살도 및 사자도 2점을 함께 봉은사에서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乾隆四十二年丁酉五月
初七日始役畢功六月初二日
而三藏幀十王各部及
兩使者幀奉安于光
州修道山奉恩寺又
大雄殿三世如來中釋迦
彌陀兩尊改塗面金
也耳~~

2.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봉은사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4폭으로 구성된 시왕도 4점은 이백년 가까이 사찰에 봉안되어 예배의 대상이었었으나 수십 년 전 유출되어 서로 다른 곳에서 각기 유전되다가 이제 4폭의 존재가 모두 국내에서 확인되었다. 그중 제2대왕과 제4대왕을 그린 한 폭은 가장 마지막에 봉은사로 환수되었다. 이 불화는 기존 동국대학교에 보관 중(국유)이던 제5·7·9대왕도 및 제6·8·10대왕도와 화면구성 및 제작 양식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어 봉은사에서 유출되었던 1폭임이 확실하다. 더구나 동국대학교 보관본은 화기까지 완존하고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 화승들도 알 수 있다. 제1·3대왕도와 제2·4대왕도는 비록 현재 화기가 잘려있고 화면에 접혔었던 금이 다수 보이고 채색이 약간 탈락되어 있긴 하지만 그림의 원형은 잘 유지되어 있다. 현존 시왕도 중에서는 연대가 앞서는 불화이며 자연스러운 화면구성과 섬세한 필치 등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불화이다. 제작시기도 올라가고 섬세한 필치와 격조 있는 화풍을 지니고 있으며, 화기가 일부 잘리긴 하였으나 그림은 큰 훼손이 없이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시왕도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충족하는 불화이며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그림2) 제2초강대왕도 · 제4오관대왕도, 1777년, 봉은사 소장



(그림3) 제5염라대왕 · 제7태산대왕 · 제9도시대왕도, 1777년, 비단에 채색, 동국대학교박물관(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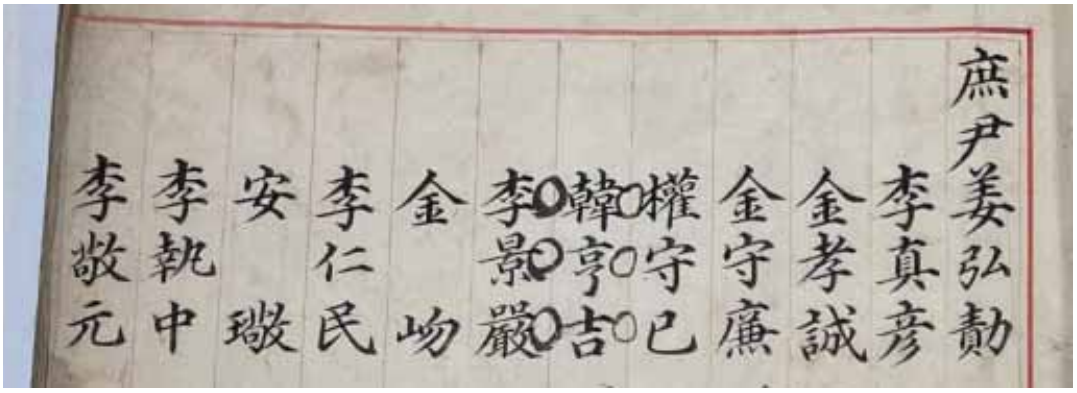


(그림4) 제6변성대왕 · 제8평등대왕 · 제10오도전륜대왕도, 1777년, 비단에 채색, 동국대학교박물관(국유)

【 경조낭청구선생안(京兆郎廳舊先生案) 】

1. 문화재 현황

일제강점기인 1941년 경성부립도서관 장서로 등록된 이래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장서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경조낭청구선생안(京兆郎廳舊先生案)》은 조선시대(후기) 한성부에 재직한 낭청, 즉 서윤(종4품), 판관(종5품), 겸참군, 참군(정7품)의 명단을 수록된 책이다. 앞부분에 수록된 <낭청선생치부(郎廳先生致賻)> 관련 기록은 한성부 낭청들이 상을 당했을 때 조치할 사항을 적은 것으로서 “順治元年(1644) 十月”에 제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함께 전래된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에 기재된 치부(致賻) 관련 내용이 제정된 시기도 이와 동일하므로 기본적으로《경조낭청구선생안》과 《경조당상구선생안》의 제작 시기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조낭청구선생안》의 작성 시기는 1644년(인조 22)을 기점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록된 인물들은 임진왜란 이후의 서윤, 판관, 겸참군, 참군들이다. 맨 마지막에 수록된 참군 정교량은 1758년(영조 34)에 한성부참군에 제수되었다.



<참고 1> 명단이 수록된 첫 면

서윤 강홍적(1580~?), 1609년 생원
서윤 이진언(1553~?), 승정원일기 인조 6년(1628) 한성서윤
서윤 이효성(?~?), 1651년 무과
서윤 김수렴(1574~1651), 1623년 인조반정 이후 한성부서윤
서윤 권수기(1550~?), 1582년 진사
서윤 한형길(1582~1644), 문과,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한성부서윤
서윤 이경엄(1579~1652), 1610년 문과

명단 수록 방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앞부분에는 정확한 제수 연월일을 알 수 없는 낭청들을 열거하였고, 이어서 제수 연월일이 명확한 인물들을 열거하되 재직 시기가 같은 서윤, 판관, 참군을 차례로 적었다. (※전체 수록 인원 870여 명) 유사 자료 문화재 지정 현황으로는 현재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과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 《울산부선생안》, 《경상좌수영선생안》 등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원형유지정도

전체적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외적으로 앞뒤 표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책 끈은 일부 끊어진 상황이다. 내부에 사용된 종이는 다소 두꺼운 한지가 사용되었고, 하단 부분에 다소

종이섬유가 느슨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 관찰된다. 변란과 계선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3.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18세기) 한성부의 낭청(4품 이하), 즉 역대 서윤, 판관, 참군을 역임한 인물들을 수록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지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대 실무 관료의 명단을 수록한 원본 자료로서의 유일성과 희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자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표지 사진



첫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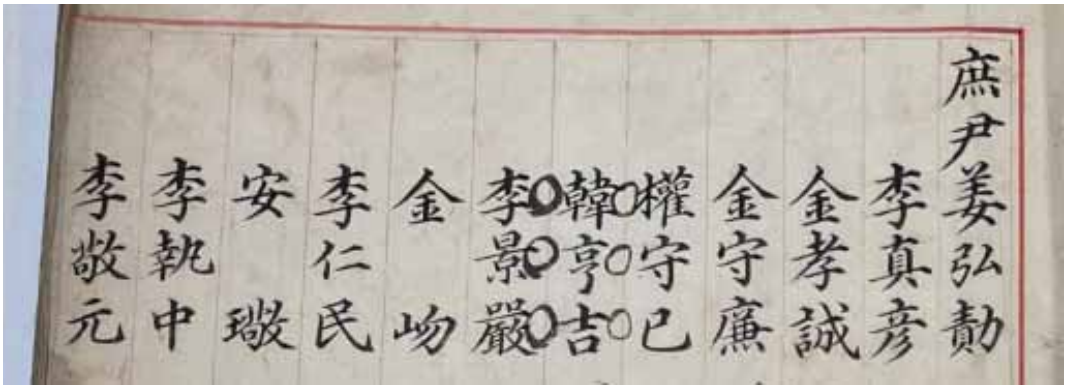


내지

【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 】

1. 현황

일제강점기인 1941년 경성부립도서관 장서로 등록된 이래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장서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경조당상구선생안(京兆堂上舊先生案)》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한성부에 재직한 “삼윤(三尹)”, 즉 판윤, 좌윤, 우윤의 명단이 수록된 책이다. 본문 앞부분에 수록된 <한성부제명기(漢城府題名記)>는 한성부 우윤 허계(許啓, 1594~1653)가 9월 20일에 삼가 적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어서 “順治元年(1644)”과 “順治五年(1648)”을 명시한 치부(致賻, 상중 부조)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허계는 1640년 9월 19일에 한성부 우윤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경조당상구선생안》의 작성 배경은 1640년(인조 18)을 기점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록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 제수된 한성부 판윤, 우윤, 좌윤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1700년대 중후반까지)에 제수된 인물까지 열거되어 있어 최종적인 기재 시기는 18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1> 명단이 수록된 첫 면

판윤 김종순, 세조실록 9년(1463) 10월 18일, “한성부 윤”
판윤 이축, 선조실록 30년(1597) 8월 22일, “한성부 판윤”
우윤 유영길, 선조실록 26년(1593) 7월 29일, “우윤 유영길”
판윤 권율, 선조실록 28년(1595) 10월 9일, “한성부 판윤”

명단 수록 방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앞부분에는 정확한 제수 연월일을 알 수 없는 판윤, 우윤, 좌윤들을 열거하였고, 이어서 제수 연월일이 명확한 인물들을 열거하되 판윤들을 일괄 먼저 수록한 다음 좌윤과 우윤들을 별도로 열거하였다. (※전체 수록 인원 1,400여 명) 《경조당상구선생안》은 동일한 서명을 쓰는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본(異本) 또는 부본(副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두 책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본문 첫 부분에 <한성부제명기>가 수록된 순서가 서로 다른 점, 명단 기재의 일부 차이점 등이 관찰된다(남산도서관 관리번호 EM059307에 수록된 명단이 EM059308보다 조금 더 많다.) 유사 자료 문화재 지정 현황으로는 현재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과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

記)》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기타 《울산부선생안》, 《경상좌수영선생안》 등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원형유지정도

외적으로 앞뒤 표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책끈은 일부 끊어진 상황이다. 내부에 사용된 종이는 다소 두꺼운 한지가 사용되었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등의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일부에서 습해를 입은 얼룩이 보인다. 변란과 계선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3.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18세기)까지 한성부의 역대 판윤, 좌윤, 우윤을 역임한 인물들을 수록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지적, 문화적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 특히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대 고위 관료의 명단을 수록한 원본 자료로서의 유일성과 희소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자료는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표지 사진(1)



첫장(1)



표지 사진(2)



첫장(2)

【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彌陀寺 淨水庵 塑造如來坐像) 】

1. 문화재 현상

미타사 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여래좌상으로 전체 높이가 30cm 가량되는 흙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불상이다. 바닥에는 직경 5cm, 깊이 7cm 크기로 원통형 복장공을 마련하여 조성발원문, 후령통, 다라니 등을 납입했다. 좌대는 최근 새로 조성한 것이다. 불상은 정수리에는 둥근 정상계주를, 이마 윗쪽에는 반달 모양의 커다란 중간계주를 두었는데 중간계주의 너비는 3.7cm이다. 육계는 평퍼짐하여 머리와 구분되지 않는다. 양 귀는 얼굴에 비해 큰 크기이며, 눈은 양쪽으로 길게 조각했지만 코와 입은 오밀조밀하다. 소라머리카락은 앞면에만 선을 그어 표현했다. 좁은 어깨의 아담한 신체 위에는 2장의 가사를 걸쳤는데 개금이 두텁게 입혀져 있고 표면 처리가 거칠다. 이로 인해 불신(佛身)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여 조각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부좌를 튼 발목 앞으로 퍼진 부채꼴 모양의 옷자락, 왼쪽 어깨 뒤로 넘겨졌을 대의 자락 역시 조각선이 뭉개져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손 모양은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했다. 이처럼 양손을 모두 신체에 밀착되게 표현한 것은 흙으로 조각한 상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양손을 신체와 분리하면 파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2. 내용과 특징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은 복장물이 처음 조성 당시 그대로 잘 남아있다. 특히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알려주는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상의 내력을 분명히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조성발원문은 크기가 세로×가로 20×35cm이며 비단 위에 주서(朱書)한 것이다. 이 발원문을 통해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의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발원문에는 이 불상을 위한 증명법사는 동고봉근(東杲奉根)이며, 금어는 춘담성한(春潭盛漢)이라고 적었다. 제작시기는 '世尊應化二千九百五十六年 庚午三月初二日神供十日点安 奉安于 普陀殿'라 적었다. '세존응화이천구백오십육년'은 1929년이며, 경오(庚午)는 1930년이다. 통상 이처럼 불기(佛紀)와 간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간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이 소조여래좌상의 제작 시기는 1930년이다. 조성발원문을 통해 이 불상이 정수암 보타전의 주불이었음도 확인되는데, 보타전은 지금은 소실되어 없지만, 20세기 전반 노스님 생존 시에 존재했던 법당으로 추정한다. 50여 년 전 보타전 소실 이후 법성스님이 새로 법당을 중창하여 지금(주지 상덕스님)에 이른다. 조각을 담당한 춘담성한(春潭盛漢)은 원래 불화를 그리는 화승이다. 근대불화에서 일가를 이룬 금호약효(錦湖若效)의 제자이며, 보응문성(普應文性)과는 동문이다. 금호약효는 보응문성, 춘화만총(春花万聰), 호은정연(湖隱正淵), 춘담성한을 제자로 두었으며, 이후 금용일섭(金蓉日燮)으로 이어진다. 이들을 계룡사파(鷄龍寺派) 혹은 마곡사파(麻谷寺派)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의 계보는 <금호불모비(錦湖佛母碑)>를 통해 확인된다.[3] 이처럼 춘담성한은 불화를 그리는 화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23년에는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보응문성과 함께 대웅전 삼세불도 가운데 <석가설법도>를, 1925년에는 고산축연과 함께 법주사 대웅보전의 <사천왕도>를 그렸다. 1932년에는 석성화경(石城和璟)을 만나 함께 작품활동을 이어간다. 1932년에는 과천 연주암에서 석성화경과 함께 <아미타설법도>, <지장시왕도>, <신중도>를 그렸으며, 동시에 소조관음보살좌상과 소조대세지보살좌상도 석성화경과 함께 조성했다. 이후에도 석성화경과 함께 활동하는데 전남 담양군 용주사

3) 공주시 · 마곡사 · 한얼문화유산연구원, 『麻谷寺誌』,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p.354.

소장의 원통사 치성광여래도를 비롯하여 충남 아산 옥련암이 소장하고 있는 1934년 <영산회상도>도 그와 함께 그렸다. 이처럼 춘담성한은 불화작업에 매진했던 화승이지만, 흙으로 불상을 조성하기도 했다. 미타사의 소조여래좌상은 춘담성한이 석성화경과 함께 활동하기 전인 1930년에 춘담성한이 혼자 조성한 상이다. 이 상을 조성하기 3년 전인 1927년 이미 미타사 금보암의 <아미타삼존도>를 그린 것을 보면, 미타사와의 인연은 불상을 조성하기 이전부터 이미 맺어졌던 것으로 추정한다.

3. 지정 여부 : 지정 가치 있음 (※ 문화재자료)

미타사 정수암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여래좌상은 1930년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이다. 춘담성한은 금호약효의 제자로 불화를 그리는 화승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상은 그의 특기인 불화가 아니라 불상이다. 앞으로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타사 정수암의 이 소조여래좌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춘담성한의 불상 가운데는 가장 이른 예이다. 춘담성한은 1927년 미타사 금보암의 <아미타삼존도>를 그리면서 미타사와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후 정수암에 소조여래좌상을 조성 봉안했다.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은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어 조각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복장물이 조성 당시 그대로 잘 남아있어 1930년 춘담성한이 제작했음이 밝혀졌고, 20세기 전반의 화승인 춘담성한이 제작한 불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라는 점에서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도1) 미타사 정수암의 소조여래좌상 봉안 위치



(도2)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과 복장물



(도3)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도4)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옆면



(도5)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뒷면



(도6)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세부



(도7)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바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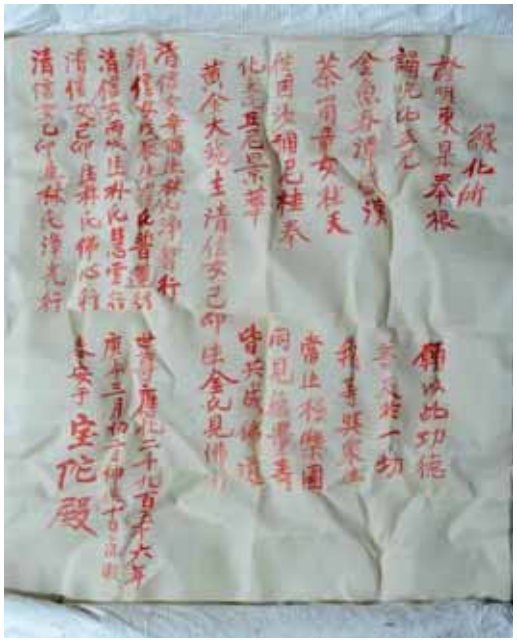
(도8) 미타사 정수암 소조여래좌상 복장물



(도9) 미타사 소조여래좌상 사리



(도10) 미타사 소조여래좌상 후령통



(도11) 미타사 소조여래좌상 복장발원문



(도12) 미타사 소조여래좌상 복장발원문 세부

【 남산도서관 소장 일제강점기 잡지 3종 】

1. 문화재 현황

1)『서울』 제1호, 제6호, 제7호 (1종 3권)

1919년 12월 15일 창간되어 1920년 12월에 제8호(임시호)로 종간된 잡지이다. 주간은 장도빈이며 제1~3호는 서울사, 제4~8호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되었다. 3·1운동 이후 언론출판의 자유가 조금 완화될 때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잡지였으며,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첫 출판물이었다. 출판법에 근거한 잡지여서 정치와 시사를 다룰 수 없었지만 1920년대 전반기를 풍미한『개벽』이전의 사회상과 시대사조를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자료이다. 재단법인 현담문고가 제4호를 제외한 7개 호수를, 연세대 학술정보원이 제2~5호, 제8호(임시호)를 소장 중이다.

2)『鏞傭』 창간호 (1종 1권)

1931년 8월 13일에 용성사에서 발행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장두정이었고, 신소년사인쇄부에서 인쇄하였다. 창간호가 종간호였다. 제목처럼 피고용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만 사회주의계열의 잡지는 아니었다. 여느 잡지의 창간호와 다르게 창간 축하 광고의 대부분을 서울의 권번(기생조합) 소속 기생들의 명함 광고로 채웠다. 1926년에 창간된 최초의 기생 잡지『장한』처럼 1930년대 초반 서울의 기생 사회를 엿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도 잡지 창간호 컬렉션으로 한 부를 소장중이다.

3)『우리의 가뎡』 제1호~제12호 (1종 12권)

1913년 12월 15일에 창간되어 1914년 11월에 제12호로 종간하였다. 1910년대 조선에서 발행된 유일한 여성잡지로서 순한글로 발행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다케우치 로쿠노스케(竹內錄之助)였다. 다케우치는 신문사(新文社)의 사장으로서『우리의 가뎡』을 발판으로 이후『新聞界』,『半島時論』,『半島新聞』 등을 발간한 1910년대의 주요 잡지인이었다. 특히『반도시론』은 3·1운동을 다루고 총독정치를 비판하다가 폐간되었다.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 여성에게 '보통 지식'을 보급하여 가정과 아동을 변화시키고자 한 잡지였다. 최남선의『소년』이 1911년에 폐간되고 1914년 11월에『청춘』이 발간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운 잡지라는 의미도 있다.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도 제3호와 제8호, 제9호, 제11호를 소장중이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 남산도서관은 전호를 소장하고 있다.

4)『新生』 창간호 외 35호

1928년 10월 1일에 창간되어 1934년 1월에 통권 60호를 끝으로 폐간하였다. 주간은 목사인 유형기였고 이윤재, 이은상, 이태준 등이 편집에 참여하였다. 기독교 잡지였지만 종교 외에도 역사, 철학, 문학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정신계몽을 통해 조선 민족, 특히 청년들에게 활력을 심고자 했다. 비슷한 기독교 계통 잡지로서『眞生』,『新生命』,『靑年』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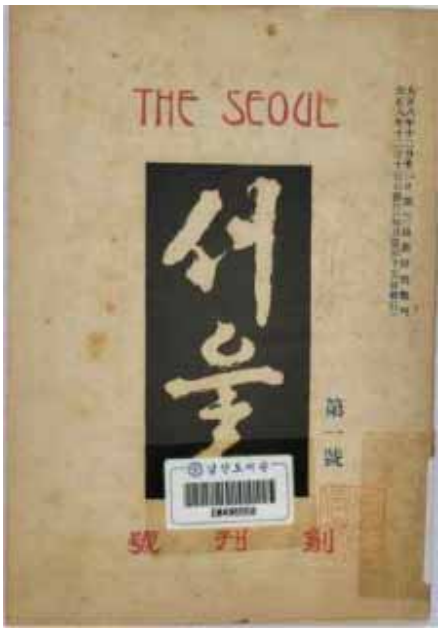
2. 등록 여부 : 등록 가치 있음(조건부 가결 ※『신생』을 제외한 3종만 가능)

○『서울』은 발행 시기와 내용, 희소성 등의 이유로,『용성』은 피고용인과 기생층 대상 잡지라는 사료적 가치와 희소성 때문에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하다.『우리의 가뎡』은 일본인 발행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1910년대 전반기에 유일하게 발행된 여성잡지라는 점과

시기적 특성,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역시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될만한 가치가 있다.

○ 『신생』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을 엿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슷한 잡지가 적지 않고, 총 60권 중 절반 정도만 소장 중이어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서울』과 『용성』, 『우리의 가뎡』에는 가결을, 『신생』에는 부결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서울 제1호 표지



용성 창간호 표지



우리의 가뎡 제1호 표지



우리의 가뎡 제12호 목차

【 남산도서관 소장 경성부 발간 자료 22종 】

1. 문화재 현황

남산도서관 소장 경성부 발간 자료 28종 자료는 현재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 경성부와 그 산하기관(부립도서관, 순화원) 또는 유관기관(경성부교육회)에서 발행한 도서류이다. 발행 시기로는 1923년부터 1942년 사이에 해당한다. 주제별로 분류하면 예산 관계(『경성부세입세출예산서』, 『경성부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등), 교육 관계(『경성부학사일람』, 『경성학교조합세입세출예산서』, 『내선풍속습관의 길잡이』, 『학급경영참고자료』 등), 통계 자료(『경성부인구통계』, 『상공누년통계서』, 『세무통계』 등), 전시통제경제 자료(『경성부의 공정가격집』, 『사치품등제조판매규칙 및 개정폭리행위등취체규칙』 등), 위생관계(『경성부순화원요람』, 『경성부방면위원제요』 등), 각각 경성부와 경성부도서관의 기관잡지인 『경성휘보』와 『경성부립도서관보』 전호, 경성부 공무원의 사무지침인 『예규집』과 기타 자료(『중요상품조사 : 면포의 부』, 『회사와 소득세』 등)이다. 이 중에서 경성부청의 부정(府政)을 홍보하는 『경성휘보』와 경성부도서관의 도서출납과 이용자 현황을 알 수 있는 『경성부립도서관보』는 남산도서관만 전호를 소장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결호가 많다. 세입세출예산 자료와 상공통계자료, 『경성부학사일람』, 『경성부순화원요람』, 『경성부방면위원제요』 등 대부분의 자료들이 남산도서관 유일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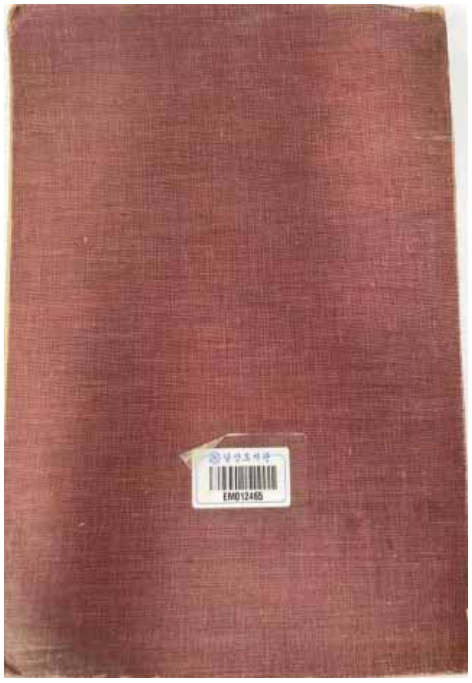
2. 원형유지정도

『경성부 인구통계』의 경우 표지의 절반이 찢어진 상태이며, 『내선풍속습관의 길잡이』 등 몇 책은 표지의 좌측 하단이 일부 손상되었다. 그 외의 자료는 대개 양호한 상태이다.

2. 등록 여부 : 등록 가치 있음(조건부 가결 ※6종을 제외한 22종만 가능)

총 28종 중 6종은 아래의 이유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족하다. 1929년의 『강연집』은 일본인 연사가 공무원을 상대로 내선융화를 주장한 강연을 모은 것으로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경성부 시국총동원과의 『사치품등제조판매규칙 및 개정폭리행위등취체규칙』(1940)은 다른 부 · 군(일제시기 지방행정단위)에서도 비슷한 법규집을 간행하여 희소성이 없다. 『예규류집』(1924, 1927)은 주로 상급기관의 명령과 통첩으로 구성되었는데 다른 부 · 군 발행의 비슷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경성부교육회의 『학급경영참고자료』(1931)는 내용을 볼 때 경성부만의 특성이 없이 전국 학교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세무통계』(1933)는 통계의 특성상 최소한 2년 이상의 누년 자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등록신청을 한 22종의 자료는 생산기관과 발행자, 남산도서관 유일 소장이라는 희소성, 경성부의 부정 일반과 경성부민의 생활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자료군이란 점에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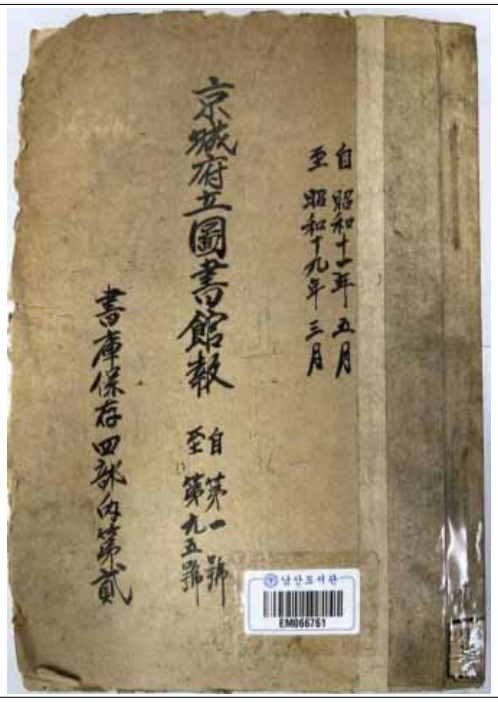
참고 자료	문화재 이미지



경성휘보 표지



경성휘보 표지, 목차, 판권지



경성부립도서관보 표지



경성부립도서관보 제1호 표지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9호(2015.10.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94호(2019.06.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01-1 ~ 강일동 57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 고덕교 확장 폭20m(보도포함, 4차로)→20.3m(차로, 6차로)
◯ 교량접속 캔틸레버 보도설치(교량 양측 각 B=2.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2019년 6월 2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바. 준공 관련도서 : 게재 생략

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7)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4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1. 11. 4.~2021. 11. 18.(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납세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시간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납부자 주소	우편번호	반송사유	납부기한
1	20212253	0000473392142012 0210725001227	34호9522	아반떼(AVANTE)	신설동	2021-06-26	09:15	2021-06-26	14:27	005:12	16,300	16,300	0	조**	서울동대문왕산로	02487	폐문부재	2021-11-16
2	20212261	0000473392142012 0210725000759	37하4698	쏘나타(SONATA)	천호역	2021-06-27	16:47	2021-06-28	09:47	017:00	26,500	26,500	0	박**	서울송파구방이동 오금로	05545	폐문부재	2021-11-16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3호('12.4.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4호('15.10.29)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호('19.1.17)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103호('19.6.7)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6호('19.12.5)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96호('21.5.6)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97조 규정 등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하오니,
4. 본 열람공고 및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대로	2	1	30~43	보조간선도로	785	우면 제2광장(203호)	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측지구계	일반도로		92.03.21.(서고81)	태봉로
-	대로	2	104	33~45	보조간선도로	186	중1-241	지구계	일반도로		83.09.07.(건고296)	태봉로
-	중로	1	241	20~77	집산도로	520	중1-233	대2-104	일반도로		2015.10.29.(서고2015-334호)	태봉로
기정	중로	2	514	14~29	집산도로	1,186	광1-21	중1-241	일반도로	시민의 숲	2015.10.29.(서고2015-334호)	양재천 우안도로
변경	중로	2	514	14~29	집산도로	1,186	광1-21	중1-241	일반도로			면적144㎡ 증가

2) 연구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4	연구시설	우면동 142 일대	35,396.7	-	35,396.7	82.02.18 (건고76)	자연녹지지역

3) 변경 사유 : 테니스장 일대 방음벽 설치 및 종점부 옹벽설계 변경으로 중로 2-514 노선의 면적이 144㎡(0.6%) 증가(당초 22,699㎡ → 변경 22,843㎡)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양재동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L=51m(대로2-1호선), B=30.0 ~ 43.0m (변경없음)
L=186m(대로2-104호선), B=33.0 ~ 45.0m (변경없음)
L=120m(중로1-241호선), B=20.0 ~ 77.0m (변경없음)
L=1,186m(중로2-514호선), B=14.0 ~ 29.0m (변경, 면적 144㎡증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세목조서(별첨)

7) 위치도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다. 열람 일시 및 장소

1) 열람 일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09:00~18:00)

2) 열람 장소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8077)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설계부(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9층, ☏02-3410-7599)

라. 기타

1)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시 제방도로(우면동 143번지 일원) 노선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가 후속 이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설계부(☏ 02-3410-7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세목조서(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우면동	143	천	34,159.0	982.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143	천	34,159.0	982.0	공	서울특별시				
2	당초	우면동	산23-4	임	48.0	48.0	차광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동아APT 104동 1801호				소유권변경
	변경	우면동	산23-4	임	48.0	48.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3	당초	우면동	636-2	도	57.0	57.0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636-2	도	57.0	57.0	국	국토교통부				
4	당초	우면동	산23-5	임	651.0	651.0	차광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동아APT 104동 1801호				소유권변경
	변경	우면동	산23-5	임	651.0	651.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5	당초	우면동	산23-2	도	580.0	580.0	공	서초구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산23-2	도	580.0	580.0	공	서초구				
6	당초	우면동	137-6	도	243.0	243.0	공	서초구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137-6	도	243.0	243.0	공	서초구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	당초	우면동	산24-4	임	66.0	66.0	광산김씨퇴촌공파 외1	서울 서초구 우면동 181-2	국민건강보험공단 외1			소유권 변경
	변경	우면동	산24-4	임	66.0	66.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8	당초	우면동	137-2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없음
	변경	우면동	137-2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9	당초	우면동	137-7	도	28.0	28.0	공	서초구				변경 없음
	변경	우면동	137-7	도	28.0	28.0	공	서초구				
10	당초	우면동	산22-15	임	717.0	717.0	박O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6번길 17-3(구미동)	(주)평택상호저축은행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23(평택동)	근저당권설정	소유권 변경
	변경	우면동	산22-15	임	717.0	717.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당초	우면동	산22-14	임	779.0	779.0	서O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8길 63, 805호 (방배동,방배동 롯데캐슬포레스트)				소유권 변경
	변경	우면동	산22-14	임	779.0	779.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2	당초	우면동	23-14	도	15,124.5	6,262.3	공	서울특별시				변경 없음
	변경	우면동	23-14	도	15,124.5	6,262.3	공	서울특별시				
13	당초	우면동	산22-13	임	1,040.0	1,040.0	조O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다길 29-6 (성북동)				소유권 변경
	변경	우면동	산22-13	임	1,040.0	1,040.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4	당초	우면동	141-1	대	873.1	873.1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141-1	대	873.1	873.1	공	서울특별시				
15	당초	우면동	142-3	대	618.6	618.6	사단법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44(우면동)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142-3	대	618.6	618.6	사단법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44(우면동)				
16	당초	우면동	142-1	대	324.0	324.0	사단법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142-1	대	324.0	324.0	사단법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17	당초	우면동	산21-54	임	1.0	1.0	윤O식	서울 강남구 청담동 81 효성빌라 3동202호				소유권변경
	변경	우면동	산21-54	임	1.0	1.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8	당초	우면동	143-6	천	516.7	28.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143-6	천	516.7	28.0	공	서울특별시				
19	당초	우면동	23-16	도	9.1	9.1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23-16	도	9.1	9.1	공	서울특별시				
20	당초	우면동	143-8	잡	874.5	59.0	공	서초구				변경없음
	변경	우면동	143-8	잡	874.5	59.0	공	서초구				
21	당초	양재동	126	천	32,700.1	5,305.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126	천	32,700.1	5,305.0	공	서울특별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2	당초	양재동	200	공	74,385.0	2,808.0	공	서초구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200	공	74,385.0	2,808.0	공	서초구				
23	당초	양재동	201-2	도	8,783.3	301.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201-2	도	8,783.3	301.0	공	서울특별시				
24	당초	양재동	201	공	5,971.2	467.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201	공	5,971.2	467.0	공	서울특별시				
25	당초	양재동	227-1	잡	13,188.1	447.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227-1	잡	13,188.1	447.0	공	서울특별시				
26	당초	양재동	126-3	천	97.8	37.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126-3	천	97.8	37.0	공	서울특별시				
27	당초	양재동	201-4	도	18,697.7	640.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201-4	도	18,697.7	640.0	공	서울특별시				
28	당초	양재동	126-4	천	3,641.4	227.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126-4	천	3,641.4	227.0	공	서울특별시				
29	당초	양재동	227-2	잡	13,602.2	433.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227-2	잡	13,602.2	433.0	공	서울특별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0	당초	양재동	236	공	146,396.5	2,298.0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236	공	146,396.5	2,298.0	공	서울특별시				
31	당초	양재동	126-1	천	71,544.6	8,840.0	공	서울특별시				변경
	변경	양재동	126-1	천	71,544.6	8,984.0	공	서울특별시				
32	당초	양재동	237	공	4,507.5	57.0	공	서초구				변경없음
	변경	양재동	237	공	4,507.5	57.0	공	서초구				
합계		당초	32필지		35,248.1							
		변경	32필지		35,392.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749호

서울식물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0호(2015.05.28.)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7호(2019.11.2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서울식물원(근린공원)
   나.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일대

2. 공원조성계획 주요 변경내용
   가. 주요 변경내용
      - LG아트센터 공공미술작품 설치(공작물 1개, 면적 104.97㎡)
   나. 세부내역 : 붙임 참조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18:00)

5. 열람장소 :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02-2104-9726)

6.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인 서울식물원 시설운영과(☏ 02-2104-9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물원(마곡 근린공원 1호)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개)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개)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05,350.9	179,256.16	15	29,838.48	80,134.83	316	505,350.9	179,361.13	15	29,838.48	80,134.83	317	
기반시설	소 계	83,887.91	83,887.91					83,887.91	83,887.91					
	도 로	45,702.54	45,702.54					45,702.54	45,702.54					
	광 장	35,773.47	35,773.47					35,773.47	35,773.47					
	보행교	2,411.90	2,411.90					2,411.90	2,411.90					
조경 시설		22,595.80	22,595.8					22,595.80	22,595.8					
휴양 시설		3,848.92	3,848.92				290	3,848.92	3,848.92				290	
유희 시설		2,258.24	2,258.24					2,258.24	2,258.24					
운동 시설		4,658.29	4,658.29	2	2,046.71	7,127.00	11	4,658.29	4,658.29	2	2,046.71	7,127.00	11	
교양 시설		50,488.18	50,488.18	5	24,627.77	69,843.83		50,593.15	50,593.15	5	24,627.77	69,843.83	1	
편익 시설		8,083.20	8,083.20	6	1,364.00	1,364.00	12	8,083.20	8,083.20	6	1,364.00	1,364.00	12	
관리 시설		3,435.62	3,435.62	2	1,800.00	1,800.00	3	3,435.62	3,435.62	2	1,800.00	1,800.00	3	
녹지및기타		326,094.74						325,989.77						
시 설 율 (법정 40%)		(179,256.16/ 505,350.9) x 100 = 35.47%						(179,361.13/ 505,350.9) x 100 = 35.49%						
건 폐 율 (법정 10%)		(29,838.48/ 505,350.9) x 100 = 5.90%						(29,838.48/ 505,350.9) x 100 = 5.90%						

나. 시설조서(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505,350.90	179,256.16			29,838.48	80,134.83	316			505,350.90	179,256.16			29,838.48	79,666.38	317	
기반시설	소 계			83,887.91	83,887.91								83,887.91	83,887.91						
	도 로		진지역	45,702.54	45,702.54							진지역	45,702.54	45,702.54						
	광 장	가	17개소	35,773.47	35,773.47						가	17개소	35,773.47	35,773.47						
		가-1	진입광장	(11,627.03)	(11,627.03)						가-1	진입광장	(11,627.03)	(11,627.03)						
		가-2	물가쉼터	(2,642.96)	(2,642.96)						가-2	물가쉼터	(2,642.96)	(2,642.96)						
		가-3	호수공원	(2,769.75)	(2,769.75)						가-3	호수공원	(2,769.75)	(2,769.75)						
		가-4	호수공원	(2,235.40)	(2,235.40)						가-4	호수공원	(2,235.40)	(2,235.40)						
		가-5	호수공원	(1,685.70)	(1,685.70)						가-5	호수공원	(1,685.70)	(1,685.70)						
		가-6	호수공원	(1,493.24)	(1,493.24)						가-6	호수공원	(1,493.24)	(1,493.24)						
		가-7	지류지	(197.30)	(197.30)						가-7	지류지	(197.30)	(197.30)						
		가-8	가든문화체험원	(2,177.39)	(2,177.39)						가-8	가든문화체험원	(2,177.39)	(2,177.39)						
		가-9	식물원	(2,940.26)	(2,940.26)						가-9	식물원	(2,940.26)	(2,940.26)						
		가-10	식물원	(255.56)	(255.56)						가-10	식물원	(255.56)	(255.56)						
		가-11	물가쉼터	(1,620.66)	(1,620.66)						가-11	물가쉼터	(1,620.66)	(1,620.66)						
		가-12	식물원	(789.98)	(789.98)						가-12	식물원	(789.98)	(789.98)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과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치	부과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13	식물원	(418.97)	(418.97)					가-13	식물원	(418.97)	(418.97)					
	가-14	숲문화원	(944.5)	(944.5)					가-14	숲문화원	(944.5)	(944.5)					
	가-15	둘레길	(227.24)	(227.24)					가-15	둘레길	(227.24)	(227.24)					
	가-16	둘레길	(1,811.53)	(1,811.53)					가-16	둘레길	(1,811.53)	(1,811.53)					LG 환소 사업 시행 부
	가-17	전망광장	(1,936.00)	(1,936.00)					가-17	전망광장	(1,936.00)	(1,936.00)					
	보	17개소	2,411.9	2,411.9					보	17개소	2,411.9	2,411.9					
	보-1	자물쇠	(346.22)	(346.22)					보-1	자물쇠	(346.22)	(346.22)					보행교
	보-2	자물쇠	(718.98)	(718.98)					보-2	자물쇠	(718.98)	(718.98)					
	보-3	자물쇠							보-3	자물쇠							
	보-4	기념촬영 체험원							보-4	기념촬영 체험원							
보행교	보-5	물가쉼터	(415.64)	(415.64)					보-5	물가쉼터	(415.64)	(415.64)					
	보-6	물가쉼터	(29.50)	(29.50)					보-6	물가쉼터	(29.50)	(29.50)					
	보-7	물가쉼터	(78.03)	(78.03)					보-7	물가쉼터	(78.03)	(78.03)					
	보-8	물가쉼터	(106.20)	(106.20)					보-8	물가쉼터	(106.20)	(106.20)					
	보-9	식물원	(125.79)	(125.79)					보-9	식물원	(125.79)	(125.79)					
	보-10	식물원	(114.28)	(114.28)					보-10	식물원	(114.28)	(114.28)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보-11	식물원	(162.49)	(162.49)						보-11	식물원	(162.49)	(162.49)						
		보-12	초지원	(38.43)	(38.43)						보-12	초지원	(38.43)	(38.43)						
		보-13	초지원	(42.72)	(42.72)						보-13	초지원	(42.72)	(42.72)						
		보-14	초지원	(91.27)	(91.27)						보-14	초지원	(91.27)	(91.27)						
		보-15	초지원	(46.97)	(46.97)						보-15	초지원	(46.97)	(46.97)						
		보-16	전망광장	(28.59)	(28.59)						보-16	전망광장	(28.59)	(28.59)						
		보-17	전망광장	(66.79)	(66.79)						보-17	전망광장	(66.79)	(66.79)						
조경시설	소계			22,595.8	22,595.8								22,595.8	22,595.8						
	계류	나	식물원	(3,551.39)	(3,551.39)						나	식물원	(3,551.39)	(3,551.39)						
	연못	다	물놀이터	(4,778.83)	(4,778.83)						다	물놀이터	(4,778.83)	(4,778.83)						
	친디광장	라	초지원	(13,362.64)	(13,362.64)						라	초지원	(13,362.64)	(13,362.64)						
	수경시설	다	전망광장	(902.94)	(902.94)						다	전망광장	(902.94)	(902.94)						
휴양시설	소계			3,848.92	3,848.92					290			3,848.92	3,848.92					290	
	휴게소	바	37개소	2,157.47	2,157.47						바	37개소	2,157.47	2,157.47						
		바-1	돌배숲	(32.19)	(32.19)						바-1	돌배숲	(32.19)	(32.19)						
		바-2	돌배숲	(44.23)	(44.23)						바-2	돌배숲	(44.23)	(44.23)						

구분	담초								현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식생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개)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식생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3	혈덕숲	(141.92)	(141.92)						바-3	혈덕숲	(141.92)	(141.92)						
	바-4	동해숲	(32.20)	(32.20)						바-4	동해숲	(32.20)	(32.20)						
	바-5	동해숲	(35.60)	(35.60)						바-5	동해숲	(35.60)	(35.60)						
	바-6	숲문화원	(224.33)	(224.33)						바-6	숲문화원	(224.33)	(224.33)						
	바-7	동해숲	(8.4)	(8.4)						바-7	동해숲	(8.4)	(8.4)						
	바-8	동해숲	(12.29)	(12.29)						바-8	동해숲	(12.29)	(12.29)						
	바-9	동해숲	(5.75)	(5.75)						바-9	동해숲	(5.75)	(5.75)						
	바-10	동해숲	(215.04)	(215.04)						바-10	동해숲	(215.04)	(215.04)						
	바-11	숲문화원	(120.53)	(120.53)						바-11	숲문화원	(120.53)	(120.53)						
	바-12	초지원	(24.45)	(24.45)						바-12	초지원	(24.45)	(24.45)						
	바-13	초지원	(12.00)	(12.00)						바-13	초지원	(12.00)	(12.00)						
	바-14	초지원	(60.00)	(60.00)						바-14	초지원	(60.00)	(60.00)						
	바-15	식물원	(52.50)	(52.50)						바-15	식물원	(52.50)	(52.50)						
	바-16	식물원	(107.97)	(107.97)						바-16	식물원	(107.97)	(107.97)						
	바-17	기능화체험원	(102.95)	(102.95)						바-17	기능화체험원	(102.95)	(102.95)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ㅁ-18	가든문화체험원	(53.00)	(53.00)						ㅁ-18	가든문화체험원	(53.00)	(53.00)						
	ㅁ-19	가든문화체험원	(202.44)	(202.44)						ㅁ-19	가든문화체험원	(202.44)	(202.44)						
	ㅁ-20	가든문화체험원	(83.14)	(83.14)						ㅁ-20	가든문화체험원	(83.14)	(83.14)						
	ㅁ-21	가든문화체험원	(47.75)	(47.75)						ㅁ-21	가든문화체험원	(47.75)	(47.75)						
	ㅁ-22	차물지	(5.97)	(5.97)						ㅁ-22	차물지	(5.97)	(5.97)						
	ㅁ-23	차물지	(7.29)	(7.29)						ㅁ-23	차물지	(7.29)	(7.29)						
	ㅁ-24	차물지	(5.00)	(5.00)						ㅁ-24	차물지	(5.00)	(5.00)						
	ㅁ-25	차물지	(104.15)	(104.15)						ㅁ-25	차물지	(104.15)	(104.15)						
	ㅁ-26	차물지	(36.00)	(36.00)						ㅁ-26	차물지	(36.00)	(36.00)						
	ㅁ-27	차물지	(5.00)	(5.00)						ㅁ-27	차물지	(5.00)	(5.00)						
	ㅁ-28	차물지	(6.14)	(6.14)						ㅁ-28	차물지	(6.14)	(6.14)						
	ㅁ-29	차물지	(6.22)	(6.22)						ㅁ-29	차물지	(6.22)	(6.22)						
	ㅁ-30	차물지	(6.14)	(6.14)						ㅁ-30	차물지	(6.14)	(6.14)						
	ㅁ-31	차물지	(5.00)	(5.00)						ㅁ-31	차물지	(5.00)	(5.00)						
	ㅁ-32	차물지	(94.72)	(94.72)						ㅁ-32	차물지	(94.72)	(94.72)						
	ㅁ-33	차물지	(5.72)	(5.72)						ㅁ-33	차물지	(5.72)	(5.72)						
	ㅁ-34	차물지	(29.71)	(29.71)						ㅁ-34	차물지	(29.71)	(29.71)						
	ㅁ-35	숲문화원	(5.7)	(5.7)						ㅁ-35	숲문화원	(5.7)	(5.7)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36	숲문화원	(11 50)	(11 50)						바-36	숲문화원	(11 50)	(11 50)						
		바-37	호수원	(204 53)	(204 53)						바-37	호수원	(204 53)	(204 53)						
	한옴채	①	부지내	73 94	73 94						①	부지내	73 94	73 94						
	과교라	②	잔지역							33	②	잔지역							33	
	동의과	③	잔지역							256	③	잔지역							256	
	이화 체이꽃	④	잔지역								④	잔지역								
	스윙 과교라	⑤	식물원								⑤	식물원								
	광상	⑦	잔지역								⑦	잔지역								
	전통정자	⑧	식물원							1	⑧	식물원							1	
	정포원터	하	호수원	1,617 51	1,617 51						하	호수원	1,617 51	1,617 51						
옥외시설	소 계			2,258 24	2,258 24					11			2,258 24	1,841 24					11	
	물놀이장	사	호수공원	917 76	917 76						사	호수공원	917 76	917 76						
	어린이 놀이공간	아	2개소	1,340 48	1,340 48						아	2개소	1,340 48	923 48						
		아-1	물가쉼터	(463 48)	(463 48)						아-1	물가쉼터	(463 48)	(46 48)						
		아-2	숲문화원	(877 00)	(877 00)						아-2	숲문화원	(877 00)	(877 00)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재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치	부재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온동시설	소계			4,658.29	4,658.29			2,046.71	7,127.00	11			4,658.29	4,658.29			2,046.71	7,127.00	11	
	에코스쿨	1	차량지	(2,800.00)	(2,800.00)	철골	지상3층	(524.71)	(4,098.00)		1	차량지	(2,800.00)	(2,800.00)	철골	지상3층	(524.71)	(4,098.00)		김포공항
	실내에코덴탈숍	2	차량지	(1,700.00)	(1,700.00)	철골	지상2층	(1,522.00)	(3,029.00)		2	차량지	(1,700.00)	(1,700.00)	철골	지상2층	(1,522.00)	(3,029.00)		김포공항
	생활체육공간	차	3면소	158.29	158.29						차	3면소	158.29	158.29						
		차-1	둘레길	(88.74)	(88.74)						차-1	둘레길	(88.74)	(88.74)						
		차-2	둘레길	(69.55)	(69.55)						차-2	둘레길	(69.55)	(69.55)						
		⑥	전기실							11	⑥	전기실							11	
고령시설	소계			50,488.18	50,488.18			24,627.77	69,843.83				50,593.15	50,593.15			24,627.77	69,843.83	1	
	구립어린이집	3	게이트볼장	776.13	776.13	목재	지상2층	347.10	404.26		3	게이트볼장	776.13	776.13	목재	지상2층	347.10	404.26		등록공예
	어린이정원문화학교	4	게이트볼장	345.90	345.90	RC	지상1층	305.00	395.00		4	게이트볼장	345.90	345.90	RC	지상1층	305.00	395.00		
	식물문화센터	5	식물원	12,900.00	12,900.00	RC	지상4층	12,105.92	27,000.06		5	식물원	12,900.00	12,900.00	RC	지상4층	12,105.92	27,000.06		11 252m
	LG아트센터	6	전망광장	11,500.75	11,500.75	RC+철골	지상4층, 지하3층	11,500.75	41,675.51		6	전망광장	11,500.75	11,500.75	RC+철골	지상(일부)3층	11,500.75	41,675.51		11 335m LG 전망광장 설치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LG아트센터 공공미술 작품	㉮	전업농장								㉮	전업농장	104.97	104.97					1	LG전자 소식업 사업부
송운화고		7	송운화원	568.75	568.75	RC	지상1층	369.00	369.00		7	송운화원	568.75	568.75	RC	지상1층	369.00	369.00		
정시장(주례장원)		차	8개소	24,396.65	24,396.65						차	8개소	24,396.65	24,396.65						
		차-1	식물원	(2,198.80)	(2,198.80)						차-1	식물원	(2,198.80)	(2,198.80)						
		차-2	식물원	(2,381.77)	(2,381.77)						차-2	식물원	(2,381.77)	(2,381.77)						
		차-3	식물원	(2,921.96)	(2,921.96)						차-3	식물원	(2,921.96)	(2,921.96)						
		차-4	식물원	(6,063.02)	(6,063.02)						차-4	식물원	(6,063.02)	(6,063.02)						
		차-5	식물원	(1,085.23)	(1,085.23)						차-5	식물원	(1,085.23)	(1,085.23)						
		차-6	식물원	(951.38)	(951.38)						차-6	식물원	(951.38)	(951.38)						
		차-7	식물원	(1,930.70)	(1,930.70)						차-7	식물원	(1,930.70)	(1,930.70)						
		차-8	식물원	(1,053.74)	(1,053.74)						차-8	식물원	(1,053.74)	(1,053.74)						
		차-9	식물원	(3,646.86)	(3,646.86)						차-9	식물원	(3,646.86)	(3,646.86)						
		차-10	식물원	(2,163.19)	(2,163.19)						차-10	식물원	(2,163.19)	(2,163.19)						
면 소 계				8,083.20	8,083.20			1,364.00	1,364.00	6			8,083.20	8,083.20			1,364.00	1,364.00	6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허사설	화장실(자루지)	8	자루지	275.97	275.97	철골	지상1층	128.00	128.00		8	자루지	275.97	275.97	철골	지상1층	128.00	128.00		
	화장실(호수공원)	9	호수공원	184.41	184.41	철골	지상1층	142.00	142.00		9	호수공원	184.41	184.41	철골	지상1층	142.00	142.00		
	태조소개비 주차장	라	자루지	3,727.93	3,727.93						라	자루지	3,727.93	3,727.93						
	식물문화센터 주차장	타	식물원	318.54	318.54						타	식물원	318.54	318.54						
	관리온실	10	식물원	300.00	300.00	RC	지상1층	200.00	200.00		10	식물원	300.00	300.00	RC	지상1층	200.00	200.00		
	타하우스	11	식물원	352.43	352.43	철골	지상1층	287.00	287.00		11	식물원	352.43	352.43	철골	지상1층	287.00	287.00		
	식물원 게이트	12	식물원	345.16	345.16	철골	지상1층	152.00	152.00		12	식물원	345.16	345.16	철골	지상1층	152.00	152.00		
	안조선터	13	전망광장	1,442.18	1,442.18	철골	지상1층	455.00	455.00		13	전망광장	1,442.18	1,442.18	철골	지상1층	455.00	455.00		
	LG아트센타하역장	14	둘레길	1,136.58	1,136.58						14	둘레길	1,136.58	1,136.58						LG전소세 협 시행분
	과전기 브릿더	⑤	전지역							11	⑤	전지역							11	
	헬리베이터	⑬	식물문화센터							1	⑬	식물문화센터							1	
합 계				3,435.62	3,435.62			1,800.00	1,800.00	3			3,435.62	3,435.62			1,800.00	1,800.00	3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제에온실(가드닝분화재배원)	15	식물원	1,530.00	1,530.00	철골	지상1층	1,530.00	1,530.00		15	식물원	1,530.00	1,530.00	철골	지상1층	1,530.00	1,530.00		
	제에온실(숲분화원)	16	숲분화원	270.00	270.00	철골	지상1층	270.00	270.00		16	숲분화원	270.00	270.00	철골	지상1층	270.00	270.00		
	야외포지	과	저류지	1,516.05	1,516.05						과	저류지	1,516.05	1,516.05						
	제에온실 배후지	17	가드닝분화재배원	119.57	119.57						17	가드닝분화재배원	119.57	119.57						
	돼배장	⑩	식물원							1	⑩	식물원								일제철거
	수처리시설		식물원	(800.00)	(800.00)							식물원								
	스테키보관함	⑪	전저역								⑪	전저역							2	
	창고	⑬	전저역								⑬	전저역							1	
소계				326,094.74				(221.44)	(221.44)	(5)			325,989.77				(221.44)	(221.44)	(5)	
토지 및 기타	호수		부지내	47,000.00								부지내	47,000.00							
	저류지		부지내	50,500.00								부지내	50,500.00							
	경화철판기초(공항철도)		물가림터	56.41	(56.41)					(1)		물가림터	56.41	(56.41)					(1)	압출형도식 제외 사업 경정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개)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개)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집하장 환기구 (9호선)		진입공항	71.94	(71.94)					(3)		진입공항	71.94	(71.94)					(3)	암반직 도시 계획 사설 경정
기존수계																			
공동구 관리소		송문화원	525.20	(525.20)			(221.44)	(221.44)			송문화원	525.20	(525.20)			(221.44)	(221.44)		
집하장 출입구 (승강기)		진입공항	19.60	(19.60)					(1)		진입공항	19.60	(19.60)					(1)	암반직 도시 계획 사설 경정
녹지		부지내	227,921.55								부지내	227,816.62							

다. 도로조서(변경)

당 초										변 경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합 계					-	45,702.54				합 계					-	45,702.54				
신설	중로	소 계				1,155.00				신설	중로	소 계				1,155.00				
		3	1	15	17.00	(1,155.00)	연결도로	양천길	안행합사설			3	1	15	17.00	(1,155.00)	연결도로	양천길	안행합사설	도시계획 중복결정
	소로	소 계			-	28,798.31					소로	소 계			-	28,798.31				
		3	1	5	687.08	(2,401.68)	연결도로	광장 가-7	휴게소 바-32			3	1	3.5	687.08	(2,401.68)	연결도로	광장 가-7	휴게소 바-32	
		3	2	5	148.44	(520.16)	연결도로	휴게소 바-32	빗물펌프장 연결도로			3	2	3.5	148.44	(520.16)	연결도로	휴게소 바-32	빗물펌프장 연결도로	
		3	3	5	115.16	(403.03)	연결도로	빗물펌프장 연결도로	유수지			3	3	3.5	115.16	(403.03)	연결도로	빗물펌프장 연결도로	유수지	
		3	4	2.5	484.87	(1,232.95)	관리도로	소로 3	유수지 주차장			3	4	2.5	484.87	(1,232.95)	관리도로	소로 3	유수지 주차장	
		3	5	4	66.39	(173.40)	관리도로	소로 3	광장 가-7			3	5	2.5	66.39	(173.40)	관리도로	소로 3	광장 가-7	
		3	6	6-18	90.31	(843.38)	관리도로	중로 1	야외포지			3	6	6-18	90.31	(843.38)	관리도로	중로 1	야외포지	
		3	7	6								3	7							폐지
		3	8	6								3	8							폐지
		3	9	6	556.07	(3,561.15)	연결도로	광장 가-6	보행교 8			3	9	6	556.07	(3,561.15)	연결도로	광장 가-6	보행교 8	
		3	10	3	83.05	(459.07)	연결도로	소로 9	소로 11			3	10	3	83.05	(459.07)	연결도로	소로 9	소로 11	
		3	11	4	141.59	(763.97)	연결도로	소로 12	마곡문화관			3	11	4	141.59	(763.97)	연결도로	소로 12	마곡문화관	

구분	당초									변경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3	12	4	231.69	(1,281.88)	현)결도로	소로 9	광장 가9			3	12	4	231.69	(1,281.88)	현)결도로	소로 9	광장 가9	
		3	13	8-10	137.51	(1,239.43)	현)업도로	부지경계	광장 가8			3	13	8-10	137.51	(1,239.43)	전)업도로	부지경계	광장 가8	
		3	14	4	262.57	(1,224.79)	현)결도로	광장 가9	소로 12			3	14	4	262.57	(1,224.79)	현)결도로	광장 가9	소로 12	
		2	15	4-7	270.01	(1,611.89)	현)결도로	소로 14	광장 가2			2	15	4-7	270.01	(1,611.89)	현)결도로	소로 14	광장 가2	
		3	16	6	405.94	(2,618.77)	현)결도로	광장 가1	광장 가3			3	16	6	405.94	(2,618.77)	현)결도로	광장 가1	광장 가3	
		3	17	5	73.65	(384.74)	현)결도로	소로 16	소로 18			3	17	5	73.65	(384.74)	현)결도로	소로 16	소로 18	
		3	18	3	126.45	(546.18)	현)결도로	휴게소 바10	소로 16			3	18	3	126.45	(546.18)	현)결도로	휴게소 바10	소로 16	
		3	19	5	412.63	(2,450.93)	전)업도로	소로 18	소로 21			3	19	5	412.63	(2,450.93)	전)업도로	소로 18	소로 21	
		3	20	4	162.45	(656.18)	현)결도로	소로19	소로 19			3	20	4	162.45	(656.18)	현)결도로	소로19	소로 19	
		3	21	4-15	291.46	(1,729.13)	전)업도로	부지경계	광장 가1			3	21	4-15	291.46	(1,729.13)	전)업도로	부지경계	광장 가1	
		1	22	7.8	60.25	(594.19)	현)업도로	부지경계	G아트타			1	22	7.8	60.25	(594.19)	전)업도로	부지경계	G아트타	LG건설㈜ 개발사업분
		2	23	9	186.97	(1,671.40)	현)결도로	광장 가2	보행교 8			2	23	9	186.97	(1,671.40)	현)결도로	광장 가2	보행교 8	
		3	24	6	256.64	(1,279.67)	현)결도로	광장 가2	소로 26			3	24	6	256.64	(1,279.67)	현)결도로	광장 가2	소로 26	
		3	25	3	117.89	(413.44)	현)결도로	소로 24	광장 가3			3	25	3	117.89	(413.44)	현)결도로	소로 24	광장 가3	
		3	26	4	46.94	(186.74)	현)결도로	광장 가4	보행교 5			3	26	4	46.94	(186.74)	현)결도로	광장 가4	보행교 5	
		3	27	4	68.8	(422.15)	현)결도로	소로 26	광장 가5			3	27	4	68.8	(422.15)	현)결도로	소로 26	광장 가5	
		3	28	6-9	26.85	(128.01)	현)결도로	광장 가1	광장 가7			3	28	6-9	26.85	(128.01)	현)결도로	광장 가1	광장 가7	

당초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소 계				15,749.23				신설	산책로	소 계				15,749.23				
			1-1	1.2	58.17	(70.08)	산책로	광장가-1	부지경계				1-1	1.2	58.17	(70.08)	산책로	광장가-1	부지경계	
			1-2	1.2	56.22	(68.93)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1				1-2	1.2	56.22	(68.93)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1	
			1-3	1.2	49.61	(99.68)	산책로	광장 가-1	보행교 17				1-3	1.2	49.61	(99.68)	산책로	광장 가-1	보행교 17	
			1-4	1.2	66.05	(128.19)	산책로	보행교 17	광장 가-1				1-4	1.2	66.05	(128.19)	산책로	보행교 17	광장 가-1	
			2-1	5	79.65	(398.91)	산책로	광장 가-1	산 2-3				2-1	5	79.65	(398.91)	산책로	광장 가-1	산 2-3	
			2-2	2.4	74.93	(181.48)	산책로	광장 가-1	산 2-3				2-2	2.4	74.93	(181.48)	산책로	광장 가-1	산 2-3	
			2-3	5	16.30	(38.65)	산책로	부지경계	GP트랜치				2-3	2.5	16.30	(38.65)	산책로	부지경계	GP트랜치	
			2-5	5	81.66	(200.68)	산책로	부지경계	광장 가-6				2-4	2.5	81.66	(200.68)	산책로	부지경계	광장 가-6	(GP군수동 개설시행분)
			2-6	2.4	54.38	(271.08)	산책로	산 2-4	산 2-7				2-5	5	54.38	(271.08)	산책로	산 2-4	산 2-7	
			2-7	3	57.47	(137.86)	산책로	산 2-4	산 2-7				2-6	2.4	57.47	(137.86)	산책로	산 2-4	산 2-7	
			2-8	5	55.69	(168.05)	산책로	부지경계	산2-4				2-7	3	55.69	(168.05)	산책로	부지경계	산2-4	
			2-9	2.4	98.43	(504.31)	산책로	산 2-7	소-21				2-8	5	98.43	(504.31)	산책로	산 2-7	소-21	
			2-10	1.5	90.66	(218.16)	산책로	산 2-7	소-21				2-9	2.4	90.66	(218.16)	산책로	산 2-7	소-21	
			2-11	1.5	74.88	(141.52)	산책로	산 2-8	소-21				2-10	1.5	74.88	(141.52)	산책로	산 2-8	소-21	
			3-1	2.4	37.49	(69.65)	산책로	산 2-10	소-21				2-11	1.5	37.49	(69.65)	산책로	산 2-10	소-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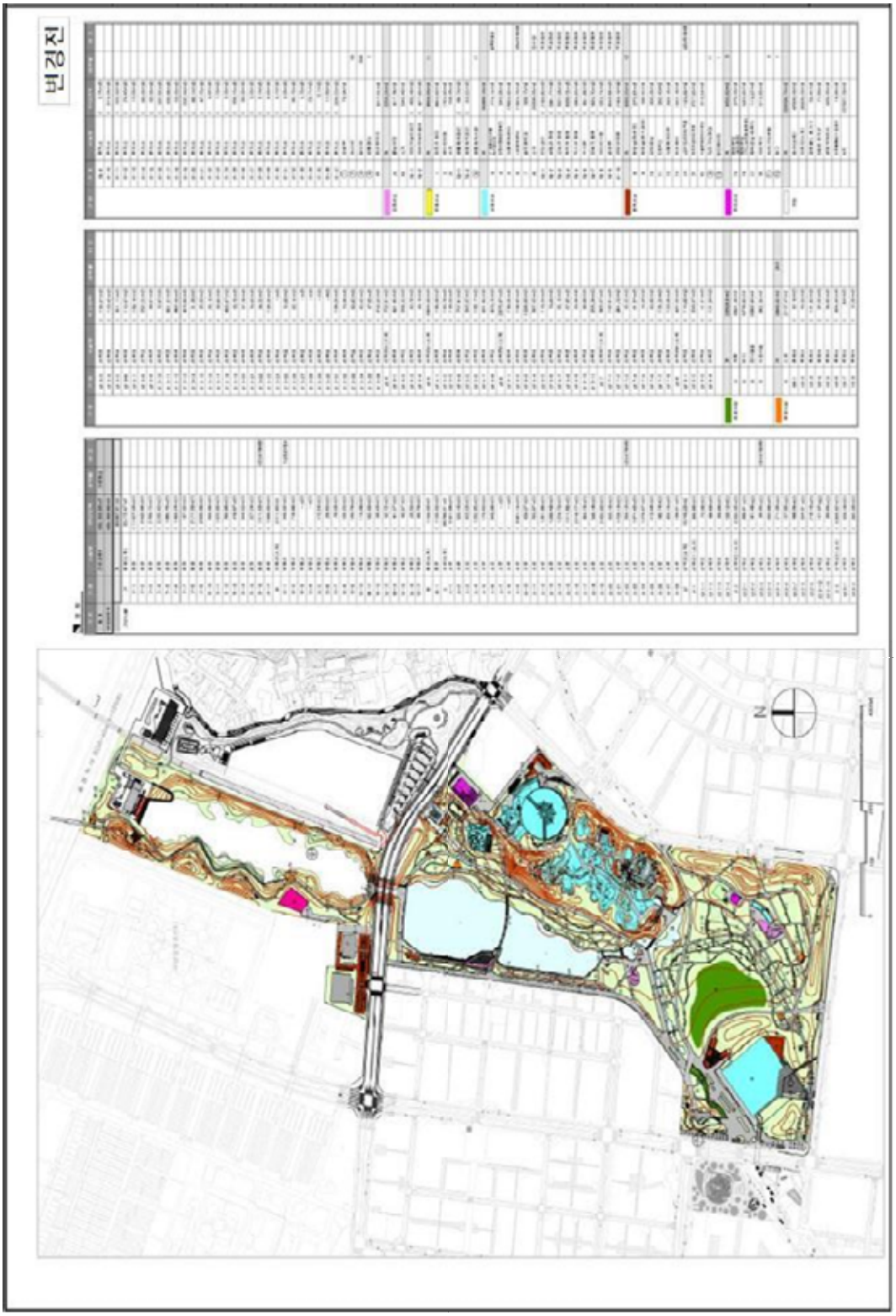
변경												당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3-1	2.4	220.48	(529.18)	산책로	소-21	광장가H5					3-1	2.4	220.48	(529.18)	산책로	소-21	광장가H5	
			3-2	3	122.68	(260.28)	산책로	소-19	광장가H5					3-2	3	122.68	(260.28)	산책로	소-19	광장가H5	
			3-3	2.5	48.20	(135.37)	산책로	소-19	소-20					3-3	2.5	48.20	(135.37)	산책로	소-19	소-20	
			3-4	2.5	49.37	(123.42)	산책로	휴게쉼터6	산 3-3					3-4	2.5	49.37	(123.42)	산책로	휴게쉼터6	산 3-3	
			3-5	1.5	61.47	(311.11)	산책로	산3-3	소-19					3-5	1.5	61.47	(311.11)	산책로	산3-3	소-19	
			3-6	3.5	22.36	(110.07)	산책로	소-20	광장가H4					3-6	3.5	22.36	(110.07)	산책로	소-20	광장가H4	
			3-7	4	56.87	(189.14)	산책로	산 3-6	광장가H4					3-7	4	56.87	(189.14)	산책로	산 3-6	광장가H4	
			3-8	2.5	103.05	(262.25)	산책로	산3-11	산 3-6					3-8	2.5	103.05	(262.25)	산책로	산3-11	산 3-6	
			3-9	1.5	14.26	(28.01)	산책로	소-20	산 3-8					3-9	1.5	14.26	(28.01)	산책로	소-20	산 3-8	
			3-10	2.5	43.94	(72.67)	산책로	산 3-8	산 3-11					3-10	2.5	43.94	(72.67)	산책로	산 3-8	산 3-11	
			3-11	3	290.45	(951.31)	산책로	소-19	소-18					3-11	3	290.45	(951.31)	산책로	소-19	소-18	
			3-12	3	292.30	(882.44)	산책로	소-21	소-16					3-12	3	292.30	(882.44)	산책로	소-21	소-16	
			3-13	1.5	272.99	(415.64)	산책로	소-21	소-16					3-13	1.5	272.99	(415.64)	산책로	소-21	소-16	
			3-14	1.8	15.79	(31.08)	산책로	산 3-12	산3-13					3-14	1.8	15.79	(31.08)	산책로	산 3-12	산3-13	
			3-15	1.8	12.94	(26.53)	산책로	산 3-11	산 3-12					3-15	1.8	12.94	(26.53)	산책로	산 3-11	산 3-12	
			3-16	1.5	12.96	(26.19)	산책로	산 3-11	산 3-12					3-16	1.5	12.96	(26.19)	산책로	산 3-11	산 3-12	
			3-17	1.5	13.87	(29.65)	산책로	산 3-12	산 3-13					3-17	1.5	13.87	(29.65)	산책로	산 3-12	산 3-13	

당초										변경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3-18	1.5	247.69	(430.67)	산책로	산 3-13	산 3-36				3-18	1.5	247.69	(430.67)	산책로	산 3-13	산 3-36	
			3-19	4	11.48	(53.79)	산책로	산 3-12	산 3-13				3-19	4	11.48	(53.79)	산책로	산 3-12	산 3-13	
			3-20	4	12.50	(57.76)	산책로	산 3-11	산 3-12				3-20	4	12.50	(57.76)	산책로	산 3-11	산 3-12	
			3-21	4	14.90	(74.22)	산책로	산 3-11	산 3-12				3-21	4	14.90	(74.22)	산책로	산 3-11	산 3-12	
			3-22	4	10.75	(54.30)	산책로	산 3-12	산 3-13				3-22	4	10.75	(54.30)	산책로	산 3-12	산 3-13	
			3-23	2	78.09	(128.39)	산책로	산 3-13	산 3-13				3-23	2	78.09	(128.39)	산책로	산 3-13	산 3-13	
			3-24										3-24							폐지
			3-25	5	12.86	(72.08)	산책로	산 3-13	산 3-12				3-25	5	12.86	(72.08)	산책로	산 3-13	산 3-12	
			3-26	1.5	53.53	(85.19)	산책로	산 3-12	산 3-11				3-26	1.5	53.53	(85.19)	산책로	산 3-12	산 3-11	
			3-27										3-27							폐지
			3-28										3-28							폐지
			3-29										3-29							폐지
			3-30										3-30							폐지
			3-31	1.5	68.11	(108.25)	산책로	산 3-12	산 3-11				3-31	1.5	68.11	(108.25)	산책로	산 3-12	산 3-11	
			3-32	3	18.81	(73.08)	산책로	산 3-12	산 3-13				3-32	3	18.81	(73.08)	산책로	산 3-12	산 3-13	
			3-33	1.5	36.90	(60.92)	산책로	산 3-18	산 3-13				3-33	1.5	36.90	(60.92)	산책로	산 3-18	산 3-13	
			3-34	1.5	24.47	(60.00)	산책로	산 3-13	산 3-12				3-34	1.5	24.47	(60.00)	산책로	산 3-13	산 3-12	

당초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3-35	1.5	27.65	(47.53)	산책로	산 3-18	소-16				3-35	1.5	27.65	(47.53)	산책로	산 3-18	소-16	
			3-36	2	85.05	(216.30)	산책로	소-16	소-16				3-36	2	85.05	(216.30)	산책로	소-16	소-16	
			4-1	3	136.86	(441.65)	산책로	소-16	소-16				4-1	3	136.86	(441.65)	산책로	소-16	소-16	
			4-2	3	80.52	(206.35)	산책로	소-16	소-16				4-2	3	80.52	(206.35)	산책로	소-16	소-16	
			4-3	2	14.71	(30.78)	산책로	산 4-2	산 4-1				4-3	2	14.71	(30.78)	산책로	산 4-2	산 4-1	
			4-4	2	20.76	(44.13)	산책로	소-16	산 4-2				4-4	2	20.76	(44.13)	산책로	소-16	산 4-2	
			5-1	4	49.07	(198.08)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1				5-1	4	49.07	(198.08)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1	
			5-2	4	39.29	(160.76)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1				5-2	4	39.29	(160.76)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1	
			5-3	3	65.09	(148.24)	산책로	광장 가1	소-24				5-3	3	65.09	(148.24)	산책로	광장 가1	소-24	
			5-4	3	235.05	(707.91)	산책로	소-9	소-12				5-4	3	235.05	(707.91)	산책로	소-9	소-12	
			5-5	2.5	115.12	(345.62)	산책로	소-9	소-9				5-5	2.5	115.12	(345.62)	산책로	소-9	소-9	
			5-6	2.5	49.96	(168.17)	산책로	산5-4 소-9	소-12				5-6	2.5	49.96	(168.17)	산책로	산5-4 소-9	소-12	
			5-7	2.5	94.28	(241.85)	산책로	소-12	산 5-8				5-7	2.5	94.28	(241.85)	산책로	소-12	산 5-8	
			5-8	3.0	200.38	(673.70)	산책로	소-12	소-9				5-8	3.0	200.38	(673.70)	산책로	소-12	소-9	
			6-1	1.5	90.39	(139.35)	산책로	산책로	차-2				6-1	1.5	90.39	(139.35)	산책로	산책로	차-2	
			6-2	2	53.74	(109.92)	산책로	산책로	산 6-3				6-2	2	53.74	(109.92)	산책로	산책로	산 6-3	
			6-3	2-4	237.74	(1,038.68)	산책로	소-15	보행교 IO 산 6-3				6-3	2-4	237.74	(1,038.68)	산책로	소-15	보행교 IO 산 6-3	

구분	등급	류별	변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구분	등급	류별	변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6-4	3	125.36	(337.03)	산책로	산 6-3	광장가O	변경			6-4	3	125.36	(337.03)	산책로	산 6-3	광장가O	
			6-5	2.4	51.40	(116.24)	산책로	산 6-3	산 6-3				6-5	2.4	51.40	(116.24)	산책로	산 6-3	산 6-3	
			6-6	2	44.57	(73.26)	산책로	산 6-3	차-7				6-6	2	44.57	(73.26)	산책로	산 6-3	차-7	
			6-7	3	29.58	(95.13)	산책로	광장가O	소-15				6-7	3	29.58	(95.13)	산책로	광장가O	소-15	
			6-8	3	28.07	(67.60)	산책로	광장가O	차-6				6-8	3	28.07	(67.60)	산책로	광장가O	차-6	
			6-9	2	11.62	(23.44)	산책로	차-6	소-14				6-9	2	11.62	(23.44)	산책로	차-6	소-14	
			6-10	4	13.24	(69.68)	산책로	광장가9	소-14				6-10	4	13.24	(69.68)	산책로	광장가9	소-14	
			6-11	1.5	131.02	(205.34)	산책로	차-4	차-4 유량보B				6-11	1.5	131.02	(205.34)	산책로	차-4	차-4 유량보B	
			6-12										6-12							폐지
			6-13										6-13							폐지
			6-14										6-14							폐지
			6-15										6-15							폐지
			6-16										6-16							폐지
			7-1	2	78.27	(162.91)	산책로	소-12	소10				7-1	2	78.27	(162.91)	산책로	소-12	소10	
			7-2	3	128.65	(381.73)	산책로	소-10	소-11				7-2	3	128.65	(381.73)	산책로	소-10	소-11	
			7-3	2	11.52	(35.32)	산책로	소1-0	산 7-2				7-3	2	11.52	(35.32)	산책로	소1-0	산 7-2	

구분	등급	류별	변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구분	등급	류별	변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7-4	1.5	40.72	(61.37)	산책로	소-11	마곡철교				7-4	1.5	40.72	(61.37)	산책로	소-11	마곡철교	
			7-5	1.5	8.19	(14.34)	산책로	휴게소 바-20	산 7-2				7-5	1.5	8.19	(14.34)	산책로	휴게소 바-20	산 7-2	
			7-6	1.5	31.60	(60.66)	산책로	소-9	휴게소 바-20				7-6	1.5	31.60	(60.66)	산책로	소-9	휴게소 바-20	
			7-7	1.5	70.82	(125.35)	산책로	휴게소 바-20	소-9				7-7	1.5	70.82	(125.35)	산책로	휴게소 바-20	소-9	
			7-8	1.2	100.39	(123.39)	산책로	산 5-8	소-9 산 5-8				7-8	1.2	100.39	(123.39)	산책로	산 5-8	소-9 산 5-8	
			7-9										7-9							폐지
			7-10										7-10							폐지
			7-11										7-11							폐지
			8-1	2	55.58	(114.68)	산책로	종-1	소-1				8-1	2	55.58	(114.68)	산책로	종-1	소-1	
			8-2	2	123.89	(249.97)	산책로	소-1	보행교 1				8-2	2	123.89	(249.97)	산책로	소-1	보행교 1	
			8-3	2	25.5	(51.01)	산책로	소-1	산 8-2				8-3	2	25.5	(51.01)	산책로	소-1	산 8-2	
			8-4	3	39.45	(121.54)	산책로	소-1	서남물재생센터				8-4	3	39.45	(121.54)	산책로	소-1	서남물재생센터	


빈강진


변경후

구 고 시

중구고시 제2021 - 1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4호(2021. 4. 15.)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도시계획시설(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개설 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및 면적
- 규 모: L=14.75m, B=4~8m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 면 적: 61.0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순문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8층(여의도동)

마.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년 12월31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공사완료 공고 후 무상귀속(관련 기관)

사.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을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관 계 인	
									성 명	주 소
1	중구 남대문로5가	84-15	대	15,607.4	47.7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2	중구 남대문로5가	84-17	도	953.1	13.28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8층	-	-	-
계		-	-	16,560.5	61.05	-	-	-	-	-

중구고시 제2021 - 12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9호(2016. 5. 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2021-194호(2021. 4. 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서울역고가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중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서울로7017과 에너지플러스 서울로(신축)의 보행로 연결 결정 사항 중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지표면 기준 높이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	10.3	특수도로	810	남대문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광장,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일부 입체적 결정)
변경	소로	1	-	10.3	특수도로	810	남대문5가 281	만리동1가 83	보행자 전용도로	-	-	· 철도, 광장, 도로 중복결정 · 연결통로(일부 입체적 결정) · 연결통로(금회 변경사항)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 중 지표면기준 높이 변경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연결통로1	남대문로5가 526일대	길이	3.15m	-	3.15m	변경없음 (대우재단빌딩)
			폭	6m	-	6m	
			높이 (지표면기준)	4.8~5.8m	-	4.8~5.8m	
			면적	18.3㎡	-	18.3㎡	
기정	연결	남대문로5가	길이	12.25m	-	12.25m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통로2	526일대	폭	1.8~2.75m	-	1.8~2.75m	(호텔마누)
			높이 (지표면기준)	0~5.62m	-	0~5.62m	
			면적	24.9㎡	-	24.9㎡	
기정	연결 통로3	남대문로5가 537일대	길이	6.88m	-	6.88m	변경없음 (메트로타워)
			폭	4.15m	-	4.15m	
			높이 (지표면기준)	0~8.92m	-	0~8.92m	
			면적	28.56㎡	-	28.56㎡	
기정	연결 통로4	봉래동2가 122-11일대	길이	33.17m	-	33.17m	변경없음 (구서울역사)
			폭	6m	-	6m	
			높이 (지표면기준)	0~13.47m (-22.37~13.47m)	-	0~13.47m (-22.37~13.47m)	
			면적	286.36㎡	-	286.36㎡	
변경	연결 통로5	남대문로5가 84-17일대	길이	3.32m	-	3.32m	신설 (에너지플러스 서울로)
			폭	4m	-	4m	
			높이 (지표면기준)	0~8.05m (-1.95~8.05m)	0~8.05m (증 +1.95)	0~8.05m	
			면적	13.28㎡	-	13.28㎡	

※ 괄호 안의 값은 지하구조물을 포함한 값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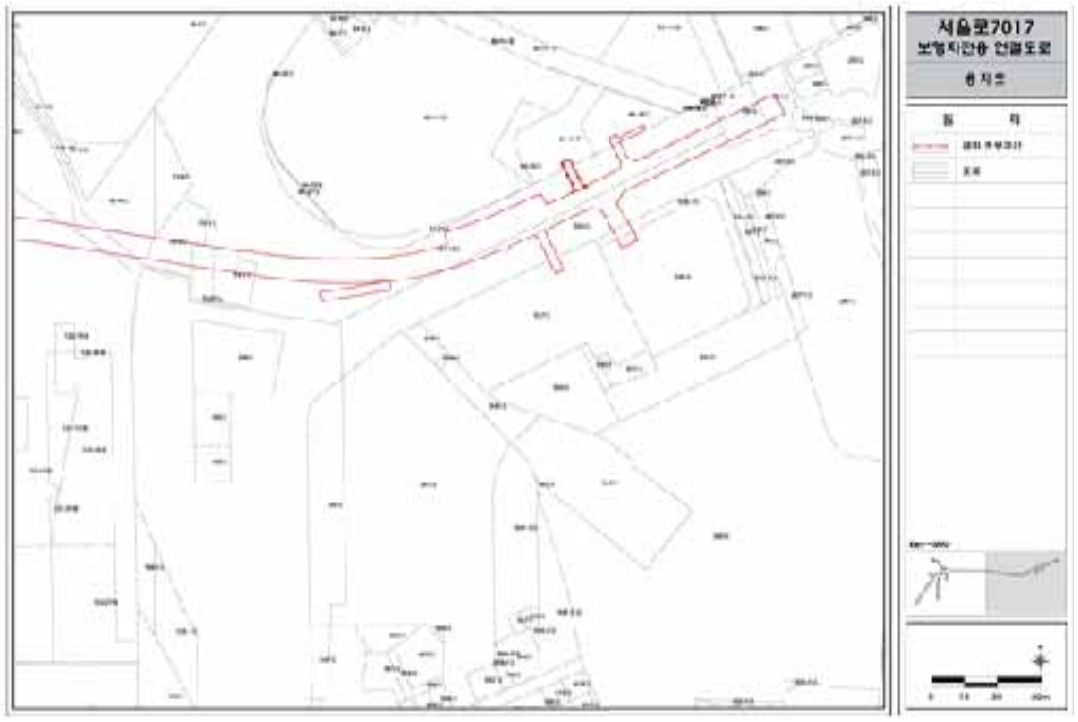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	소로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지표면기준 높이 변경 - H= -1.95~8.05m → 0~8.05m	·서울로7017(소로1)과 에너지플러스서울로(신축)의 보행로 연결 결정 사항 중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지표면 기준 높이 변경

3. 관계도서: 생략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회 변경구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중 지표면 기준 높이 변경사항

중구고시 제2021 - 122호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2호(1978.11.30.)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92호(1989.03.29.)로 재개발사업 공사완료(을지로1가구역 제5지구)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08.02.)로 무교·다동·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된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완료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중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무교·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일대	109,965.8	-	109,965.8	

다. 사업시행지구 지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무교 · 다동 제34지구	을지로1가 87번지	5,628.1	-	5,628.1	완료지구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628.1	-	5,628.1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458.2	-	458.2	8.14	旣 부담 (을지로1가 53, 87-3)
획 지	대 지	5,169.9	-	5,169.9	91.86	-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변경	무교 · 다동구역 제34지구	5,628.1	획지	5,169.9	을지로1가 87번지	1	-	1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무교 · 다동구역 제34지구	5,628.1	획지	5,169.9	을지로1가 87번지	업무 시설	32~33	640~642.7	21/6	완료지구
변경							34.6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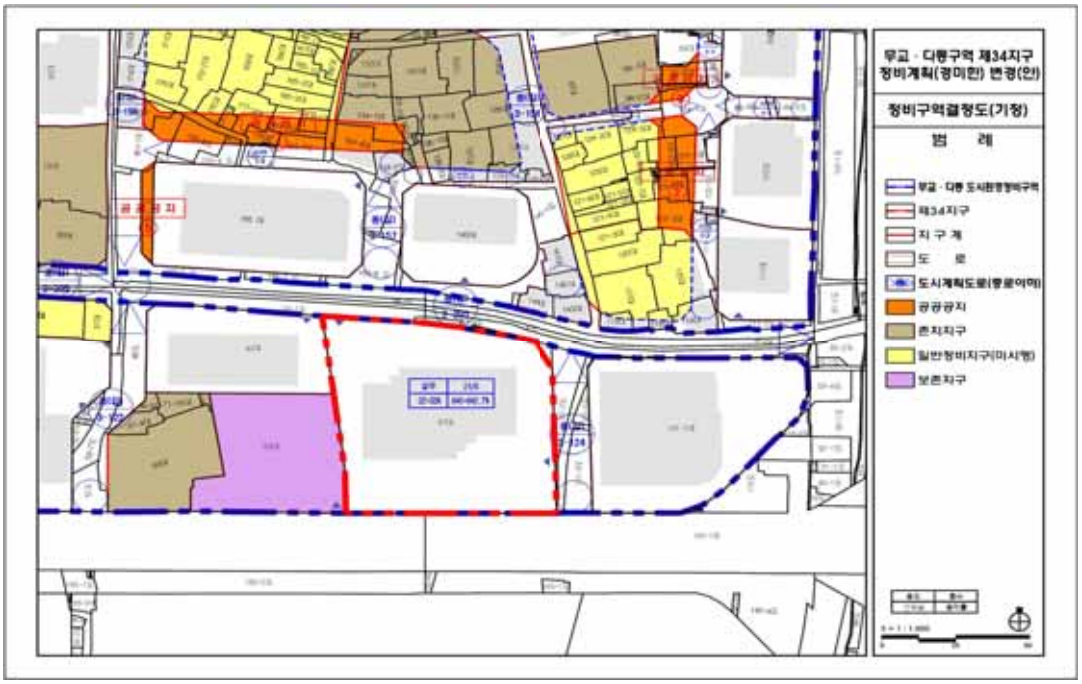
바.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변경사유
◦ 재개발사업 완료된지 32년이 지난 무교·다동 제34지구에 대해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옥외 주차장등 공지를 휴게공간으로 조성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증축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경미한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고,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생관리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성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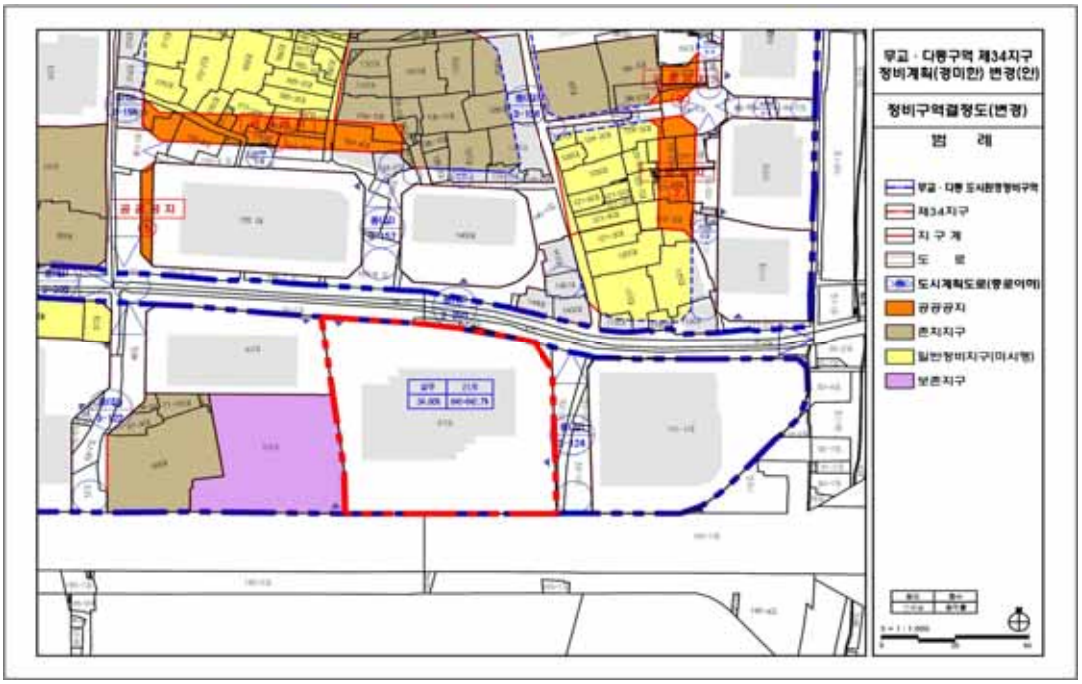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

5.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4)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정비계획결정도(기정)



■정비계획결정도(변경)



중구고시 제2021 - 125호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 -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1호(1982.10.13.)로 재개발사업시행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662호(1985.11.08.)로 재개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2021.10.1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중 구 청 장

1.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남창동, 남대문로3가, 회현동1가, 충무로1가 일부	68,852.5	-	68,852.5	

2. 남대문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남대문구역 제7-1지구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2,194.6	-	2,194.6	•정비기반시설 : 도로(480.7㎡)

※ 1984.8.11. 재개발사업 완료 시 무상귀속된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외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변경없음)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
(m)</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 칭</th><th>면 적(㎡)</th><th>명 칭</th><th>면 적(㎡)</th></tr>
<tr><td>기정</td><td>남대문구역
제7-1지구</td><td>2,194.6</td><td>획 지</td><td>1,713.9</td><td>남창동
9-1번지</td><td>주거</td><td>60 이하</td><td>996 이하</td><td>70 이하</td><td></td></tr>
<tr><td row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2">기정</td><td colspan="7">•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건립 규모 및 비율
<table>
<tr><th>구 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r>
<tr><td>일반분양</td><td>29㎡ 이상 ~ 50㎡ 이하</td><td>244</td><td>82.4</td></tr>
<tr><td>공공주택</td><td>30㎡ 이하</td><td>52</td><td>17.6</td></tr>
<tr><td>공공임대주택</td><td>30㎡ 이하</td><td>15</td><td>5.1</td></tr>
<tr><td>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td><td>30㎡ 이하</td><td>37</td><td>12.5</td></tr>
<tr><td colspan="2">합 계</td><td>296</td><td>100.0</td></tr>
</table></td></tr>
<tr><td colspan="2">변경</td><td colspan="7">•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립
-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 : 전체 공공주택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건립 규모 및 비율
<table>
<tr><th>구 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r>
<tr><td>일반분양</td><td>24㎡ 이상 ~ 50㎡ 이하</td><td>207</td><td>77.5</td></tr>
<tr><td>공공주택</td><td>30㎡ 이하</td><td>60</td><td>22.5</td></tr>
<tr><td>공공임대주택</td><td>30㎡ 이하</td><td>15</td><td>5.6</td></tr>
<tr><td>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td><td>30㎡ 이하</td><td>45</td><td>16.9</td></tr>
<tr><td colspan="2">합 계</td><td>267</td><td>100.0</td></tr>
</table></td></tr>
<tr><td>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2">기정</td><td colspan="7">• 용적률 : 996.17% → 996%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130%
<table>
<tr><th>목 적</th><th>인센티브 대상</th><th>인센티브 완화 요건</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
<tr><td rowspan="3">친환경
개발
(의무)</td><td>녹색건축물 인증</td><td>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td><td rowspan="3">정량부여</td><td rowspan="3">100%</td></tr>
<tr><td>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td><td>주거 190Wh/㎡·y이하,
비주거 240Wh/㎡·y이하</td></tr>
<tr><td>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td><td>주거 7% 이상, 비주거 11% 이상</td></tr>
<tr><td>도시경제
활성화</td><td>건축연면적의 30% 이상을
전용 40㎡ 이하 주거도입 시</td><td>주거복합비율 56.36% 적용
(50% 이상 ~ 60% 미만 :
30% 완화)</td><td>주거복합 비율에
비례 최대 50%</td><td>30%</td></tr>
</table>
③ 상한용적률 : 266.17%
<table>
<tr><th>구 분</th><th>인센티브 산식</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
<tr><td>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td><td>허용용적률×1.3×a
(a=부담면적÷대지면적)</td><td>730%×1.3×0.2805
(a=480.7÷1,713.9)</td><td>266.17%</td></tr>
</table></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2">기정</td><td colspan="7">• 건축한계선 지정 : 퇴계로변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 퇴계로변 4m</td></tr>
</table>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가.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등(변경없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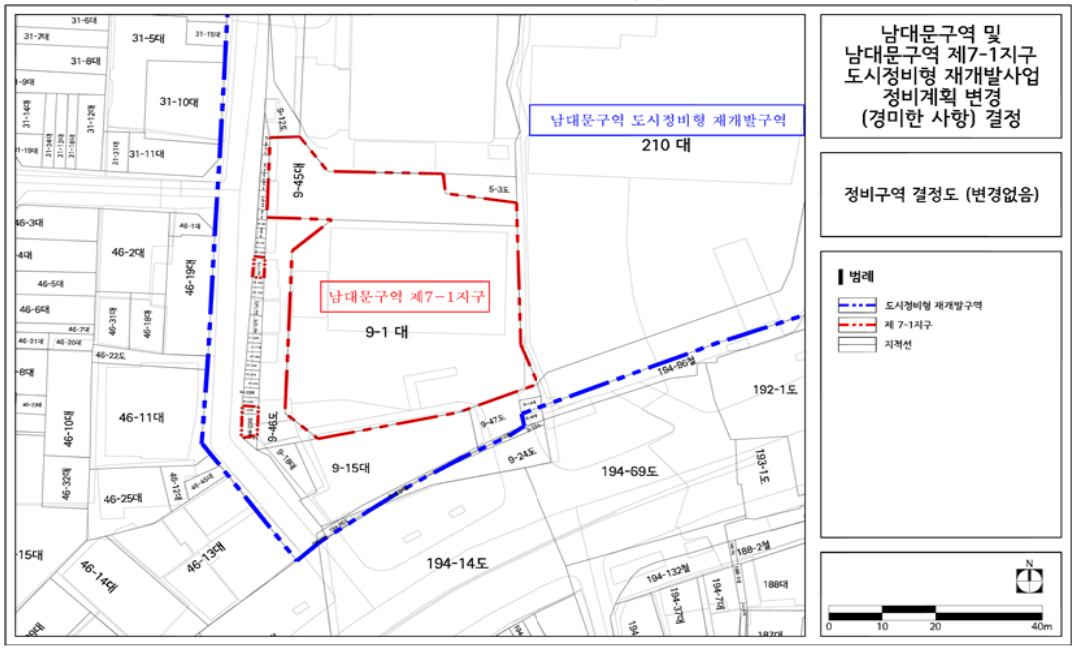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 3396-577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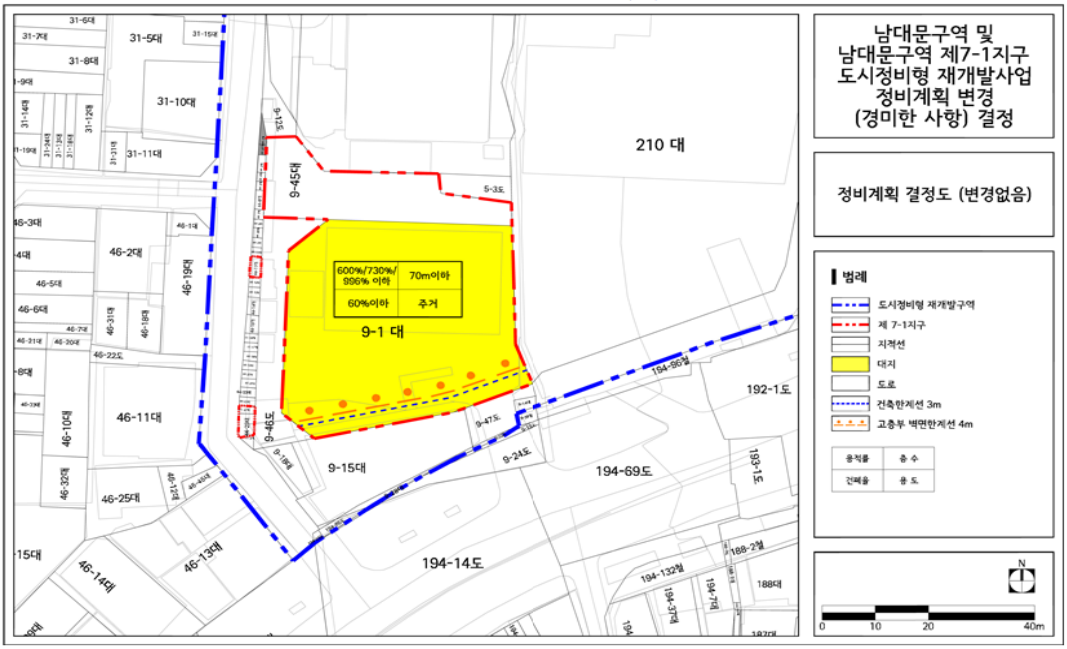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산구고시 제2021 - 21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용산구고시 제1998-40호(1998.6.25)로 결정된 용산구 용산동2가 1-1606(현 1-1497)번지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1-1063호로 열람공고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1-1606(현 1-149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해방촌 노외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면 적 : 883.9㎡(약 268평)
- 규 모 : 지하2층 지상1층/ 건축면적 682.6㎡/ 연면적 1,681.36㎡
- 용 도 : 공영주차장(37면), 주민편의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종합행정타운

마. 사업 기간 : 2021. 11. 04. ~ 2023. 10.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조서참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2199-7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용산2가동 1-1497 해방촌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

연번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용산동2가 1-1497	주차장	883.9	서울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0길 56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해당없음										

영 업 권 조 서

연번	소재지 (위치)	상호	층수	보상면적 (㎡)	영업자 성명	영업지 주소	관계인 성명	관계인 주소	비고
해당없음									

성북구고시 제2021 - 2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7.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호(2007.2.15.)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성북구고시 제2020-105호(2020.6.25.)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 된 『동선동1가 121 ~ 122간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일부 변경(정정) 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정정)

구분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기정	동선동1가 121~122간 도시계획사업	동선동1가 121~ 동선동1가 122	· B = 8m · L = 180m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7.5.)	
변경		동선동1가 121-4~122-9	· B = 6m · L = 90m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1) 변경(정정)사항 :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최초 결정고시 일자 오기 정정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붙임)
1) 토지조서 : 변경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02-2241-3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기정)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동선동1가 121~122간 도시계획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비율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동선동1가 121	대	319.8	319.8	317.66/1980	국					
					145.044/1980	강*우	서울특별시 **구 **동 ***-***				
					63.5/1980	허*도	서우특별시 **구 ****가 ***				
					62.37/1980	구*영	서울특별시 **구 ****가 ***				
					31.185/1980	오*영	서울특별시 **구 **동 ****-*				
					47.5/1980	김*호	서울특별시 **구 ****가 ***-**				
					31.185/1980	전*숙	서울특별시 **구 ***동 **-***				
					132.79/1980	이*철	서울특별시 **구 ****가 ***				
					164.94/1980	윤*선	경기도 **시 **동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비율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2/1980	최*상	경기도 **시 **구 **로 ** ***아파트 ***호				
					24.2/1980	최*상	서울특별시 **구 *******길 **, *층				
					711.59/1980	주식회사 ***	대전광역시 *구 ***로 **, ***아파트 ***-***				
					34.539/1980	손*준	서울특별시 **구 *****길 **, **빌라 ***호	(대위자) 주식회사 ***	대전광역시 *구 ***로 **, ***아파트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34.539/1980	손*옥	경기도 **시 **구 *******길 **, **빌라 ***동 ***호				
					34.539/1980	손*문	서울특별시 **구 **로 ***, **맨션 **층 *호				
					34.539/1980	손*순	서울특별시 **구 ****가 ***				
					21.42/1980	김*정	서울특별시 **구 ***로 ***, ******* ***동 ****호	(대위자) 주식회사 ***	대전광역시 *구 ***로 **, ***아파트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21.42/1980	김*미	서울특별시 **구 ***로 ***, ******* ***동 ****호				
					21.42/1980	김*석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				
					21.42/1980	김*석	서울특별시 **구 ****가 ***				

토 지 조 서(변경)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동선동1가 121~122간 도시계획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비율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동선동1가 121	대	319.8	319.8	23760000 /71280000	브***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5**, 2**호				
					7920000 /71280000	정*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길 5*, *동 17**호(도곡동)				
					7920000 /71280000	고*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길 5*, *동 17**호(도곡동)				
					7920000 /71280000	정*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길 5*, *동 17**호(도곡동)				
					5940000 /71280000	김*희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9번길 5*, 1**호(합정동)				
					5940000 /71280000	정*숙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9번길 5*, 1**호(합정동)				
					5940000 /71280000	김*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번길 2*, 10*동 5**호(상현동)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종로세무서 체납징세과	압류	
					5940000 /71280000	김*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6*번길 2*, 10*동 10**호(상현동)				

노원구고시 제2021 - 166호

도시관리계획(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제2010-462호 (2010.12.1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연구시설, 도서관)에 대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취지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이 되어있는 중계동 364-3 일원에 기억키움센터, 청소년아지트 · 심리상담센터 등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청사(보건지소)로 중복결정 하고자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하계동, 중계동 일대	1,431,637.7	-	1,431,637.7	서고시 제1995-394호 (1996.1.9)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문화시설	기타 문화 시설	노원구 중계동 364-3호 일원	7,863.2	-	7,863.2	서고시 462 (2010.12.16.)	중복결정 (연구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변경	①	연구시설	-						
신설	⑪	공공청사	보건 지소		-	증)7,863.2		-	

• 2016.02.12.에 개정된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및 부칙에 따라 도서관의 문화시설 변경 및 편입

◯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문화 · 연구시설, 공공청사	• 기 결정된 연구시설, 문화시설에 공공청사 중복 결정	• 주민들의 기억키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등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시설을 조성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문화 · 연구시설, 공공청사	60%이하	200%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위 변경 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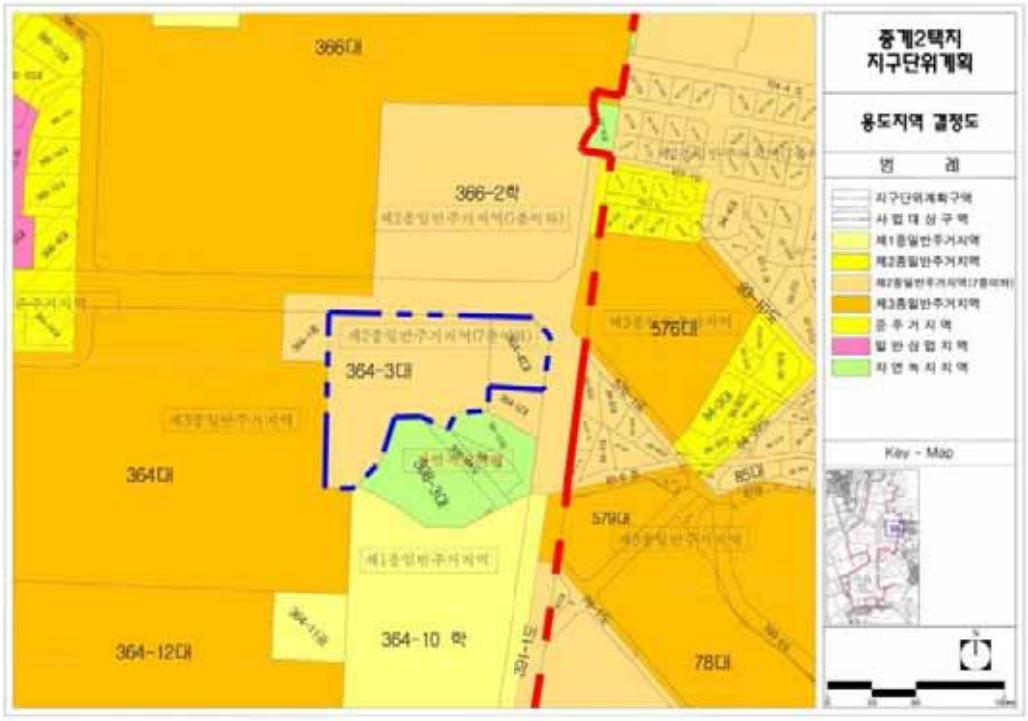
5. 고시된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8)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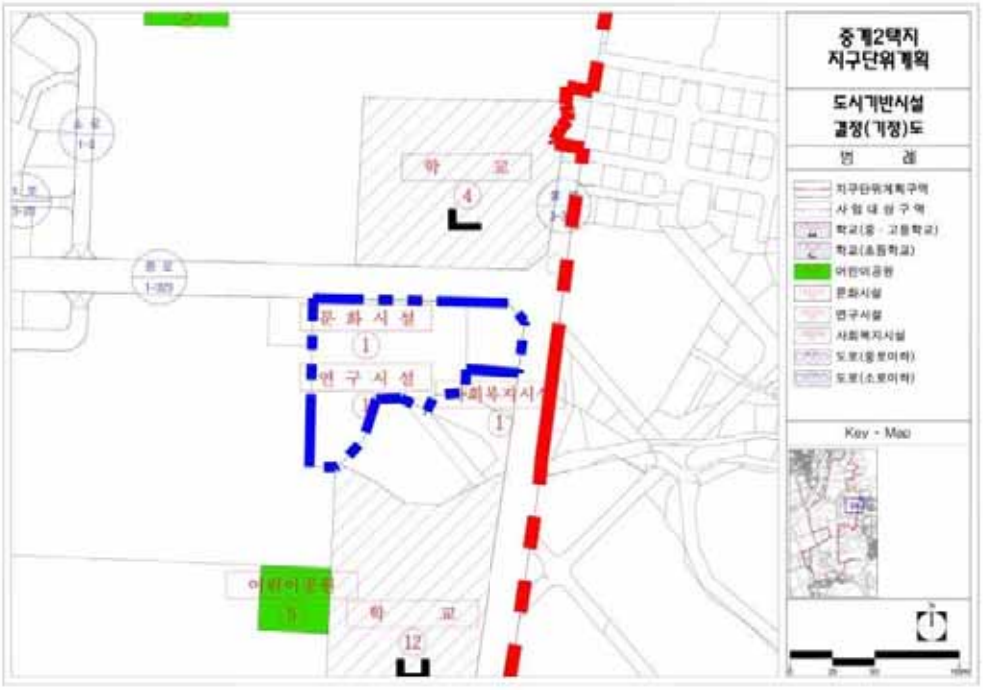
◈ 사업대상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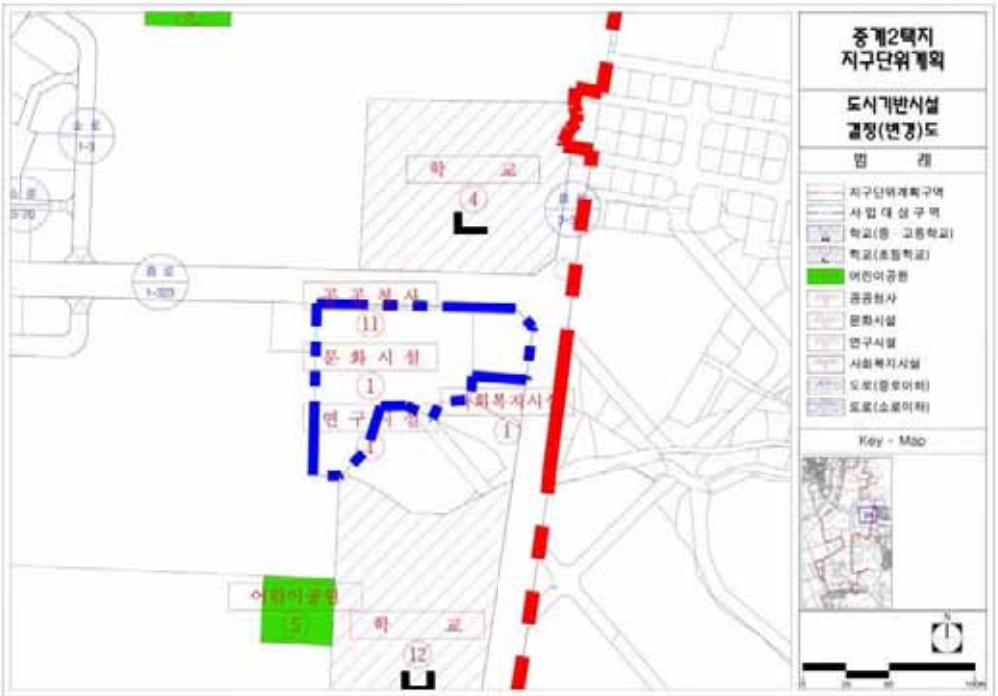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양천구고시 제2021 - 18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13-318('13.10. 4)호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9(' 20. 1. 9)호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양 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 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78	10.8 ~ 147.5	주간선 도로	7,530	양천구 신월동 835 (광로2-12) (신월IC)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광장40호) (여의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안양천	서고 2013-318 ('13.10.4)	▪ 현황측량 결과반영 한 수직구 위치조정
변경	대로	1	78	10.8 ~ 147.5	주간선 도로	7,530	양천구 신월동 835 (광로2-12) (신월IC)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광장40호) (여의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안양천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78호선	대로1-78호선	·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양천구 목동 914-5번지 수직구 위치변경	○ 양천구 목동 914-5번지 설치완료한 수직구의 시공선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 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선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조서 : 변경없음
- 편입토지 : 변경없음
- 그 외 기타사항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0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고시 제2021 - 2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6-6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구 로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장기사용(35년경과)중인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에 따라 철거 및 신규 재구축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가스공급설비	가스배관시설	고척동 66-69일대	1,018	감)1,018	-	서울특별시 고시 제652호 (84.11.16)	
			-		448	-	448		
신설	-		가스배관시설		-	증)155	155		시 설 이 전

다.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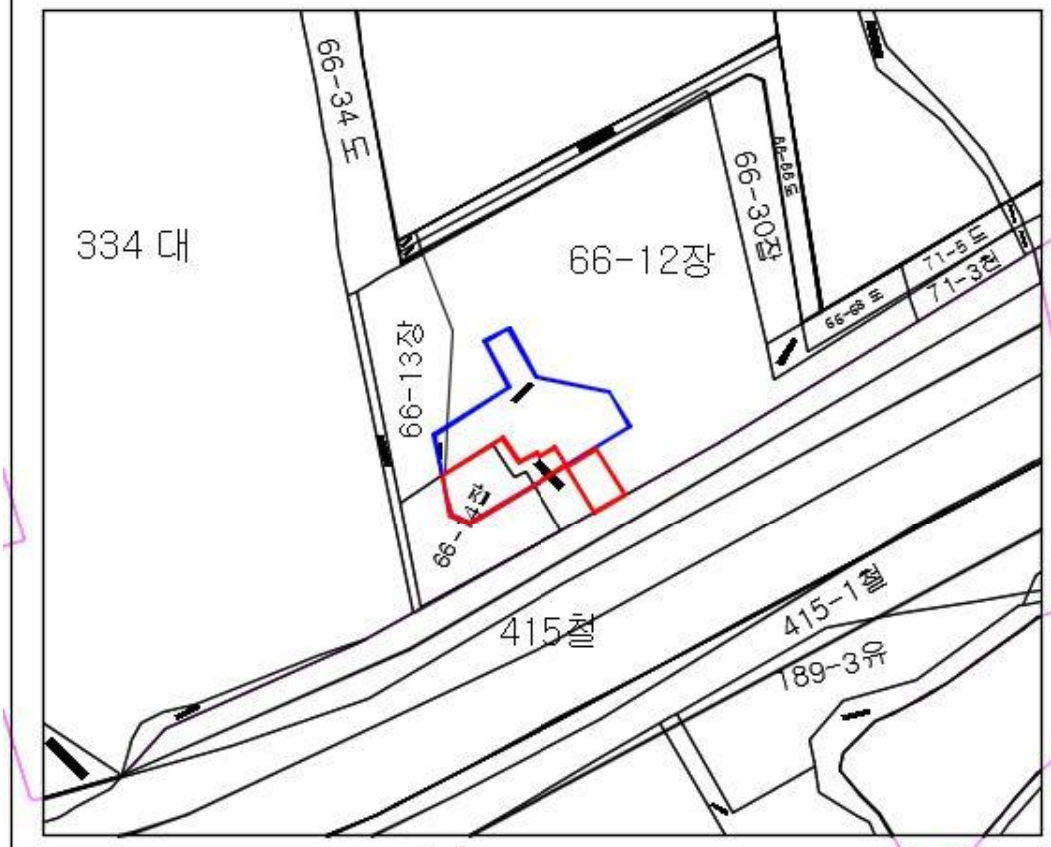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S = 1:1,200)



구 분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직 위	주무관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 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박경상	현황석	윤석빈
확인인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	가스공급설비	가스배관시설	고척동 66-69 일대	1,018	감)1,018	-	서울특별시 고시 제1652호 (84.11.19)	
			-		448	-	448		
신설	-		가스배관시설		-	증)155	155		시설이전

범 례 : 기정 ——— 변경 ———

구로구고시 제2021 - 2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구 구로동 548번지 일원, 구로동 대로3-23~548-1번지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로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구 로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기존 노외공영주차장을 경남연립소규모재건축조합에서 제안한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경남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의 건축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원확보 및 연장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통행 등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 차 장	구로동 548번지 일원	2,389	감)1,409	980	구고시 제12호 (1998. 2.18.)	경남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 차 장	· 면적변경 - 2,389㎡ → 980㎡ (감 1,409㎡)	주변 주차수요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재건축조합에서 제안한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수요 공급확대 등으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도로 구분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42.4	대로 3-23	구로동 553-2	일반 도로	서고시 제293호 변경 (2013. 9.12.)	종점부 선형변경
변경	소로	1	5	10~12	국지 도로	163.4	대로 3-23	구로동 548-1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5	소로1-5	· 도로변경 - 폭원 : 10m → 10~12m - 연장 : 142.4m → 163.4m, 증)21.0m - 종점 : 구로동 553-2 → 구로동 548-1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기존도로 10~12m 폭원 확보 및 연장확대에 따른 종점 변경

3. 지형도면의 작성

-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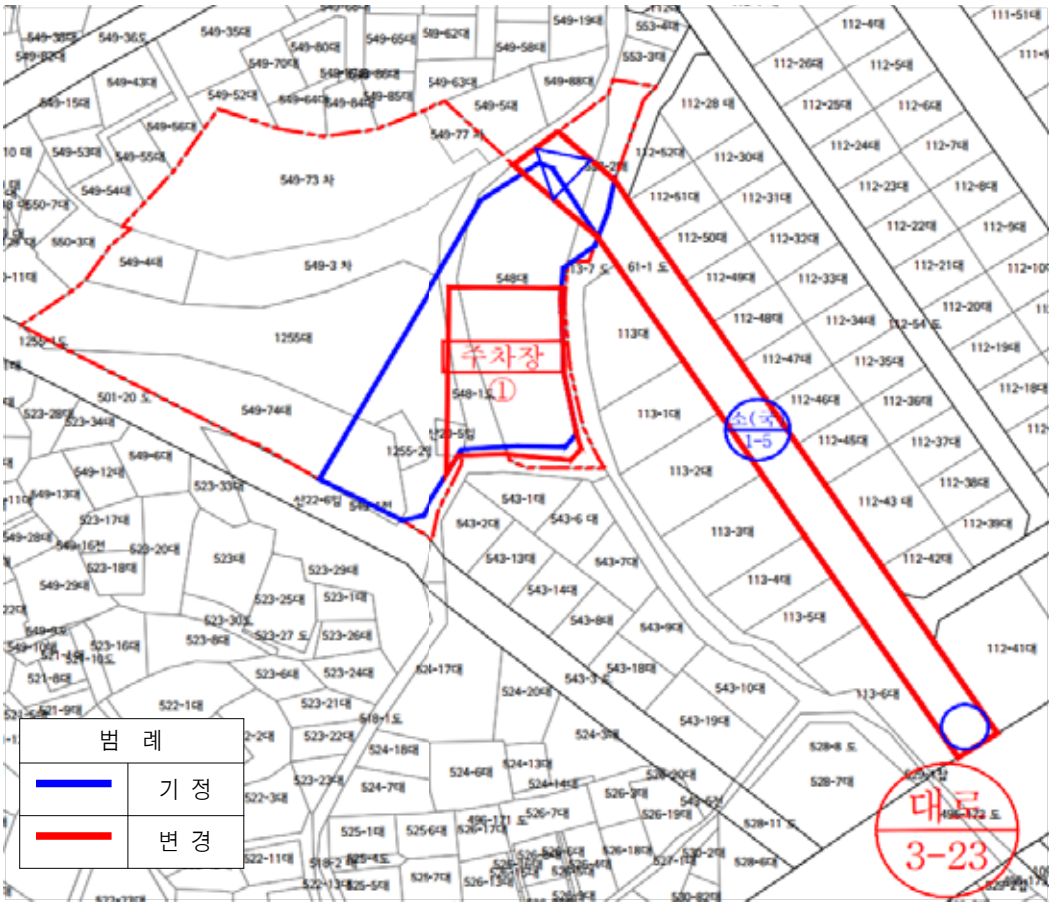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S=1:1,20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 차 장	구로동 548번지 일원	2,389	감)1,409	980	구고시 제12호 (1998. 2.18.)	경남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도로 구분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42.4	대로 3-23	구로동 553-2	일반 도로	서고시 제293호 변경 (2013. 9.12.)	247.85종점부 선형변경
변경	소로	1	5	10~12	국지 도로	163.4	대로 3-23	구로동 548-1	일반 도로	-	

구 공 고

동작구공고 제2021 - 18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94(2017.11.2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작트인시아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창원 외 1인
◯ 주 소 : 동작구 상도로 58, 3층 (대방동)

다. 사업완료 현황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 사업규모 : 도로(면적 1,752㎡)
◯ 사업기간 : 2017. 11. ~ 2021. 10.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리우엠앤씨 (대표 문덕범)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	유선장 1,216㎡ (간접점용 1,951㎡) 상하수도관로 236㎡	유선사업	2021.10.26. ~2021.12.31.	2021. 10. 27.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계 내 한강 (한강대교)	선박 2척	정밀안전진단	2021.11.02.~ 2021.11.03.	2021. 10. 29.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계 내 한강 (한강대교)	선박 2척	일상유지 보수공사	2021.11.03.	2021. 10. 29.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국토안전 관리원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서울시계 내 한강 (청담대교)	선박 2척	정밀안전 진단점검	2021.11.01.~ 2021.12.31.	2021. 10. 29.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90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 북단	선박 36척	공사 대기 수상 정박	2021.11.01.~ 2021.11.30.	2021. 10. 29.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광장티엔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6길 54	강동구 고덕동 73-2번지 한강, 강서구 개화동 657번지 한강	선박 4척	공사 대기 수상 정박	2021.11.01.~ 2021.12.31.	2021. 10. 29.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1 - 2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10동 309호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마포구 상암동)	선박 2척	유선장 및 통합레포츠 센터 설치	2021.10.23.~ 2021.12.22.	2021. 10. 29.

사업소공고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1 - 275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과태료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11.4. ~ 2021. 11.17.(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1. 11.18. ~ 2021. 12.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57	최*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동****호 (논현동, 논현아이파크)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58	TRINH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	***호 (반포동)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60	박*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길 **	***호 (논현동, 논현동인텔리전트하우스)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61	권*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	***호 (화곡동, 부일쉐르빌)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67	정*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호 (신정동, 동양홈타운)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68	(주)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	***호 (창곡동, 이너매스우남)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70	윤*중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길 **-**	***호 (논현동, GEO ville)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71	김*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길 **	***호 (용두동, 대원파크빌)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72	오*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길 **	(답십리동)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73	최*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	***동 ***호 (초월롯데낙천대아파트)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77	김*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동 ***호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82	J*NJUN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길 **	***호 (번동)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83	김*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길 **-**	(면목동)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85	김*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길 **	(답십리동)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86	이*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다길 *	(용답동)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87	문*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안길 *-**	(와동)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95	남*권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	***동 ****호 (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396	문*표,이*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길 **-*	***호 (중화동)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02	하*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동두천시 이담로 **	***동 ***호 (지행동, 동원베네스트아파트)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04	임*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나길 **	(구의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05	윤*정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번길 **-*	(상대원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06	황*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가길 **	(성북동)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08	박*완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	****동 ****호 (다산동, 다산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15	성*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길 **	(자양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21	서*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길 **	***동 ****호 (답십리동, 청솔우성아파트)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25	김*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다길 **	***호 (중곡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26	김*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가길 **	***호 (하월곡동, 정원베스트빌)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32	원*희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가길 *	***호 (자양동, 신흥연립)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33	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길 **	***호 (신림동)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39	임*덕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길 **-*	(상봉동)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43	최*석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길 **	***호 (번동, 성금수림채아파트)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50	박*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길 ***	***동 ***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53	ZHEN*Y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	(행주외동)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62	은*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	***호 (신원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63	양*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	***동****호 (백석동, 흰돌마을)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통지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자진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66	최*학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송파동, 대경리치빌)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67	임*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호 (송파동)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71	박*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길 *	(홍익동)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002472	박*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번안길 ***-*	***호 (다산동)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 - 43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장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8-1번지 등 10필지
 - 면 적: 45.9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관 부식 방지시설 설치
 - 내 역: 정류기 1개소, 전기방식용 양극 20개소, 케이블포설 22개소

5. 점용기간: (당초) 2016.11.03. ~ 2021.11.02.
 (변경) 허가일로부터 ~ 2026.12.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 - 44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국 여의대방로 10길 9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2-2, 양평동2가 409-383, 문래동 5가 31번지
 - 면 적: 43.4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상수도관 부식방지용 전기방식설비 유지관리
 - 내 역: 양극홀 : 11개소(250mm, 60m), 정류기 : 3개소(1000mm*550mm)
 케이블 배관 : 1식

5. 점용기간: (당초) 2007.10.03. ~ 2017.10.30.
 (변경) 2017.10.30.~ 2022.12.31.

정 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0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07.29.)로 고시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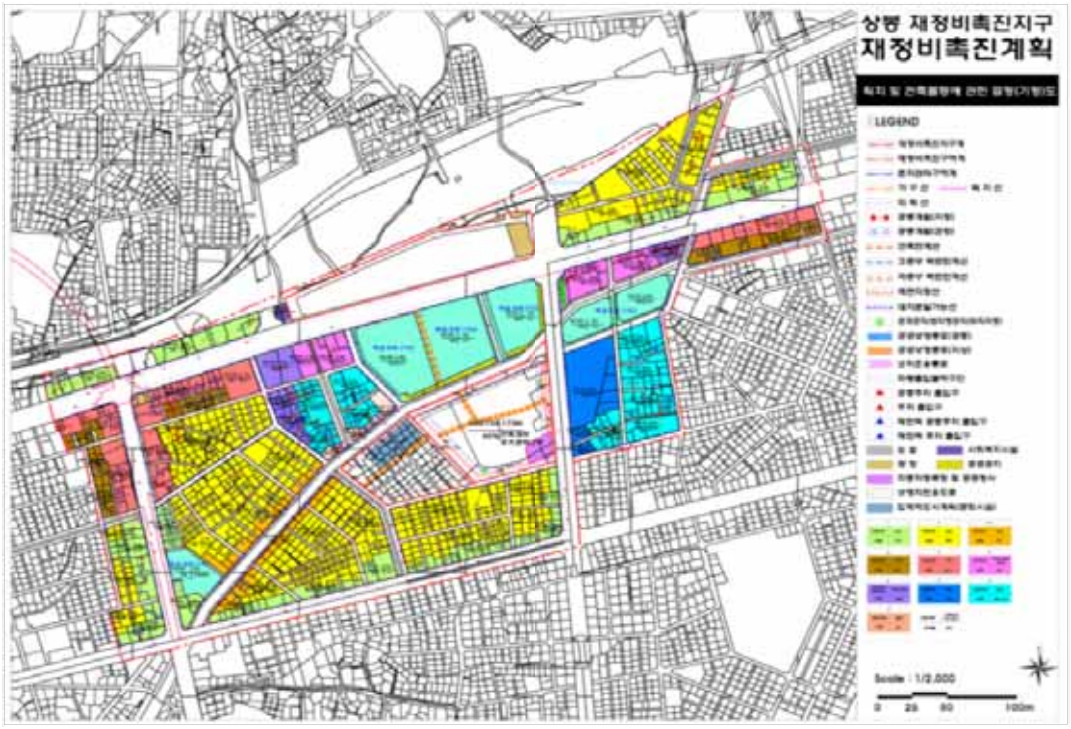
1. 정정 사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07.29.)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내용 중 결정도에 단순착오로 작성된 일부 오기사항(차량출입불허구간) 정정
   ※ 이 외에 정정사항은 없음

2.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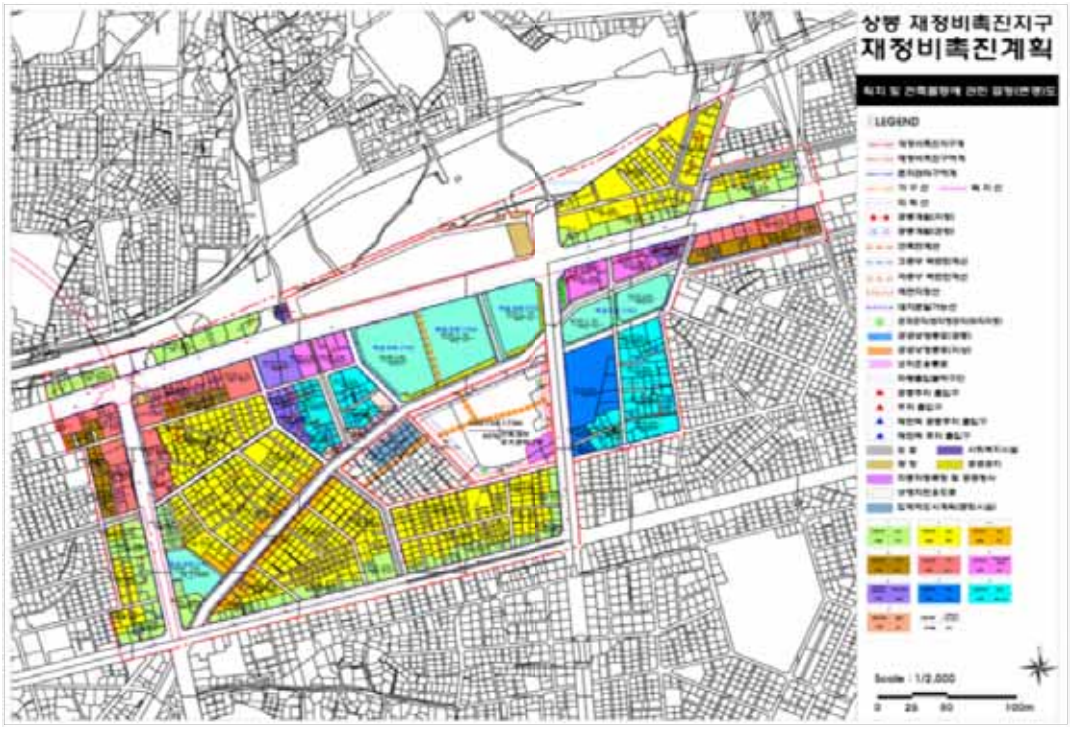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8) 및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이하 여백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정정 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정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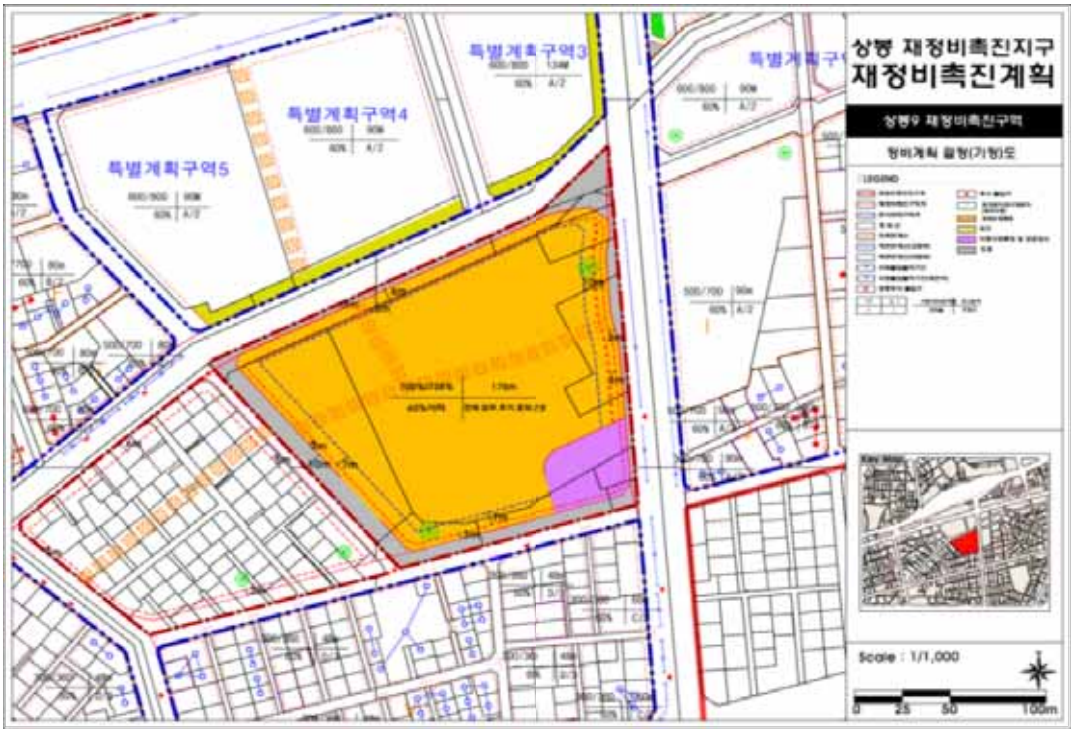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정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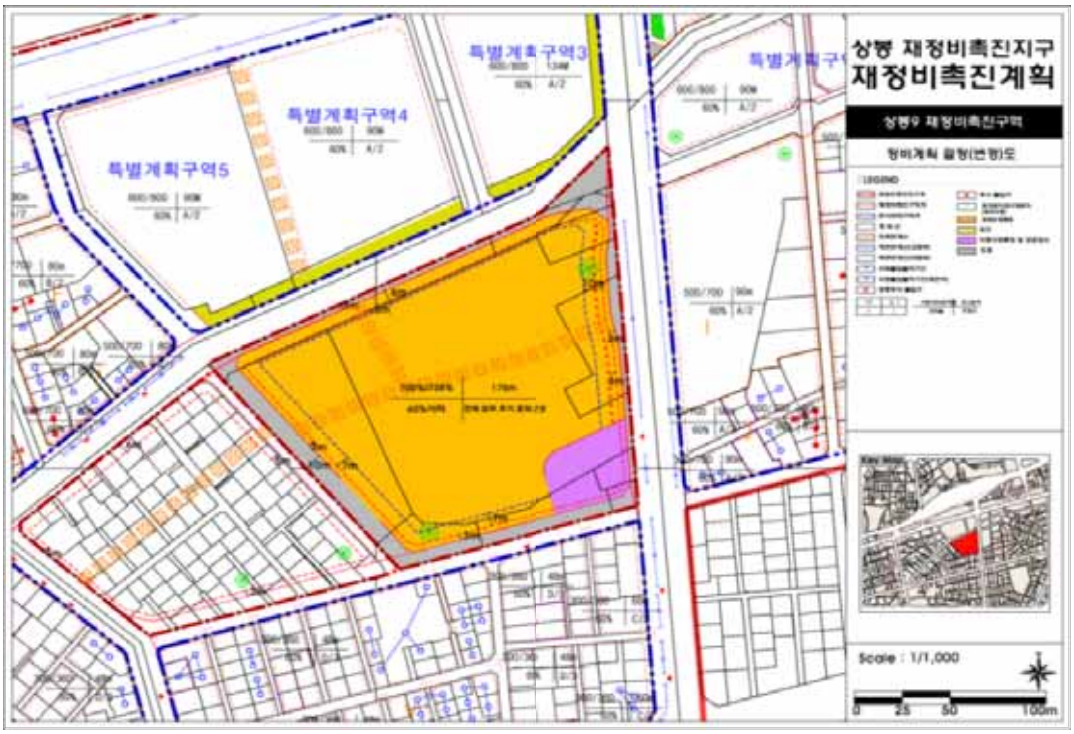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정정 후)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정정 전)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도(정정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 614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미신고·미등록 포함), 준대규모점포 방역지침 의무화 고시(수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미신고·미등록 포함), 준대규모점포(300㎡이상)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적용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적용대상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서울시 소재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서울시 소재 준대규모점포(300㎡이상)

3. 적용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위험요인〉

▲대화, 상품 설명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상대적으로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④ 밀집도 완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⑤ 음식섭취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기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준대규모점포(300㎡이상)

〈위험요인〉

- ▲ 물건 설명 등 대화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③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④ 추가적용 수칙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권고사항	◦ (출입자 명부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밀집도 완화)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그 외 권고사항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 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 (집객행사) 대규모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1월 1일(월)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특수판매업 2133-5352, 준대규모점포 2133-5159)

관악구고시 제2021 - 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호(1972. 1. 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39호(2021. 9. 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고시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41~716-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봉천동 719-41~716-1간 도로개설공사
다. 총사업규모 : 폭원 6~10m, 연장 20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청룡동 1570-1)
사. 사업기간 : 2020. 6. 18. ~ 2022. 12. 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19-41 ~ 봉천동 716-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장기미집행 46번도로

○ 총사업규모 : 폭원 6~10m, 연장 200m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145(청룡동 1570-1) 관악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권리		
1	봉천	715-75	도로	66	66	현황도로	김*봉	관악구 봉천동 ***-*					
2	봉천	715-189	도로	17	10	현황도로	관악구						
3	봉천	715-194	도로	4	4	현황도로	관악구						
4	봉천	715-200	도로	251	43	현황도로	김*봉						분할에 따른 주소 및 면적 정정
5	봉천	715-105	잡	3	3	현황도로	홍*옥	관악구 봉천동 ***-**					
6	봉천	715-104	잡	3	3	현황도로	홍*옥	관악구 봉천동 ***-**					
7	봉천	715-18	대	233	10	현황도로	김*희	영등포구 신길로45길 14, *층 ***호(신길동, 굿데이빌)	든솔신용협동조합	-	근저당	2/4	
							이*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18번길 6, ***동 ****호(송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4	
							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15, ****동 ****호(송도동, 송도더마샵스터뷰)				1/4	
8	봉천	843	구거	225	203	현황도로	국유지						
9	봉천	715-158	대	194	2	현황도로	김*환	관악구 호암로 399, ***동 ***호(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노*철	관악구 양지길 52-1, ***동 ****호(신림동, 관악우정하이비전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율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타권리		
							김 * 국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동 ***호(남가좌동, 디엠씨파크뷰자이)					
10	봉천	840-1	도로	2	2	현황도로	국유지						
11	봉천	841	도로	109	71	현황도로	국유지						
12	봉천	715-52	대	7	7	현황도로	김 * 호	중구 신당동 **-*					
13	봉천	715-20	대	83	61	현황도로	시유지						

위 치 도

□ 공사명 : 봉천동 719-41~716-1간 도로개설공사-№46

N

S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3 문의 : ☎120